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823-01

2020년도 스포츠분야
해외선진제도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스포츠분야 해외선진제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제 출 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스포츠분야 해외선진제도 실태조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한유진
공동연구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고은정
공동연구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이유리
공동연구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한준혜
공동연구원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	김미옥
공동연구원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	김대희
공동연구원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	조현주

| 요 약 |

1.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00년대 후반부터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분야 종사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여 스포츠 인권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의 스포츠인권센터 등을 통해 스포츠분야 종사자의 인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으나 2019년 빙상계 인권침해 이슈를 비롯해 스포츠계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선수가 능동적으로 스포츠에 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도자는 폭력과 무력으로 선수를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훈련하는 관계로 재설정해야 함

○ 스포츠 분야 인권과 관련해서 해외 선진국들의 법・제도・정책・사례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연구가 필요함

□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국내 스포츠 분야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나타난 선수 인권실태를 분석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대한체육회 주관 스포츠(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인권 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스포츠 선수 분류별 인권상황 및 침해양상, 문제점 등을 분석

○ 국내법상 스포츠 분야 인권 문제 관련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향을 제시

- 국내법상 스포츠 인권 보호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해 분석
- 현행 체육관련 법령 중 인권 관련 조항 조사·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현재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 「스포츠기본법」에 대한 필요성 고찰
○ 스포츠 관련 정부 및 비정부 기구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수행
○ 스포츠 관련 가이드라인 및 지침 등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수행
○ 해외 스포츠 분야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나타난 선수 인권실태를 분석
- 조사 대상 국가는 거시적으로 유럽, 미주, 오세아니아 및 아시아로 구분
- 2010년대 이후 스포츠 분야의 법제, 정책, 이슈, 논쟁 등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
-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을 분석 및 평가하고, 국가별 이슈가 되는 사례, 방향, 대책, 효과를 고찰

2. 국내 스포츠분야 인권관련 연구 및 현황

□ 부처별 주요 연구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 12월 체육관계법 선진화 방안을 연구함
- 국내의 체육관계법을 개관하고, 스포츠 인권관련, 다문화, 스포츠 관련 기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분야에 관해 연구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에 관련된 분야에서 실태조사와 연구를 수행
○ 교육부는 체육예술교육지원팀에서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
○ 여성가족부는 기관별 추진실적 점검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

□ 국내 스포츠 관련 법·제도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국내 스포츠 관련 법·제도에 대한 분석
- 문화체육관광부는「국민체육진흥법」,「생활체육진흥법」,「학교체육진흥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통해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고, 국민이 생활체육을 향유할 권리,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의무, 폭력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

- 법무부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보건복지부는「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장애인복지법」에서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차별금지 행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장애인 학대 예방과 방지 의무 규정
- 여성가족부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청소년 기본법」을 통해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
- 대한체육회는「스포츠 비리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통해 스포츠 발전을 도모하고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

○ 국내 스포츠 관련 법·제도에 대한 평가

- 스포츠 진흥법의 제정을 통해 국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스포츠 기본권을 강화해야 함
- 「국민체육진흥법」은 친일적인 요소와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제정된 태생적 한계를 가지며 법의 체계성이 미약함
- 「국민체육진흥법」은 스포츠 범죄행위에 대한 관대한 규정이 존재하므로 개정을 통해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발동 보고를 의무화해야 함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은 훈련장의 안전관리직무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선수들 간의 폭력, 성폭력, 자살 등에 관한 의무를 규정해야 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과 청소년 성범죄에서 단서조항을 두는 것은 정의와 국민정서에 현저히 벗어난 입법임
- 「장애인복지법」에서 가해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입장의 내용이 포함되므로 관련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해야 함

- 「스포츠 비리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스포츠와 관련한 비리, 불공정 사실에 대한 제보 및 이와 관련한 조사를 통해 비리 발생을 예방하고 건전한 스포츠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함

□ 국내 스포츠 관련 정부 및 비정부 기구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국내 스포츠 관련 정부 및 비정부 기구에 대한 분석

-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나라에서 스포츠 분야를 총괄하며 그 산하에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둔 체육국을 두고 있음
- 대한체육회는 클린스포츠센터와 스포츠인권센터를 운영하여 분야별 불공정 행위에 대한 민원 접수 및 해결로 체육계 자정 활동을 실시하여 건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기금 조성을 위한 체육투표권 발행사업과 관련 각종 비리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 운영사업을 실시
- 우리나라의 체육정책은 시대적 환경에 따라 변화하였고, 그에 따라 중앙정부의 체육조직도 빈번하게 변화함

○ 국내 스포츠 관련 정부 및 비정부 기구에 대한 평가

-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 대책에 한계 존재
- 인권침해, 차별, 부정, 부패에 관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함
- 체육계 내부로부터 독립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스포츠 인권기구 설립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단체에 대한 미온적, 제한적 책임을 개선해야 함
-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및 사법기구 등 국가기구 전반에서 스포츠 폭력과 성폭력 등의 근절과 예방 노력이 여전히 부족

□ 스포츠 관련 가이드라인 및 지침 등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스포츠 관련 가이드라인 및 지침 등에 대한 분석

-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두고 있으며, 스포츠 인권헌장과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폭력, 성폭력, 학습권 침해 예방을 위한 사회의 노력 방향을 규정
- 대한체육회는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선수지도 매뉴얼과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 예방 가이던스 지도자용에서 선수인권, 선수폭력 및 성폭력에 관한 정의 및 예방법을 제시

○ 스포츠 관련 가이드라인 및 지침 등에 대한 평가

- 엘리트 체육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학교 스포츠 현장에서 기본권이 유린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주도적 학교운동부 시스템과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됨
- 현재까지 드러난 체육계에서의 선수 구타와 가혹행위는 현재 체육계 전반의 하위문화 내에 구조화된 형태로 존재
- 학생선수의 기숙사나 합숙소에서 폭력 및 성폭력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개선대책이 필요
- 체육특기자 제도는 선수 기숙사 또는 합숙소 생활이 존속되는 조건을 가지게 함으로써 많은 위험을 부담시킴

□ 스포츠관련 국내 인식

○ 수업결손에 관한 문제는 현장 지도자들의 책임이 아닌 행정적인 문제와 엘리트 체육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됨

○ 학습권은 양적 실태와 심층 면접을 통해 학생선수들의 학습 등 교육과 훈련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등을 통해 분석됨

○ 폭력의 포괄적 개념과 성폭력과의 중층적 특성을 ‘폭력의 연속선’ 개념으로 분석

○ 성폭력을 성적 자율권 혹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인권 관점에 입각하여 분석

3. 스포츠분야 해외 선진제도 실태조사

□ 미국

○ 스포츠 관련 주요 이슈 및 동향

- 미국의 스포츠인권은 2017년 설립된 독립된 인권기구인 ‘미국세이프스포츠센터’ 가 자주적으로 관리 · 제재를 담당
- 2017년 「성적 학대로부터 어린 피해자 보호 및 안전한 스포츠 기구 설립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킴

○ 스포츠 거버넌스

- 엘리트 체육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미국올림픽위원회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이루어짐
-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학교 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체육수업 시간 수 의무화 등의 방법을 제시
- 학생선수들의 체육활동에서 아마추어 정신을 철저히 강조

○ 스포츠 관련 법・제도

- 테드 스티븐스 올림픽/아마추어 스포츠법은 미국 연방의 스포츠 법제 중 기본법임
- 미국올림픽위원회가 전국단위조직(NGB: National Governing Body)으로서 지정하는 스포츠단체의 자격 요건, 절차 및 의무에 대해 규정
- 유소년 선수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원금의 운용에 대하여 규정
- 미국세이프스포츠센터를 안전스포츠를 담당하는 독립된 국가 단체로 지정하여 국제 안전스포츠 분야에서 미국을 대표할 자격을 부여
- 「스페셜올림픽 스포츠 및 역량강화법 2004」 는 스페셜올림픽 진흥을 위하여 교육부, 국무부, 보건부에 지원금/계약/협조약정 등 조치를 요구하는 법률임
- 스포츠 의료 면허 명확성법 2018에서 스포츠 의료인력의 책임보험의 보장범위 및 면허의 적용 범위를 규정

○ 스포츠 관련 인식 현황

- 미국의 스포츠계에서의 인권유린은 많은 부분 여자 선수들을 상대로 한 감독이나 코치진들의 성적 학대 및 성폭행과 관련
- 2016년 래리 나사르 사건을 계기로 2017년 스포츠인권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자구책을 마련하고 미국 내 운동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
- 미국 스포츠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학생 선수들 간 발생하는 괴롭힘(Hazing)은 팀원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팀 내 리더십 및 의사결정을 위한 서열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혹은 단순히 재미를 위해 하는 전통으로 여겨짐
- 학생선수들의 경우 중 ·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학업이수 과목과 성적이 운동선수로서 대학교를 진학할 시에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임

□ 영국

○ 스포츠 관련 주요 이슈 및 동향

- 영국의 스포츠인권 관련 정책은 인권침해 발생 후 사후 대응적 측면보다는 사전방지를 위한 예방적 실천에 보다 초점을 둠
- 영국의 스포츠 인권은 성폭력/폭력 등의 이슈와 더불어 스포츠에 공평한 참여기회 보장, 스포츠에 참여 확대, 성차별 철폐 등에도 초점을 둠
- 영국은 지도자와 학생선수의 부모가 스포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해야 할 지침을 사례와 함께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배포

○ 스포츠 거버넌스

- 영국의 스포츠 정책은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의 관할 하에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체육협의회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
- 영국의 체육관련 정책은 엘리트체육 업무를 관장하는 UK 스포츠와 생활체육 업무를 관장하는 스포츠 잉글랜드에 의해 주도

- 전체 스포츠계획에서는 종목별 경기단체의 지원을 통해 14-25세에 해당하는 젊은 세대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제고
- 1989년 제정된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아동·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
- 영국의 스포츠 행정은 문화·스포츠·미디어부 산하 비정부 공공기관인 UK 스포츠와 스포츠 잉글랜드를 통한 정부 보조금 및 복권 기금의 배분에 의해 이루어짐

○ 스포츠 관련 법·제도

- 영국의 인권법에 따라 제1조에 권리와 자유에 관한 사항과 제2조에 모든 사람의 생명권은 법으로 보호됨
- 청소년활동센터법에서 10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센터 및 운영자의 규칙을 규율함
- 아동법 및 기타 법률에 따라 부모와 다른 사람의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
- 아동청문회법은 어린이 청문회, 청문회 전 패널 또는 법원이 아동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 결정을 내리는 경우 적용
- '학교 스포츠 파트너십'은 학교체육에 대한 지역지도자와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
- 영국선수협회는 모든 어린 선수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폭력에 대한 정의와 준수해야 할 규칙들을 제시
- 폭력예방을 위해 영국선수협회에서 어린 학생운동선수들에게 폭력이 발생되는 몇 가지 측면을 분석하여 그 대응책을 제시
- 스포츠 잉글랜드 평등정책은 모든 형태의 부적절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을 실현
- 전국아동학대방지협회는 교육자료 지도와 학생수업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작

○ 스포츠 관련 인식 현황

- 스포츠계에서 일어나는 아동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보호스포츠유닛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아동인권 관련 대응을 시작

- 스포츠에서 일어나는 인권이슈의 상당 부분이 성폭력/성추행 등 성적 학대와 관련이 있으며 성인 보다는 아동기에 발생하고 성인이 된 후 피해사실을 밝히거나 이슈가 되는 경향을 보임
- 아동 성학대 독립조사를 설치하여 아동들을 성적 학대와 착취로부터 보호하는데 있어 얼마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는지를 조사
- 운동선수들의 스포츠 계급이 올라갈수록 코치들의 정서적 폭력행동의 빈도가 증가함
- 다양한 국립 스포츠 연구소를 통해 선수들의 의료적인 도움에서부터 라이프스타일 상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 허브 설립
- 스포츠 연맹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운동선수들의 요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

□ 캐나다

○ 스포츠 관련 주요 이슈 및 동향

- 던컨 스포츠장관은 캐나다 스포츠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폭력, 차별, 괴롭힘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고 이를 관리할 제3의 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밝힘
- 스포츠계의 인권보호를 위해 2020년 캐나다 정부는 두 가지 이니셔티브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킴

○ 스포츠 거버넌스

- 1995년 캐나다문화부법이 제정되면서 문화부에서는 캐나다의 문화와 시민생활 전반에 대한 폭넓은 권한 및 책임을 부여
- 스포츠 캐나다 산하에는 스포츠 참여증대를 목표로 하는 캐나다스포츠 연구센터가 있으며 국가스포츠 커뮤니티에 대한 특정 서비스 제공을 주도하거나 조정하는 국가멀티스포츠서비스기구가 존재
- 국가 스포츠 기구는 캐나다의 스포츠를 관리하는 국가 관리기구로서, 캐나

다 내 모든 스포츠 프로그램과 국가대표팀 선정 및 관리

○ 스포츠 관련 법・제도

- 1961년 9월 29일 제정된 캐나다 (구) 위트니스 아마추어 스포츠법은 2003년 신체활동과 스포츠에 관한 법률로 대체될 때까지 스포츠에 관한 기본법 역할을 함
- 캐나다 헌법 제2조는 모든 사람이 향유하는 자유권에 관하여 규정
- 체육활동과 체육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신체 활동의 중요한 이점과 스포츠의 실천에 대한 인식을 제고
- 괴롭힘 및 학대 정책과 캐나다평화교육센터(Canadian Centres for Teaching Peace)의 폭력예방을 위한 지침에서 차별 금지 및 폭력 행위 예방에 관한 내용 제시
- “스포츠 학대를 예방하고 해결하기위한 보편적 행동 강령” 은 능력, 배경이 다른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및 영적 건강에 기여하고자 제정됨
- 캐나다 정부는 원주민의 스포츠 참여에 관한 스포츠 캐나다의 정책을 마련하여 캐나다의 문화유산을 지키고자 노력함

○ 스포츠 관련 인식 현황

- 스포츠계의 학대 관련 연구가 운동선수 관점에서 독립적인 연구로 진행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는 스포츠계 내 폭력, 차별 및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문화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
- 캐나다 스포츠인들은 선수시절 당시 짓밟혀진 인권에 대해 보상받으려는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음
- 캐나다 정부는 대학 수업과 스포츠의 균형을 맞추려는 젊은 운동선수들을 위해 이니셔티브를 제공

□ 일본

○ 스포츠 관련 주요 이슈 및 동향

- 일본이 2020년 올림픽 유치에 도전하던 2013년 유명 엘리트 선수 학대 사건 영상과 아동 선수들의 자살 사건이 잇따르면서 주요 스포츠 기관들이 스포츠에서 아동 보호의 필요성 강조

○ 스포츠 거버넌스

- 학교스포츠는 문부과학성의 관할 하에 충실한 학교체육, 어린이 체력향상, 전국체력・운동능력・운동습관 조사 등 추진

○ 스포츠 관련 법・제도

- 스포츠 강국 실현을 목표로 국가 전략으로서 스포츠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스포츠기본법」을 제정
- 일본형법에서 강제음란과 강간에 대해 규정
- 「괴롭힘방지대책추진법」을 통해 따돌림의 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
- 2020년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활용하여 스포츠를 통해 사람들을 연결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계획 수립

○ 스포츠 관련 인식 현황

- 일본에서 아동 운동선수들에 대한 신체적 폭력은 오랫동안 일반적인 요소로 인식되어옴
- 폭력 코치들에 대한 지속적인 책임감의 결여는 신체적인 폭력을 코칭 전술로서 지속적으로 수용하게 만듦
- 24세 이하 조사 응답자 381명 중 5명은 어린 시절 스포츠에 참여하면서 성폭행이나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보고함
- 일부 대학 운동선수들은 스포츠 추천을 받아 대학에 왔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에 진지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껴옴

□ 호주

○ 스포츠 관련 주요 이슈 및 동향

- 스포츠정책의 총괄기구인 호주스포츠위원회는 생활스포츠 부분에서 국민

들의 스포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Play. Sport. Australia’라는 진흥계획을 발표

- 호주의 엘리트스포츠 육성정책은 국제경기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우수한 운동선수 및 유소년 선수를 발굴하고 국제대회 참가 지원

○ 스포츠 거버넌스

- 호주체육회에서 스포츠에서의 인권문제를 주도하고 있고 관련 정책 및 보고서를 제작

○ 스포츠 관련 법・제도

- 호주인권위원회는 스포츠와 관련한 호주 연방 성차별법의 운영 정보 지침을 발표하여 법률 운영에 관한 정보 제공 외에 인종차별 및 성차별에 관한 지침을 통해 포괄적인 스포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
- 스포츠 공정 오스트레일리아 법에서 국가 반도핑계획을 제정하고, 반도핑 협약과 유네스코 반도핑 협약을 이행
- 호주의 스포츠 재판소법은 스포츠 분쟁의 공정한 심리 및 해결을 위한 효과적이고, 독립적이며, 전문적인 재판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설립
- 2018년 「아동성학대국가재정비계획」을 수행하여 제도적으로 취약한 아동의 학대, 생활에 침투되어 있는 학대 및 관련 성적 학대에 관해 규정
- 스포츠 호주위원회 아동안전 약속 성명을 통해 아동의 학대 및 태만, 취약한 선수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항, 연령과 질병, 외상 또는 장애 등을 이유로 당하는 착취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해결해야 함을 규정

○ 스포츠 관련 인식 현황

- 「호주의 스포츠 청렴도 평가 보고서(2018)」에 따르면, 호주의 일반 대중은 자국의 체육계를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호주가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존경을 받는다는 것에 동의하거나 강하게 동의했지만, 호주의 운동선수들이 긍정적인 롤모델이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이나 호주의 전문 스포츠의 청렴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임
- 응답자의 77%가 정부가 체육계의 청렴함을 지키는 것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답함

- 스포츠 호주는 모든 호주인들이 성별, 성적 지향, 능력, 문화적 배경, 민족성, 지위 또는 삶의 단계에 관계 없이 환영받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스포츠와 신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음
- 호주스포츠연구원은 호주의 엘리트 선수가 스포츠 내/후기 동안 평생 직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운동선수 경력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평생 경력과 교육 결정을 내리는 호주 선수들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

□ 독일

○ 스포츠 관련 주요 이슈 및 동향

- 독일올림픽스포츠연맹과 독일스포츠청소년국은 2020년 12월 「안전한 스포츠 – 국경 위반, 성희롱 및 스포츠 폭력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 발간

○ 스포츠 거버넌스

- 체육 전반의 발전과 확산에 촉매 역할을 한다는 점을 전제로 독일의 체육정책 수립
- 엘리트체육 성공을 통한 국격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연방스포츠과학연구소, 라이프치히의 응용트레이닝연구소, 베를린의 스포츠측정연구소 등 운영
- 2006년 독일 체육회와 독일 올림픽 위원회가 통합되어 만들어진 독일 올림픽 스포츠 연맹이 모든 경기 단체들의 상위단체로서 독일 스포츠 전체를 관장
- 독일은 교육과 관련된 연방법률을 가지고 있지 않고 주에 위임되어 옴

○ 스포츠 관련 법・제도

- 독일연방정부의 정책은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밀접한 상호연관성에 역점 둠
- 연방정부는 민간단체, 공공단체에 의해 수행되는 청소년 체육프로그램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재정을 지원함
- 학교와 스포츠클럽의 활동에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청소년

축제, 국제청소년체육프로그램 교류 사업 등을 실시

- 「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국가권력은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짐
- 독일형법전은 성적 자기결정에 대한 죄, 상해의 죄, 개인의 자유에 대한 죄를 규정
- 「스포츠도핑방지법」은 스포츠의 건강과 운동선수와 여성을 보호하고, 공정성과 동일한 기회에 스포츠 대회를 확보하며, 스포츠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
- 독일의 「일반평등법」은 차별금지 조항을 두고 있으며, 본 조항으로 인해 인종, 민족, 성별, 종교, 장애, 나이 또는 성적 정체성에 의해서 차별되지 않음

○ 스포츠 관련 인식 현황

- '성폭력'이라는 주제가 오랫동안 금기였으나, 2010년부터 스포츠 등 대중적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음
- 아동 성폭력에 대한 공개 토론에서 아동이 장기간에 걸쳐 성인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신체 접촉을 통한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가 지배적으로 나타남
- 소녀와 젊은 여성이 남성보다 스포츠에서 성폭력의 성폭력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스포츠 활동은 일반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여겨짐

□ 프랑스

○ 스포츠 관련 주요 이슈 및 동향

- 프랑스의 스포츠 조직들은 스포츠법전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스포츠조직을 지원하는 구조임
- 단체의 형식으로 설립되는 민간 스포츠조직의 경우 인증을 취득하면 국가의 재정적 지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음
- 프랑스는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이슈를 관장하는 전담기구나 조직

을 두지 않고 프랑스 체육부에서 담당함

- 성폭행 사건들의 경우 사법 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하여 유죄 판결이나 사법 절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해당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77%, 가해자가 재범을 저지르는 비율도 47%에 달함

○ 스포츠 거버넌스

- 학교 스포츠 관련한 정책은 스포츠・청소년・공교육 및 지역사회 생활부와 교육부의 협력 하에 시행
- 프랑스의 엘리트체육은 체육부 장관 주재의 엘리트스포츠국가위원회가 관할

○ 스포츠 관련 법・제도

- 프랑스 스포츠법은 민간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되는 스포츠 클럽을 중심으로 하여 엘리트 스포츠 선수의 양성과 생활 스포츠에 대한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짐
- 프랑스 헌법은 출신, 인종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이 법 앞에서 평등함을 보장함
- 스포츠법전은 당시 산재한 스포츠 관련 법령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하나의 스포츠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작업으로 평가됨
- 프랑스는 성폭력방지법으로 형법 제2권 제2장, 제3장 제4항을 보강하여, 성폭력방지법을 제정
- 프랑스 형법은 성폭행에 관해 폭력, 강압, 위협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으며, 강간 및 기타 성폭행에 대한 처벌을 규정

○ 스포츠 관련 인식 현황

- 사라 아비볼트 사건 이후 프랑스 체육부는 빙상연맹과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30년간 20여명의 피겨 코치가 조직적으로 선수들에게 성적 학대나 폭력・폭언을 일삼았던 사실이 드러남
- 프랑스 체육부는 스포츠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비롯한 각종 인권침해 사건들의 방지와 선수보호를 위해 2015년 「문제예방과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 현재까지도 프랑스의 스포츠선수의 인권이 체육부의 지침이나 스포츠법을 통해 보호받게 되어 있으나 정작 성폭력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됨

□ 유럽연합

○ 스포츠인권 거버넌스

- 스포츠는 2009년 리스본 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유럽연합의 공식 영역으로 인정되고 유럽연합의 권한에 속함
- 유럽 평의회도 스포츠에서의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를 추진

○ 스포츠인권을 위한 결의안과 협약

- 2000년에 발표한 「스포츠에서의 여성, 청소년, 아동에 대한 성희롱과 학대 방지 결의안」에서 유럽 회원국 평의회가 취할 일련의 조치를 명시
-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고 2010년 발표함
- 2015년 1월에는 스포츠에서의 성불평등과 폭력의 지속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스포츠에서의 성주류화에 관한 권고안」 발표
- 2017년에 유럽연합 이사회와 회원국 정부의 대표자들은 「유럽연합 스포츠 업무계획」을 채택

○ 스포츠에서의 폭력과 성폭행 예방 프로젝트

- 스포츠에서의 아동·청소년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4년과 2017년에 '어린 선수들을 위한 프로세이프스포츠(Pro Safe Sport) 프로젝트'와 PSS+를 진행
-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진행하는 유럽연합과 유럽이사회(COE: Council of Europe)의 공동 프로젝트인 '스포츠에서의 아동 보호'를 통해 아동 보호관의 직책 설정을 통해 스포츠 정책에서 효과적인 아동 보호를 위해 유럽 국가들을 지도

- 유럽 평의회의 경우 유럽연합과 공동으로 진행한 ‘프로세이프스포츠’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로 2017년 ‘대화시작(Start to talk)’ 캠페인을 시작

4. 해외 선진제도 도입에 관한 제언

□ 거버넌스적 측면

○ 국내 스포츠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스포츠인권을 관할하는 미국 세이프스포츠센터와 같은 일원적 관리체계 및 정책/규정 필요

□ 제도적 측면

○ 미국의 스포츠 의료 면허 명확성법 2018 도입을 통해 의료 인력 전문화가 필요
○ 미국의 형법 제109B장 아동성범죄자 신상 및 범죄 등록의무를 강화
○ 인권보호에 관한 미시적인 정책 제안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제시

□ 인식적 측면

○ 프랑스의 「스포츠법」과 「스포츠법전」의 체계와 내용을 참조하여 스포츠 선수의 기본권을 보장
○ 영국의 「아동과 학부모 중심의 가이드라인」 제작 사례를 참고하여 부모 및 학교 차원에서의 폭력에 대한 교육 방향 설계
○ 캐나다의 「스포츠분야의 다문화 포옹정책」을 참고하여 스포츠에 대한 가치 기반으로 접근
○ 일본의 「체계적인 스포츠 강국전략」을 참고하여 공정하게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
○ 독일의 「학생들의 기본권에 강화 정책도입」을 참고하여 학칙제정이나 개정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학생 기본권을 보장

| Abstract |

Since the late 2000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as made various efforts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sports athletes, contributing to the improvement of athletes' human rights in sport.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s made great endeavors to protect human rights of athletes through introducing various institutions and imposing relevant organizations such as the Sports Corruption Reporting Center and the Center for Sports Ethics. However, athlete's human right violations in Korea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in various fields of sport. This study, therefore, aims to draw policy-level sugges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law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al governance for the protection of athlete's human rights in advanced countries to promote the human rights of domestic athletes in Korea.

To this end, this study was conducted in the following order. First of all, the current status of human rights of athletes in Korea, and the national laws and the organization-level guidelines related to athlete's human rights were analyzed. Secondl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untry-specific governance, laws and institutions of sports and athlete's human rights-related organizations in major foreign countries (USA, UK, Canada, Japan, Australia, Germany, and France). This investigation has been conducted focusing on the each country's status of violence, sexual harassment, and the violation of right to learn in the field of sport. In addition, this study looked at the cases of institutional and perceptual changes in human rights of athletes through the human right infringement scandals in sport in the countries to be studied.

Based on these analyses, this study derives policy-level suggestions

on the governance, institutions, and perception for the development of athlete's human rights in Korea. On the side of governance, an unified governing body which resolves and prevents all human rights issues of athletes in sport as does the U.S. Center for SafeSports.

On the institutional side, it is recommended to introduce a law to specialize in medical personnel as is the U.S. Sports Medical License Clearness Act 2018, and to enhance a system for the criminal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obligations as is the U.S. Criminal Act 109B.

For enhancing the perception and awareness of athlete's human rights, first, the basic rights of a sports athlete should be guaranteed by referring to the framework and contents of France's Sports Law. Second, the directions of education for schools, coaches and parents to prevent and increase the awareness about human rights abuse should be designed and introduced as does the UK's Children and Parents-oriented Guidelines. Third, the government needs to approach its policies for sports based on the value of sports by referring to Canada's Multiculturalism Policy in Sports. Fourth, the government needs to overhaul the environment for fair sports activities by referring to Japan's Systematic Sports Powerhouse Strategy. Finally, the government needs to guarantee the right of student athletes to learn and ensure their right to participate in the establishment or amendment of school regulations by referring to the case of Germany's introduction of the Policy to Strengthen Students' Basic Rights.

목 차

Ⅰ. 서론 ····· 1

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4

Ⅱ. 국내 스포츠분야 인권관련 주요동향 및 연구 ····· 16

2.1 부처별 주요 연구 현황 ····· 22

2.2 국내 스포츠 관련 법·제도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42

2.3 국내 스포츠 관련 정부 및 비정부 기구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58

2.4 스포츠 관련 가이드라인 및 지침 등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74

2.5 스포츠관련 국내 인식 ····· 96

Ⅲ. 스포츠분야 해외 선진제도 실태조사 ····· 98

3.1 미국 ····· 98

3.2 영국 ····· 129

3.3 캐나다 ····· 158

3.4 일본 ····· 179

3.5 호주 ····· 200

3.6 국제기구/단체 ····· 216

3.7 그 외 국가 ····· 227

Ⅳ. 해외 선진제도 도입에 관한 제언 ····· 251

4.1 거버넌스 측면 ····· 251

4.2 제도적 측면 ····· 253

4.3 인식적 측면 ····· 255

참고문헌 ····· 264

부록 ····· 266

<표 목차>

표 1. 언어폭력/신체폭력/성폭력 유경험자 규모 ·····1
표 2.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 선수 인권 관련 실태조사 자료(2005-2020) ·····4
표 3. 대한체육회 스포츠 선수 인권 관련 실태조사 자료(2005-2020) ·····5
표 4. 국내법상 스포츠 인권 보호의 근거가 되는 법률 ·····6
표 5. 스포츠 분야 폭력 관련 피해자 보호 및 사건처리와 관련한 법률 ·····8
표 6. 스포츠 분야 폭력 금지 관련 법률 ·····8
표 7. 스포츠 분야 성폭력 금지 관련 법률 ·····9
표 8. 체육 관련 법령 현황 ·····10
표 9. 스포츠 선수 인권 관련 정부산하기구 ·····11
표 10. 주요 법률 제 · 개정 연혁 ·····40
표 11. 클린스포츠센터 접수 처리 내역(2018) ·····60
표 12.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주요 추진내용 ·····61
표 13. 스포츠인권 교육 현황 ·····61
표 14. 선수인권 침해 신고 · 상담 접수 현황 (단위: 건) ·····62
표 15. 스포츠인권 인지도 (단위:%) ·····63
표 16. 스포츠인권센터 신고대비 징계 현황 (단위: 건) ·····63
표 17. 폭력 실태조사 결과(2018) (단위: %) ·····64
표 18. 운동부 일반선수 폭력피해 결과(2018) (단위: %) ·····65
표 19. 운동부 일반선수 성폭력피해 결과(2018) (단위: %) ·····66
표 20. 정부의 체육정책방향 변화 ·····67
표 21. 중앙정부의 체육조직 변화 ·····68
표 22.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 변경 ·····93

표 23. 국가별 사례 개수 (단위: 건) ·····98
표 24. 아동의 구체적 권리와 클럽 규칙 ·····137

<그림 목차>

그림 1. 스포츠 분야 인권문제의 법리적 접근 ·····6
그림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5
그림 3. 2020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 ·····39
그림 4. 한국의 스포츠 관련 기관 조직도 ·····59
그림 5.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조직 ·····68
그림 6.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구조 ·····70
그림 7. 미국의 스포츠 관련 기관 조직도 ·····100
그림 8. 영국의 스포츠 관련 기관 조직도 ·····130
그림 9. 캐나다의 스포츠 관련 기관 조직도 ·····160
그림 10. 일본의 스포츠 관련 기관 조직도 ·····180
그림 11. 호주의 스포츠 관련 기관 조직도 ·····203
그림 12. 독일의 스포츠 관련 기관 조직도 ·····229
그림 13. 프랑스의 스포츠 관련 기관 조직도 ·····238

I. 서론

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000년대 후반부터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분야 종사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여 스포츠 인권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2007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대한체육회장에게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권고하고 있다. 2019년 11월에는 초중고 학생선수 63,211명의 인권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스포츠 분야 (성)폭력 판례분석 결과도 함께 공개한 바 있다.

표 3. 언어폭력/신체폭력/성폭력 유경험자 규모

학교급별	언어폭력(%)	신체폭력(%)	성폭력(%)	응답자수
초	3,423(19.0%)	2,320(12.9%)	438(2.4%)	18,007
중	3,039(13.8%)	3,288(15.0%)	1,071(4.9%)	21,852
고	2,573(14.6%)	2,832(16.1%)	703(3.8%)	17,598
계	9,035(15.7%)	8,440(14.7%)	2,212(3.8%)	57,557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19)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비리신고센터(2014년부터 운영), 대한체육회는 스포츠인권센터(2005년부터 운영) 등을 통해 스포츠분야 종사자의 인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빙상계 인권침해 이슈(일명 ‘미투’ 사건)”를 비롯해 스포츠계에서 지속적으로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체계적인 제도나 정책일지라도 현장에서 실제 운영되지 않는 대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선수가 능동적으로 스포츠에 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도자는 폭력과 무력으로 선수를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훈련하는 관계로 재설정해야 한다. 스포츠 인권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에 대해 선수와 지도자, 서로 다른 두 집단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존재한다.

우리나라 학교운동부의 경우, 학업과 운동의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학생선수의 학교생활은 수업과 운동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교사, 지도자, 그리고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학교에서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생선수에게 학교에서의 부적응은 가장 위험한 경험이 아닐 수 없다. 학생선수들은 일반학생과는 다른 대우를 받으며 학생보다는 운동선수로서의 역할이 우선시 되고 있다. 그 결과 학교 체제 속에서 학생선수들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운동에 치중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선수들은 한 인간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성장기에 있음에도 전인적 성장은 간과한 채 운동수행능력을 최우선의 과제로 강요당하고 있다(김주호, 2008). 우리나라 학원 엘리트체육은 승리지상주의와 연결되면서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승리지상주의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 학교, 지역교육청 차원까지 확장되면서 교육의 장이어야 할 학교에서 교육의 기본목적을 무시한 채 파행적으로 학교운동부를 운영해왔으며, 이는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박탈, 폭력 및 구타, 인권문제 등의 파행적 문제를 발생시켜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었다(이혁기, 2010). 우리나라 학원 엘리트체육의 구조적 문제점은 체육특기자 제도, 경기출전으로 인한 학습능력 저하, 학생선수들의 합숙생활, 비교육적인 학교운동부 문화 등을 들 수 있다.

체육특기자 제도체육특기자 제도는 1972년 「체육진흥계획」의 일환으로 ‘학교체육 강화 방안’을 공포한 것이 시초가 되어, 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법령화 되었다. 체육특기자제도는 운동선수로서 일정한 기량을 지닌 학생이 학업성적에 구애받지 않고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특기를 계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우수 학생선수 육성 제도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09). 즉, 학생선수가 학업에 얽매이지 않고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중등학교 학사관리 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 및 진학 이후의 성적관리 등을 국가가 나서서 관리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체육특기자 제도를 맹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들이 생기면서 문제가 야기되었다. 기본적으로는 체육특기생 배출을 위해 정규교과시간을 훈련으로 전용하여 학생선수의 학습부진 뿐만 아니라, 합숙 등의 단체 생활과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훈련과정에서 폭력, 성폭행 등과 같은 반인권적인 행위가 발생하기도 하여 폐지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조남용, 이영국, 2013).

체육특기자 제도는 체육특기생인 학생선수를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하는‘학생’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학업성취도가 아닌 경기성적만으로 학교 진학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즉, 체육특기자 제도는 학생선수가 학업에 정진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조성하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학생선수의 학습부진의 원인이 되었다.

대회출전으로 인한 학습능력 저하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 2월 ‘학교체육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학생선수의 교육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정책을 내세웠다. 교육법에서는 학교운동부라 하더라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학교현장에서는 운동부의 학습권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 강신욱(2003)과 곽은창· 김용규 · 주병하(2011)에 따르면 학교운동부 운영에 있어 학생선수들은 정규교과의 이수시간이 규정보다 적으며 하루에 5-6시간 이상 운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대회준비 기간에는 수업참여율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어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합 후에도 특별한 보충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더욱 심각하다고 하였다. 수업결손은 학생선수들의 학습능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여겨져 왔으며, 학기 중 평일에 개최되는 각종 대회 및 대교시합은 학생선수의 수업결손을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이다(권순용, 나영일, 2009). 교육인적자원부(2006)의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16개 시·도교육청이 개최하는 시도교육감기대회가 주로 평일(70.0%)에 개최되었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선수들의 학업결손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시합직전 40.6%가 오전수업에만 참가하였으며, 정규수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학생선수도 10.1%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스포츠 분야 인권과 관련해서 해외 선진국들의 법・제도・정책・사례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해외에서 실시되었던 다양한 시도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실제 적용가능 여부를 타진하고, 구현 가능한 모델을 제시해 볼 수 있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보고서는 크게 5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첫째, 국내 스포츠 분야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나타난 선수 인권실태 분석이다. 주요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조사(2006년~2019년)에 대한 분석 및 평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부터 선수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 스포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문제(폭력, 성폭력, 학습권 침해 등)의 공론화 및 선수 인권 보호 정책을 권고하고 있다. 국가인원위원회가 진행한 체육 스포츠계 선수와 관련 분야 종사자 대상 인권실태조사는 2020년 현재 총 18건에 이른다.

표 4.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 선수 인권 관련 실태조사 자료(2005-2020)

번호	연도	보고서명	조사기관
1	2006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	2008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중ㆍ고교 학생선수의 학습권, 폭력, 성폭력 실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3	2009	중도탈락 학생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4	2010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대학교 학생선수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5	2011	문화ㆍ예술ㆍ스포츠 분야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노동환경건강연구소
6	2019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7	2019	체육관련 단체ㆍ기관 종사자 성폭력 등 실태조사	한국정책리서치
8	2019	학교 운동부 지도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
9	2019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케이씨에프파트너스
10	2019	실업팀 선수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특별조사단
11	2019	초ㆍ중ㆍ고 학생선수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특별조사단
12	2019	체육경기대회 모니터링(전국체육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특별조사단
13	2019	합숙소 앞에 멈춘 인권-학생선수 기숙사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특별조사단
14	2019	대학교 학생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특별조사단

15	2019	빙상종목 인권 특별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특별조사단
16	2019	유도종목 인권 특별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특별조사단
17	2020	여성 전문체육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행복한 일 연구소
18	2020	스포츠인권 현장조사(10개종목)	국가인권위 스포츠특별조사단

대한체육회 주관 「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내용도 있다. 대한체육회가 2005년 선수폭력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2010년부터 2년마다 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2020년 현재 총 7건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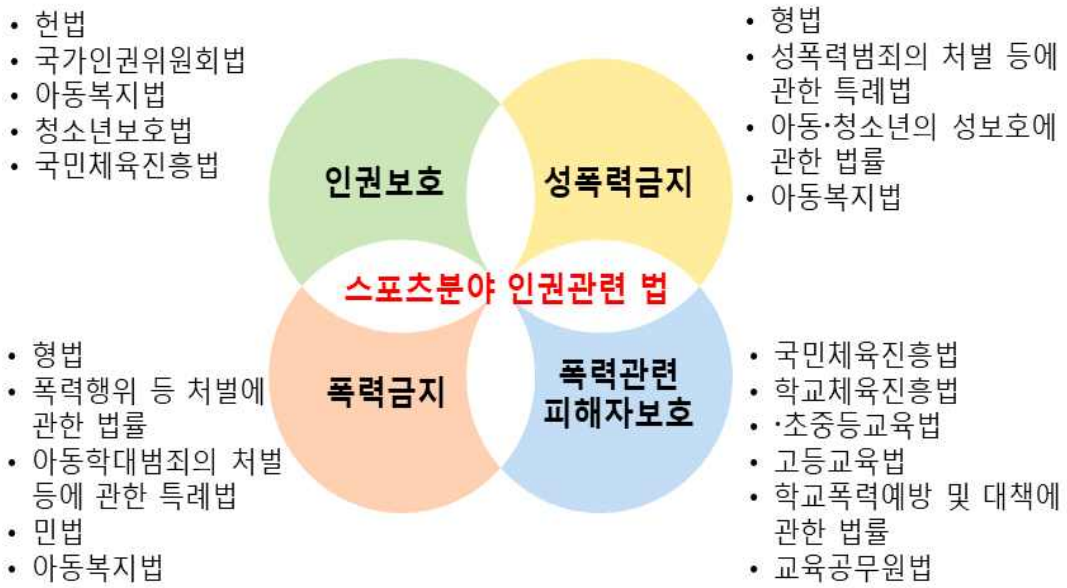
표 5. 대한체육회 스포츠 선수 인권 관련 실태조사 자료(2005-2020)

번호	연도	보고서명	조사기관
1	2005	선수폭력 실태조사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2	2010	선수폭력 및 성폭력 실태조사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3	2012	선수 (성)폭력 실태조사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4	2014	선수 (성)폭력 실태조사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5	2016	국가대표 폭력ㆍ성폭력 전수조사	대한체육회
6	2016	스포츠 폭력ㆍ성폭력 실태조사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7	2018	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인권 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스포츠 선수 분류별 인권상황 및 침해양상, 문제점 등을 분석한다.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학생선수 전체 63,211명(2019.05.01. 기준)을 대상으로 체육 목적별 선수 분류에 따라 언어폭력, 신체폭력, 성폭력ㆍ성희롱, 생활 통제, 기타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체육 목적별 분류: 학교체육(학생운동선수), 전문체육(직장운동선수), 장애인체육(장애인운동선수), 체육 단체 종사자 등이 있다. 등록선수의 70%가 학생선수임을 고려하여 학교운동부 및 합숙소 등 인권실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또한, 취약한 분야에 있는 장애인체육선수와 학생선수, 합숙소 등 실태조사를 통한 인권침해 현황을 파악한다.

둘째, 국내법상 스포츠 분야 인권문제에 관한 법리적 접근은 국민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 폭력 관련 피해자 보호 및 사건처리와 관련한 법률, 폭력 및 성폭력 금지에 관한 법률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스포츠 관련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한다.

그림 2. 스포츠 분야 인권문제의 법리적 접근



국내법상 스포츠 인권 보호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해 분석을 한다. 국민의 인권 보호에 관한 현행법에는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국민체육진흥법」 등이 있다.

표 6. 국내법상 스포츠 인권 보호의 근거가 되는 법률

현행법령	내용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인권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함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통과(법률 제16931호, 2020. 8. 일부개정, 2021. 2월 시행예정)

조문별 내용		관련 안건
제1조	○ "국위선양"이라는 단어 삭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2101617) (이병훈의원 대표발의, 2101566) (박정의원 대표발의, 2101596)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2101644) (이용의원 대표발의, 2101800) (이용호의원 대표발의, 2101939) (유정주의원 대표발의, 2102043) (홍정민의원 대표발의,2102057)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2102148/2101309) (김승수의원 대표발의,2102247) (배현진의원 대표발의, 2102253)
제11조의5	○ 가해 체육지도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18131) (이동섭의원 대표발의, 18318) (권미혁의원 대표발의, 18392)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18718)
제12조	○ 가해 체육지도자에 대한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요건 강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18131)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18152) (이동섭의원 대표발의, 18318)
	○ 성폭력 등 폭력을 행한 지도자의 자격정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2101617) (이병훈의원 대표발의, 2101566) (박정의원 대표발의, 2101596)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2101644) (이용의원 대표발의, 2101800) (이용호의원 대표발의, 2101939) (유정주의원 대표발의, 2102043) (홍정민의원 대표발의,2102057)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2102148/2101309) (김승수의원 대표발의,2102247) (배현진의원 대표발의, 2102253)
제18조의3	○ 체육인 권리 보호를 위한 스포츠윤리센터 신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18157) (이동섭의원 대표발의, 18318) (조훈현의원 대표발의, 3709) (이동섭의원 대표발의, 0383)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18152) (윤종필의원 대표발의, 18831)
제18조의6, 제11조③	○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및 실태조사의 실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18131)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18152) (이동섭의원 대표발의, 18318)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18718) (조훈현의원 대표발의, 3709)
제18조의8	○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대표발의, 19318)
제22조①, 제18조의7	○ 기금의 지원근거 명시, 장려금 지급중지 및 환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대표발의, 18318) (권미혁의원 대표발의, 18392) (김광수의원 대표발의, 18251)
제45조의3	○ 자격증 발급 및 장려금 환수 시 범죄경력조회 근거 마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대표발의, 19570)

스포츠 분야 폭력 관련 피해자 보호 및 사건처리와 관련한 법률에는 「국민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등이 있다.

표 7. 스포츠 분야 폭력 관련 피해자 보호 및 사건처리와 관련한 법률

현행법령	내용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2(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 제15조의3(신고 및 상담 사업의 위탁)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제13조의2(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의 운영), 제8조(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8조의2(재심청구), 제18조의3(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3(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제31조의4(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퇴학 조처된 자의 재심청구 등)
고등교육법	제13조(학생의 징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7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기능), 제8조(대책위원회의 구성), 제11조의2(학교폭력조사·상담 등),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7조의2(재심청구),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교육공무원법	제5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제51조(징계의결의 요구),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스포츠 분야 폭력 금지 관련 법률에는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민법」 등이 있다.

표 8. 스포츠 분야 폭력 금지 관련 법률

현행법령	내용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9조(상해치사),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266조(과실치상), 제267조(과실치사),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제300조(미수범), 제311조(모욕), 제350조(공갈), 제324조(강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제3조(집단적 폭행 등), 제6조(미수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정의),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 배상), 제756조(감독자의 책임),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아동복지법	제29조(금지행위)

스포츠 분야 성폭력 금지 관련 법률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이 있다. 국내 성범죄 처벌규정은 객체, 행위 태양, 수단에 따라 각각 처벌규정을 달리하며 형량에도 차이를 두고 있다.

표 9. 스포츠 분야 폭력 금지 관련 법률

현행법령	내용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3조(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5조(미수범),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23조(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제17조(금지행위)

현행 체육관례 법령 중 인권 관련 조항 조사·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1962년에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등 체육 관련 법령의 조사·분석을 통하여 각 법령의 제정 목적 및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적용 대상별 인권 관

련 조항의 조사·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시사점을 도출한다.

표 10. 체육 관련 법령 현황

구분	법률명	제정일
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1962. 09. 17.
	스포츠산업진흥법	2007. 04. 6.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2007. 12. 21.
	전통무예진흥법	2008. 03. 28.
	씨름진흥법	2012. 01. 17.
	학교체육진흥법	2012. 01. 17.
	생활체육진흥법	2015. 03. 27.
	바둑진흥법	2018. 04.17.
시설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989. 03. 31.
운영법	경륜경정법	1991. 12. 31.
	국제경기대회지원법	2012. 05. 23.

더불어, 현재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 「스포츠기본법」에 대한 필요성을 고찰한다. 헌법에 근거하여 스포츠기본법에 대한 제정 논의 중(그동안 「스포츠기본법」 제정에 대한 수요가 이어져 왔고, 스포츠혁신위원회의 제4차 권고문에서도 모든 사람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한 「스포츠기본법」 제정 권고)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제11조(법 앞의 평등/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제31조(교육받을 권리), 제32조(근로의 권리),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6조(보건에 관한 권리 등)가 있다. 스포츠 인권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스포츠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 시책(성차별, 성폭력 방지 및 조치 등)이 포함 예정이다. 성차별, 성폭력 방지 및 조치에 관해 별도의 장으로 편제하여 상담에서 사건처리, 재발 방지 조치까지의 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은 「스포츠기본법 제정 및 체육관계법령 정비방안 연구」에 기초하고 있다(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20)

셋째, 스포츠 관련 정부 및 비정부 기구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수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비롯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도체육회 등 스포츠 분야의 인권 관련 기구들의 분석 및 평가를 진행한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스포츠혁신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향후 스포츠윤리센

터의 설립을 발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을 구성,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조사와 피해구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스포츠 인권센터를 비롯하여 클린스포츠센터, 스포츠인권교육소위원회, 선수촌 인권상담실 등을 운영하며 선수들의 인권침해 발생 시 민원처리, 스포츠 인권교육, 비위 근절대책 마련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성폭력 가해자 영구제명 및 국내·외 취업 차단,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조적인 개선방안 확충, 성폭력 조사 및 교육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선수육성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계획을 발표하였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체육인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은퇴장애인 선수를 비롯하여 장애인선수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표 11. 스포츠 선수 인권 관련 정부산하기구

관련부처/기관	운영주체	업무내용	설립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	- (성)폭력 등 체육분야 비리 근절 대책으로 체육분야 구조 혁신을 위해 설립되어 민간위원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 - 정부는 위원회의 행정 등 지원업무만 참여	2019
	스포츠윤리센터	-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인으로「국민체육진흥법」개정을 통해 설립 근거(제18조의3) 마련 - 범정부 차원의 체육계 비리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스포츠분야의 비리조사와 조정, 중재 등을 총괄하는 전담 독립기구	2020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 국내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성폭력 등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피해 구제, 국가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출범 - 폭력·성폭력 등 피해상담, 신고와 진정 접수, 조사, 피해 구제, 개인, 선수단, 학교, 협회 등 전방위 실태조사, 정책, 법령, 제도의 개선과 이행 점검	2019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 스포츠인권교육 시행, 상담 및 신고 시스템 운영, 인권보호 가이던스,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선수지도 매뉴얼 자료집 제작 등 선수들의 인권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실시	2005
	클린스포츠센터*	- 스포츠 비리 상담·신고기구로 접수된 민원을 조사 후 직접 처리 혹은 관계 체육단체 이첩을 통해 문제 해결 - 2020년 스포츠윤리센터로 통합	2017

	스포츠인권 교육소위원회	- 인권계, 체육계, 법조계, 언론계, 교육계 등 (성)폭력 및 인권 분야 7인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체육계 (성)폭력 등 비위근절 대책을 위한 기본계획 마련 및 스포츠인권교육 운영 개선방안 논의 등을 진행	2019
	진천선수촌 스포츠인권 상담실	-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의 선수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선수촌 내 스포츠인권상담실 운영	2019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	- 은퇴한 장애인 체육 선수들을 위한 지원을 포함하여 모든 장애인 선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 진로상담 및 취업 지원업무 등 총괄적 서비스 제공	2018

넷째, 스포츠 관련 가이드라인 및 지침 등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수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체육회가 제정/발표한 스포츠 인권 관련 단체규정/가이드라인과 지침을 중심으로 내용 분석 및 평가 역시 진행된다. 스포츠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 짐에 따라 가이드라인 및 지침 등이 제정되기 시작했다.

2009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참여형 스포츠 인권정책 수립을 시작으로 포괄적 개념의 스포츠 인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지침이 제정되었다.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더 즐거운 스포츠 활동을 위한 인권 가이드」, 2015년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선수지도 매뉴얼」을 비롯 2019년 현재 다양한 가이드라인 및 지침이 수립·발표되고 있다.

최근 들어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스포츠 인권 관련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활발히 제정하고 스포츠 관련 기관들에게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 관련 정부 부처와 대한체육회, 시도교육감 등에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을 채택·이행할 것과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맞는 세부 실행 매뉴얼 제작을 요청하였다. 스포츠 인권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지침은 인권침해 예방정책, 예방교육, 인권을 위한 행동규범 등을 다루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진행된다.

다섯째, 해외 스포츠 분야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나타난 선수 인권실태가 분석된다. 조사 대상 국가는 거시적으로 유럽, 미주, 오세아니아 및 아시아로 구분된다. 유럽지역에서는 EU, 영국, 독일, 프랑스, 미주지역에서는 미국, 캐나다, 오세아니아 및 아시아에서는 호주, 일본을 포함한다.

<주요국의 인권정책 및 프로그램>

1. 영국의 스포츠 인권정책 및 프로그램

- 2001년 아동학대 및 성폭력 전담기구인 CPSU(Child Protection in Sport Unit, 스포츠 분야 아동보호기구) 설립, CPSU는 24시간 온라인 및 무료전화(Helpline)를 통해 긴급 상담지원하며 아동·청소년, 지도자, 학부모, 스포츠 단체 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 및 홍보 서비스 제공, CPSU를 중심으로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세부 가이드라인 수립
- 2002년 스포츠에 참여하는 아동, 청소년을 안전하게 길잡이하고 보호하기 위한 표준(Standard for Safeguarding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Sport)을 공식 채택
- 2004년 UK 스포츠(UK Sports)와 스포츠 잉글랜드(Sports England)등 스포츠 분야 평등 증진 정책을 수립·실행, UK 스포츠 성 평등 계획, 장애 평등 계획, 인종 평등 계획 및 3년 단위의 행동계획을 수립·운영, Youth Trust와 여성스포츠회는 공동으로 '여자 청소년 스포츠 참여 프로그램(Girls Active Programme)'을 운영
- 영국의 다양한 스포츠 인권 보호 가이드라인들 Safesport away, Safe Sports Events, Managing Challenging Behavior Guidelines, Sexually Harmful Behavior by Young People in Sport, Safe in Sport – Child protection leaflet for parents, Child Protection Policy and Implementation Procedures, Protecting children: a guide for sports people, Protecting disabled children and adults in sport, Code of ethics and conduct for sports coaches, Are your young people safe? Is your coaching sound?, Guidelines for Governing Bodies and Local Authorities

2. 미국 스포츠 인권정책

- 2018년 2월 미국 의회는 성적 학대로부터 젊은 피해자 보호 및 안전한 스포츠 기구 설립에 관한 법(Protecting Young Victims From Sexual Abuse and Safe Sport Authorization Act of 2017)을 제정
- 이 법률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독립적 비영리기구로 미국올림픽위원회(USOC)로부터 분리된 스포츠 인권 기구 'Safe Sports(US Center for Safe Sport, safesport.org)'가 설립

3. 캐나다 스포츠 인권정책

- 스포츠 분쟁조정 센터(SDRCC: Sport Dispute Resolution Center for Canada)가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 운영
- 정부가 기금을 제공하고 「스포츠에서 성적 괴롭힘, 학대,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전국적 수준의 행동강령」 모델 개발
- 연방-주-지방정부 간 협력을 통해 여성과 소녀들이 평등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 참여할 것을 보장하는 행동계획 수립, 실행

4. 스웨덴 스포츠 인권 정책

- 자발적 스포츠클럽의 조직 및 운영에 광범위한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민주적 시민사회의 기초 제공
- 난민 신청자들(특히 여성과 소녀들)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자원 투여 확대

5. 노르웨이 스포츠 인권정책

- 2000년 스포츠 내 여성 엘리트 선수 중 28%가 성적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연구가 발표된 뒤 「스포츠에서 성적 괴롭힘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to prevent sexual harassment and abuse in sports)」 수립
- 2010년 이 지침이 개정되었고, 2017년에는 「성적 괴롭힘 및 성폭력 사건 대응 가이드라인(Guide for dealing with cases regarding sexual harassment and abuse)」 수립

6. 핀란드 스포츠 인권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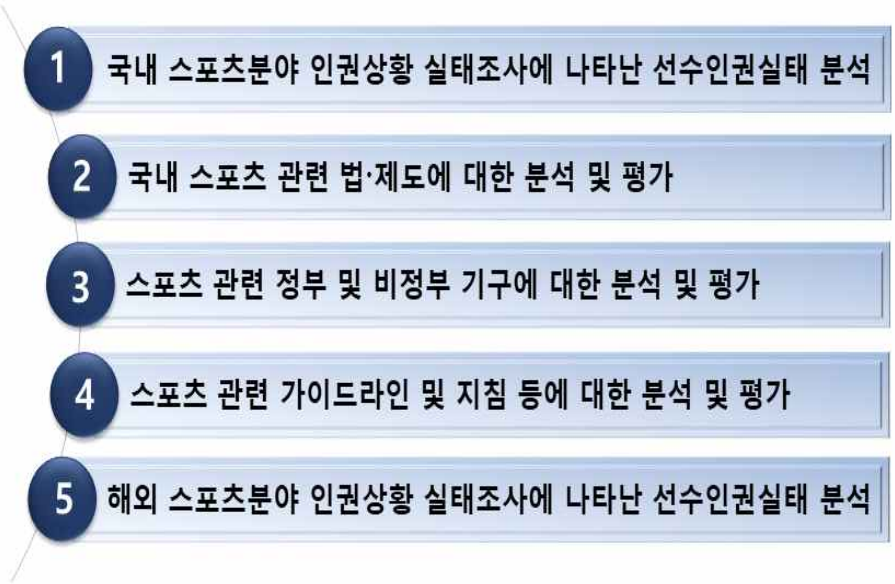
- 2016-2019년 성평등 행동계획 가운데에는 스포츠 관련 프로젝트가 다수 발견되며, 2011년과 2018년에는 「핀란드의 스포츠와 평등(Sport and Equality in Finland)」 보고서를 발간해 스포츠 영역의 성평등 실태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정책 개선방안 제시
- 2015년 「스포츠 및 신체활동 증진법(Act on Promotion of Sports and Physical Activities)」 제정

개별 국가별 스포츠 정책담당 정부 부처, 국가기관, 스포츠 관련 법률상 단체 및 정부 위탁기관 등 비정부 기구, 연합단체, 종목단체, 스포츠 단체 소속

기관 등의 스포츠 단체에 관한 문헌 수집연구 수행의 수월성과 제도와 법제도의 특이성을 고려하여 2010년대 이후 스포츠 분야의 법제, 정책, 이슈, 논쟁 등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한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을 분석 및 평가하고, 국가별 이슈가 되는 사례, 방향, 대책, 효과를 고찰한다. 특히, 학생선수 운영정책에 있어 학교 급별 일반 학생들의 체육활동 및 학생선수(특기생)들의 대회참여, 훈련방법 및 시간, 학습권 보장, 학교생활 지원, 진로지원 등 학교체육에 관한 정책 및 제도를 분석 · 평가하고, 해외 선진사례를 소개한다.

그림 3. 연구의 목적 및 내용



Ⅱ. 국내 스포츠분야 인권관련 주요동향 및 연구

국내 스포츠분야 주요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된 권고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포츠권고문은 7차에 걸쳐서 배포되었으며, 각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차 스포츠 권고문(2019.5.17.)에서는 이 조직을 벤치마킹해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을 수립, 실행하며, 스포츠 인권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인권교육 및 홍보 등 기존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들의 운영실태 및 한계를 전면 재검토해 혁신적으로 재구성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과 폭력 없이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적 정책 프로그램을 수립·실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제2차 권고문(2019.5.31.)에서는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선수육성시스템 혁신 및 일반학생의 스포츠 참여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기에 구축된 엘리트 선수육성시스템의 폐단과 이를 뒷받침해 온 학교스포츠의 비정상성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특히 승리지상주의적 국가 스포츠 패러다임으로 ‘공부하지 않는 학생선수’와 ‘운동하지 않는 일반학생’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체육특기자제도, 학교운동부 시스템, 전국소년체육대회 등을 개혁하고, 모든 학생들에 대한 ‘스포츠리터러시(sport literacy)’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학생선수의 정규수업 참여 보장을 위해 학기 중 주중 대회 참가 금지, 최저학력 미달 학생의 대회 참가 제한 등을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경기실적 중심의 진학시스템을 경기력, 내신 성적, 출결, 면접 등이 반영된 종합적 선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운동부 운영에 나타난 폭력, 성폭력, 장시간 훈련, 합숙소 운영 등의 반인권적 행태를 근절하고 인권친화적 학교운동부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지침을 마련하고 준수하는 방안 역시 제시되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역할을 학생선수의 운동기능 지도, 인성교육, 스포츠문화 전수자로 재설정하고,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고용불안 문제 개선을 위해 예산 지원 방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며, 공동체를 학습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학교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의 종목별 통합선수를 등록하고 통합대회를 추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전국스포츠대회에서 과도한 승리지상주의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 되지 않도록 대회의 성격과 형식을 전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중고등부는 학교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이 참여하는 통합 학생스포츠 축전으로 확대·개편하고 초등부는 권역별 학생스포츠축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제3차 권고문(2019.6.21.)에서는 스포츠 인권 증진 및 모든 사람의 스포츠·신체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권고로서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s for All)”라는 개념이 제안되었다. 한국의 새로운 스포츠 패러다임은 엘리트스포츠, 학교스포츠, 생활스포츠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공존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의 스포츠 참여 및 향유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구축되는 것이 필요하다. 스포츠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물론 성별, 장애, 인종, 연령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한 스포츠를 실현하기 위한 체계적 인권 증진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함이 강조되었다.

스포츠 인권 증진과 모든 사람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 및 행동계획이 수립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스포츠 분야 성차별, 장애차별, 인종차별, 연령차별 등을 해소하고,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이주민 등 모든 사람의 스포츠 향유권을 실현하기 위한 체계적 전략 및 행동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

스포츠 영역에서의 성평등 실태에 관한 정례적 연구를 통해 스포츠 분야 성평등 증진 및 성인지적 스포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여학생 스포츠 교육 및 신체활동, 지역사회 스포츠클럽의 여성 참여 확대가 장려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장애학생의 체육수업 및 스포츠 활동 참여를 가로막는 요소들을 중점 개선하고, 장애인의 스포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장애인 스포츠 시설 및 프로그램이 개선·확대되어야 한다.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 정책의 수립 및 실행되어야 한다.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혁신적으로 재구성하고 효과적 이행방안을 마련, 체계적 스포츠 인권 실태연구 및 정책 대안 제시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스포츠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4차 권고문(2019.6.21.)에서는 4차 권고문(‘19.6.21.) : 모든 사람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한 「스포츠기본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체육 관련 대부분의 국내 법률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의 가치 및 스

포츠권의 개념을 제대로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스포츠를 국위선양의 도구로 간주하는 권위주의 시기 체육 관련 법제의 낡은 유산으로 오늘날 한국 사회와 부합하지 못한다[1].

또한, 기존 법령들은 엘리트체육, 학교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등으로 나누어 국민 계도, 국가 홍보 등 국가주의적 체육진흥 기조를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가치와 이념을 설정하거나 엘리트, 학교, 생활스포츠 사이에 균형적인 스포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고, 스포츠의 다양성, 자율성, 민주성을 실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체육 관련 법령 체계와 그 내용적 한계를 극복하고 현 단계 한국 사회의 발전 수준에 부합하는 국가 스포츠 패러다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법적 개혁의 핵심 과제로서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 「스포츠기본법」은 스포츠에 관한 모든 사람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 방향과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스포츠기본법」은 헌법 등에 근거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 유네스코, 유럽평의회 등의 스포츠 관련 헌장에서 정하는 스포츠권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스포츠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인 스포츠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음을 명기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체육관계 법령의 모법 형태로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체육관계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제5차 권고문(2019.7.12.)은 '일상에서 일생동안!' 스포츠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스포츠클럽 활성화가 주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스포츠클럽'은 학교스포츠 현장에 만연해 온 '공부하지 않는 학생선수'와 '운동하지 않는 일반학생'의 이분법을 허물 수 있는 제도적 단위이자 공간으로 앞으로 더욱 체계적인 지원 및 활성화 정책을 수립·실행할 필요가 있다. 2000년 이후 추진된 한국의 스포츠클럽 활성화 노력은 '관 주도'의 일시적 지원 사업으로 인식되면서 지역사회 현장에 온전히 뿌리내리지 못하였다. 따라서 스포츠클럽이 개방성, 자율성, 다양성의 원리를 기반으로 설립, 운영되는 동시에 지속가능성을 갖춘 새로운 '제도'이자 '문화'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스포츠 동호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체계적 관리·지원 시행하고 있다. 스포츠클럽 소속의

1)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

재능 있는 우수선수의 잠재력 개발을 지원하고 학교운동부와 스포츠클럽 간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엘리트스포츠 육성체계를 전환한 필요가 있다. 시·군·구 체육회는 체육지도자를 활용해 등록스포츠클럽 대상 순환코치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이 가능하다.

정부와 국회는 스포츠클럽의 설치와 육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스포츠클럽 육성법」을 제정이 건의되었다.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스포츠클럽 등록, 지도자 배치,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 및 사용 우대에 대한 규정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속적으로 스포츠클럽을 지원·육성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 「스포츠클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지역체육회와 스포츠클럽의 관계 및 역할 정립,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지자체의 스포츠클럽 출연 근거 규정, 공공체육시설 이용 지원 및 감면, 시설 소유자 면책 규정 등을 마련한다. 스포츠클럽이 정부, 지자체, 교육청,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한다. 또한 스포츠클럽 행정지원시스템 구축, 스포츠클럽 정보·소통 시스템 구축, 스포츠클럽 회원과 지도자·심판 간 연결 시스템 구축 추진한다.

제6차 권고문(2019.8.22.)에서는 엘리트스포츠 시스템 개선 및 선수육성체계 선진화가 주로 논의 되었다. 과거 개발도상국 단계의 '국위선양'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국제 관계 등에 있어 세계 10위권 국가의 위상에 걸맞은 한국 스포츠의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 인구 변동에 따른 아동·청소년 수 감소, 운동선수 기피 현상 증가, 수준별 선수육성 체계의 미발전, 올림픽 및 국제스포츠 환경 변화 등도 영향을 받는다. 21세기 국내외 스포츠의 환경 변화와 스포츠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국가대표 지원체계와 엘리트 육성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진천선수촌의 인권 보장 및 지도자 처우개선, 과학적 지원시스템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진천선수촌 인권상담실 인력보강,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지도자의 활동기간 보장 및 보수체계 개선,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야 한다.

경기력향상연구연금 개편하여 2021년부터 일시금으로 전환하고, 기존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대상자는 현행대로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었다. 일시금으로의 완전 전환은 2029년부터 시행하며, 2021년부터 2028년까지는 연금과 일시금 비율 중 일시금 비율을 연차적으로 높여가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체육요원 편입 이후 복무관리를 엄격화 하고 현재 운영 중인 관계부처 TF에서 체육요원제도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특기활동과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부정이 발생할 경우 병역법 상 경고 및 복무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예외 없이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다.

대한체육회는 엘리트선수와 동호인선수를 분리·등록하도록 한 경기인등록제도를 회원등록제도로 통합한다. 회원종목단체는 종목별 수준대회, 오픈대회를 개최하고, 대한체육회는 전국체전을 대학부와 일반부로 운영하되 일정 수준 이상의 동호인 선수가 참가할 수 있도록 대회운영을 확대 개편한다. 국가대표 하위육성체계를 후보-유망주-꿈나무의 3단계 체제로 개편하고 이들의 진천선수촌을 허용한다.

제7차 권고문(2019.8.22.)에서는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 개편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대한올림픽위원회(KOC: Korean Olympic Committee)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헌장에 따른 독립성과 자율성에 기반하여 국제 스포츠무대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대한체육회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s for All)’ 정책에 기반하여 스포츠복지 사회의 실현과 이를 통한 선진적인 엘리트스포츠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연간 4천억 원의 정부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해온 중대한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 및 부조리 등에 대하여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국민생활체육회와 통합하면서 생활스포츠 기반의 엘리트스포츠 육성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나 올림픽과 엘리트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생활스포츠에 대한 관심 부족 및 학교스포츠와의 연계 부재 등 한계를 보이고 있다.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를 2021년 상반기에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정부와 국회는 양 기구의 원활한 분리 절차 및 합리적 역할 재조정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의 관련 조항을 조속히 개정하고, 정부는 체육단체 분리 관련 법률 개정 이후 대표성, 독립성, 전문성이 보장된 체육단체구조개편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한다. 체육단체구조개편위원회의 주요 의제는 조직, 인력, 정관 개정, 자원 배분, 회원종목 단체와의 관계, 선수촌의 위상과 소속 등으로 한다. 대한올림픽위원회는 IOC 헌장을 준수하며, 올림픽 등 세계 스포츠대회 대표선수단 파견 및 대회 유치, 한국 스포츠의 세계 경쟁력 강화 및 스포츠를 통한 국제 사회의 평화와 우애 증진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생활(평생)스포츠와 엘리트스포츠 등 국내 스포츠 영역과 조직 등을 포괄하는 대표 단체로 국내법과 관련 제

도의 규율 하에 보편적 인권과 공공성의 가치에 기반하여 스포츠복지 사회 실현을 위한 각종 사업, 서비스, 프로그램 등 ‘모두를 위한 스포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성년자를 포함하는 학생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권리란 특별한 생활이익을 누리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부여된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따라서 학생도 인간으로서 권리의 주체이다. 그들의 권리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우선 인권, 기본권 그리고 기본적 인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2] 인권(human rights), 즉 인간의 권리라 함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는 자연적・천부적 권리를 말한다. 이것은 인간이 인간인 것에 기초하여 당연히 갖는 권리로, 인간성(人間性)이라는 것으로부터 직접적, 논리 필연적으로 출현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인권은모든 인간에게 귀속되는 권리로서 초국가적 자연법상의 권리를 의미한다. 인권을 논하는 경우, 기본권과 기본적 인권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기본권(fundamental rights)이라는 용어는 1848년 12월 27일 프랑크푸르트 독일 헌법제정의회에서 의결된 ‘독일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법률’에 나타났지만 실정 헌법에 규정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바이마르 헌법(독일・라이히의 헌법)이 처음이었다. 기본권이란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의해 정한 권리로서 그 성립의 근거가 직접 헌법에 있고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이다. 1848년까지 독일에서는 ‘기본권’보다도 ‘인권’이라는 말이 자주 쓰였으나, 다수파는 교조주의적으로 추상적 권리인 것으로서 도출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였다.[3] 그러나 독일은 세계 제2차 대전 패배 이후 미국・영국・프랑스 등에서 출현된 천부적 인권 개념을 헌법에 직접 수용하였고, 이로써 헌법의 기본권 개념이 변화되었다. 자연법 사상의 영향을 받아 1770년대에 제정된 미국연방헌법에서 구체화한 인권이라는 단어를 독일 기본권의법의 명제로서 받아들인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인권이라는 단어는 기본법 제1항의 인간의 존엄이란 단어와의 상호 관련하여 중요한 개념을 이루고 있다.[4]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

2) 이석배, 송요원, 이준순, 선진국(미국,영국,독일,일본)의 학생 인권 보장과 제한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2, 14면.
3) 상게보고서.
4) 상게보고서.

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37조 제1항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국가에 부담하게 하고 있으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를 경시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헌법제정자들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실정화 된 기본적 인권뿐만 아니라,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와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이 같은 인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들이 보고되고 있다. 한국의 스포츠분야에서 인권 관련된 연구를 살피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해본다.

2.1 부처별 주요 연구 현황

2.1.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 12월 체육관계법 선진화방안을 연구하였다. 당시체육법규의 민주성은 체육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주체가 체육인 및 국민 전체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 요구를 수렴하고 이를 체육정책결정에 반영함으로써 대응성을 제고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며 일부 특수 계층이 아닌 국민 전체를 위한 정책을 실행하도록 하는데 있다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견해와 이익들이 표출되고 취합되는 정책과정에서 일부 집단들의 견해와 이익만이 반영되거나 그러한 집단들이 더 큰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되며, 관계되는 모든 집단들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고르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스포츠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의 체육관계법을 개관하고, 스포츠 인권관련, 다문화, 스포츠 관련 기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분야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2.1.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에 관련된 분야에서 실태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

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대해 개관하여 본다.

1)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2006)

초등학교 운동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선수에 대한 폭력 행위를 신체적, 언어적, 성적(성추행) 폭력과 학습권 침해로 분류하여 이러한 폭력실태를 종목별, 지역별, 성별, 학년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초등학교 운동부와 관련된 정책,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며 이와 더불어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실현가능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초등학교 운동선수는 총 응답자 746명 중 554명(74.3%)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운동선수는 총 응답자 중 559명(74.9%)으로 나타났다. 이는 4명중 3명은 언어적 혹은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단체종목 총 응답자 515명 중 417명(81%)이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개인종목 총 응답자 128명 중 64명(50%)은 언어적 폭력을 경험했고 77명(60.2%)이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종목의 경우 총 응답자 103명 중 68명(66%)이 언어적 폭력을 경험했고 65명(63.1%)이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더 높은 비율이 언어적, 신체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는 111명(14.9%)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성적 폭력 피해는 2006.1.31 선고2005도6791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남학생도 포함시켰다.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알아본 인권상황 실태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합숙훈련이 법적으로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선발문제와 타 지역으로부터 온 어린선수들을 확보하기 위해 합숙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둘째, 전국소년체전 등의 전국대회입상을 위해서 수업참여를 강제로 막는 시·도가 있으며 특히 일부종목(테니스)등이 11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집중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이 면접을 통해 밝혀졌다. 셋째, 총체적인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전국소년체전을 폐지하고 클럽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전문가세미나를 통해 정책입안자들의 개인이익을 얻기 위한 체육정책

문제점, 선수모니터링의 어려움 그리고 강력하고 법적효력을 갖춘 정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2)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2011)

학교 운동부 학교 체육은 일반 학생을 담당하는 체육교사와 학생운동선수를 담당하는 운동부 코치로 이원화 되어 있다. 조사 대상인 학생운동선수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 운동부 코치는 6,500여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 중 대부분이 교육청 소속으로 특정학교에서 운동부를 담당하고 있는 전임코치이다. 전임코치의 경우 각 시도교육청의 <운영(임용) 지침>에 따라 학교 비정규직(시간강사) 및 9급 및 10급 기능직(일용잡급직) 1호봉 기준으로 임금을 받고 있다. 교육청의 예산 및 인원운영 계획 하에 고용이 이루어져 학교장과 1년 단위로만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호봉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계속 계약 시마다 1호봉을 임금 기준으로 적용 받고 있으며, 전문직종으로 인정되어 기간제법에서 제외되어 있어 현재 법적으로는 정규직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이다. 또한 전국(소년)체전 입상실적이 없을 때는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항상 불안정한 고용 관계에 놓여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대학교 선수를 중심으로(2019)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한 폭력은 언어폭력 1,514명(31%), 신체폭력 1,613명(33%), 성폭력 473명(9.6%)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운동선수의 31%(1,514명)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나 욕, 비난, 협박’을 들으면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주로 경기장(88%)과 숙소(46%)에서 선배선수(58%), 코치(50%), 감독(42%)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해자들이 감독, 코치, 선배로 내려오는 수직적인 위계 문화 속에서 주요 생활공간인 경기장과 숙소 등 어디에서도 피해를 회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교 운동선수 중 33%(1,613명)은 구타 등 신체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15.8%(255명)은 일주일에 1~2회 이상 상습적인 신체폭력을 당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0년 인권위가 조사한 ‘대학생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11.6%*보다 오히려 증가한 수치이다. 신체폭력 중 가장 빈번한 행위(중복)는 ‘머리박기, 엎드려뻗치기(26.2%, 1,291명)’였고, ‘손이나 발을 이용한 구타 행위(13%, 640명)’ 순으로 나타났다.

위 신체폭력의 가해자(중복)는 선배선수가 72%(1,154명), 코치 32%(516명), 감독 19%(302명) 순이었으며 남녀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다. 신체폭력의 장소는 기숙사(993건, 62%)가 가장 높게 나타나 함께 생활하는 선배선수나 지도자들로부터 편안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교 운동선수의 성폭력 피해 경험자는 9.6%(473명)로, 초중고 선수 피해 실태보다도 훨씬 높게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는 주로 ‘특정 신체부위의 크기나 몸매 등 성적 농담을 하는 행위(4%, 203명; 남 3%, 여 9.2%)’, ‘운동 중 불쾌할 정도의 불필요한 신체접촉 행위(2.5%, 123명; 남 2.2%, 여 3.3%)’ 순으로 나타나 여학생이 언어적인 성희롱의 위험이 더 큰 것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남자선수의 경우는 ‘누군가 자신의 실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게 하거나 마사지, 주무르기 등을 시키는 행위(4.3%, 176명)’와 같은 신체적 성폭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자선수들이 경험한 언어적 성희롱의 가해자는 주로 남자선배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자선배가 뒤를 이어 위계적 문화의 폐해를 고스란히 반영했으며, 남자선수들이 경험한 신체적 성희롱은 남자선배, 남자코치, 남자감독 순으로 나타나 동성 간 성희롱도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자선수들은 언어적 성희롱을 당하는 장소로 훈련장을 꼽았는데 이는 훈련장이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성적 대상화되는 피해를 입어 그 심각성이 더하다고 할 수 있다. 남학생의 경우 신체적 성희롱을 주로 숙소에서 경험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동성의 선배와 함께 거주하는 구조에서 위계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가슴이나 엉덩이, 성기 등을 강제로 만짐(1.2%)’, ‘신체부위를 몰래 혹은 강제로 촬영함(0.7%)’과 같은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강제추행이나 불법촬영에 해당하는 성폭력도 조사되었으며, 성폭행에 해당하는 ‘강제로 성행위(강간)를 당한 경우’도 2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소극적인 대처에 그치는 경우는 여전히 심각했

는데 여자선수의 경우 ‘아무런 대처를 못했다(34%, 42명)’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남자선수의 경우 ‘싫은 내색을 했다(40%, 137명)’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대학교 학생선수 중 84%(4,184명)가 현재 대학교 내 기숙사, 별도의 합숙소 등에서 합숙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합숙 생활은 효과적으로 학생선수를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선수들은 정규 운동시간이 종료되는 저녁시간이나 주말에도 자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출·외박이 필요한 경우에 일일이 보고, 확인,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항상 관리·감시·통제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개별 면접조사에 따르면 지도자들은 관리 목적으로 학년을 섞어 방을 배정하고 있었다. 또한 대학교 학생선수 중 29%(1,173명)가 ‘원하지 않는 각종 심부름, 빨래, 청소를 대신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선후배가 한 방에서 생활함에 따라 저학년 선수들은 고학년 선수(선배)들의 잔심부름, 방 청소, 빨래 등을 도맡아 하게 되고 이러한 위계문화를 1~2년간 감내하면 새로 들어오는 후배에게 대물림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개별 면접조사에 따르면, 외출·외박 제한뿐만 아니라 통금, 점호 등을 이유로 한 과도한 통제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대학교 학생선수 중 26%(1,088명)가 ‘부당하게 자유시간, 외출·외박을 제한받은 적이 있다’, 25%(1,005명)가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액세서리 착용, 패션 등에 제한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위와 같은 통제와 기타 자체 규칙들은 상호합의 된 규칙이 아니라 팀워크 증진이나 정신무장 등의 불합리한 이유로 지속되고 있었으며, ‘전통’으로 포장되어 대물림되고 있었다.

대학교 학생선수들 중 76%(3,579명)가 주말과 휴일에도 운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38%(1,839명)는 하루에 5시간 이상 운동을 한다고 응답했다(3시간 이상은 86%(4,215명)). 이 같은 운동시간에 의해 76%(3,736명)가 평소 운동시간이 길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선수들의 수면, 수업, 식사시간 등 기본 생활을 위한 시간을 고려할 때, 하루 5시간 이상의 훈련은 정상적인 대학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의 훈련시간으로 볼 수 있다.

대학생은 성인으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시기로 전문적인 학업 정진, 여러 사

람과의 교우, 동아리 등의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시기임에도 선수들은 운동 이외의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학생선수 중 60%(2,928명)는 학교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4) 중·고교 학생선수의 학습권, 폭력, 성폭력 실태를 중심으로(2008)

설문조사 결과, 학생선수들의 정규수업 참여시간은 시합이 있을 때 평균 2시간, 없을 때는 4.4시간 정도로 심각한 수업 결손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전체 학생의 78.8%가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중 25%의 학생은 일주일에 1-2번 이상, 5%의 학생은 매일 훈련과 상관없는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의 주 행위자는 코치나 감독 등 지도자로 나타나며 폭력이 발생하는 주 장소는 훈련 장소이다. 지도자에 의한 폭력 다음으로 선후배나 친구에 의한 폭력도 심각하며, 특히 훈련과 상관없는 폭력의 경우 선배가 주 폭력행위자로 분석된다. 폭력에 대한 대처는 적극적이기보다는 “모르는 척 한다” 등 소극적 대처 경향을 보이며, 특히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소극적인 대처 경향을 보이고 폭력에 대한 수용성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체벌 등 폭력으로 인한 피해의 영향은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56.4%), 체벌의 효과에 대한 일반 통념과 달리 ‘연습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 한다’는 응답은20.1%에 불과하다. 특히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하는 응답의 성별차이가 유의미한데, 여학생이 66.4%, 남학생이 47.1%로 폭력이 여성선수에게 더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처 방식으로는 ‘참거나 모르는 척 한다’ 등 소극적 대처가 ‘싫다고 말하고 하지 말라고 요구 한다’는 등의 적극적 대처보다 지배적이며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소극적인 대처경향을 나타낸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63.8%가 성폭력 피해를 겪은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성폭력에는 언어적 희롱부터 강간까지 모두 포함된다. 유형별로는 언어적 성희롱이 전체 58.5%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강제추행으로 25.4%를 차지한다. 강간 및 강제적인 성관계 요구도 각각 1%과 1.5%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율은 학생선수들이 경험하는 성폭력 피해가 매우 일상적일 뿐

아니라 그 정도 역시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성폭력 행위자는 폭력 행위자와 달리 지도자와 선수들 사이에서보다 선후배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피해 장소는 주로 합숙장소나 기숙사로 나타난다. 성폭력 피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응답 역시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46.7%)'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화가 난다(45.9%)', '수치스럽고 모욕감을 느낀다(41.8%)'로 나타난다. 이 역시 성별 간 차이가 분석되는데 남학생이 '화가 난다(53.1%)'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한 반면, 여학생은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54.7%)'는 응답이 가장 높다.

성폭력에 대한 대처는 폭력에 비해 '싫다고 분명히 말하고 하지 말라고 요구 한다' 등 적극적 대처의 의지를 보이는 비율(59.6%)이 높게 나타난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이유로 '선수생활에 불리할 것 같아서(33.2%)', '수치스럽고 당황해서(31.9%)', '대응방법을 몰라서(29.7%)'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학생선수들은 운동을 하기 전보다 이후의 변화가 긍정적일수록 운동부 중단의사가 적으며, 운동부 내 폭력이 심각하다고 생각할수록 운동부 중단 의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 중단 의사를 가졌던 비율이 전체의 86.2%로 나타나며, 남학생보다 여학생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도 유의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면접조사 결과 역시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뒷받침하며 아울러 인권 침해가 발생되는 구조와 학습권, 폭력, 성폭력의 상호연관성을 드러내 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습권 침해

- 학생선수들이 심각한 학습권 침해에 방치되어 있으며, 대부분 학업 능력이 극도로 위축되어 있다.
- 학습권 침해는 폭력과 성폭력을 묵인하는 주요한 토대이자 학생선수 인권 침해의 구조적인 배경으로 작용한다. 즉 학생선수들로 하여금 운동 이외의 삶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시키고 현재 자신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나 성폭력 같은 또 다른 인권 침해에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기제로 나타난다.

② 폭력의 일상화와 위계구조 재생산

- 학생선수들에 대한 지도자의 폭력이 매우 일상적이며 종종 체벌이라는 이름으로 감정의 폭발이나 학생선수의 인격을 모욕하는 폭력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훈련 및 실력 향상을 위한 필요악으로 용인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학생선수들의 사기나 자존심 저하를 초래해 운동 의욕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 지도자의 폭력은 학생선수들 간의 폭력과 구타 문화를 재생산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지도자-선배학생-후배학생으로 이어지는 가해자-피해자 연결고리의 악순환이 재생산 되고 있다.

③ 폭력과 성폭력의 중층적 구조

- 성폭력은 선후배나 친구들 간에 그리고 코치 등 지도자와 학생선수 간에 발생하며, 이들 성폭력의 발생은 불평등한 권력구조나 위계적인 폭력 문화와 구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 운동현장에서 성폭력은 지도자에 의한 체벌이나 훈련의 양상, 친밀함을 가장한 성희롱, 선후배간의 폭력이나 체벌의 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폭력의 가해자가 성폭력의 가해자 혹은 잠재적 가해자로 시·공간적인 차원에서 상호연관성을 갖고 발생하고 있다.
- 폭력에 대한 대응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피해자는 지도자나 선후배 간의 위계에 의해 성폭력에 대한 대응을 회피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5) 실업팀 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2019)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1월 7일 발표한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57,557명) 결과 언어폭력 15.7%, 신체폭력 14.7%, 성폭력 3.8%인데 반해 이번 실업팀 성인선수 실태조사(1,251명)에서는 언어폭력 33.9%(424명), 신체폭력 15.3%(192명), 성폭력 경험 11.4%(143명), (성)폭력 목격경험 56.2%(704

명) 등으로 나타나 성인선수들이 학생선수들에 비해 인권침해의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체폭력과 달리 언어폭력의 경우 여성선수 37.3%, 남성선수 30.5%로 여성선수들의 피해가 높았고, 주요 가해자는 지도자나 선배선수 순으로 나타났다. 언어폭력 발생장소는 훈련장 또는 경기장이 88.7%로 압도적으로 높으며, 숙소 47.6%, 회식자리 17.2% 등으로 나타났다.

신체폭력을 경험한 실업선수는 26.1%로 '머리박기, 엎드려뻗치기 등 체벌' 8.5%, '계획에 없는 과도한 훈련' 7.1%, '손이나 발을 이용한 구타' 5.3% 순으로 나타났다. 폭력 경험 주기는 '일 년에 1~2회' 45.6%, '한 달에 1~2회' 29.1%, '일주일에 1~2회' 17.0%, '거의 매일' 8.2% 순이고, 폭력 장소는 훈련장(73.1%), 합숙소 또는 기숙사(44.5%)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남성선수는 선배운동선수가 58.8%, 여성선수는 코치가 47.5%로 나타나 성별로 차이를 보였다.

신체폭력 피해 선수 중 67.0%는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했고, 38.5%는 괜찮은 척 웃거나 그냥 넘어갔다고 했으며, 33.0% 역시 소심하게 불만을 표시하는 등 대다수는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싫다고 분명히 말하고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등 적극적 대처는 6.6% 밖에 없었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실업 선수들은 잦은 시합으로 인해 컨디션 조절이 힘들고, 부상으로 인한 통증을 지도자에게 호소해도 무시당하고 무조건 시합에 참가해야만 한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또한 부상 및 재활치료비를 선수가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상황이라 은퇴 이후 부상치료비가 더 걱정된다고 언급한 경우도 있었다.

실업선수가 직접 경험한 성희롱·성폭력 유형을 살펴보면 '불쾌할 정도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손, 볼, 어깨, 허벅지, 엉덩이)'을 경험한 선수는 1,251명 중 66명(5.3%)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선수(2.2%) 보다는 여성선수(8.4%)들이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많이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업선수들은 직장운동부에서 월급을 받으며 운동하는 직장인으로 이들이 당한 피해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데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성폭력 피해 세부 유형으로는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게 하거나 팔베개, 마사지, 주무르기 등을 시키는 행위(4.1%)'(남 1.4%, 여 2.7%), '신체의

크기나 모양, 몸매 등에 대한 성적 농담 행위(6.8%)’(여 5.2%, 남 1.6%), ‘강제 키스, 포옹, 애무’는 여성선수 11명, 남성선수 2명의 피해가 확인됐다. 디지털성범죄에 해당하는 ‘신체부위 촬영’ 피해 경험자는 여성선수 11명, 남성선수 2명으로 응답했으며 성폭행(강간)피해는 여성선수 2명, 남성선수 1명으로 드러났다.

심층면접 조사결과 여성선수들은 생리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남자지도자와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힘든 부분에 대한 배려를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남자 감독이 무서워서 혹은 불이익을 받을까봐 말을 못 꺼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종목의 여성선수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몸값으로 남자선수들보다 더 심한 성과압박을 받는 심리적 고충을 호소하기도 했다.

실업팀 여성선수들의 경우 결혼, 임신, 출산과 관련해서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팀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혼계획 및 임신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발명단에서 제외시키거나 은퇴를 종용하기 때문이다. 출산 후에는 육아 등 가정생활과 선수생활 양립의 힘든 점을 언급했다. 또한 감독이 남자선수와 여자선수의 기량 차이를 비교하며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실업팀에서의 합숙소 생활 경험은 무려 86.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대다수의 성인 선수들이 상시 합숙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합숙 이유는 ‘훈련에 집중할 수 있어서(42.8%)’,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어서(34.1%)’, ‘팀워크 위해(31.5%)’로 조사했다. 하지만 ‘내부지침으로 인한 강제(29.3%)’, ‘지도자가 합숙소 생활을 원해서(19.4%)’로 원하지 않음에도 어쩔 수 없이 합숙을 하는 경우도 상당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실업선수들에게 합숙소는 주거비 절감의 이점이 있는 등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임에도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을 뿐 아니라, 외출이 자유롭지 못했으며 시합일정으로 주말에도 숙소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 휴식권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합숙소에서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과다한 벌금이 부여되며 선배는 물론 지도자와 숙소를 공유하는 불편함으로 개인공간은 물론 프라이버시도 보장되지 않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실업팀 선수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 결과, 운동을 직업으로 하는 성인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폭력과 통제가 매우 심각함을 확인했다. 특히 실업팀 직장운동부는 여성선수들의 인권침해에 취약한 환경으로 원하지 않는 회식강요, 직장 성희롱 및 성차별, 결혼이나 임신·출산으로 인한 은퇴 종용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여성지도자 임용을 늘려서 스포츠 조직의 성별 위계관계 및 남성중심 문화의 변화를 통한 인권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업선수들은 인권침해 피해를 당해도 문제제기할 경우 팀이 해체되거나 보복과 불이익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었다. 계약을 통해 임금을 받는 근로자이지만 자기 연봉 액수도 모르는 등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음이 확인되어 스포츠 인권 교육은 물론 노동인권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6)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2019)

초등학생들은 주로 3~4학년 때 운동을 시작하며, 71.2%(12,829명)가 ‘내가 좋아서’ 운동을 시작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하루 3~5시간 이상의 과도한 훈련(8,859명, 49.1%)’과 ‘수업결손(4,479명, 24.9%)’을 경험하고 있다.

폭언 및 욕설, 협박 등 언어폭력은 3,423명(19.0%)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언어폭력 경험자의 69.0%는 지도자(코치, 감독)를 주요 가해자로 응답했다. 또한, 초등학생에게 원치 않는 각종 심부름이나 빨래, 청소를 시키는 사례도 779명(4.3%)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체폭력 경험자는 2,320명(12.9%)으로 이 같은 결과는 교육부에서 실시한 2019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에서 나타난 9.2%에 비해 약 1.4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주요 가해자는 지도자(75.5%), 선배선수(15.5%) 순으로 나타났으며, 신체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종목은 빙상(84명, 26.2%), 수영(310명, 24.1%), 태권도(208명, 20.1%), 야구/소프트볼(415명, 19.4%), 체조(64명, 18.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심각한 것은 신체폭력을 경험한 뒤 느끼는 감정을 묻는 질문에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함”이라고 898명(38.7%)이나 답했다는 점이다. 이는 일

상화된 폭력 문화 속에서 초등학생 시절부터 이미 폭력을 훈련이나 실력 향상을 위한 필요악으로 인식(폭력의 내면화)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폭력의 내면화는 운동집단 내 폭력 문화가 지속, 재생산되는 악순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신체폭력을 당한 뒤 대처와 관련해 “도움을 요청하였다”가 371명(16.0%)에 불과했으며, 이들도 주로 가족(265명, 55.1%), 동료 운동선수(77명, 16.0%), 지도자(53명, 11.0%), 친구(47명, 9.8%) 순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선수들의 성폭력 피해는 전체 응답자 중 438명(2.4%)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 경험 시 소극적인 대처 괜찮은 척 웃거나 그냥 넘어감, 아무런 행동을 못함, 얼굴을 찡그리는 등 소심하게 불만을 표시하였으며, 252명(57.5%)으로 초등학생선수 시기부터 성폭력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중학교 학생선수, 개별운동선수 중심으로 수업결손 심각한 상황이다. 학습권 보장의 중요한 조건이 되는 운동시간에 있어서도 7,182명(32.7%)이 시합이 없을 때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운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주말・휴일 운동도 17,587명(80.1%)이 실시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특히, 평소 운동시간에 대해 학생선수 13,238명(60.3%)은 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중학교에서는 평소 수업결손이 비교적 낮은 3,154명(14.4%)으로 조사됐으나 시합이 있는 경우에는 6,882명(31.4%)으로 약 17%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 밖에서 개별 활동하는 학생선수들의 수업결손은 17.5%(569명)로 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선수 13.8%(2,585명)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시합이나 훈련으로 수업 불참 시 13,351명(60.8%)이 보충수업을 받는다고 응답했으며, 보충수업은 주로 e-school을 활용(11,726명, 74.3%)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학생선수 신체폭력 3,288명(15.0%), 일반 중학생 학교폭력 대비 2.2배 높다. 폭언 및 욕설, 협박 등 언어폭력의 경우 3,039명(13.8%)이 경험한 것으로 답했으며, 주요 가해자는 선배선수나 또래선수(50.5%), 지도자(43.8%) 등이었다. 또한,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져서 공포감을 느낀 적이 있는 경우는 1,275명(5.8%), 과도한 훈련으로 운동을 포기하려 했던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2,329명(10.6%)이 그렇다고 답했고, 금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1,079명(4.9%)이 그렇다고 답했다.

원치 않는 빨래나 청소, 심부름을 한 경우는 1,952명(8.9%)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온라인에서 따돌림이나 심한 욕설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는 195명(0.9%)으로 다소 낮았는데 이는 운동부의 경우 휴대폰을 압수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유형의 피해는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체폭력 경험자는 3,288명(15.0%)으로 이 같은 결과는 교육부에서 실시한 2019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에서 나타난 6.7%에 비해 약 2.2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특히, 문제는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피해의 자기내면화(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함)가 707명(21.4%)에 이른다는 점이다. 이는 곧 피해자의 소극적 대처(2,600명, 78.6%)로 이어지고 폭력의 악순환을 지속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또한, 피해 시 도움요청 결과 행정 및 사법 기관의 도움을 받았다는 비율이 전체 14명(7.1%)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도 여학생의 경우는 전혀 없어, 여성선수는 피해를 드러내기조차 더욱 어려운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중학생 선수들의 성폭력 피해는 ‘누군가 자신의 가슴이나 엉덩이, 성기 등을 강제로 만지라고 강요’ 42건, ‘누군가 나의 가슴이나 엉덩이, 성기 등을 강제로 만졌음’ 131건, ‘누군가 내게 강제로 키스나 포옹, 애무를 하였음’ 45건, ‘누군가 나의 신체부위를 몰래 또는 강제로 촬영하였음’ 76건, ‘성관계 요구’ 9건, 강간 5건 등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주로 동성의 선배 및 또래이며, 장소는 과거 훈련장이 많았으나 점차 숙소로 변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피해 시 대처와 관련해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560명(52.3%)이 소극적으로 대처했으며, 도움을 요청한 경우에도 7명(7.1%)만 가해자 징계 및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 체육계의 신고체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다.

고등학생 선수들은 학습권 보장의 중요한 조건이 되는 운동시간에 있어서도 9,836명(55.9%)이 시합이 없을 때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운동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주말・휴일 운동도 14,625명(83.1%)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시간에 대해 12,884명(73.2%)은 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평소 수업결손도 8,191명(46.5%)으로 나타나 심각한 수준이며, 6,850명

(38.9%)은 수업 불참 시 보충수업조차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으로서의 역할은 상당 부분 축소되고 선수로서의 역할만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수업 불참 시 보충수업을 받는다고 응답한 학생 중 9,860명(79.9%)은 e-school을 활용하는 것으로 응답했지만, 자유 의견과 심층 인터뷰 조사 결과 실제 학업능력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응답이 많아 개선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등학교 학생선수 중 신체폭력을 당한 학생들은 2,832명(16.1%)으로 일반 고등학생 학교폭력 대비 2.6배 높았다. 폭언 및 욕설, 협박 등 언어폭력의 경우 2,573명(14.6%)이 경험했으며, 주요 가해자는 지도자(56.0%), 선배선수나 또래선수(39.8%) 등으로 나타났다.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져서 공포감을 느낀 적이 있는 경우는 971명(5.5%), 과도한 훈련으로 운동을 포기하려 했던 경험에 대한 질문은 2,287명(13.0%)이 그렇다고 답했고, 금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823명(4.7%)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원치 않는 빨래나 청소, 심부름을 한 경우는 2,253명(12.8%)이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온라인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심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30명(0.7%)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운동부의 경우 휴대폰을 압수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유형의 피해는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사례에 비추어보면 휴대전화 등 개인 물건을 학교에서 압수하는 것이 인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어 일률적으로 압수, 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신체폭력 경험자는 2,832명(16.1%)으로 이 같은 결과는 교육부의 2019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에서 나타난 6.3%에 비해 약 2.6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상습폭력 여부를 알려주는 피해주기는 일주일에 1~2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541명(19.0%)으로 상습폭력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또한, 운동부 내 신체폭력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1,421명(8.1%), 운동부 내 신체폭력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5,710명(32.5%)으로 나타나 보고된 피해 사실보다 현장의 폭력은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생 선수들의 성폭력 피해는 ‘누군가 자신의 가슴이나 엉덩이, 성기

등을 강제로 만지라고 강요’ 22건, ‘누군가 나의 가슴이나 엉덩이, 성기 등을 강제로 만졌음’ 75건, ‘누군가 내게 강제로 키스나 포옹, 애무를 하였음’ 18건, ‘누군가 나의 신체부위를 몰래 또는 강제로 촬영하였음’ 61건, ‘성관계 요구’ 9건, 강간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특징으로 동성의 선배 및 또래가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성폭력 피해 장소는 과거 훈련장 등 공개적인 장소에서 숙소 등 비공개 장소로 변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 대처와 관련하여 391명(55.7%)이 소극적으로 대처했으며, 도움을 요청한 경우에도 9명(14.8%)만 가해자가 징계 및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학교보다는 다소 높은 수치이다.

7) 합숙소 앞에 멈춘 인권 학생선수 기숙사 실태조사 (2019)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 실태점검 결과와 시·도교육청 등으로부터 현황자료를 받아 「학교체육진흥법」에서 금지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체육중고를 제외한 전국 초중고 학생선수 기숙사 약 380개 중 157개 기숙사에서 근거리 학생을 포함한 상시적인 합숙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선수 기숙사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법에서는 원거리(통학거리 1시간 이상) 통학생을 위한 시설조건을 갖추고 교육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 조사 결과, 운영실태에 대해 정확히 보고하지 않거나 점검 부실 사례가 다수 드러나 교육당국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사례로는 운동부 중 일부가 교외 다세대 주택에서 상시 합숙훈련을 하면서도 교육부 실태점검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제출 시 그 사실을 누락한 사례, 원거리 통학 학생선수 5명을 기숙사 생활인원으로 제출하고 올해 초 3개월 간 전체 선수가 합숙훈련을 실시한 사례 등이다.

한편, 상시 합숙훈련을 하는 학생선수들의 인권침해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16곳 중 4곳은 한 방에 10명 이상이 밀집하여 생활하고 있어 사적인 생활은 거의 불가능했으며, 별도의 휴게 시설이 미비한 곳도 8곳으로 학생선수들은 모든 생활이 오로지 훈련과

경기에만 집중된 가운데 혹사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합숙생활에서는 과도한 생활수칙, 휴대폰 사용제한, 외출제한, 삭발강요, 선배들의 빨래강요 등 일상적인 인권침해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사례로는 일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 귀가 시까지 휴대폰 압수, 이성교제 적발 시 삭발, 인원보고 1일 4회 실시, 의류 각 잡아 개기, 샴푸 꼭지 한 방향으로 정리, 관등성명 외치기 등 '병영적 통제'와 규율로 심각한 인권침해가 여전함을 확인했다.

또한 특별조사단은 이번 조사에서 학생선수 기숙사 내에서 발생한 4건의 (성)폭력 사건을 확인하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합숙소 내 상습 구타와 단체기합, 동성 선수에 의한 유사 성행위 강요, 성희롱 및 신체폭력 등의 사례를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한 피해자는 중학교 때 코치로부터 개인적 만남과 음주를 강요받다가 고등학생이 된 후 성폭행 당한 사례도 있었다. 이 사건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졌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등 2차 피해로부터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음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면담조사와 함께 실시된 시설 조사에서는 2003년 천안초등학교 합숙소 화재 참사(25명 사상) 사건이 언제든 재발될 수 있을 정도로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도 드러났다. 체육중고와 초등학교 1곳을 제외한 379개 기숙사 가운데 80개 기숙사가 스프링클러 시설이 없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 조사한 곳 중에는 스프링클러, 비상구, 대피로가 모두 없는 곳도 5곳이나 됐다. 스프링클러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는 노즐을 모두 제거하여 제 기능을 못하거나, 합숙소가 아닌 운동부 휴게시설로 신고하고 선수 전원이 생활하는 공간이면서 스프링클러가 아예 없는 사례, 그리고 스프링클러 등 화재 방지 대책이 없는 가운데 지도자들의 실내흡연 등이 확인됐다.

8) 체육 관련 단체·기관 종사자 성폭력 등 실태조사(2020)

2019년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비롯한 각 경기종목단체 등 체육 관련 종사자 1,378명 대상으로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최근 1년 이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피해는 34.1%, 성폭력 피해는

10.0%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성관계를 전제로 이익(승진, 보직 임명, 임금인상 등)을 제안하는 행위 4건, 강제로 입을 맞추거나 키스나 포옹을 하거나 몸을 만지는 행위 11건 등 심각한 사례들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7월 16일,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의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체육단체 및 기관의 조직문화는 여전히 남성 중심, 상명하복 등의 위계적 조직문화를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성희롱·성폭력의 주요 가해자는 대부분 상사와 동료로 나타났고, 기관 임원(상근·비상근)의 비율도 높았다. 피해자들은 구설수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어떤 행동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항상 일어나는 일이고 다들 가만히 있으니까 등의 순으로 피해를 알리지 못했고, 내·외부 기관을 통해 신고하거나 절차를 밟는 경우는 10.2%에 불과했다. 또한 피해자 다수는 분노, 우울감이나 불안감, 수면장애 등 다양하고 심각한 후유증 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 시 구제와 사후 조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2.1.3 교육부

교육부는 체육예술교육지원팀에서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학교체육활동은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며 '복지'의 중요 전제조건으로 보고,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받아들여,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체육특기자 진학 개선, 학교운동부 운영 및 관리 개선,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개선 및 관리, 일반 학생의 스포츠 참여를 확대하고, 전국스포츠대회 개편 방안 마련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 특별조사팀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기숙사 운영, 근거리 학생 기숙, 인권침해, 안전관리 미흡 등 지적하며 인권 친화적 기숙사로의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고, 과도한 훈련, 학습권 · 휴식권 침해, 언어 · 신체 · 성폭력 등 인권 사각지대로 관리 · 감독 강화 필요성 제시하여,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운동하는 모든 학생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모토로, 1학생 1스포츠, 인권 중심의 학교운동부 운영을 통한 모든 학생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추친목표를 설정하고,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림 4. 2020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

운동하는 모든 학생 공부하는 학생선수
- 1학생 1스포츠, 인권 중심의 학교운동부 운영을 통한 모든 학생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4대 중점과제	19개 실행과제
1. 학교체육교육 내실화	1-1. 체육수업 내실화 1-2. 교원 전문역량 강화 1-3. 체육교육 전문인력 지원 1-4. 초등 생존수영실기교육 확대 1-5.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운영 1-6.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1-7. 건강체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2.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운동하는 모든 학생)	2-1.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의무화 2-2.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내실화 2-3. 교육(지원)청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활성화 2-4.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운영 2-5. 다양한 형태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지원
3. 학교운동부 운영 선진화 (공부하는 학생선수)	3-1.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3-2. 학생선수 인권 보호 강화 3-3.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 수립 및 투명한 운영 3-4. 교육적인 학교운동부 운영 지원
4. 학교체육 네트워크 운영 및 인식 개선	4-1. 학교체육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체계 구축 4-2. 체육활동 중요성 인식 개선 4-3. 학교체육시설 개방 관리

2.1.4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에서 성희롱 방지조치,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관별 추진실적 점검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해야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예방교육을 통해 왜곡된 성인식 및 문화개선과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

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표 12. 주요 법률 제·개정 연혁

주요 법률 제·개정 연혁	내용
1999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정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
2003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개정	성희롱 방지조치 의무대상기관 범위 확대 및 실적 제출 의무화
2004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초·중·고교의 성매매 예방교육 의무화
2005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폐지,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성희롱 방지조치 근거조항이 여성발전기본법으로 변경
2008년 여성발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성희롱 방지 부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및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조치 의무 강화
2008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성매매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을 초·중·고교에서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까지 확대
2010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시행 ' 11.1.1.)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2012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 13.6.19.)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까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실적 제출 의무화
2013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 14.1.31.)	가정폭력 예방교육 초·중·고교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까지 확대
2013년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시행 ' 14.2.14.)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 실시 같은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 14.7.2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 14.9.28.)

2013년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시행 ’ 14.7.1.)	- 관련자 징계 등 요구(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한 사실, 성희롱에 관한 국가기관 등의 고충처리 또는 구제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학습권·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 - 평가 반영요구(「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2014년 1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 ’ 14.7.22.)	- 성희롱(여성발전기본법)과 같게, 점검, 언론 등 공표, 관리자 특별교육, 관련자 징계 등 요구, 평가 반영요구 * 같은 내용으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 ’ 14.9.28.)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 14.5.28. 공포)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시행 ’ 15.7.1.)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2015년 2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 15.2.3.)	민간 사업장, 직장 내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등 노력 의무 신설
2015년 6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시행 ’ 15.12.23.)	기관평가 반영 요구 대상(「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확대
2015년 12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 16.6.2.)	여성가족부,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외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의무 추가
2016년 5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개정(시행 ’ 16.11.30.)	공공기관 등의 성폭력 예방조치 의무화,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의 성폭력 예방계획 수립 의무화
2018년 12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개정(시행 ’ 19.6.19.)	-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용자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 구체화 및 국가기관 등의 장이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뿐만 아니라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도 제출하도록 보고대상 확대 -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 등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

2.2 국내 스포츠 관련 법·제도에 대한 분석 및 평가

2.2.1 국내 스포츠 관련 법·제도에 대한 분석

2.2.1.1 문화체육관광부

① 「국민체육진흥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 지방자치단체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 및 상담시설에서 신고 및 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선수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5).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며, 스포츠 윤리센터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 지원 및 연계.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 및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에서는 고발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규정하고 있는데,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이를 존중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에서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징계요구와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대상, 기간 등 필요한 사항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교육을 실시한다(「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6).

둘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선수를 대상으로 죄를 저지르는 경우 지급한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그 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장려금의 환수 및 지급중지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7).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8). 요약하면, 문화체육부장관은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징계에 관한 규정을 운영할 책임이 있다.

② 「생활체육진흥법」

다음으로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제9조의 내용을 살펴봐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는 국민의 생활체육 권리를 규정한다. 모든 국민은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생활 체육을 즐길 권리를 갖는다. 아울러 모든 국민은 생활 생활체육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

둘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생활체육진흥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생활체육진흥법」 제9조).

요약하면 「생활체육진흥법」에서는 국민이 생활체육을 향유할 권리, 국가 등 책무와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③ 「학교체육진흥법」

다음으로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제17조 및 그 시행령을 살펴봐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학교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하고 학생건강체력평가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 운영,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학교체육행사의 정기적 개최,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 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연수 강화 및 장려, 그 밖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조치를 취하여야 한다(「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제1항).

둘째,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학교체육 진흥법」 제1조1항). 최저학력은 매 학기 말을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5개 교과(고등학교 학생선수의 경우에는 3개 교과)의 교과별 성적이 기준 성적 이상인 것을 말하며, 기준 성적은 학생선수가 속한 학교의 해당 학년 학생 전체의 제1항에 따른 교과별 평균 성적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성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등학교: 100분의 50, 중학교: 100분의 40, 고등학교: 100분의 30이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은 학기당 60시간 이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셋째,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학교체육 진흥법」 제1조제3항).

넷째, 학교의 장은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학교체육 진흥법」 제1조제2항). 학생선수를 위하여 운영하는 기숙사의 경우. 학습시설(책상·의자·컴퓨터), 휴게실, 욕실, 침실, 화장실, 세탁실, 식당, 주방을 갖추고, 학생선수기숙사 관리를 전담하는 교직원을 두어야 하며, 여학생인 학생선수가 학생선수기숙사에 입사하는 경우에는 여학생의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여성 교직원을 별도로 둔다. 아울러,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기숙사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선수기숙사 생활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다섯째,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를 위하여 학교운동부에 지도자를 둘 수 있다. 국가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수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

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 · 향응 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임용, 급여, 신분, 직무 등에[5] 관한 내용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는 학교의 장이 지도경력과 실적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재임용할 때에는 직무수행실적과 복무태도, 학교운동부 운영성과에 관한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생선수에 대한 훈련계획 작성, 지도 및 관리, 학생선수의 각종 대회 출전 지원 및 인솔, 경기력 분석 및 훈련일지 작성, 훈련장의 안전관리직무를 수행해야 한다(「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여섯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 방지 교육을 실시하며, 도핑 방지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의2). 도핑방지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도핑방지교육은 도핑의 개념, 금지 약물 관련 정보 및 도핑 관련 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도핑방지교육은 견학 · 체험 활동 또는 정보 · 통신 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의2).

일곱째, 교육부장관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학교체육 진흥법」 제13조의2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학교체육 진흥법」 제13조의2제3항). 또한 교육부장관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체육 교재,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기준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학교체육 진흥법」 제13조의2제4항).

마지막으로, 「학교체육 진흥법」 제14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

5) 1. 직무수행실적과, 3. 학교운동부 운영성과에 관한 내용은 지도자가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재임용이 되지 않으므로, 지도자의 성과위주의 교육방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아울러,4. 훈련장의 안전관리직무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선수들 간의 폭력, 성폭력, 자살 등의 관한 의무를 구체화시켜 규정할 수 있음.

수교육법」 제17조에 따라 일반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학교체육 진흥법」에는 학교체육 진흥 조치 의무, 학교 운동부 운영에 있어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합숙훈련 근절 노력 의무, 장거리 통학학생을 위한 기숙사 운영의무, 학교운동부 지도자 고용의무, 도핑 방지 교육 의무,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의무,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④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다음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도 폭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훼손 · 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 · 연구 · 교육 · 계도 등 필요한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둘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둔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7조).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 · 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둔다.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시 · 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 또한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 ·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 · 군 · 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둔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

셋째,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

한 계획의 이행 지도,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검사,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사 또는 상담을 수행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넷째,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다섯째,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마지막으로,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그리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2.2.1.2 법무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성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본 법은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을 두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두고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 아울러 각급 법원은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등이 재판 전후에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성범죄 경력정보와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등에 관한 정보를 등록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2.2.1.3 보건복지부

① 「아동복지법」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아동복지법」 제1조). 아동은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하며(「아동복지법」 제2조제1항),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아동복지법」 제2조제2항). 또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아동복지법」 제2조제3항).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아동복지법」 제2조제4항).

구체적으로 언급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

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아동복지법」 제17조).

둘째,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제26조의2).

이를 요약하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금지행위,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②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장애인복지법」 제2조). 이 법에서도 인권과 관련된 이슈가 규정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제7조).

둘째,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안 되며,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제8조).

셋째,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6]

---

6) 법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해야 함

넷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장애인 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장애인 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 · 교육 · 홍보와 장애인 학대 현황 조사, 장애인 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 · 운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0).

이를 요약하면,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차별금지 행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장애인 학대 예방과 방지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2.2.1.4 여성가족부

①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또한 아동 ·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 ·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 ·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아동 · 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 ·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 · 청소년을 추행한 자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둘째,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 ·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 ·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 · 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 ·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급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또한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셋째,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넷째,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특정범죄를 범죄를 저지른 자,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다섯째,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7]

이를 요약하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록정보 공

7) 법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해야 함

개,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 등이 규정되어 있다.

②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청소년 기본법」 제2조제1항). 이러한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 · 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청소년의 참여 보장,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민주 · 복지 · 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청소년 기본법」 제2조제2항).

2.2.1.5 대한체육회

① 「스포츠 비리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스포츠 비리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스포츠와 관련한 비리, 불공정 사실에 대한 제보 및 이와 관련한 조사를 통해 비리 발생을 예방하고 건전한 스포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스포츠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규정되었다「스포츠 비리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

신고센터는 스포츠와 관련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접수된 내용에 대한 조사 및 접수되지 않은 스포츠 관련 비리 및 불공정 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조사 업무를 수행한다(「스포츠 비리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센터에서 조사한 결과에 근거하여 관계 단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형법에 의한 죄의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처리 결과에 대하여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스포츠 비리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7조).

② 「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권고하고 이행을 점검할 수 있도록 스포츠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체육 분야 구조 혁신 정책 수립에 관한 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스포츠혁신위원회를 둔다(「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위원회는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해 필요한 추진 과제 발굴 및 실행방안 권고,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한 권고 내역의 이행 실적 점검, 그 밖에 체육 분야 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역할을 수행한다(「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2.2.2 국내 스포츠 관련 법·제도에 대한 평가

2.2.2.1 스포츠 진흥법의 제정을 통한 스포츠 기본권 강화

한국의 스포츠정책과 법제는 특정 정권의 홍보를 위해 수단으로 마련되었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8] 모든 국민은 스포츠기본권을 지니므로, 스포츠관련 법은 인권 친화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스포츠와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법을 정비하고, 스포츠기본권을 보장하여 국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스포츠기본법의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9]

외국의 스포츠기본법에 개관을 통한 도입 사례 검토를 통해 스포츠 진흥법 도입 안을 제안한다. 프랑스, 독일,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연합은 스포츠기본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1984년 제정된 신체 스포츠 활동의 조직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스포츠기본권과 교육으로서의 스포츠, 스포츠단체, 스포츠에이전트

8) 연기영, 스포츠기본법의 제정방안, 스포츠와 법, 한국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법학회, 2008년, 115면.
9) 연기영, 상게논문.

자격 등 국가의 스포츠관련 계약의 간섭과 스포츠연맹과 올림픽스포츠위원회, 직장스포츠와 전문스포츠, 스포츠지도자 자격, 스포츠 시설과 보험제도 등이 비교적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독일은 연방제 국가이므로 교육과 문화에 관한 권한은 각주에서 행사한다. 물론 입법권 행사에 있어, 외교, 국방, 체신 등 11개 분야는 연방의회가 입법전속권을 가지며, 경합적 입법권도 일부 인정하고 있다. 문화, 교육, 지방자치, 경찰 분야는 각주가 입법전속권을 가지고 있다. 스포츠분야도 문화나 교육의 한 영역으로, 각주에서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캐나다는 2003년 '신체활동과 스포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법은 스포츠기본법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총 4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체활동과 스포츠를 분리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가의 국민에 대한 건강증진의무와 스포츠정책에 있어서 반도핑 및 차별금지와 공정한 스포츠분쟁해결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2.2.2 국위선양 삭제를 통한 스포츠의 진정한 의미 회복

「국민체육진흥법」은 전문체육, 학교체육, 생활체육의 지원과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관리와 운용을 위한 법이다. 이 법의 목적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키우고, 명랑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한 국위선양에 이바지 함'으로 규정되어 있다(「국민체육진흥법」 제1조).

「국민체육진흥법」은 1962년 9월 19일 제정 및 시행되었다.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보호 육성하도록 하며, ② 매년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을 설정하고,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단체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제정되었다.

본 법은 기본법으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있다고 보여 진다. 본 법은 1961년 일본의 「스포츠진흥법」을 모방하여 만들 일제 잔재가 담겨진 법이다. 또한 당시 일본의 군사정부가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는 주

장도 있다. ‘체력은 국력’이라는 구호 아래 국가안보의 수단으로 스포츠를 정치도구화하고, 엘리트스포츠를 이용하여 외교관계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이법을 제정하였다. 역사적으로, 친일적인 요소와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제정된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둘째, 국민체육진흥법 법의 체계성이 미약하다는 평가다. 다른 스포츠관련 법령과 관계가 명시되지 않아서, 법제실무적인 측면에서 기본법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기본법의 기능은 여러 가지로 논의된다. 일반적으로 특정분야의 국가정책의 계획성, 종합성을 바탕으로 방향제시와 추진, 제도와 정책의 체계화와 종합화, 정책의 일관성, 계속성 확보, 행정의 감시, 통제, 해석상 지침, 입법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제시 등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 또는 보충적인 법형성의 기능, 해석 통제기능, 체계형성의 기능 등을 담고 있어야 한다.

2.2.2.3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 개정을 통한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발동 보고 의무화

국민체육진흥법은 스포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고 비중이 있는 법이다. 하지만 본 법에서 스포츠 범죄행위에 대한 관대한 규정이 존재하며, 스포츠 범죄를 엄중히 다루어야 하는 당위성을 고려한다면,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이 요구된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권이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 체육단체는 이를 존중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에서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징계요구와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스포츠 윤리센터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범죄협의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상당한 이유의 유무를 떠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며, 이를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도록 법을 개정해야한다.

본 법조문은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하여야만 한다’(「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 가안)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2.2.2.4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재임용할 때에는 직무수행실적과 복무태도, 학교운동부 운영성과에 관한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생선수에 대한 훈련계획 작성, 지도 및 관리, 학생선수의 각종 대회 출전 지원 및 인솔, 경기력 분석 및 훈련일지 작성, 훈련장의 안전관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라고 규정하고 있다. 직무수행실적과 학교운동부 운영성과에 관한 내용은 지도자가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재임용이 되지 않으므로, 지도자의 성과위주의 교육방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학교체육진흥법 제3조 제4항에서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재임용할 때에는 직무수행실적과 복무태도, 학교운동부 운영성과에 관한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을 유지할 경우, 학생운동부지도자들은 학생들에게 성과위주의 훈련을 시킬 수밖에 없으며, 본 평가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4항 가안을 제시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재임용할 때에는 직무수행실적과 복무태도, 성실성, 학생들의 인권과 건전한 스포츠 문화 조성에 관한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을 재언한다. 아울러, 훈련장의 안전관리직무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선수들 간의 폭력, 성폭력, 자살 등의 관한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

2.2.2.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

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과 청소년 성보호에 대한 중대성을 고려한다면 본 조문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가안을 제시한다.

본 조문의 내용을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을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상당기간 동안'으로 수정해야 하며, 단서 규정인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하여, 위험성의 유무와 상관없이 취업을 제한하여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 성범죄에서 이러한 단서 조항을 두는 것은 정의와 국민정서에 현저히 벗어난 입법이라고 판단된다.

2.2.2.6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장애인복지법」에도 성범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고 규정하고 있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

「장애인복지법」도,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같이 가해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법을 제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이라고 규정한 것은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입법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장애인복지법」 제59조 가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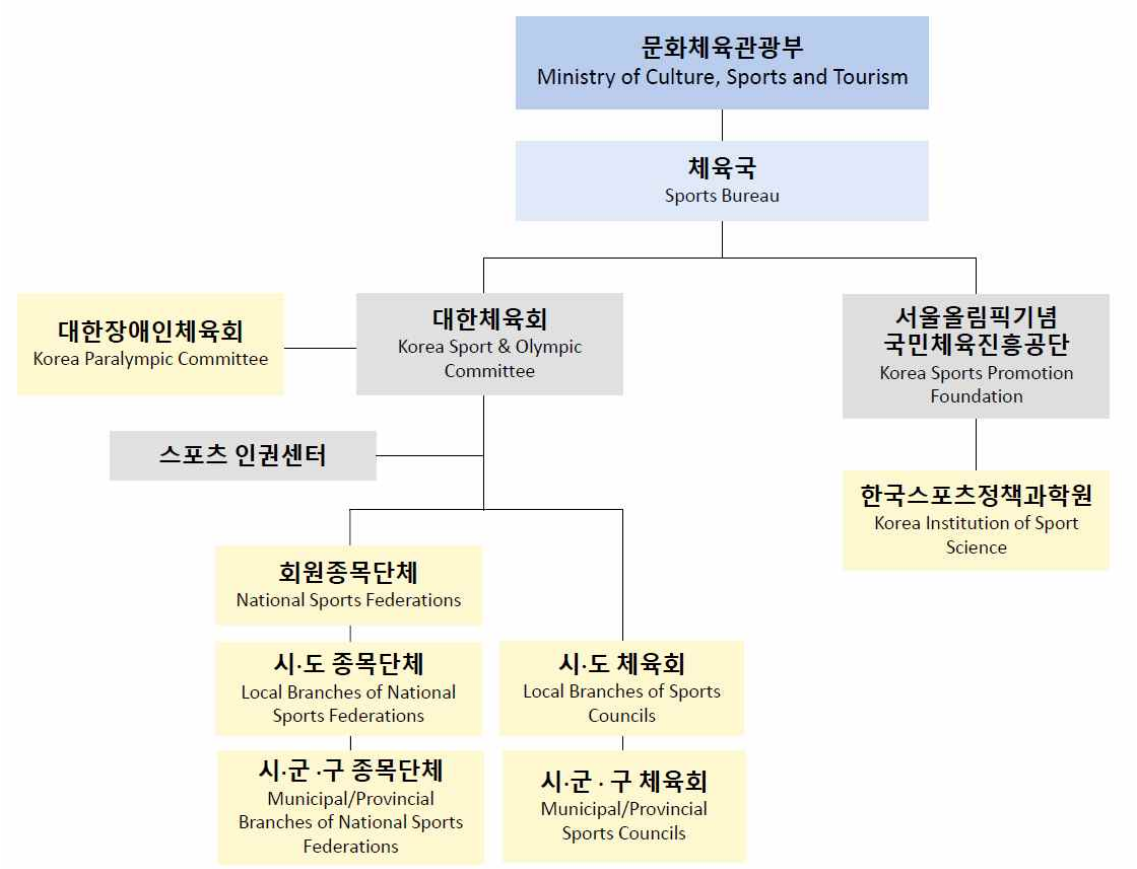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부터 상당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단서인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

2.3 국내 스포츠 관련 정부 및 비정부 기구에 대한 분석 및 평가

2.3.1 국내 스포츠 관련 정부 및 비정부 기구에 대한 분석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나라에서 스포츠에 관한 분야를 총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체육국을 두고 있으며, 체육국은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두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에 우리나라 스포츠정책에 대한 연구기관인 한국스포츠정책과학기술원을 두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스포츠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회원종목단체, 시・도 종목단체, 시・군・구 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군・구 체육회를 두고 있다.

그림 5 한국의 스포츠 관련 기관 조직도



2.3.1.1 대한체육회의 클린스포츠센터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는 스포츠관련 불공정 행위의 예방, 민원의 해결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문화의 정착과 스포츠현장에서의 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과 인권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로 명랑하고 건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다. 주요 활동으로는 분야별 불공정 행위에 대한 민원 접수 및 해결로 체육계 자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클린스포츠 센터의 6개 주요 민원 분야는 조직 사유화 및 부당한 징계, 부적격임원 선임 등에 대한 조직분야, 선수 및 지도자 불공정 선발, 심판 매수 행위, 승부 조작 등에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는 경기분야, 공금 횡령 및 배임, 훈련 수당 부정 수령, 부당한 예산 전용 등에 관한 회계분야, 입학 조건의

금품 수수, 경기실적 증명서 조작, 금품 수뢰 등에 관한 입학분야, 지위를 이용한 폭력, 상습 학대, 갈취행위 등에 대한 (성)폭력 분야, 주요업무 내용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차단 민간인 모니터링단 운영,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모니터링, 자료 수집 활동 등 불법사이트 감시 업무를 수행한다.

2018년 클린스포츠센터 접수 처리내역은 총 190건 접수 중 163건 처리되어 86%의 처리율을 기록하고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년 총 200건 접수 중 141건이 처리되어 70.5%의 처리율 보다 16%로 상승하였다. 그리고 2018년 클린스포츠센터의 추진성과로는 중대한 사건은 직접 조사하며, 이첩 사건은 지속적인 모니터링・해당 단체의 처리 적정성을 확인하여 공정하게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직원들을 클린스포츠센터에 배정하여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비위 행위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13. 클린스포츠센터 접수 처리 내역(2018)

구분	접수	완료	진행 중	성과분석 (전년대비 개선효과)
합계	190	163	27	총 190건 접수 중 163건 처리로 86% 처리율 성과
클린신고센터	65	59	6	
우편(방문)접수	31	28	3	
문체부 이첩	26	20	6	
국민신문고	54	43	11	
일반민원	14	13	1	

※ 출처: 2018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2019)

2.3.1.2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대한체육회의 스포츠인권센터 운영 사업은 선수인권보호 시스템강화 차원에서 스포츠관련 불공정 행위의 예방, 민원의 해결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문화의 정착, 스포츠인권침해(폭력・성폭력) 예방교육과 인권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로 명랑하고 건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2018년에는 스포츠인권 향상 사업으로 아래의 표와 같이 스포츠인권 교육 강화, 스포츠인권센터 운영,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표 14.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주요 추진내용

주요업무	내용
스포츠인권 교육 강화	국가대표 스포츠인권교육 의무화 운영 온라인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심! 명! 나!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스포츠인권센터 운영	스포츠인권침해에 대한 신고·상담 처리
스포츠인권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홍보 실시 스포츠인권 전문강사, 전문인력풀 운영

※ 출처: 2018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9)

스포츠인권교육 사업은 대한체육회, 시·도 체육회, 회원종목단체를 각 시행 주체로 하여 구분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신청학교 및 단체 별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도체육회는 시·도 체육회 소관 학교, 선수, 지도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회원종목단체는 종목별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2018년 스포츠인권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총 인원이 2017년 보다 2천 명 정도 증가하였다. 이는 2017년에 비하여 회원종목단체 주관 인권교육 실시 횟수와 참가인원이 증가한 결과이다.

표 15. 스포츠인권 교육 현황

구분	교육명	교육대상	횟수 및 인원				
			2014	2015	2016	2017	2018
대한체육회	찾아가는 인권교육	신청학교 및 단체 (교육청 등)	166회 6,991명	117회 7,827명	295회 10,103명	341회 12,098명	253회 12,431명
시·도 체육회	시·도별 인권교육	시·도 체육회 소관 학생, 선수, 지도자	146회 14,969명	181회 16,712명	122회 9,749명	192회 19,635명	198회 19,044명
회원종목단체	종목별 인권교육	종목별 선수, 지도자, 심판 등	97회 8,666명	163회 14,610명	122회 9,749명	118회 10,789명	208회 12,988명
합계			409회 30,626명	461회 39,149명	539회 29,601명	651회 42,522명	659회 44,463명

※ 출처: 2018 대한 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9)

스포츠인권센터는 전문 인력풀을 활용하여 시·도 체육회-회원종목단체교육,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폭력·성폭력 사전 예방 프로그램을 활용

하여 선수들의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 폭력·성폭력에 대한 신고, 상담, 교육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전국(동·하계)체육대회 및 종목별 선수권대회 기간 중 홍보관 및 경기장 순회 스포츠인권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스포츠인권센터 인지도, 스포츠 폭력·성폭력 인식 개선도 조사 및 각종 이벤트를 실시하였다. 스포츠인권센터에 접수된 폭력·성폭력, 기타 민원의 전체 건수는 2016년에는 신고 14건, 상담 416건 등 총 430건에서 2017년 총 551건으로 135건 증가하였다. 2018년에 들어 신고 건수는 21건으로 예년보다 증가하였으며, 상담사례 역시 621건으로 크게 늘어난 총 672건으로 기록되었다. 특히 성폭력 신고 및 상담 총 건수는 2017년 55건에서 2018년 93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것으로 미루어보면, 지속적인 인권교육으로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됨에 따라 신고 또는 상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시에 여전히 체육계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해 스포츠윤리 제3절 '스포츠윤리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16. 선수인권 침해 신고·상담 접수 현황 (단위: 건)

연도	폭력			성폭력			기타 민원			합계		
	신고	상담	소계	신고	상담	소계	신고	상담	소계	신고	상담	소계
2009	19	7	26	3	3	6	4	47	51	26	57	83
2010	34	114	148	5	11	16	47	285	332	86	410	496
2011	28	72	100	8	26	34	46	336	382	82	434	516
2012	39	83	122	8	21	29	13	296	309	60	400	460
2013	31	104	135	6	31	37	15	430	445	52	565	617
2014	24	127	151	9	48	57	49	380	429	82	555	637
2015	26	149	175	8	32	40	1	334	335	35	515	550
2016	11	162	173	2	22	24	1	232	233	14	416	430
2017	10	144	154	2	53	55	0	342	342	12	539	551
2018	5	240	255	6	87	93	0	324	324	21	651	672

※출처: 2018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9)

다음의 표는 지난 5년간의 스포츠인권에 대한 인지도 변화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스포츠인권센터의 운영과 함께 스포츠인권에 대한 인식이 점진적으

로 나아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표 17. 스포츠인권 인지도 (단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성)폭력 실태 인식개선도	54.0	56.1	62.2	66.4	68.8
스포츠인권센터 인지도	54.2	59.2	65.5	69.8	72

※ 주: 선수, 지도자, 학부모, 대회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출처: 2018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9)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접수된 폭력, 성폭력, 기타 민원의 신고 대비 징계비율을 살펴보면, 2018 전체 신고 대비 징계 비율은 61.9%로 2017년 대비 4.8%p가 감소하였다.

표 18. 스포츠인권센터 신고대비 징계 현황 (단위: 건)

연도	폭력		성폭력		기타민원		합계	
	신고	징계	신고	징계	신고	징계	신고	징계
2009	19	15	3	3	4	-	26	18
2010	34	16	5	2	47	1	86	19
2011	28	12	8	5	46	-	82	17
2012	39	14	8	5	13	2	60	21
2013	31	14	6	3	15	-	52	17
2014	24	10	9	7	49	-	82	17
2015	26	11	8	2	1	-	35	13
2016	11	7	2	-	1	-	14	7
2017	10	7	2	1	-	-	12	8
2018	15	10	6	3	-	-	21	13

※출처: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18)

대한체육회에서 선수, 지도자, 학부모, 대회관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인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실태 인식이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다는 응답자가 2018년에는 2017년 대비 2.4%p 상승하였다. 또한 스포츠인권센터 인지도는 2018년에는 전년도 대비 2.2%p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인권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성폭력의 근절은 다소 요원한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대한체육회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스포츠 현장에서의 성폭력은 감소하고 있어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의 근절에 있어서 고무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스포츠와 관련된 여러 사건·사고들은 국민적 우려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한체육회는 2010년부터 2년 단위로 「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선수·지도자들의 (성)폭력실태를 심도 있게 조사·분석함으로써 스포츠 인권향상을 도모하고 관련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2018년 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는 등록선수 및 지도자 1,201명을 대상으로 표본 추출 조사를, 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 791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 내용이며, 이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일반 등록선수 및 지도자들의 폭력 및 성폭력 경험 비율은 각각 26.1%와 2.7%이다.

표 19. 폭력 실태조사 결과(2018) (단위: %)

구분	2016	2018
	일반선수	일반선수
폭력 경험 비율	26.9	26.1
성폭력 경험 비율	3.0	2.7

※ 주: (성)폭력실태조사 연구용역은 2년마다 격년으로 실시
※ 주: 2018년 스포츠(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대한체육회 홈페이지)
※ 출처: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17)

일반 등록선수 및 지도자 (성)폭력 경험 비율은 지난 2010년도 조사 결과(폭력 51.6%, 성폭력 26.6%)에 비하면 현격하게 감소하였으며, 2016년도 조사 결과(폭력 26.9%, 성폭력 3.0%)와 비교해도 각각 0.8%p와 0.3%p 감소한 수치다. 폭력의 범위에는 신체적 피해, 언어적 피해, 정서적 피해, 의사결정 피해, 방관자적 피해를 망라하였으며, 성폭력의 범위에는 성희롱, 성추행, 강간 피해를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표 20. 운동부 일반선수 폭력피해 결과(2018) (단위: %)

구분	남자		여자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신체적 피해	13.2	86.8	13.8	86.2
언어적 피해	12.9	87.1	18.0	82.0
정서적 피해	16.3	83.7	11.1	88.9
경제적 피해	1.6	98.4	1.1	98.9
의사결정 피해	7.8	92.2	16.1	83.9
방관자적 피해	0.6	99.4	0.8	99.2

※ 주: (성)폭력실태조사 연구용역은 2년마다 격년으로 실시
※ 주: 2018년 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대한체육회 홈페이지)
※ 출처: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17)

<표 18>은 2018년 운동부 일반선수 폭력피해 유형을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이다. 피해 유형은 신체적 피해, 언어적 피해, 정서적 피해, 경제적 피해, 의사결정피해, 방관자적 피해로 나누었다. 신체적 피해는 폭행과 기합 및 얼차려 피해 문항을 포함하였고, 언어적 피해는 욕설, 협박, 놀림, 모욕적인 말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정서적 피해는 따돌림, 무시, 공포감이나 위협적 분위기를 의미한다. 경제적 피해는 돈을 억지로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경험을 묻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의사결정 피해는 심부름, 대신해주기, 음주강요, 흡연강요, 경기출전 제한, 자유 시간/외출/외박 제한, 훈련제외에 대한 문항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방관자적 피해라함은 폭력피해를 보고하였으나 묵인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남자 선수들 중, 신체적 피해가 ‘있다’라고 답한 비율은 13.2%이며, 신체적 피해가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6.8%로 나타났다. 여자 운동선수들 중 신체적 피해가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3.8%로 나타나며, 신체적 피해가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6.2%로 나타난다. 언어적 피해유형에서는 남자운동선수 중 언어적 피해가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2.9%이며, 여자 운동선수 중 18.0%가 언어적 피해가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정서적 피해 유형에서는 남자 운동선수 중 6.3%가 정서적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여자 운동선수 중 11.1%가 정서적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경제적 피해 유형에서는 남자 운동선수 중 1.6%가 경제적 피해를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여자 운동선수 중 1.1%가 경제적 피해가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의사결정 피해유형에서는 남자 운동선수 중 7.8%

가 의사결정 피해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여자 운동선수 중에서는 16.1%가 의사결정 피해가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방관자적 피해유형에서는 남자운동선수 중 0.6%가 방관자적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여자 운동선수 중 0.8%는 방관자적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표 21. 운동부 일반선수 성폭력피해 결과(2018) (단위: %)

구분	남자		여자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성희롱 피해	3.6	96.4	7.7	92.3
성추행 피해	0.9	99.1	3.8	96.2
강간 피해	0.4	99.6	0.4	99.6

※ 주 : (성)폭력실태조사 연구용역은 2년마다 격년으로 실시
※ 주 : 2018년 스포츠(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대한체육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결과보고서 게시 참고요망)
※ 출처 :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17)

2018년 운동부 일반선수 성폭력 피해를 유형을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이다.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남자 운동선수 중에서는 3.6%가 응답하였고, 여자운동선수 중에서는 7.7%가 피해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성추행 피해를 경험했다고 0.9%의 남자 운동선수가 응답했으며, 여자 운동선수 중에서는 3.8%가 성추행 피해의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강간 피해에서는 남자 운동선수 중 0.4%가 피해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여자 운동선수 중에서는 0.4%가 피해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2.3.1.3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기금 조성을 위한 체육투표권 발행사업과 관련 각종 비리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 운영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분산되어 운영되어 온 스포츠관련 각종 불법행위 제보에 대한 신고창구가 단일화 됨에 따라, 클린스포츠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한체육회의 클린스포츠센터와 스포츠인권센터는 스포츠관련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민원의 해

결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문화의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스포츠 인권침해(폭력・성폭력) 예방교육과 인권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로 명랑하고 건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하고 부정・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운영 사업은 조직, 경기, 회계, 입학, (성)폭력, 기타 민원 등의 영역에 대한 분야별 민원 접수 및 해결을 통해 체육계 자정활동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의 주요 업무는 불법사이트 및 불법행위자 제보관련 접수, 상담, 처리절차 안내, 불법행위 신고요령 및 포상제도 등 관련사항 안내, 신고상담 데이터 통계관리 및 상담일지 작성, 판매점 관련 부정행위 신고 접수 안내 등이다.

2.3.1.4 정부 체육조직의 변화

우리나라의 체육정책은 시대적 환경에 따라 변화하였고, 그에 따라 중앙정부의 체육조직도 빈번하게 변화하였다. 먼저 1980년대 이전에는 '체력은 국력'이라는 구호 아래 체육진흥을 국민통합의 원동력이자 국가발전의 기본으로 인식하여 정부주도로 전국체전 중심의 전문체육 육성에 총력을 기울였다. 1980년대는 중반에는 1982년 프로야구의 개막과 함께 1986년, 1988년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1990년대는 국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생활체육을 확대하였다.

표 22. 정부의 체육정책방향 변화

시기	정책 방향
1980년대 이전	'체력은 국력'이라는 구호 아래 체육진흥을 국민통합의 원동력이자 국가발전의 기본으로 인식하여 정부주도로 전국체전 중심의 전문체육 육성에 총력을 기울임
1980년대 이후 ~1990년대 중반	1982년 프로야구의 개막과 함께 1986년, 1988년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1990년대 국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생활체육을 확대
1998년	IMF를 맞아 체육 분야의 지원이 대폭 축소
2000년 이후	국제스포츠경기대회에 관심과 함께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한 복지서비스의 개념으로 소외계층으로 확산하여 국민 모두의 삶의 질과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결정적 권리로서의 체육정책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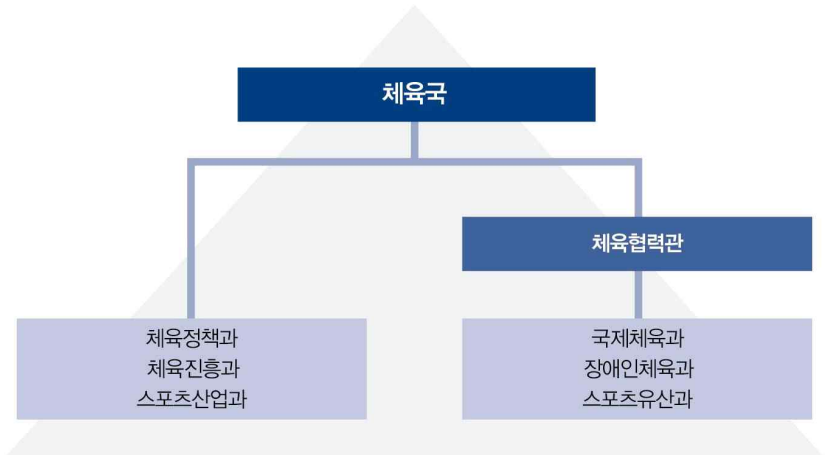
스포츠와 관련해 1982년 체육부가 신설된 이후, 1990년 청소년체육부를 거쳐 1993년 문화체육부가 발족되었다. 1998년에는 문화관광부가 생겨나고, 2008년 관광분야까지 다루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출범하여 현재에 이른다.

표 23. 중앙정부의 체육조직 변화

변경일	변경 내용
1982. 03. 20.	체육부 신설(1실 3국 10과 3관 4담당관 187명) - 기획관리실, 체육진흥국, 체육과학국, 국제체육국
1990. 12. 27.	체육부 ⇒ 체육청소년부로 개칭
1993. 03. 06.	문화체육부 발족, 3국 9과 98명 - 체육정책국, 체육지원국, 국제체육국
1994. 12. 23.	3국 9과 98명 ⇒ 2국 7과 77명, 체육지원국 폐지
1998. 02. 28.	문화관광부 발족, 2국 7과 77명 ⇒ 1국 4과 56명, 국제체육국 폐지
2008. 02. 29.	문화체육관광부 신설, '팀'제가 '과'제로 변경 1국 5과 50명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조직은 체육국내 체육협력관 및 체육정책과, 체육진흥과, 스포츠산업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육협력관에는 국제체육과, 장애인체육과, 스포츠유산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6.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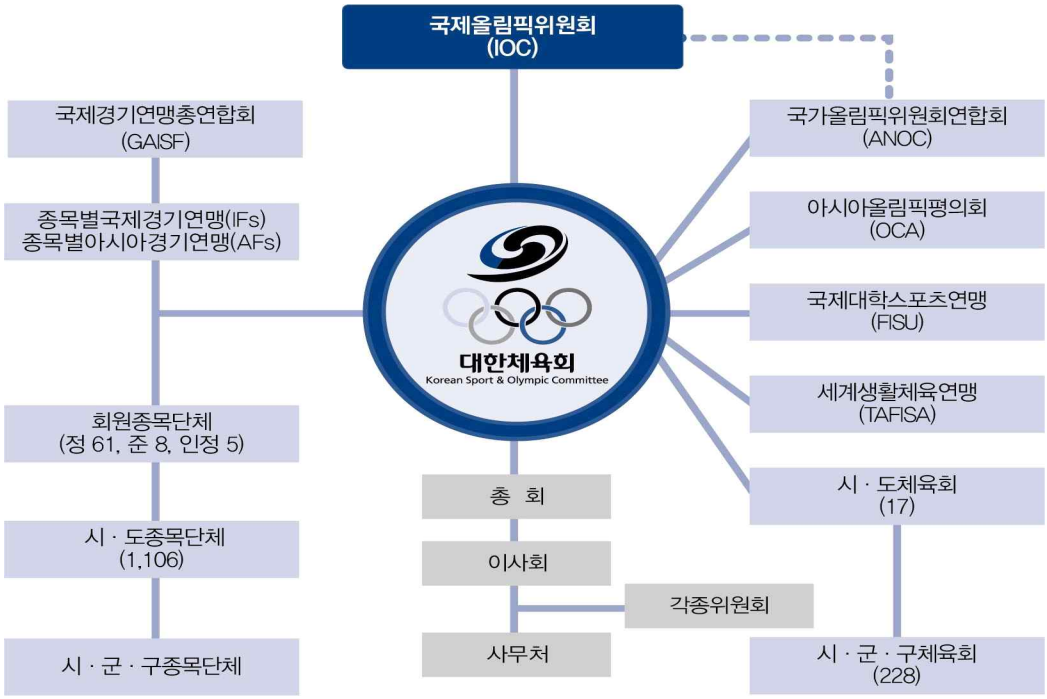
체육국은 체육진흥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체육유공자 지원, 국가대표선수 육성, 체육인 복지, 생활체육 활성화, 전국체육대회 개최지원, 스포츠산업 활성화, 국제체육 교류, 장애인 체육환경의 조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체육국 내 체육협력관은 국제체육교류 및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장·단기 종합계획 수립·추진, 국제대회 유치·개최 및 참가지원, 국가 간 국제기구와의 체육교류, 태권도의 진흥 및 세계화, 장애인의 체육환경 조성 및 지원체계 개선 등을 주요 업무로 추진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인 각 시·도는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체육국 등의 국 단위 수준에서 체육진흥과, 체육정책과, 체육지원과, 체육과, 스포츠산업과 등을 두고 있다.

그 하부 단위로 체육정책, 체육진흥, 생활체육, 체육시설, 스포츠마케팅, 스포츠산업 등을 전담하는 하부 팀 또는 담당자를 중심으로 체육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부산, 대구, 세종은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 체육시설 관리사업소를 설치·운영 중이고, 광주, 경기, 전남은 민간위탁 관리형태의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도 체육행정, 체육시설, 체육진흥, 생활체육, 주민자치 등을 위해 매우 다양한 형태의 체육조직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체육단체로는 대한체육회가 있다. 1920년 조선체육회로 창립되었고, 1968년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학교체육회를 흡수하였다. 2009년 대한올림픽위원회와 완전 통합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에서의 지위를 획득하였고, 2016년에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통합 이후 대한체육회는 2018년을 기준으로 74개(정회원단체 61개, 준회원단체 8개, 인정단체 5개)의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 회원종목단체 1,106개를 관장하고 있다.

대한체육회의 예산은 2018년 예산은 3,285억 원(국민체육진흥기금, 3081억원, 기타보조금 4.7억원, 자체수입 198억원)이며, 2016년 통합된 시·도 체육회 예산 5,020억 원, 시군구 체육회 예산 5,255억 원까지 합하면 1조 3560억 수준이다.

그림 7.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구조



대한체육회 외에도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스포츠안전재단 등이 있다. 우리나라 체육진흥을 위한 재원은 크게 중앙정부의 국고예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운용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 등 민간체육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자체재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정부의 체육재정은 국고(일반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년 국고의 비중보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예산은 문체부 체육국의 국고예산, 국민체육진흥기금, 기타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의 교부세·지원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지방행정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행정에 중점을 두게 됨으로써 지역 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생활체육교실 등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대한 지원이 증대하고 있다.

2.3.2 국내 스포츠 관련 정부 및 비정부 기구에 대한 평가

2019년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다양한 형태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7차에 이르는 권고문을 발표하였다. 제1차 권고문(2019.4.19.)에서는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확립과 정부 및 체육계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의 전면 혁신 권고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내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해온 성폭력, 신체적・언어적 폭력, 학습권 침해 등 인권침해 실태가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기에 구축된 국가주의적, 승리지상주의적 스포츠 패러다임에서 기인하는 구조적, 제도적 차원의 문제였다. 그 해에는 특히 심○○ 선수 등의 피해자들이 체육계 안팎의 부당한 압력을 이겨내고 용기 있게 스포츠 성폭력 실태를 고발하였으나 대한체육회나 회원종목단체 등의 대응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신고조차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신고하는 경우에도 2차 피해 등의 불이익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권고문을 통해 스포츠혁신위원회는 그동안 스포츠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 구축과 기존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예방 및 대처 시스템의 전면적 혁신을 권고하였다. 여기에는 유명무실했던 대한체육회의 '클린스포츠센터'와 구별되고, 가해자와 이해관계자의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별도의 기구 신설에 대한 필요성 역시 제기되었다. 이러한 혁신안은 현재의 스포츠 인권 관련 조직과 인권보호 시스템이 안고 있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에 기초한다.

첫째, 운동선수의 권리보호정책의 부처 간 비현실적 협조체계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과 선수를 대상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스포츠산업진흥법」 등의 규정에 따라 전문체육, 생활체육, 특수체육육성을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부, 여성가족부, 문체부 등 여러 기관에서 청소년의 운동과 관련된 업무를 관할한다. 이는 조직의 시대적 변천과 정권의 교체 등에 따른 조직개편의 결과라고 보인다. 이러한 구조로 인하여 부처 간 협조체계가 긴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유기적인 업무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를 파생시킨다.

둘째,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 대책과 한계가 있다. 문화체

육관광부는 주무부처로서 국가의 스포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운영 실태를 관리·감독하며 스포츠 활동 참가들의 기본적 인권이 정부차원에서 보장해야할 책임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임무에도 불구하고, 매우 수동적이며,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로 인해 스포츠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인권보호는 요원한 과제가 되었다.

셋째, 인권침해, 차별, 부정, 부패에 관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관한 주요한 논쟁은 대한체육회와 올림픽위원회의 통합적 구조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가 통합되어 있어 올림픽 경기력 제고에 목표가 치중되어 있다. 스포츠 인권, 학생선수의 학습권, 생활체육의 엘리트화, 과도한 엘리트스포츠 지상주의에 대한 폐해 등의 문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거버넌스는 일반적으로 구조, 통치구조, 조직통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조직을 형성하고, 독단적 경영,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감시와 감독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대한체육회는 연간 4천억 원에 가까운 예산 대부분을 정부와 공공기금을 통해 지원받고 있다. 명실상부한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해온 중대한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 및 부조리를 해소하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10] 2014년 본격화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2016년 통합 체육회로 출범함으로써 엘리트스포츠의 중심의 패러다임을 공고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국내 스포츠의 대표 단체이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체육회 중심의 스포츠 조직은 인권침해, 부정과 비리, 스포츠인들의 사회적 고립, 스포츠 조직의 불건전성 등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11]

이러한 까닭에 스포츠 거버넌스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체육계 내부로부터 독립된 전문성, 신뢰성을 갖춘 스포츠 인권기구를 설립하는 것이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IOC 헌장의 ‘스포츠는 인권이다’라는 인식을 기본으로 국내 스포츠 전반의 패러다임을 점검하고 분석했다. 그 결과 국내 스포츠 분야의 성폭력,

10) 상게자료, 1면.
11) 상게자료, 4면.

신체를 포함한 언적 폭력, 학습권침해 등 인권침해 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있으며,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와 공공당국이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스포츠 혁신위원회는 특히, 다양한 스포츠 현장에서 성폭력 등이 발생할 때, 가해자 조치 및 피해자 보호 역할에 대한 1차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대한체육회와 산하 경기단체 등 체육계 내부의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2019년 5월 7(화)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첫 권고문을 발표했는데, 이는 체육계의 내부로부터 독립된 '스포츠 인권보호기구' 설립을 권고하는 것이었다. 최근 '미투' 사례에서도 드러나듯 심각한 피해를 겪으면서도 다수의 피해자들은 지도자의 절대적 권한, 사건 발생 후 묵인, 방조 분위기 등으로 인해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고하는 경우 2차 피해 등 불이익에 노출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단체에 대한 감시 감독 책임과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의 다수가 아동, 청소년기의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등에서 효과적인 학생운동 선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반성과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감시 감독할 책임을 갖는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주어야 한다. 이 기구는 무엇보다도 대한체육회 내부의 절차로부터 분리된 자율적, 독립적, 민주적인 기관으로, ① 스포츠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②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 ③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을 위한 정례적 연구 및 조사, ④ 스포츠 관련 성평등(젠더) 및 인권교육 등의 제도화 및 입체적 프로그램 개발, ⑤ 국내외 협력 연계망(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스포츠 인권 및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셋째, 일부 의미 있는 제도 개선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및 사법기구 등 국가기구 전반에서 스포츠 성폭력과 학대 등의 근절과 예방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

2.4 스포츠 관련 가이드라인 및 지침 등에 대한 분석 및 평가

2.4.1 스포츠 관련 가이드라인 및 지침 등에 대한 분석

2.4.1.1 국가인권위원회

1)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 및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국가 차원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으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둔다(「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2) 국가인원위원회 스포츠인권 헌장

스포츠 인권헌장은 스포츠의 진정한 의미를 새롭게 규명하고자 한다. 전근대적인 인권 침해가 없는 스포츠, 누구나 즐겁게 참여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스포츠, 신체활동을 통해 나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삶의 풍요로움을 증진시킬 수 있는 스포츠, 이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의 스포츠임을 선언하고 있다. 스포츠인권 헌장은 체육정책 관계자, 지도자, 운동선수 및 시민들이 알아야 할 스포츠의 참 의미와 신체활동의 사회적 역할을 천명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스포츠인권 헌장은 스포츠 활동에서 누려야 하는 인권과 이를 지키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 방향을 담고 있다.

3)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은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폭력, 성폭력, 학습권 침해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스포츠인권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스포츠 분야 폭력이란 훈련을 빙자하여 일어나는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폭력 등 모든 종류의 폭력을 의미한다. 스포츠 분야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공동체 구성원 각자의 행동규범을 숙지하고 실천해야 한다.

스포츠 분야 성폭력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모든 공간과 관계에서 발생하는 강간이나 성추행,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성적 농담 등 자신의 몸과 성에 대한 자율성과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종류의 폭력을 의미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예방정책>을 수립, 교육하고 대상별 <행동규범>을 마련해야 하며, <성폭력 예방과 대처 매뉴얼>을 만들어 실천해야 한다.

학생선수의 학습권이란 학교에 다니며 수업을 받을 권리뿐 아니라 교육을 통해 인격적, 지적, 기능적 향상을 이룰 권리,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 청소년의 학습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습권 보호 정책>을 마련하며 <학습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스포츠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① 스포츠 인권정책 수립, ② 대상별 행동규범 마련, ③ 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학습권 보호 관리체계 구축, ④ 지도자 검증 기준 마련, ⑤ 인권 침해 시 적용할 신고절차와 대응체계 마련, ⑥ 스포츠 인권정책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과 평가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4)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선수지도 매뉴얼

선수인권이란 모든 선수가 인간 존재의 보편적 가치로서 지니게 되는 기본적인 자유와 동등한 권리를 말한다. 선수인권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폭력 및 성폭력 근절뿐만 아니라 선수와 지도자의 역량강화를 통한 선수권익 증진활동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선수폭력이란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등에 의하여 선수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선수성폭력은 지위와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선수가 원치 않는 성적행위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 유인하는 행위로, 성을 매개로 선수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말하며 성희롱, 성추행, 강간으로 구분된다.

〈선수지도매뉴얼〉

인권친화적 지도자란?

- 훈련, 경기 등 운동부 생활 전반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선수의 인권의식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예, 주기적인 인권교육 등)을 기울여야 합니다.
- 선수의 고충을 파악하고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상담기회를 갖도록 합니다.
- 항상 선수가 닮고 싶은 귀감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 지도자 스스로 부지불식간에 선수인권 침해행동을 하지 않도록 성찰적 노력을 기울입니다.
- 선수 폭력 및 성폭력 발생 시 '선수(성)폭력 발생 시 처리 절차'에 의거 신속한 대응을 하도록 합니다.

신바람 나는 선수 관리

- 스포츠퍼슨십 : 정정당당해요
- 리더십 : 스스로 할 수 있어요
- 심리기술 : 불안하지 않아요
- 생활기술 : 생활도 잘할 수 있어요.
- 학습환경 : 공부도 잘해요

지도자 역량 강화하기

- 갈등대처 : 서로 이해하자
- 선수관리 : 선수와 소통하자
- 계획적 지도 : 효율적으로 운동하자
- 리더십 : 함께 이끌어가자
- 선수상담 : 같이 고민하자

5) 더 즐거운 스포츠 활동을 위한 인권가이드

- 모든 아동은 안전한 환경에서 놀고 즐기고, 문화적·예술적 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
- 모든 사람은 자신의 조건에 맞는 스포츠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발전시킬 자유가 있다. (유네스코 체육 교육과 스포츠에 관한 국제헌장)

6) 즐거운 스포츠를 위한 인권 행동의 첫걸음

- 어린이들에게 스포츠는 '놀이'이며, '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 그러나 어떤 어린이들에게는 어른들의 과도한 기대와 강요 때문에 스포츠는 즐거움이 아니라 짐이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 어린이들이 스포츠를 하는 것은 어린이들의 즐거움을 위해서입니다.
- 어린이들이 더 안전하고 즐겁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 문화를 보다 인권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스포츠 참여자들이 기억해 할 인권 기본 원칙은 무엇일까요?

<u>선수(어린이)</u>

- 우리는 경기 규칙을 잘 지킵니다.
- 우리는 심판의 결정을 존중하며, 심판의 결정에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정해진 절차를 통해 의사표시를 합니다.
- 경기 중 감정에 치우쳐 심판이나 상대편 선수를 약 올리거나, 욕설, 신체적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편에 대한 욕설이나 폭력은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고 인권침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 상대편이라도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면 진정어린 박수를 보냅니다.
- 코치와 팀 동료, 상대편 선수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협력합니다. 그들이 없다면 우리가 경기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 우리가 경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이지 지도자나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승리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친구들과

의 협동심, 어려움을 이겨내는 도전정신과 성취감입니다.

-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여자이거나 남자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운동의 기량이 뛰어나거나 그렇지 않거나 모두 안전한 환경에서 아무런 차별 없이 스포츠를 즐길 권리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지도자(코치)

- 아이들은 코치나 부모가 아닌 선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경기에 참여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합니다. 경기에서의 우승은 즐거움의 한 부분입니다.
- 아이들이 경기 중 실수나 우승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하거나 혼내지 않습니다.
- 운동 연습량과 기량의 발전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적절한 만큼만 기대하고 요구합니다.
- 경기 규칙과 스포츠 정신에 입각하여 경기에 임하며, 아이들도 이에 따르도록 가르칩니다.
- 아이들의 안전과 연령, 역량에 적합한 운동 시설과 장비를 갖춥니다.
- 상대편 선수나 코치, 부모, 언론, 심판을 막론하고 경기와 관련 있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프로다운 면모를 갖고 대합니다. 선수들에게도 이러한 태도를 가르칩니다.
- 선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부상자나 아픈 사람이 생겼을 때는 즉시 의료진의 조언을 받습니다.
-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나, 선수들의 기량 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린 선수들과의 신체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관중)

- 아이들이 스포츠를 하는 것은 부모(관중)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의 즐거움을 위한 것임을 항상 기억합니다.
- 경기의 승리에 집착하지 않고 아이들의 열정과 노력을 응원합니다.
- 아이들이 경기 규칙에 따를 수 있도록 지지해 주고, 의견이 다르거나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화를 내거나 조롱하지 않습니다.

- 그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폭언과 폭력은 스포츠 활동 중 용인될 수 없습니다.
- 심판의 결정을 항상 존중하며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따르도록 가르칩니다.
- 경기를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들과 행정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그들의 도움이 없이는 아이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 연령이나 성, 종교적 문화적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스포츠를 누릴 권리가 있음을 잊지 않습니다.

<u>언론</u>

- 성인 스포츠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각종 스포츠 경기도 적극적으로 보도합니다.
- 성인이나 프로 경기와 청소년들의 경기의 차이점을 인식합니다.
- 단편적 사건・사고만을 부각하여 보도하지 않습니다.
- 아이들의 페어플레이와 순수한 열정을 중심으로 보도합니다.
- 보도내용 중 성차별적인 용어나 내용이 없는지 주의하고, 보도 시간이나 기사의 분량 면에서도 남성과 여성 스포츠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u>교사</u>

- 학생들이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서 기본적인 기량을 쌓을 수 있도록 북돋아 주고 한 가지 영역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 학생들이 스포츠 정신에 따라 행동하고 스포츠 활동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긍정적인 면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 코칭 기술이나 청소년의 신체발달과 같은 지식들을 꾸준히 학습합니다.
- 어린이 경기와 프로 경기의 차이점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 연령이나 성, 종교적 문화적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권리와 가치를 존중합니다.

2.4.1.2 대한체육회

①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선수지도 매뉴얼

1. 스포츠인권 이해하기

1) 선수인권이란?

- 선수인권이란 모든 선수가 인간 존재의 보편적 가치로서 지니게 되는 기본적인 자유와 동등한 권리를 말합니다. 선수인권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폭력 및 성폭력 근절뿐만 아니라 선수와 지도자의 역량강화를 통한 선수권익 증진활동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선수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이해

- 선수폭력의 개념

  선수폭력이란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악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등에 의하여 선수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 선수성폭력의 개념

  선수성폭력은 지위와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선수가 원치 않는 성적행위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 유인하는 행위로, 성을 매개로 선수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말하며 성희롱, 성추행, 강간으로 구분됩니다.

②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 예방 가이던스 지도자용

Ⅰ 폭력

1. 폭력의 정의

권력(힘)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약한 사람에게, 상대를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01 스포츠 폭력이란?

스포츠 영역에서 스포츠인(선수, 지도자, 학부모,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구타하거나 상처가 나게 하는 것, 어느 장소에 가두어 두는 것, 겁을 먹게 하는 것, 강요하는 것, 물건이나 돈을 빼앗는 것, 사실 또는 사실이 아닌 일로 인격이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남들 앞에서 창피를 주는 것, 계속해서 반복하여 따돌리는 것 등

02 폭력의 구성요소

- 힘의 불균형 : 관계 안에서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음. 주로 강자가 약자를 향해 폭력을 행사
- 반복성 : 피해자의 의견과 무관하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
- 행위성 : 의도나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행해지는 모든 폭력

03 폭력의 유형

- 신체적 폭력 : 신체적 트라우마 또는 부상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를 가하거나 선수의 존엄성 및 자존감을 약화시킬 수 있는 행위
- 방관자 입장의 폭력 :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외한 집단 구성원들이 폭력 행동을 무시하거나 모른 체 하기. 혹은 폭력을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지지하는 것
- 정신적 폭력 : 몸에 상처가 나지는 않지만 그에 못지않은 두려움과 좌절을 느끼게 하는 심리적, 감정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

04 폭력의 사례

- 지도자의 폭행 지시
- 사이버 폭로

2. 예방법

01 스포츠 폭력의 원인

<u>폭력의 재생산</u>

- 지도자, 선수들의 보수적인 성향과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 대물림 됨

- 무의식적, 의식적 폭력의 악순환 묵인
- ‘일이 커질 것 같아서’, ‘불이익이 있을까봐 염려되어서’,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보복당할 것 같아서’ 등의 이유로 묵인 정당화
- 경기력 향상, 정신력 강화, 집단 응집력 강화의 명목으로 폭력이 정당화 됨
- 지도자, 동료, 선후배 사이의 권위주의적 위계질서에 의해 정당화 됨

02 스포츠 폭력 예방 행동지침

<u>경기장 및 훈련장</u>

- 경기력 향상 또는 팀의 단합을 이유로 기합이나 가혹행위(구타와 욕설)를 하지 않는다.
-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

<u>합숙 및 일상생활</u>

- 지도자의 연락처(전화, 이메일)를 반드시 선수와 그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3. 대처법

01 폭력 사건 피해 발생 시 처리절차

사건 발생 > 사건 신고 > 초기 대응 및 긴급조치 > 사건 조사 및 처리 > 사후관리

02 학교폭력 사건처리 유의사항

Ⅱ 성폭력

1. 성폭력의 정의

01 스포츠 성폭력이란?

- 스포츠에 참가하는 스포츠인(선수, 지도자, 학부모, 관계자 등)이 자신의 힘과 권력,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신체적 접촉, 언어적 성희롱,

강제추행, 음란성 메시지, 성적 행위 강요와 같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

- 성적 자기결정권
- 개인이 사회적 분위기나 타인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할 권리

02 성폭력의 유형

- 신체적 성폭력: 신체적 트라우마 또는 부상을 야기할 수 있는 성적인 폭행을 가하거나 개인의 존엄성 및 자존감을 약화시킬 수 있는 신체적 성학대 행위를 하는 것(강간, 성추행)
- 정신적 성폭력: 성적인 말과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 혹은 기타 행위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나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 촬영하여 저장, 유포, 유포협박, 전시, 판매하는 등의 사이버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힘
- 2차 피해: 피해자가 속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기, 소문 퍼트리기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

03 성폭력의 사례

- 불쾌한 사진 촬영
- 디지털 공간 내 성적 괴롭힘

04 성희롱의 오해와 진실

Q1 성희롱은 사소한 문제다?

Q2 성희롱은 무시해버리면 그만이다?

Q3 성적인 농단, 신체 접촉은 운동부의 활력소가 된다?

Q4 성희롱은 개인 사이의 일일 뿐이다?

Q5 성희롱은 여성의 신체노출로 인해 발생한다?
Q6 단지 친밀감의 표현인데 과민반응 아냐?

2. 예방법
01 스포츠 성폭력의 원인
- 힘의 차이, 성차별적 문화, 왜곡된 성 인식

02 스포츠 성폭력 예방 행동지침
- 경기장 및 훈련장
- 합숙 및 일상생활

3. 대처법
01 성폭력 사건 피해 발생 시 처리절차
사건 발생 > 사건 신고 > 상황 신고 > 사건 조사 및 처리 > 사후관리

02 2차 피해
2차 피해의 양상
- 지도자, 관리자에 의한 2차 피해 양상
- 가해자에 의한 2차 피해 양상
- 동료 등 조직 구성원에 의한 2차 피해 양상

2.4.2 스포츠 관련 가이드라인 및 지침 등에 대한 평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인권 헌장,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선수지도 매뉴얼, 더 즐거운 스포츠 활동을 위한 인권가이드, 즐거운 스포츠를 위한 인권 행동의 첫걸음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실행하고 있다. 대한체육회에서도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선수지도 매뉴얼,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 예방 가이던스 지도자용 등의 스포츠 관련 가이드라인 및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인권위원회 및 대한체육회의 가이드라인은 단순한

설명이나, 인식의 개선을 유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성폭력, 성추행, 폭력에 관한 인식개선을 유도할 경우, 그 심각성에 대한 현실적인 교육, 법적 처벌 엄중함, 피해자들의 사례, 학생, 코치, 부모의 삼각구조와 관련된 문제점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향점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스포츠관련 가이드라인 및 지침에 관한 문제는 크게 인권 문제와 폭력의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스포츠 인권과 폭력의 문제, 체육특기자의 학습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4.2.1 인권문제

현재 엘리트 체육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학교 스포츠현장에서는 선수의 수업 결손을 묵인, 방조, 조장하기도 하며, 성적 조작, 약물 복용, 폭력 등 각종 일탈 행위가 나타나고 있으며 단기적인 경기 성적에 집착하는 분위기에 힘입어 비인간적인 훈련, 지도자 및 선배의 구타 및 체벌도 일선 지도자 및 학부모의 암묵적인 인정 하에 만연하고 있다. 또한 진학을 위한 승리지상주의의 현실과 어른들의 욕심 속에서 어린 학생 선수들은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거부당하고, 학생으로서의 학습권도 포기당해 왔다고 할 수 있다(류태호, 2004). 그리고 천안 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 참사, 학습권의 인정을 요구하며 수영 국가대표팀 합숙훈련에서 이탈한 장희진 선수 사건, 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의 구타 사건 등 일련의 사건은 우리나라의 엘리트 스포츠의 심각성을 명확하게 나타내 주고 있다. 한편으로는 구타와 체벌과의 모호한 입장을 내세워 구타를 정당화 시키려하는 일부 지도자들도 있다.

우리 헌법은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제11조(법 앞의 평등/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31조(교육받을 권리), 제32조(근로의 권리),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6조(보건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체육의 영역에서는 그 기본권이 유린되고 있다.

학생선수를 비롯한 체육계 인권 침해 문제는 기본적으로 현 체육계를 지배하는 소위 ‘엘리트 체육’ 패러다임과 구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엘리트

체육은 1) 국가 주도의 통제와 관리 2) 소수의 제한된 엘리트 운동선수 육성 중심 3) 체육영역(생활, 학교, 엘리트) 간 불균형과 단절을 그 특징으로 한다(류태호 외, 2003). 1970년대 이래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수립되고 현재까지도 그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있는 엘리트 체육 정책과 구조는 한국 체육계에 빛과 그림자라는 분명한 이중적 측면을 야기해왔다. 이에 대해 류태호 외(2003)는 한국 체육시스템이 소수의 엘리트 선수에게 물적 자원을 집중 배분함으로써 이들의 운동기량을 효과적으로 성장시키는 데에 기여했지만, 잠재된 풍부한 인적자원의 사용을 원천 봉쇄하고, 선발된 선수들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한편 합숙훈련, 수업결손 등으로 인한 행복을 박탈하는 풍토를 조성해왔다고 비판한다. ‘국가주도 엘리트 체육’으로 명명되는 한국 체육계 구조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가치는 ‘무한경쟁’과 ‘승리 지상주의’이다. 이러한 가치에 기반 해 경쟁과 승리를 위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방법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되었고, 이 과정에서 개인의 자율권 제한이나 심각한 인권 침해들이 무수히 발생되어 왔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러한 구조적 병폐나 개인의 인권 침해가 ‘운동을 통한 성공’ 혹은 ‘국위선양’을 위한 정치적 대가로 감수해야 하는 것인 양 묵인되거나 수용되어 왔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엘리트체육은 선진국의 스포츠정책과는 다르게 국가 주도로 학교운동부라는 시스템으로 선수육성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주도적 엘리트체육양성 시스템은 1970년대 박정희 정권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스포츠는 국가발전과 국위선양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국가 주도적 엘리트 체육은 국가의 통제와 관리, 소수의 제한된 엘리트선수육성, 체육영역(생활, 학교, 엘리트)간 불균형과 단절을 그 특징으로 한다(류태호 외, 2003). 1970년대부터 약 40년간 지속된 국가주도의 스포츠정책은 1988년 서울올림픽 4위, 2004년 아테네올림픽 9위, 2008년 북경올림픽 7위, 2012년 런던올림픽 5위라는 괄목할만한 결과와 월드컵 4강이라는 성적을 통해 한국을 세계 10위권의 스포츠강국으로 발전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승리’에만 목적을 두어 학생선수를 ‘운동’만 하는 기계로 전락시켰다. 이에 따라 스포츠에서의 페어플레이, 스포츠맨십 등의 사회성교육이 배제되어 비교육적, 반인권적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류태호, 2005; 홍덕기, 류태호, 2007).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류태호 등(2003)은 한국 체육시스템이 소수의 엘리트선수에게 물적 자원을 집중 배분함으로써 이들의 운동수행능력을 효과적으로 성장시키는 데에는 기여했지만, 잠재된 인적자원의 사용을 원천 봉쇄하였으며 선발된 선수들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한편, 합숙과 수업결손 등으로 인해 행복추구권이 박탈당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실질적으로 2000년을 기점으로 학습권 박탈, 합숙소 화재, 학교운동부 폭력 등 학교운동부와 관련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학생선수들의 인권(건강권, 학습권 등)보호를 위한 대안적 정책들이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운동선수 육성은 체육특기자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에서 '운동부'라는 명칭으로 기량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학생선수 혹은 체육특기자(생)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학교 간 경기'를 통해 이들을 서열화함으로써 상위 선수들에게 상급학교 진학의 특혜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체육특기자제도를 통해 학원스포츠가 운영되고 있다(조남용, 이영국, 2013). 체육활동은 활동영역과 활동목적에 따라 생활체육, 학교체육, 전문체육으로 구분된다. 학교체육은 교육제도 내에서 행해지는 신체활동을 통한 교육으로 '정규 체육수업'과 '과외 체육활동'으로 나뉜다. 전문체육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우월성을 추구하는 전문영역으로서 일반적으로 엘리트체육이라 불리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전문 운동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08). 전문체육의 영역은 대한체육회의 경기단체에 등록한 '아마추어스포츠'와 프로스포츠 협회에 등록한 '프로스포츠'를 의미하지만,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적 엘리트체육 육성제도에 따라 학교운동부도 전문체육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2.4.2.2 폭력의 문제

기존의 연구를 보면 과거 운동선수의 집단 반발로 야기된 선수폭력 문제가 많다. 현재 많은 선수들이 지도자 및 선배에 의해 가혹행위, 얼차려, 구타 등 폭력행위에 노출되어 있다. 체육계의 폭력은 엄연히 존재하며 선수의 성별, 학교급, 운동유형, 운동시간, 운동빈도, 운동기간, 입상실적, 운동부원 수, 코

치, 코치 연령, 코치 학력에 따라서도 신체적 학대 정도가 차이가 있다. 체육계 전반에서 선수 집단의 경기력을 향상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체벌이 최선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김응식, 2001). 이런 문제에 의거하여 류태호(2004)는 선수 중심의 학원스포츠는 엘리트 선수의 양성에서 운동에 특기를 가진 학생들의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인간주의 교육으로 거듭나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선수폭력은 특성상 지속적이고, 가학적으로 이루어진다. 학생 선수관련 선행 연구(류태호,2004; 백종수, 2004; 강창곤, 2004)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사회에서 학생 선수는 정규 수업이나 학과 공부 보다 운동부에서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다. 그 결과 선수는 선배 및 감독, 코치와 필연적으로 동일한 공간에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 경우 폭력이 발생한다면 그 유형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폭력의 행사가 소수로 구성된 단위 운동부 수준에서 이루어지므로 소수의 관계자들이 묵인하게 되면 쉽게 은폐되는데 이 경우 폭력의 정도 및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는 비교적 소규모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대하는 인물에 의해 발생된다는 점, 폭력의 정도가 점진적으로 높아질 개연성 하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가정폭력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우려되는 상황은 이런 경향은 해마다 계속되어 관행으로 굳어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선수폭력이 주기적으로 재생산됨에 따라 ‘맞던 하급생’이 이후 ‘때리는 상급생’으로 성장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된다. 이 경우 한 개인이 선수폭력의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되어 폭력에 대한 공범심리가 단위 운동부 내에 만연하게 되며 나아가 이런 현상은 선수의 진학과 더불어 상급학교 및 실업과 프로팀에도 만연해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선수 구타와 가혹행위는 현재 체육계 전반의 하위문화 내에 구조화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선수들의 폭력행위의 파급효과는 매우 강하며 다양한 국면으로 나타난다. 이는 선수 개인에게 대한 파급효과와 사회적 파급효과로 구분된다. 선수 개인에 대한 파급효과로는 지속적 폭력에 반복 노출된 결과 발생되는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의미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의 결과(김정란, 2003; 서영숙 & 박옥임, 2003; 김소명, 2004; 박형원, 2004; 장덕희, 2004)에 따르면 한 개인이

장기간 폭력에 노출될 경우 정서적 악영향을 초래하여 정상적인 심리상태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유소년기의 지속적인 폭력에 대한 노출은 정신적 파괴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폭력에 관한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신체적 폭력: 단체생활, 훈련과정 및 성적부진의 이유로 신체에 대한 체벌 및 구타하는 행위
- 언어적 폭력: 지도자나 운동선수 선배들이 학생 운동선수에게 언어적으로 인격모독 및 굴욕감을 주는 행위
- 성적 폭력(성추행): 지도자나 운동선수 선배 등이 학생운동선수에게 신체적으로 접촉하여 성적수치심을 야기하는 행위
- 학습권 침해에 관한 폭력: 각종훈련 및 대회출전을 이유로 학생의 고유권한인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

2.4.2.3 학생선수 기숙사 합숙훈련에 있어 인권 유린 문제

2008년 「중고교 학생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는 중, 고등학생의 78.8%가 폭력을 경험하고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주로 훈련장소였다. 그러나, 선배들에 의하여 훈련과 관련이 없는 폭력도 합숙장소나 훈련장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한 가지 이상의 (넓은 의미의) 성폭력 경험은 응답자의 71.8%를 차지하는데 이를 성희롱, 추행, 강간 등에 한정하더라도 63.8%에 이른다. 이렇게 기숙사나 합숙소가 이러한 폭력이나 성폭력의 주요한 공간이 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1962년 대학특기자 제도 도입, 1964년 동경올림픽 준비과정에서의 군대식 훈련 방식과 엘리트스포츠의 산실인 태릉선수촌 건립 등 국가주도 체육활성화 정책에 기반한다. 합숙소는 미약한 체육저변을 넘어서기 위한 최고의 방편으로 인식되었던 우리나라 스포츠 경쟁력의 인큐베이터 역할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합숙소 내 가혹한 훈련과 인권침해로 인해 고통 받는 선수들이 속출하였으며 이런 선수들이 이탈하거나 인권적 처우를 외치기라도 하면 정신력 또는 인성이 부족한 선수로 매도되기 일쑤였다. 국

가, 지역 그리고 학교 간 대항전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승리하기 위한 몸(체력)을 만들고, 기량과 팀워크를 쌓아 올려서 승리와 메달을 획득하고, 선수 개인의 성공만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 학교의 '위상을 드높인다'는 명목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합숙소로 인해 선수들은 '합숙소-훈련장-경기장' 안에 갇힌 생애를 보내왔다. 이 합숙소는 군대의 병영생활과 유사하게 생활공간은 비좁고 지도자 및 선·후배와 함께 기거하며 수직적 위계 구조 속에서 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의 성과로 인한 '국위선양' 효과가 이 문제를 덮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초등학교 학생선수에 대해, 2008년 중고교 학생선수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발표하였다. 이 조사들에 따르면, 훈련이나 경기 중의 폭력만이 아니라 이와 관련 없는 폭력 또한 합숙장소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기숙사나 합숙소가 폭력·성폭력의 주요한 공간이 되고 있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합숙소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개선대안 마련을 권고하였다. 위와 같은 정책권고와 다수 언론들의 지적에 따라 2007년 11월, 국회에서「학원체육 정상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이 발표되었으며, 이후 교육당국은 2008년 학기 중 상시합숙 훈련 금지와 중고교의 경우 합숙훈련을 2주 이내, 학기 당 2회 이내로 제한하고, 3회 이상 실시할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에 훈련 계획을 제출하여 협의하도록 방침을 정하였다.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에는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노력을 요구한다.

2.4.2.4 체육특기자 제도의 문제

학생선수는 체육특기자로서 교육청의 체육특기자 심사에 따라 상급학교에 특례 입학한 학생으로서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과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개인적으로 체육단체(통합체육회 또는 장애인체육회 등)에 등록되어 활동하는 학생들로 구분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하면, 중학교에 진학할 때 교육장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도록 되어 있다(시행령 제68조). 그런데 입학 정원 중 일부의 정원에 대해서는 체육특기자로 정하여 추첨에

의하지 않고도 입학할 수 있다(시행령 제69조).

고교는 기본적으로 졸업예정 학교가 속한 해당 시도이거나 졸업 후 현재 거주 중인 해당 시도에 있는 학교에 한하여 진학할 수 있다(위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즉 졸업예정자인 학생은 자신이 주소지를 둔 1개 학교를 선택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교육감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자중 체육특기자에 대하여는 입학전형결과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지역의 해당 학년 입학정원 중 그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1항). 또한 일반고에서 전학이나 편입은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거주지가 이전된 경우에 한하여 학교를 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체육특기자에 대해서는 같은 시도 지역 안에서 전학을 허용하기도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서울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서울시교육규칙 제939호)을 보면, 체육특기자 정원은 입학정원의 3%로 하고 각종 대회에 3회 이상 출전한 학생들 중 학교장이 추천하고,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에서 최종으로 심의·선발된 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체육특기자 제도는 중고교 운동부에서 선수들을 충원하기 위하여 원거리 학생들을 무분별하게 인입하면서 기숙사(합숙소) 생활의 근원이 되고 있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학생들 상당수는 초등학교 클럽을 통해서 또는 학교체육 행사 중 지도자의 눈에 띄게 되면서 선수생활을 권유받고 운동부에 참여하게 된 경우였다. 그리고 같은 종목의 지도자들 사이에 형성된 관계 등을 통해 특기자로서 자신의 학군과 무관하게 상급학교로 진학하기도 한다. 특히 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은 시·도를 달리하여 이전한 경우에만 전학이나 편입이 허용되는 조건에서 자신의 해당 종목을 찾아 시·도를 뛰어넘어 진학 또는 전학함으로써 합숙소 생활을 필요로 하게 된다. 과거 합숙소 생활을 운동 기량 향상을 위한 필수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생활해 왔던 지도자가 아직도 많은 상황에서 '원거리'에서 온 특기자들을 위해 합숙소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지도자만이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선수들이 필요성을 공유하게 되고, 학부모들은 합숙소 운영비와 지도자 인건비 등 경비에 대해서도 이른바 '수익자부담'의 책임을 지게 된다.

학교운동부 중심의 엘리트체육이 지속되는 현재, 지도자들에게 운동부 유

지가 자신의 생활조건 유지의 근간이 되는 구조 속에서 더 많은 학생들을 운동부 선수(특기자)로 참여시킬 유인이 생긴다. 때로는 다른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학생 선수들도 전학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받아들인다. 학교 관계자나 체육교사들은 운동부와 기숙사를 존속하는 것이 많은 위험 부담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지도자들 상당수는 이와 반대로 운동부와 합숙훈련 등이 엘리트선수의 발굴과 성장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어 이것이 선수 기숙사 또는 합숙소 생활이 존속되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현재 한국 엘리트 체육은 심각한 언어, 신체 폭력이 가행되고 있다. 법과 제도, 인식과 행정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20년 전과 동일한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엘리트 체육의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러한 결과는 반복되어질 것이다. 폭력과 체벌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학부모들의 눈높이 즉 내 아이들이 더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폭력에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학생들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시간 내에 실력을 끌어올리려는 욕심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밖에도 국가대표 학생선수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초과 허용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학생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주요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를 희망할 경우,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를 초과하여 허용 가능한데 학교장은 대한체육회에서 시행한 ‘국가대표 선발 인정’ 공문을 근거로 해당 학생선수의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를 초과하여 허용할 수 있다.

학생선수 출결현황 관리 강화를 위해 학생 출석현황 관리프로그램인 ‘나이스’의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 현행 학급 담임교사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출결상황을 학교운동부 학생선수관리 메뉴와 연동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담임교사와 경기종목 지도교사가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 참가일수를 확인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나이스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학생선수 수업결손이 발생할 경우, 학습권 보장을 위해 e-school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보충학습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대회 및 훈련참가로 인해 수업결손 2시간 발생할 경우, 학습권보장을 위해 e-school 1시간 수강을 의무화하고 있다(「학교체육진흥법」 제6조 제1항 제4호).

표 24.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 변경

<table>
<tr><th>2019학년도(현행)</th><th>2020학년도(변경)</th></tr>
<tr><td>○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 학생선수는 ‘출석인정결석’으로 수업일수의 1/3 범위(63~64일) 내에서 대회 및 훈련 참가 선택 실시 가능[12)]</td><td>○ 학생선수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table><tr><th>학교 급</th><th>초</th><th>중</th><th>고</th></tr><tr><td>허용일수</td><td>20일</td><td>30일</td><td>40일</td></tr></table>
○ 기존 적용사항 유지
- (지각・조퇴・결과 처리) 학교장 허가 시 대회 및 훈련 참가는 지각・조퇴・결과 합이 3회가 되면 출석인정결석 1일 사용으로 간주
- 국가대표는 허용일수 초과 가능</td></tr>
</table>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토대로 학생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주로 고려해야 하는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선수의 대회 출전 및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으로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 갑질행위를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학생 및 학부모는 갑질행위 발생 시 대회 출전 제한과 상급학교 진학 등에 불이익을 우려하여 문제 제기나 신고를 꺼려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를 유도해야 한다. 학교운동부지도자 선발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개채용 절차를 준수하여 적격자를 채용해야 한다.

또한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학생선수 인권 보호교육을 의무화하여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해야한다. 이를 통해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며, 입시비리를 예방해야한다. 학교장은 운동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결과를 지도자 재임용에 반영함으로써,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인권 보호, 교육적·과학적 지도방법 적용 등을 모색해야 한다. 학교운동부지도자가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해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 제4항).

둘째, 성인지적 관점에서 양성평등적인 체육활동 환경 조성 및 종목선정을 통한 여학생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신체능력을 반영하는

12) 학교장은 학생선수 안전 확보,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 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하여‘출석인정결석’처리를 허가할 수 있고, 상기 제시된 일수는 의무 허가가 아님, 18학년도 학생선수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전수조사 현황(1인당 평균) : 초 5.1일, 중 12.7일, 고 20.8일

종목 선정 및 여학생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 및 학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학교체육진흥법」 제13조2).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을 해당 학교의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여야 한다(「학교체육진흥법」 제10조 제5항).

셋째, 지도자의 인권교육 및 성(희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를 실시하는 등 보다 강력한 법적. 윤리적 의무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성희롱·성폭력 및 학교폭력 근절, 투명한 학교운동부 운영, 입학비리 예방교육은 시도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한다. 주관기관에서는 교육이수 여부를 재계약 심사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공문으로 이수자 명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 1회(2시간) 이상 실시하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선수에게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학생선수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한 예방교육을 수행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넷째, 학부모에게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교육 의무화의 적극적 실시이다.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 학교운동부 운영투명성 제고, 입학비리 근절, 학부모 부담금 학교회계 편입 등에 대한 교육(집합교육, 찾아가는 현장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교육청(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운동부 운영학교는 본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섯째, 학교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장은 상시합숙 훈련 근절을 위한 학사관리 책무성을 강조하자는 취지에서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기숙사 운영은 가능하며, 안전대책 수립과 학습여건 등을 잘 갖추어 운영하고 있다. 학교장은 학생선수의 기숙사 생활에 따른 안전사고 및 폭력예방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여섯째, 학생선수는 주중 상시 훈련과 주말(공휴일) 대회 및 훈련 참가로 충분한 휴식이 부족하여 부상 발생 빈도가 높고, 정상적인 성장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므로, 충분한 휴식 제공 및 영양보충 등을 통해 학생선수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학생선수 보호안전대책도 논의한다. 기온을 고려하여 가급적 실내 활용하되, 여건에 따라 선택적 운영- 학생선수가 혹서(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훈련시간을 조절하여야 하며, 체육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안전조치 후 사용- 위험요소 사전제거, 충분한 영양 및 수분 섭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학생선수 개인별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휴식 제공- 과도하고 무리한 훈련 진행 금지 등을 철저하게 지킨다.

마지막으로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도핑방지교육을 실시한다(「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도핑개념, 금지 약물 정보, 도핑 관련 규정 등에 관하여 교육하고, 견학・체험 활동 또는 정보・통신 매체 이용 원격교육 등을 병행한다.

2.4.2 스포츠 관련 가이드라인 및 지침 등에 대한 개선안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체육회의 가이드라인과 지침에 대한 문제를 인권과 폭력, 체육특기자의 학습권, 도핑 등이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가지로 구분하여 추가적인 개선안을 제시한다,

첫째, 폭력, 성폭력, 성추행과 관련된 법적 제도와 엄정한 처벌에 관한 설명 추가

인권위원회는 모든 학대를 경계하고, 아동을 위한 적절한 지원행동, 아이들에게 자부심과 자신감 및 존중하는 관계 형성,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여, 광범위한 커리큘럼의 개발 및 발전, 양질의 아동 보호에 관해 참여 및 아동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부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스포츠와 관련된 인권과 피해자 사례집을 발간

스포츠의 인권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사례를 통한 부정적인 사례와 해결책을 담은 사례집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성폭력, 성추행, 폭행, 인권유린에 피해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과 부모, 코치들에게 신체적, 언어적, 정신에 관한 모든 폭력의 유형에 관한 피해자의 심각성을 공유하게 해야 한다.

셋째, 학생, 부모, 코치 및 교사에 관한 대상별 개별 가이드라인

영국의 NSPCC는 ‘Talk PANTS’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된 교육자료지침을 통해 학교에서의 학대에 관해 지속적인 아동학대, 집단따돌림, 가정폭력이 만연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부모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아이들에게서 보여지는 학대 신호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는데, 자녀의 행동의 변화, 성행위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성적으로 사용하는 명시적 언어, 성격의 변화, 불안함, 성적인 방법으로, 물건이나 장난감을 사용하는 것, 식습관의 변화, 특정장소에 대한 불안, 비밀을 공유하거나, 밝히기 꺼려함 등이 발견될 때, 보호자에게 비정상적인 행동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작할 것을 제안한다.

2.5 스포츠 관련 국내 인식

학습권 개념과 관련하여 김신일(1999)은 일반적으로 학습권의 의미를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인격적·지적·기능적 향상을 위하여 자유롭게 탐구하고 기초교육에 참여할 권리로 정의한다. 여기에는 학습할 권리와 아울러 교육에 참여할 권리가 포함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학생선수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학습권의 의미에 접근하고자 한 홍덕기·류태호(2007)는 학생선수를 ‘학생’이라는 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교육기본법 제3조가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교육으로부터 차별·배척당하지 않을 권리로 해석하여 타고난 인간으로서의 가능성을 실현하며 인간답게 살아갈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 학습권은 ‘학생으로서 학습할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를 말하며 이는 인간답게 살아갈 기본권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인권개념에서 접근한다. 또한 학생선수 역시 일차적으로 ‘학생’이라는 주체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학생선수의 학습권 역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자 인권으로 본다. 본 조사연구에서 학습권은 일차적으로 수업시간, 운동시간, 보충시간, 보충방법, 운동 중단 여부, 그 요인 등의 양적 실태와 아울러 심층면접을 통해 학생선수들의 학습 등 교육과 훈련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등을 통해 분석된다.

둘째, 폭력이란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모든 행동을 나타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는 유형에 따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력을 도구로 사용하는 도구적 폭력과 분노, 공포, 좌절 또는 힘의 과시 등이 행동으로 표출된 표현적 폭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을 분석적으로 해석하여 1) 체벌을 이유로 폭력을 사용하는 도구적 폭력과 2) 체벌이라는 목적 없이 폭력을 사용하는 표현적 폭력 모두를 폭력의 개념에 포함시킨다. 이러한 광의의 폭력 개념은 유형별로 언어적, 정서적, 신체적 폭력을 포괄하며, 폭력은 때로 성폭력과 결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셋째, 성폭력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 학문적, 법적 개념이 모두 다른 층위를 가지며, 심지어 여성학자들 간에도 입장에 따라 '가부장제 사회의 모든 성적 행위는 성폭력'이라는 급진적 관점에서부터 보다 일반적 의미에서 '강제나 위계, 불평등한 권력에 의한 폭력' 또는 '원하지 않는 언어적, 신체적 성적 행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는다(권인숙 외, 2004; 변혜정, 2004, 2006; 이성은, 2003; 장(윤)필화, 1999; Flynn, 1999; Kelly, 1987; Kirshenberg, 1997; Kurth & Spiller & Travis, 2000). 본 연구에서는 성적 자율권 혹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인권 관점에 입각하여 성폭력을 분석한다. 성적 자율권 혹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한 개인이 독립적 주체로서 성적 행위나 태도 등과 관련해 외부의 언어적, 정서적, 신체적 강제나 폭력 또는 권위나 위계 등에 의해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이명선, 2005). 또한 성폭력은 '의사에 반한 언어적, 신체적, 시각적 성적 행위'이며, 이성간의 성폭력뿐 아니라 동성 간에 발생하는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을 포괄한다.

Ⅲ. 스포츠분야 해외 선진제도 실태조사

국가별 사례 개수는 다음과 같다. 미국 총 129건, 영국 98건, 캐나다 273건, 호주 101건, EU 12건, 프랑스 55건, 독일 104건, 일본 21건으로 총 793건이다.

표 25. 국가별 사례 개수 (단위: 건)

구분/국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EU	프랑스	독일	일본	계
법제		32	28	8	12	3	1	1	10	95
내규		5	0	10	0	0	2	1	0	18
정책자료		62	42	235	80	6	49	94	11	579
판례		5	0	1	0	0	0	0	0	6
배경자료		0	0	6	0	0	1	0	0	7
사이트	법제	9	7	3	4	2	1	0	0	26
	스포츠	16	21	10	5	1	1	8	0	62
계		129	98	273	101	12	55	104	21	793

3.1 미국

3.1.1 스포츠 관련 주요 이슈 및 동향

미국의 스포츠인권은 2017년 설립된 독립된 인권기구인 미국세이프스포츠센터(U.S. Center for Safe Sport)가 자주적으로 관리 · 제재를 담당하고 있다. 세이프스포츠센터가 설립된 계기는 2016년 미국 스포츠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성적 학대 스캔들인 래리 나사르(Larry Nassar) 사건이다. 당시 전미체조협회의 소속 국자대표팀 주치의였던 래리 나사르가 치료를 구실로 265명의 여자 체조 선수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밝혀졌다. 나사르는 1998년부터 무려 16년 동안 265명의 체조선수들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저질렀으나 2016년 언론보도를 통해 이슈화되기 1년 전부터 전미체조협회는 해당 사실을 알고도 침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나사르의 추문을 접하고도 이를 은폐하는데 급급했던 전미체조협회의 무책임한 사건처리로 인해 나사르는

대표팀을 떠나서도 미시간주립대와 체조클럽 등에서 14개월 동안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은 그 규모뿐만 아니라 선수를 보호해야할 체조협회가 오히려 가해사실을 은폐하고 무마시키려는데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이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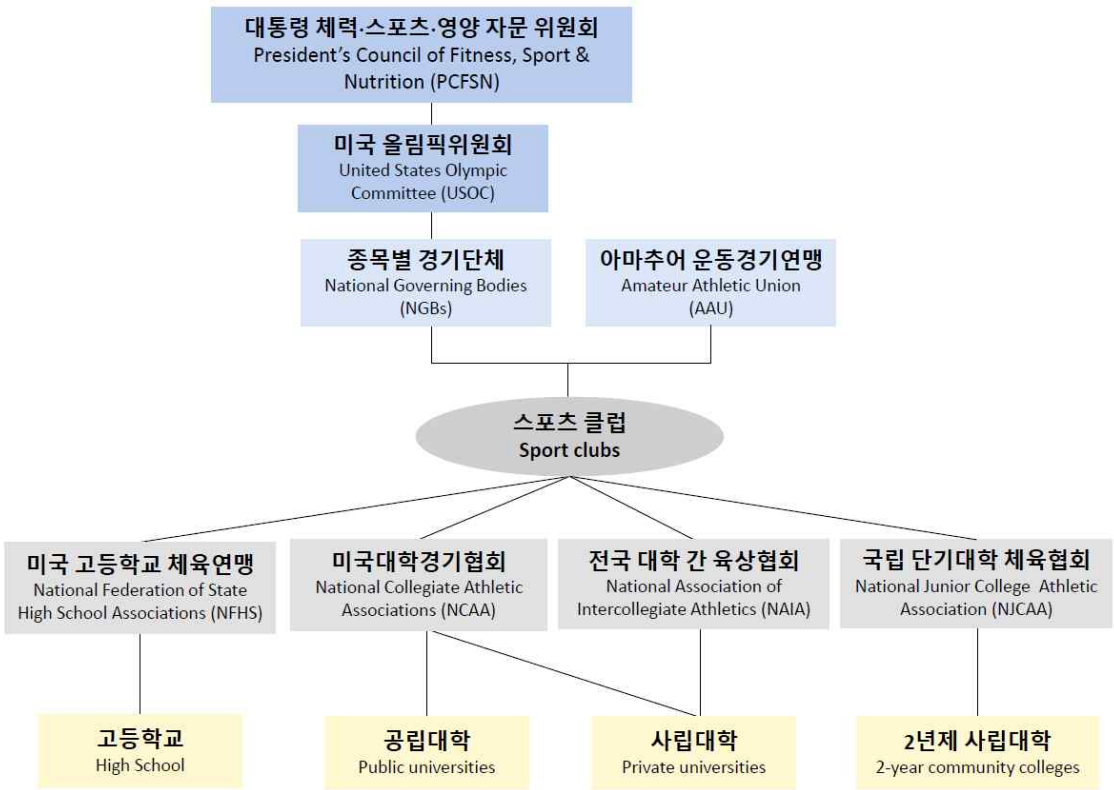
미국의 스포츠 인권은 이 스캔들을 기점으로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미국 의회는 2017년 「성적 학대로부터 어린 피해자 보호 및 안전한 스포츠 기구 설립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에 근거하여 미국세이프스포츠센터를 출범시켰다. 세이프스포츠센터는 올림픽과 패럴림픽위원회를 비롯하여 정부산하 스포츠관련 기구들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와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신고에 대응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갖는다. 신고가 들어오면 이에 대한 사건의 조사 및 해결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두고 있다. 또한 풀뿌리 아마추어 스포츠단체에서 프로리그에 이르기까지 모든 스포츠 수준에서 모든 스포츠단체를 망라하여 인권침해 상황으로부터 운동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한다. 이는 미연방법에 적시되어 있는데, 이 법은 세이프스포츠센터가 미성년자 아마추어 선수의 정서적, 신체적, 성적 학대를 포함한 학대방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허가하고 있으며 최소한 국가 관리 기구와 장애인 스포츠 단체는 (1) 미성년자인 아마추어 선수와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성인 회원과 (2) 미성년자인 회원(부모 동의 대상)에게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일관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권한과 역할수행을 통해 스포츠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사후 처리 하고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써 선수인권보호를 지원한다.

이러한 세이프스포츠센터는 스포츠계의 내부 조직으로부터 분리되어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독립된 기구로서 미국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학대, 폭력 등의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해 조사 및 징계 요구권을 지니고, 이를 거부하거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조직들에게 국가 재정 지원을 중단시키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포츠 단체들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이행조치를 관련 기관들이 따르지 않을 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미국의 스포츠인권은 이러한 세이프스포츠센터법과 유소년선수안전유지법(Keep Young Athletes Safe Act of 2018)을 하위법으로 하는 테드 스티븐스 올림픽/아마추어 스포츠법(Ted Stevens Olympic and Amateur Sports Act)에 의해 포괄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3.1.2 스포츠 거버넌스

그림 8. 미국의 스포츠 관련 기관 조직도



미국의 경우, 엘리트 체육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미국올림픽위원회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올림픽위원회는 아마추어 스포츠법에 의해 미국 아마추어 스포츠의 최상위 조직으로 엘리트 선수 육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 스포츠에서 정부는 생활체육과 학교체육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대통령체력자문위원회는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과 장려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있다. 학교체육은 비영리 민간조직인 전국 고등학교 협회 (National Federation of

State High School Associations)을 활용, 고등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학생 체육활동 참여율을 높이고자 주별 고등학교 협회와 협력하고 있다. 이 조직은 미국 학생엘리트 체육의 구심점으로 자립적인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 엘리트체육 발전의 원천이 되고 있다.

학교 스포츠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가 그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주정부와 지방정부 또한 학교 스포츠 활성화하기 위해 체육수업 시간 수 의무화 등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최소한 1가지 종목의 체육활동에 참가할 것을 장려하고 있으며 방과 후 스포츠 프로그램들을 통해 학생들의 스포츠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미국 고등학교 체육연맹은 미국 내 고등학교 체육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고등학교들에게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 별 고등학교협회와 협력을 통해 학생스포츠 활동 참여율 제고에 힘쓰고 있다.

미국은 학생선수들의 체육활동에서 아마추어 정신을 철저히 강조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대표적으로 NFHS와 전미대학체육협회(NCAA: 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에서는 선수자격에서부터 학습능력을 매우 중요한 평가요소로 제시한다. 세계최고수준의 기량을 갖춘 선수들을 지도하는 IMG 아카데미의 경우 코치의 역할을 매우 중시하며 코치는 학생들이 운동과 학습을 병행하도록 격려하고 지도한다. 폭력 및 성폭력 정책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이나 브로셔, 가이드라인 제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폭력 및 성폭력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환경자체의 조성을 억제시키고, 피해신고 시 신원보장 및 철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두고 있다.

3.1.3 스포츠 관련 법 · 제도

(1) 테드 스티븐스 올림픽/아마추어 스포츠법(Ted Stevens Olympic and Amateur Sports Act)

테드 스티븐스 올림픽/아마추어 스포츠법은 미국 연방의 스포츠 법제 중 기본법으로, 미국올림픽위원회(법 제1절), ‘전국단위조직(NGB: National

Governing Body)’ 으로 인정하는 아마추어스포츠단체(법 제2절), 유소년 선수를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원금(법 제3절), 미국세이프스포츠센터(US Center for Safe Sport(법 제3절)) 각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13] 테드 스티븐슨 올림픽/아마추어 기본법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 1950년 9월 21일자 연방법률 제975장 제1편으로 제정.
- 1998년 8월 12일자 공법 제105-225호로 전부개정.
- 1998년 10월 21일자 공법 제105-277호 제C권제1편 제142조(=「올림픽·아마추어 스포츠법」 1998년 개정(Olympic and Amateur Sports Act Amendments of 1998))로 일부개정.
- 2006년 9월 27일자 공법 제109-284호로 일부개정.
- 2018년 2월 14일자 공법 제115-126호(=「성적 학대로부터 젊은 피해자 보호 및 안전한 스포츠 기구 설립에 관한 법률[14](Protecting Young Victims from Sexual Abuse and Safe Sport Authorization Act of 2017)」)로 일부개정.
- 2018년 3월 23일자 공법 제115-141조 제S권3편제302조(=「유소년 선수 안전 유지법[15](Keep Young Athletes Safe Act of 2018)」)로 일부개정.

⑵ 미국올림픽위원회

이 법은 미국올림픽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목적을 명시하는 한편, 법 전반에 걸쳐 미국올림픽위원회가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에 대하여 규정한다. 미국올림픽위원회가 지향하고 장려하여야 하는 스포츠는 아마추어스포츠(비영리 스포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스포츠와 대비된다. 실제로 이 법에 ‘professional’ 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음). 미국올림픽위원회의 목적은 미국법전 제36편 제220503조에 총 15개의 호로 열거되어 있는데, 그 중 선수 인권 관련 항목은 다음과 같다.

---

13) 이 법은 제목이 다른 제3절이 두 개 있음.
14) 이 법의 명칭을「유소년 성적 학대 피해자 보호 및 안전스포츠 인가에 관한 법률」로 번역함
15) 공법 제115-141호인「종합예산책정법2018」의 일부인 제19권 제3편(Pub. L. 115-141, div. S, title III)으로서 제정됨.

- 제8호: 분쟁과 갈등의 조속한 해결
- 제12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아마추어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
- 제13호: 장애인 대상 아마추어 스포츠 활동과 대회 참가를 장려하고 지원
- 제14호: 아마추어 스포츠 참여율이 낮은 사회적 소외계층(특정 인종 등) 출신 선수의 아마추어 스포츠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 제15호: 학대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

특히 분쟁 해결에 대해서는 제220505조제c항제5호에서 그에 대하여 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제220509조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220509조에 따라 도입된 분쟁 해결 관련 미국올림픽위원회의 제도적 장치로는 선수 옴부즈만이 있다. 또한, 미국올림픽위원회는 대통령과 의회 양원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4개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입 및 지출
- 위원회의 활동 및 성과에 대한 종합설명
- 여성, 장애인, 소외계층의 (1) 아마추어 스포츠 활동 및 (2) 위원회와 전국단위조직의 운영 등에 참여를 보여주는 자료
- 여성, 장애인, 소외계층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United States Olympic Committee_Recognizing, Reducing and Responding to Misconduct in Sport)

미국올림픽 위원회 대응 전략 계획에는 왕따, 괴롭힘, 저돌적 행위, 정서적 위법 행위, 물리적 부정행위, 아동 성 학대를 포함한 성적인 위법 행위 등 모든 형태의 부정행위를 금지한다. 학대를 받은 운동선수들은 사회적 당혹감, 정서적 혼란, 심리적 상처, 자존감 상실, 가족, 친구 및 스포츠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하게 되며, 부정행위는 종종 선수의 경쟁 성능을 손상시키며 선수가 완전히 스포츠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본다. 미국 올림픽위원회는 스포츠에 관련된 선수와 참가자의 개발,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전국단위조직(NGB: National Governing Bodies)

미국올림픽위원회가 NGB로서 지정하는 스포츠단체의 자격 요건, 절차를 비롯하여 NGB의 권한(또는 혜택) 및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아마추어 스포츠단체가 NGB가 되기 위해서 충족하여야 하는 공통 요건으로 15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제220522조제a항), 그 중 선수 인권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4호: 분쟁에 대한 중재판결에 따를 것
- 제7호: 해당 단체의 회원 자격이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 있을 것
- 제8호: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연령, 출신민족에 근거한 차별 없이 모든 선수와 코치 등에게 동등한 경기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것
- 제9호: 해당 단체의 이사회 구성이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성별에 따라 이루어지는 운동 종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연령, 출신민족 등 차별 없이 이루어질 것
- 제13호: 해당 단체의 회원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하여 신속하여 공정한 해결 절차를 둘 것
- 제15호: 미국법전 제36편 제220524조(NGB의 일반적 의무) 및 제220525조(아마추어선수대회에 대한 승인)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음을 증명할 것

제220524조에서 정하는 NGB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전국의 관심과 참여를 고취하고 소속 개인 및 아마추어 스포츠 단체에 대한 책임을 질 것
- 다른 아마추어 스포츠 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훈련 및 경기 스케줄 충돌을 최소화할 것
- 정책을 선수에게 전달하여 숙지하도록 하는 한편, 정책에 선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NGB, 미국올림픽위원회, 해당 종목의 국제연맹, IOC, IPC, 국제패럴림

픽위원회(IPC: 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 팬암스포츠(Panam Sport)의 규칙 또는 규칙의 개정에 대하여 선수, 코치, 트레이너, 매니저, 행정인력, 임원에게 신속히 전달할 것

- 미국법전 제36편 제220525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하는 때를 제외하고, 아마추어 선수가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것
- 전국에서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여성의 참여를 위한 지원과 장려책을 제공할 것
- 장애인 대상 아마추어 스포츠 프로그램 및 장애인의 그러한 프로그램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할 것. 이러한 정책의 사례로는 비장애인 대상 대회에 장애인의 유의미한 참여기회 확대 등이 있음
- 체력 훈련, 장비 설계, 코칭, 능력분석 등 전문적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할 것
- 스포츠 의학 및 스포츠 안전 분야에서의 연구, 개발, 정보공유를 장려하고 지원할 것

제220525조는 특정 단체 및 개인의 아마추어 스포츠 대회 개최에 대해 NGB가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러한 승인을 얻기 위하여 해당 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요건 중 하나로, NGB가 준수하여야 하는 아마추어 선수에 대한 학대 예방 정책과 절차를 따를 것을 명시한다(제b항제4호G목). 특정 NGB에 소속된 아마추어 스포츠 단체 또는 개인은, NGB가 그 자격요건,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하여 미국올림픽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제220527조). NGB가 아닌 아마추어 스포츠 단체에 대한 의무사항 역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제36편 제220530조제a항).

- 제1호: 아동학대피해자법 제226조(미국법전 제34편 제20341조. 아동학대 신고 의무)에 따른 신고 의무 있음
- 제2호: 성인과 아동이, 외부와 차단된 환경에서, 1대1로 교류할 가능성 제한을 위한 절차 도입
- 제3호: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하여, 소속 회원 및 아동 선수 대상 교육 실시

- 제4호: 신고자에 대한 보복 금지

(4) 유소년 선수 안전 지원금

제220531조 하나로 이루어진 절. 유소년 선수를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원금의 운용에 대하여 규정함. 지원금 사업은 법무부 장관 소관이며, 법무부 장관은 정서적/ 신체적/ 성적 학대 등 모든 종류의 학대로부터 유소년 선수 보호를 위하여 관련 비영리 비정부 단체에 지원금 지급(제a항). 제b항은 지원금 수급 자격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c항은 지원금의 용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학대 예방을 위한 훈련 자료를 새로이 개발하고 점검, (2) 선수 학대 방지 정보를 미국올림픽위원회, NGB 등 법에서 정하는 단체에 제공하는 데 필요한 운영경비(직원 임금, 인쇄비 등), (3) 앞의 두 사항의 이행 여부 관리 감독에 드는 비용. 2018년~2022년 동안 매년 250만 달러($2,500,000) 예산이 책정되었다.

(5) 미국세이프스포츠센터[16][17]

이 법은 '미국세이프스포츠센터(United States Center for Safe Sport)'를 안전스포츠를 담당하는 독립된 국가 단체로 지정하며, 국제 안전스포츠 분야에서 미국을 대표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세이프스포츠센터는 학대(정서적/신체적/성적 학대 모두 포함)로부터 선수 보호에 대하여 NGB 뿐만 아니라 미국올림픽위원회에 대하여도 규율할 권한이 주어진다. 미국세이프스포츠센터는 이러한 학대 예방을 위하여 교육 및 적극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며, 센터의 정책에 반하는 성적 학대에 대한 신고와 그 이후의 절차(조사 및 사건의 해결)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 있다. 또한 그러한 학대의 신고 및 후속 절차의 운영에 있어 고지와 청문을 공정하게 제공하고 신고자의 익명성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세이프스포츠센터에서 정하는 정책과 절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16) 비교법적으로 도입해야할 핵심 부분임.
17) safe sport는, 선수들이 각종 차별이나 학대를 받을 염려 없이 안심할 수 있는 스포츠 환경 구현을 목표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안심 스포츠"로도 번역할 수도 있음

미국법전 제36편 제220541조제b항은 이러한 정책/절차는 이 법(미국법전 제36편 제220524조)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보아 적용하여야 함을 명시한다. 센터에서 정하는 정책/절차는 미국법전 제36편 제220542조제a항제2호의 A목 내지 F목에 열거된 다음의 사항을 다루어야 한다.

(A) NGB, 패럴림픽 스포츠 단체, 또는 NGB/ 패럴림픽 스포츠 단체 산하 시설의 소속인 모든 성인 회원을 비롯하여, 그러한 성인 회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아마추어 선수와 교류하는 모든 **성인은**, **미성년자인 아마추어 선수에 대한 아동학대 의혹**을 다음의 각 기관으로 **즉시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여야 함**

(i) 미성년자인 아마추어 선수가 아동학대를 경험하였음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사실을, 이 목에서 말하는 회원 또는 성인이 알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센터로 신고

(ii) 아동학대피해자법 제226조(미국법전 제34편 제20341조)에 따른 수사당국

(B) 신고자가 센터/ NGB/ 수사기관/ 기타 유관기관으로 **아동학대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아동학대 전문가의 승인을 거쳐, 구축해야 함

(C) NGB/ 패럴림픽 스포츠 단체 산하 시설에서 제3자인 성인의 관찰이나 개입이 어려운 거리 또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인 선수와 그 선수의 법적 보호자가 아닌 성인이 단독으로 교류하는 것을 제한**하는 합리적 절차를 규정해야 함.

(D) **신고자에 대한** NGB 또는 패럴림픽 스포츠 단체의 **보복을 금지**하는 절차를 도입해야 함.

(E) 감사 등 **관리감독** 절차를 마련해야 함.

(F) NGB 또는 패럴림픽 스포츠 단체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신고를** 대외비로 센터에 **공유**하고 센터는 유관 NGB/ 패럴림픽 스포츠 단체/ 기타 기관으로 이를 공유하며, 해당 신고에 대한 의혹이 밝혀지는 때까지 사건 당사자인 **성인의 미성년자 선수와의 교류를 정지(withhold)**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6) 스페셜올림픽 스포츠 및 역량강화법 2004(Special Olympics Sport and Empowerment Act of 2004)

스페셜올림픽 진흥을 위하여 교육부, 국무부, 보건부에 지원금/계약/협조약정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법률이며, 부별로 요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교육부: 미국 국내 지적장애인의 참여 확대 등 스페셜올림픽 진흥 그

리고 스페셜올림픽 교육 프로그램을 고안하여 도입.

- 국무부: 미국 국외 지적장애인의 참여 확대 등 스페셜올림픽 진흥, 그리고 지적장애인의 사회 공헌능력에 대하여 미국 국외 인식 개선.
- 보건부: 현장 건강 진단, 건강이상 점검, 보건교육, 자료수집, 의료기관 이송 등 실행을 위한 지원금을 스페셜올림픽에 제공 또는 계약 체결.

스페셜올림픽은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 교육부, 국무부, 보건부가 각각 요구하는 기한/ 양식/ 내용에 따라 신청서와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지고 있다. 제5조는 이 법에 따른 지원금/계약 등 진행에 필요한 예산을 허가하고 있으나 예산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연도만 2017년 이후 4년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그 금액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18]. 2004년 10월 30일자 공법 제108-406호로 제정되었으며, 현행 법률인 미국법전 제42편 제15001조 각주로 편성된다.

(7) 스포츠 의료 면허 명확성법 2018(Sports Medicine Licensure Clarity Act of 2018)

스포츠 의료 인력의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 및 면허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대상인 스포츠 의료 인력이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여 주로 활동하는 주(primary State) 이외의 다른 주(secondary State)의 선수 또는 선수단 또는 그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이 법에서 정하는 계약에 따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의료인이 가입한 책임보험 역시 secondary State에서의 선수/선수단/직원을 상대로 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현행 법률인 미국법전 제15편 제112장 제8601조에 해당한다.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 2018년 10월 5일자 공법 제115-254호 제A권 제12조로 제정.
- 이후 개정사항 없음.

18) 아마도 2017~2021년도에 대하여 발표하는 별도의 appropriation법 등 다른 경로로 예산 배정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할 수있음. 구체적인 사정은 추가 조사해야 함.

(8) 아동학대피해자법(Victims of Child Abuse Act)

미국법전 제34편 제203장이다.

(1) 지역아동변호센터를 통한 아동 변호 사업의 운영(제20303조) 및 지원금(제20304조). 2019년에서 2023년까지 매년 1,600만 달러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 또한,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한 관련 전문직 종사자(변호사 등)에 대한 전문적 지원 및 훈련을 위한 지원금 운영을 위한 예산도 2019-2023 기간 중 매년 5백만 달러로 별도 책정되었다(제20305조, 제20306조제b항)

(2) 아동학대/방치 사건의 피해자를 위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특별 변호사(special advocate) 제도(제2절). 미국 법무부 소년사법범죄예방실은 특별 변호사 인력 확충을 위하여 지원금을 운영하여야 하며(제20323조), 이를 위한 예산은 2014-2018 기간 중 매년 1,200만 달러. 또한, 소년사법범죄예방실은 사법도의 아동학대/방치 사건 처리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전문적 지원이나 훈련 또는 행정 개혁 등을 위한 지원금을 운영하여야 하며(제3절) 2014년-2018 동안 매년 230만 달러 예산이 책정된 바 있다(제20334조).

(3) 제4절은 특정 개인의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이는 미국 「형법」 제110장 제2258조에서도 인용하고 있다.

(4) 제20351조 하나로 구성된 제5절은 연방정부기관 또는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이 고용하는(위탁 고용을 포함함) 아동보육 종사자의 범죄 경력을 확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9) 형법

① 형법 제109B장 아동성범죄자 신상 및 범죄 등록부(8 USC Ch. 109B-Sex Offender and Crimes Against Children)

성범죄자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만일 등록/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는 자가 연방법/ DC법/ 원주민부족법/ 준주법의 폭행죄(crime

of violence)저지르는 때에는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을 가산한다.

② 형법 제109A장 성적학대(18 USC Ch. 109A-Sexual Abuse)

아동과 어른 등 모든 사람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조항을 둠. 성범죄를 크게 강력성범죄(aggravated sexual abuse)와 일반성범죄(sexual abuse)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강력성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1) 위력/협박을 통한 성범죄, (2) 상대방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저지르는 성범죄, (3) 약물/주류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행동 통제력을 상실케 한 뒤에 저지르는 성범죄 (4) 앞의 모든 범죄행위의 미수 등이 있다. 이에 대한 벌칙은 벌금 또는 징역 또는 벌금&징역 병과이며, 징역의 경우 그 연수의 상한선을 두고 있지 않다.

특히, 아동을 상대로 한 경우의 강력성범죄는 30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며, 범죄 피해자가 12세 미만의 아동인 사실을 피고가 몰랐던 경우도 해당함. 아동에 대한 강력성범죄 재범일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규정한다. 일반성범죄 또는 그 미수는 벌금과 상한이 없는 징역을 병과한다.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부 미성년자(피해자가 12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이어야 하고,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최소 4살 많은 경우) 역시 처벌 대상(제2243조)이며, 벌금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적접촉(sexual contact)의 벌칙 중 징역형의 장기는 제2244조에서 규정하는 형기의 2배를 가중한다. 피해자를 살해할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앞의 모든 범죄는 법원의 배상(restitution) 명령 대상이다.

③ 형법 제110A장 아동 성적 착취 및 학대- 2251. 아동의 성적 착취

(a) 미성년자를 고용, 사용, 설득, 유도, 유도 또는 강요하거나, 미성년자가 이 같은 행위에 관여하도록 돕거나, 미성년자를 외국에 운송하거나, 성적 노골적인 행위를 취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실시간으로 시각적으로 묘사하는 행위는 처벌된다.

(b) 미성년자의 부모, 법적 보호자 또는 사람이 미성년자의 시각적 묘사가 상거래의 수단이나 시설을 사용하거나 주간 또는 외국 상거래 또는 우편으로 전달되거나 전송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시각

적 묘사가 우편, 배송 또는 운송된 자료를 사용하여 생성, 전송을 포함하여, 어떤 방법으로든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처벌된다.

(c) 미성년자의 참여하게 하거나, 미성년자가 관여하도록 강요하거나,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를 강요한 경우에도 처벌한다.

아동의 성착취와 관련된 국가의 법률에 따라 25년 이하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사람은 이 죄명으로 벌금을 부여받고 35세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한다. 위반을 시도하거나 공모하는 조직은 이 조항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 이 조항에 따라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누구든지 사람의 죽음을 초래하는 행위에 관여하는 사람은 30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평생을 위해 사형 또는 투옥되어야 한다.

④ 형법 제11장 뇌물공여, 뇌물수수, 이해충돌 제224조 스포츠 시합에서의 뇌물(18 USC Ch. 11-Bribery, Graft, and Conflict of Interest §224. Bribery in sporting contests)

형법(미국법전 제18편) 제11장은 공직자의 뇌물수수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벌칙을 정한다. 특히, 형법 제224조는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과 의도로 뇌물을 사용하는 모든 형태의 행위, 그리고 그러한 행위의 미수, 공모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벌금과 징역을 병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10) 스포츠에이전트 책임 신뢰법(Sports Agent Responsibility and Trust Act)

스포츠에이전트 책임신뢰법(Sports Agent Responsibility and Trust Act)은 에이전시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이다. 학생 선수와 선수에이전시 간 불공정/허위 계약 금지. 이 법의 집행기관은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ion)이며, 이 법의 위반은 연방거래위원회법 제18조제1항제1호나목(미국법전 제15편 제57a조제1항제1호나목)의 위반으로 보며, FTC는 이 법의 집행에 있어 연방거래위원회법을 원용함.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주정부의 대응 권한(미국연방지방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법원 관할에 대해서는 미국법전 제28편 제1391조를 따름) 및 FTC의 조치사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아울러, 학생 선수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계약체결 사

실에 대한 서면 고지, 이 법을 위반하는 에이전트에 대하여 교육기관의 소제기 권한, 손해배상, 승소 당사자에게 법원이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비용 지급판결). 연방의회는 통일법위원회에서 작성한 '통일선수에이전트법 2000(Uniform Athlete Agents Act of 2000)'을 각 주에서 수용하여 주법으로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행 법률인 미국법전 제15편 제104장(제7801조 - 제7807조)에 해당하며, 제 ·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 2004년 9월 24일자 공법 제108-304호로 제정.
- 이후 개정사항 없음.

(11) 직업 · 아마추어 스포츠 보호법(Professional and Amateur Sports Protection Act)

이 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포츠 도박은 불법. 이를 위반하여 진행되는 스포츠 도박에 대하여 미국 법무부 장관 또는 도박의 대상이 된 스포츠 단체에서 그 금지를 위한 민사소송을 관할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현행 법률인 미국법전의 제28편 제178장은 1992년 10월 28일 공법 제102-559호로 제정되었다.

(12) 미국 수정헌법

합중국에서 출생하고 또는 귀화하고, 합중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합중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떠한 주도 합중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 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수정헌법 제 14 조). 이 수정조항은 1866 년 6 월 13 일에 발의되어, 1868 년 7 월 9 일에 비준되었다.

3.1.4 스포츠 관련 인식현황

미국의 스포츠계에서의 인권유린은 많은 부분 여자 선수들을 상대로 한 감독이나 코치진들의 성적 학대 및 성폭행과 관련된다. 2016년 래리 나사르 사건이나 2018년 숀 허친슨 사건 등과 같이 여자 선수들이 어린 시절부터 훈련과정에서 코치진으로부터 자행된 성폭행/성학대의 피해들을 폭로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시켰다. 이들 중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아동, 청소년 선수 시절부터 이러한 인권유린을 당해왔으며 당시에는 이러한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그 배경에는 폭력이나 성적 학대를 당했음에도 그것을 학대로 정확히 인식을 하지 못하고 훈련의 일환처럼 받아들이게 되거나, 피해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이를 알리게 되면 선수로서의 생명이 끝날 것 같은 두려움, 혹은 이를 알리더라도 이를 은폐하고 무마하려는 관리자들로 인해 결국 피해자만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미국 스포츠계의 구조적 병폐가 있다.

그러나 2016년 발생한 래리 나사르 사건을 계기로 미국 스포츠 선수들이 어린 시절 코치진에게 당했던 여러 학대 피해사실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이에 체조계 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들에서 아동, 청소년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학대, 폭력 등의 인권유린이 자행되어왔다는 사실이 수면위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는 미국 스포츠 인권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되었는데, 미국 정부는 2017년 스포츠인권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자구책을 마련하고 세이프스포츠법의 제정, 세이프스포츠센터의 설립 등을 통해 미국 내 운동선수들의 인권을 법으로 보호하고 학대 발생 시 신고체계, 조사기구, 처벌규정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스포츠인권 보호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세이프스포츠센터는 정기적으로 운동선수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권실태를 파악해야 하는 업무를 부여받았으며, 인권침해사건이 발생하였을 시 관련 선수들의 보호와 더불어 사건에 대한 조사, 사건처리과정과 마무리까지의 전 과정을 모두 관리하는 스포츠인권 전담기구라고 할 수 있다.

3.1.4.1 폭력

미국 스포츠에서의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 등이 아동, 청소년 선수들을

중심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2019년에 이르러서야 연방법으로 이에 대한 방지정책을 제정하였다. 미국 세이프스포츠센터는 2019년 1월 미국 올림픽・패럴림픽 위원회(USOPC: United States Olympic & Paralympic Committee)와 50개 이상의 국가관리기관에서 학대방지를 위한 일관된 훈련과 정책 요건을 확립한 「소규모 선수 학대 방지 정책(MAAPP: Minor Athlete Abuse Prevention Policies)」을 제정하고 총 1,300만~1,800만 명의 스포츠선수들을 보호한다. MAAPP를 통해 NGB와 USOPC가 준수해야 하는 성인 참가자와 미성년 선수 사이의 적절한 상호작용을 상세히 기술하는 훈련 및 교육 요건과 정책을 제시한다. USOPC와 국가 관리 기관은 MAAPP를 따라야 하며 이 정책은 전국 회원 단체와 지방 산하기관에도 강력하게 권장된다. 국가관리기관들은 이러한 회원단체와 산하기관들에게 이를 따르도록 요구할 수 있다.

MAAPP는 두 가지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훈련요건이며 다른 하나는 미성년 선수와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특정성인들 간의 일대일 상호작용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만약 성인 운동선수가 미성년 선수와 정기적으로 접촉하거나, 올림픽훈련센터에서 훈련을 하거나, 경기 대표단의 일원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훈련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국가관리기관들은 미성년 선수들에게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동의하에 훈련을 제공해야 하며 선수의 안전을 유지하고 스포츠에서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센터의 최소 요건(2017년 청소년 성폭력 및 안전한 스포츠 허가법 기준)을 지킬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들 기관들이 요건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9년 말부터 센터의 규정준수팀의 감사를 받게 된다.

3.1.4.2 성폭력

미국에서는 2010년 앤디 킹(Andy King)과 같은 수영코치들의 어린 선수들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성적 학대 스캔들이 터지고 2011년 미식축구의 제리 샌더스키(Jerry Sandusky) 코치가 수십 건의 아동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2016년에는 체조 국가대표 팀 닥터였던 래리 나사르가 장기간 260여명의 체조선수들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드러난 미국

스포츠계의 성폭력 현실은 성희롱과 성폭행이 스포츠 선수들에게 매우 빈번히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었고 미국 스포츠가 성희롱과 성폭력의 사육장[19]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통해 긴밀하고 매우 고무적인 환경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운동선수들이 그들이 신뢰하는 인물들에 의해 성적 비행에 취약하다는 아픈 현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미국 스포츠 내 코치들에 의한 성폭력은 1980년대부터 논의된 주제[20]이며 권위 있는 직책의 코치들이 그들의 권력을 남용하여 어린 선수들에게 성적 폭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행사해 온 경우는 매우 빈번히 발생하였다. 피해자들은 운동선수들을 포함하여 동료 코치나 스포츠 관련 종사자들을 포함하며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서 성폭력 스캔들이 발생해왔고 주로 아동과 청소년기에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았다.

미국은 대학 캠퍼스 내에서도 학생 선수들에 대한 성적 학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미국대학체육협회(NCAA: 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4년 ‘성폭행과 개인 간 폭력 해결(Addressing Sexual Assault and Interpersonal Violence)’ 가이드를 제작하고 성폭력 이슈를 다루는 것이 대학 간 체육프로그램에 필수적이라고 명시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21]. 해당 결의안에는 (1) 성폭력을 다루는 것은 NCAA 헌법에 명시된 가치와 원칙과 일치하며 (2) 주 및 연방 법률에 의해 위임되며 (3) 캠퍼스 정책에 대한 협력적 노력의 일부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결의안에 따라 새로 구성된 학제 간 태스크포스는 2016년 ’성폭력 예방 툴킷’을 제작하고 2019년 업데이트 하였으며, 이 툴킷은 미국 12개 고등교육기관, 5개 NCAA 위원회, 3개 국가기관이 지지한다.

미국고등학교체육연맹(NFHS: National Federation of State High School Associations)는 학생선수들의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10가지 원칙을 제정하고 관련 기관과 관련자들에게 배포하였다. 여기에는 성적 농담이나 영상물 제공을 금지하고 신체나 외모에 대한 언급이나 과도한 사적 연락이나 선물

19) Reel, J. & Crouch, E. (2019). MeToo: Uncovering Sexual Harassment and Assault in Sport. Journal of Clinical Sport Psychology, 2019, 13, 177-179

20) Parent, S.,& Fortier, K. (2018). Comprehensive overview of the problem of violence against athletes in sport. Journal of Sport and Social Issues, 42(4), 227-246

21) NCAA 웹사이트, “NCAA Board of Governors Policy on Campus Sexual Violence” 2020년 12월 04일 접속
http://www.ncaa.org/sport-science-institute/topics/ncaa-board-governors-policy-campus-sexual-violence

등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 활동 중 신체 접촉을 최소화 할 것과 학교 밖에서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둘만 차량에 탑승하는 것 등도 금지사항에 포함되어 있다.

3.1.4.3 선수 간 괴롭힘

미국 스포츠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학생 선수들 간 발생하는 괴롭힘(Hazing)이 특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 왔다. 특히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선수들은 선후배간, 또는 코치로부터 신체적 · 정신적 폭력과 괴롭힘을 경험하지만 이것을 팀웍을 다지고 유대감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믿거나 새로운 팀원에게 겸손함을 가르치기 위함 혹은 팀 내 리더십 및 의사결정을 위한 서열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혹은 단순히 재미를 위해 하는 전통으로 여기곤 한다[22]. NCAA에 따르면, 74%의 학생운동선수들이 대학재학 중에 한번쯤은 스포츠팀에서의 괴롭힘과 학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 또한 23%의 학생 운동선수들은 괴롭힘의 일환으로 기절할 정도의 많은 술을 마시도록 강요당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 중 절반(47%)은 이미 고등학교 때 이러한 괴롭힘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스포츠 선수로서 겪는 당연한 일들로 여기거나 이것이 괴롭힘이라고 판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괴롭힘은 스트레스에 각기 달리 반응하는 선수들에게 그 결과도 달리 나타난다. 미국의 대학교 내 운동선수들의 괴롭힘은 생명을 앗아갈 만큼 심각한 경우도 많이 있었다. 2004년 린 고든 베일리 주니어(Lynn Gorden Bailey Jr.)는 콜로라도대학교에 입학한 지 3주 만에 숨졌다. 베일리는 숨지기 전날 26명의 새 클럽 멤버들과 30분 안에 위스키 4개와 와인 6병을 마셔야 했고 베일리는 자기 몫보다 더 많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소파에 방치된 뒤 다음날 아침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베일리 사건 이후에도 이런 일들은 연이어 발생하였고, 이러한 괴롭힘은 팀 내 '전통'이라는 부적절하고 잘못된 개념으로 포장되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새로운 팀에

22) NCAA (2007), "Building New Traditions: Hazing Prevention in College Athletics" 2020년 12월 04일 접속
http://www.ncaa.org/sites/default/files/SSI_hazingpreventionhandbook_20160427.pdf
23) NCAA (2016), "Addressing student-athlete hazing" 2020년 12월 04일 접속
http://www.ncaa.org/sport-science-institute/addressing-student-athlete-hazing#:~:text=The%20most%20frequently%20reported%20hazing,part%20of%20a%20hazing%20activity.

서 적응을 원하는 학생들이 희생자가 되고 있다.

이에 NCAA는 대학 내 학생운동선수에게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괴롭힘과 학대를 알아차리고 이를 예방하는데 있어서 코치의 역할과 대학 내 행정관리자들의 역할, 그리고 학생선수와 팀의 주장의 역할을 제시한다. NCAA는 대학교 스포츠팀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운동부 관리자, 코치, 운동 트레이너, 학생선수에게 괴롭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해악, 적절한 팀 활동에 대한 교육을 필수로 제공해야함을 명시하고 있다. 운동부 관리자들은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코치와 팀의 팀장에게 책임을 묻고 캠퍼스 보고 지침을 따라야 하며 제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팀과 선수에 걸쳐 실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음주 교육프로그램도 방학 중에 제공해야하며 운동선수들은 그들이 괴롭힘을 목격하거나 의심스러운 활동이 있을 시 능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3.1.4.4 학습권

미국의 학생선수들의 경우, 중·고등학교 과정에서의 학업이수 과목과 성적이 운동선수로서 대학교를 진학할 시에 매우 중요한 평가요소가 된다. NCAA는 학교를 1부 리그(Division I), 2부 리그(Division II), 3부 리그(Divisoin III)로 구분하고 이들 소속에 따라 학교마다 학업성과에 대한 평가기준 등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NACC 자격센터(Eligibility Center)[24]의 자료에 의하면, 1부 리그 학교는 일반적으로 학생 수가 가장 많고, 가장 많은 체육 예산을 관리하며, 가장 많은 체육 장학금을 제공한다. 여기에 속한 학교들의 학생선수들은 일주일 168시간 기준, 38.5시간을 운동에 쓰고 34시간을 학업에 사용하는데 학업보다 운동의 시간이 더 많다. 2부 리그 학교는 학업성취도, 수준 높은 체육대회에서의 경쟁, 지역사회 참여에 중점을 두고 성장기회를 제공하는 학교들이다. 여기에 속한 학생선수들은 168시간 중 31시간을 운동에 할애하고 37시간을 학업에 할애하여 학업에 좀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부 리그 학교는 대학 운동선수들이 필드에서 뛸 수 있는 운동환경을 제공하며 동시에 학업 성공에도 초점을 맞춘 통합 환경을 제공한다.

24) NACC Eligibility Center, “2020-21 Guide for the college-bound student-athlete” 접속일자: 2020년 12월 5일

3부 리그 소속 학교들의 학생선수들은 168시간 중 28시간을 운동에 할애하고, 40시간을 학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부 리그와 2부 리그에 속하는 학교에서는 NCAA가 승인한 핵심과정 이수, 해당 핵심과정에서 획득한 내신 및 시험 점수를 통해 학문적 기초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표준을 정하고 있다. 3부 리그의 경우, NCAA에서 별도로 평가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소속 학교 자체의 기준을 두고 학생운동선수 선발 시에 학업능력을 평가한다. 이에 모든 학생 운동선수들은 그들이 입학하고자 계획하는 대학이 갖고 있는 학업능력에 대한 입학허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1부 리그에 속한 학교에 진학하고자 할 경우,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4년의 영어, 3년간의 수학, 2년간의 자연과학/물리과학/사회과학, 그리고 4년간 외국어, 철학, 비교종교학 등 추가과정 등을 이수해야 한다. NACC가 승인한 16개의 핵심 과정을 8학기에 걸쳐 이수해야하고 조기 졸업의 경우에도 핵심과목 요건은 충족을 시켜야 한다. 이러한 핵심과목에서의 GPA는 최소 2.3이며 이와 동등한 수준의 SAT 통합 점수도 획득해야 한다.

기준을 충족하고 대학교에 운동선수로 입학을 하는 학생선수들은 학업 성취와 학위 추구에 전념하면서 스포츠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에 대한 평가는 학생선수들의 연간 최소 학점 이수여부, 최소 성적 달성여부, 학위 취득을 위한 성과향상 등의 세 가지 기준에서 이루어진다.

3.1.5 스포츠인권 침해 사례

3.1.5.1 수영 - 숀 허친슨(Sean Hutchinson) 사건

[사건 이슈화]

2018년 2월, 올림픽 수영 선수 아리아나 쿠커스 스미스(Ariana Kukors Smith)가 개인 홈페이지에 미성년자 때 코치 숀 허친슨(Sean Hutchinson)으로부터 당한 성폭행을 자세히 묘사한 “마이스토리(My Story)”를 게재하면서 이슈화가 되었다.

[사건 요약]

쿠커스는 2018년 NBC 투데이(Today) 쇼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이 13세였던 당시 소속되었던 킹아쿠아틱(KING Aquatic) 클럽에 허친슨이 온 이후로 성폭행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15세 당시 속옷을 입고 있냐는 등 성적인 질문을 시작으로 매번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했다. 또한 허친슨은 구강성교를 강제하고 17세 때 훈련이 끝난 후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했으며 엘리베이터에 단둘이 있을 때마다 강제로 추행을 시도했다. 18세 이전까지 성관계를 제외한 모든 것을 요구했으며 18세가 된 이후는 성관계까지 강제했다. 성폭행은 쿠커스가 24세일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녀는 허친슨이 자신의 거의 모든 일상을 지배했다고 주장했다.

허친슨은 2008년 미국 올림픽 대표팀 부감독이었고, 로마에서 개최된 세계선수권대회 미국 대표팀 감독이었다. 2009년 Janet Evans Swim Complex에서 활동한 Fullerton Aquatics 스포츠팀과 연계해 미국 대표팀 엘리트 훈련단의 코치로 임명되었다. 2010년 워싱턴 포스트에 허친슨의 혐의에 대해 보도 되었다. 그 후 미국 대표팀 감독이자 쿠커스의 오랜 코치였던 마크 슈베르트(Mark Schubert)가 허친슨의 행동을 인지하고 이를 상사에 보고하였고, USA Swimming은 사립 수사관을 고용하여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불과 몇 주 뒤 허치슨에 대한 어떤 위법행위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무혐의 상태로 수사를 종결하였다. 허치슨은 2010년 12월 사임했지만 킹아쿠아틱 클럽을 운영하면서 USA스위밍의 일원으로 남아 있었다.

쿠커스의 변호사인 로버트 알라드(Robrt Allard)는 이번 조사가 결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2018년 5월 쿠커스는 스포츠 국가 관리 기구는 미성년이었던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였고 몇몇 고위관계자들은 2005년 당시 허친슨의 성폭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은폐하기 위해 공모했다는 이유로 USA Swimming, KING Aquatic Club, Aquatic Management Group Inc, Pacific Northwest Swimming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때 USA Swimming의 최고위급 간부들이 성폭행으로 기소된 허치슨을 포함한 코치들을 보호하기 위해 배경심사시스템(background screening system)을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녀는 USA Swimming과 같은 단체들은 오랫동안 성적 학대를

저지하고 적발하고 징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들의 대외적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이를 10년 동안의 성폭행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이 제기된 후에 미국 세이프스포츠 센터(U.S. Center for Safe Sport)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하였다. 센터는 허치슨의 아파트 수색을 진행하여 성적 착취에 대한 증거가 남아 있을 수 있는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모두 압수했다. 허친슨은 쿠커스가 성인이 된 이후에 합의된 성관계를 맺었으며 그녀를 학대하거나 강제 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했다. 하지만 조사에서 허친슨이 쿠커스를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code of conduct 304.3.17(Violation of the SafeSport Code) 위반에 의거하여 2018년 10월 5일 USA Swimming으로부터 그를 영구 제명하였다.

현재 USA Swimming은 쿠커스와 금전적 합의를 하였지만 그것이 성폭행 주장을 둘러싼 이 단체의 법적 다툼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쿠커스의 변호사 알라드에 따르면 앞으로 USA Swimming을 상대로 적어도 10건의 소송을 더 제기될 예정이다. 한편 연방정부는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과 법무부 소속 변호사들이 쿠커스를 인터뷰하고, 뉴욕 남부지구는 USA Swimming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고 성학대 혐의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판결]

2018년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Orange County) 상급법원에서 쿠커스는 2005년 당시 허친슨의 성폭행 사실을 은폐한 것에 대해 USA Swimming, KING Aquatic Club, Aquatic Management Group Inc, Pacific Northwest Swimming, 슈베르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특히 재판에서 슈베르트는 아동학대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2020년 3월 USA Swimming의 보험사가 피고인 USA Swimming, KING Aquatic Club, Pacific Northwest Swimming, 허친슨 전원과 합의금을 지불하고 쿠커스에 대해서도 금전적인 합의를 진행했다.

[이후 변화]

USA Swimming은 선수들과 회원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새로운

학대 방지 이니셔티브를 채택하고 있다. 「세이프스포츠프로그램(Safe Sport Program)」을 비롯하여 지난 24개월 동안 클럽이 부모와 미성년 운동선수에게 부정행위를 인지, 대응, 보고하는 것을 교육하도록 장려하는 ‘클럽프로그램을 통한 세이프스포츠 실현(Safe Sport Recognized Club Program)’을 시작하였으며, 성인 선수와 미성년자 선수 사이의 1:1 상호작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미성년자 선수 학대 방지 정책(Minor Athlete Abuse Prevention Policy, MAAPP)을 시행하였다.

또한 USA Swimming 이사회는 「운동선수 우선 행동 계획(Keeping Athletes First Action Plan)」을 승인하고 5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객 관계 관리(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시스템 개발, 온라인 회원 등록, 새로운 교육 플랫폼 구축, Safe Sport 직원 증원 등 선수와 구단을 위한 플랫폼을 기획하고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직원들과 협력하여 향후 이니셔티브를 개발하는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운동선수의 Keeping Athletes First Working Group’ 창설을 계획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마르시 해밀턴(Marci Hamilton) 교수에 따르면 주법이 몇 년 전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성폭행 피해자들이 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쿠커스가 거주하고 있고 소송을 제기한 캘리포니아주는 성폭행 사실을 은폐하는 처벌을 강화했다.

3.1.5.2 체조 - 래리 나사르(Larry Nassar) 사건

[사건 이슈화]

2016년 8월 인디아나폴리스스타(The Indianapolis Star)보도를 통해 미국 국가대표 체조팀의 주치의이자 미시간주립대학교(MSU: Michigan State University) 체조팀의 주치의인 래리 나사르(Larry Nassar)가 최소 14년 동안 다수의 체조 선수를 성추행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USA Gymnastics가 성적인 학대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못했고 아동학대 혐의 사실을 은폐한 사실이 밝혀져 관련 이슈가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사건 요약]

2016년 언론 보도로 인해 미국의 오랜 국가 대표팀의 주치의 나사르가 치료를 제공하는 구실로 적어도 14년 동안 체조 선수들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 2016년 11월 피해자 중 한 명이 캘리포니아에서 최초로 나사르를 성폭행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998년부터 수십 년간 무려 265명에 달하는 여성 체조선수들을 성폭행했다. 이는 스포츠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성적 학대 스캔들에 해당한다. 사건의 규모뿐만 아니라 체육 단체에서 그동안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파문이 일었다.

그 후 나사르는 미시건 주 체조선수들을 학대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으며, 총 41명의 여성이 나사르를 상대로 성적 학대를 주장하며 추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연방수사국(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에 따르면 수영장에서 소녀들을 성추행하는 영상을 포함하여 37,000개 이상의 아동 포르노 사진과 영상물이 나사르의 집에서 적발되었다. 이후 나사르는 연방에 의해 2016년 12월 아동 포르노 혐의로 기소되었다. 2017년 11월 나사르는 미시간 주 잉햄(Ingham)에서 15명, 이튼(Eaton)에서 7명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당시 정당한 치료 제공을 명분으로 자신의 집과 MSU 캠퍼스의 한 병원에서 7명의 여학생을 성추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1월 24일 나사르는 아동 포르노 혐의로 60년의 연방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나사르가 40~125년 징역형을 선고받기 전 일주일 동안 진행된 나사르의 선고 공판에서 150명 이상의 여성들의 연이은 폭로가 이어졌다. 이후 2018년 2월 5일 40~125년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판결]

2016년 11월, 12월에 걸쳐 나사르는 아동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미시간 주 법무장관 빌 슈에트(Bill Schuette)는 이러한 행위가 1998년에 됐다고 밝혔다. 나사르는 첫 번째 법정 출두에서 미성년자 대상 1급 범죄인 성행위 혐의 3건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이후 2017년 7월 11일 나사르는 연방 아동 포르노그라피 혐의 3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2017년 11월 15일 나사르는 미시간 주 잉햄(Ingham)과 이튼(Eaton)에서의 성폭행 혐의로 유죄를 인

정했다. 2017년 11월 22일 그는 미시간 주 법원에서 잉햄에서의 1급 성폭행 혐의 7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일주일 뒤인 11월 29일에 Eaton에서 3번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또 다른 유죄판결을 받아 이러한 범죄에 대해 최소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17년 12월 7일 그는 미국 지방 판사 자넷 네프(Janet T. Neff)에 의해 3회 연속 20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018년 1월 24일 나사르는 아동 포르노 혐의로 60년의 연방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며 네프 판사는 이전에 나사르의 연방 판결에 따라 연속적으로 집행할 것을 명령했다. 이후 나사르는 2018년 2월 5일 40~125년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결과적으로 나사르는 종신형에 해당하는 형을 받고 미국 콜먼(Coleman)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후 변화]

2017년 6월 국제체조연맹(FIG: International Gymnastics Federation)은 학대 및 성희롱에 대한 무관용적이고 강한 태도를 표명하며 '보호의무강령(Duty of Care Code)'을 발표하였다. 미국체조협회(USA Gymnastics)는 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의무적인 행동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금지된 행동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의무적인 학대 예방 정책과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개인과 클럽 멤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며, 이러한 기준 위반에 대한 적절한 보고 채널을 제공해야 한다.

2018년 5월 '성학대로부터 선수를 보호하는 올림픽 공동체의 능력 검토(Examining the Olympic Community's Ability to Protect Athletes from Sexual Abuse)'라는 제목의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에서는 향후 48개 국가올림픽위원회(NGB, National Governing Boards) 중 어느 곳에서든 성폭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미국올림픽위원회(USOC)의 노력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USOC 등의 기관들이 나사르의 성폭행 행동을 예방하고 사후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제시된 데에 따른 것이다.

미시시피 주의 공화당 그레그 하퍼(Gregg Harper) 소위원장은 "운동선수의 안전이 USOC의 최우선 과제여야 했지만 USOC와 NGB들은 공개적으로 압력을 받기 전까지는 의혹에 대해 행동하지 않았다"며 질타했다. 또한 오리건 주의 그레그 월든(Greg Walden)은 위원회가 USOC가 선수 안전에 관한 것보다 메달

과 돈에 대한 본 기관의 명성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비난했다.

2019년 7월 30일 민주당의 리차드 블루멘탈(Richard Blumenthal)과 공화당의 제리 모건(Jerry Moran)에 의해 「올림픽 및 아마추어 선수권 강화법(Empowering Olympic and Amateur Athletes Act)」이 도입되었다. 이 법안은 미국 올림픽 및 스포츠관계자들에 대한 감독과 법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운동선수에 대한 성적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의회가 USOC의 이사회를 해산하고 선수를 보호하지 못할 경우 국가 관리 기관의 인증을 취소할 권한을 부여한다. USOC가 미성년자 아마추어 선수에 대한 아동 학대 혐의를 즉시 법 집행 기관에 보고하도록 법적 책임을 강화했다.

또한 이 법안은 세이프스포츠센터의 기밀 유지 및 정보 공개, 중재 지원 요청에 대한 옴부즈맨 사무소의 의무사항을 개정했다. 위원회는 스포츠에서의 성적학대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2천만 달러를 세이프스포츠센터에 지불해야 하도록 했다. 센터는 USOC와 국가기관이 조사 결과를 방해하거나 조사 결과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가 있는 경우 72 시간 이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3.1.5.3 풋볼 - 제리 샌더스키 (Jerry Sandusky) 사건

[사건 이슈화]

2002년 펜스테이트 미식축구팀 부코치였던 마이크 맥쿼리(MikeMcQueary)는 캠퍼스 라커룸에서 코치 제리 샌더스키(Jerry Sandusky)가 10세 소년을 강간한 것을 목격하고 조 패터노(Joe Paterno) 감독에게 보고한 뒤 열흘 후 다른 대학 관계자들에게도 알렸다. 이후 2011년 11월, 샌더스키가 자선 활동을 빙자해 15년간 어린 소년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폭로됐다. 조사 결과 전설적 명장으로 유명한 패터노 감독과 학교 측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자선 재단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성폭행했다는 점에서 ‘미국판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졌다.

[사건 요약]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Pennsylvania State University)의 풋볼 수비 코디네이터였던 샌더스키는 9년이 넘는 기간 동안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자선단체인 '더 세컨드 마일(The Second Mile)'의 어린 수혜 학생들을 성폭행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샌더스키 자신이 더 세컨드 마일을 설립했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도움과 희망을'이라는 구호를 내건 더 세컨드 마일은 조지 부시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선 단체의 '빛나는 모범 사례'로 칭송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샌더스키는 자신이 설립한 재단에 온 청소년들을 성폭행했고 그가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재단은 해체되었다.

2002년 당시 미식축구팀 부코치였던 맥퀴어리가 샌더스키 코치의 성폭행 사실을 패터노 감독에게 알렸지만 패터노 감독은 자신의 직속상관인 체육 디렉터 팀 컬리(Tim Curley)에게 보고했고 재정 담당 부총장인 게리 슐츠(Gary Schultz)에게도 보고했다. 게리는 당시 캠퍼스 경찰을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샌더스키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사건 관계자 모두 입을 다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 때문에 더욱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해당 사건이 밝혀진 뒤에도 피해자 수는 추가로 늘어났고, 새로운 비리도 속속 드러났다.

폭스(FOX 29)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샌더스키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수는 샌더스키의 아동 성폭행 사건을 다룬 대배심의 23페이지 분량의 '인정사실(finding of facts)' 보고서에 나온 8명보다 훨씬 많은 20명 가까이 된다. 또한 패트리어트뉴스(The Patriot-News)에 의하면 샌더스키의성폭행 시점도 최초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이전인 1970년대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008년 봄, 센트럴마운틴 고등학교(Central Mountain High School) 1학년이던 '피해자 1'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이 샌더스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최초로 샌더스키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다. 피해자는 2005년경부터 샌더스키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사건이 밝혀진 뒤 대학 풋볼의 상징이자 전설이었던 펜스테이트 미식축구팀의 패터노 감독은 해고당했고 그레이엄 스페니어(Graham Spanie)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또한 2012년 1월 폐암으로 사망한 패터노 감독은 2012년 7월 24일 대학스포츠협회의 조치로 대학리그 최다승의 기록을 잃게 됐다.

[판결]

샌더스키가 1994년과 2009년 사이에 발생한 사건에서 비롯된 52건의 아동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샌더스키는 결국 2012년 10월 9일, 45건의 아동 성폭행 혐의로 센터카운티법원(Centre County Courthouse)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30년에서 6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스페니어 학교장, 게리 슐츠 부총장, 팀 컬리 체육국장 등 3명의 펜실베이니아 주 공무원에게는 위증, 공무집행방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 미실시(perjury, obstruction of justice, failure to report suspected child abuse)혐의가 적용됐다. 펜실베이니아주 신탁관리위원회는 루이스 프리(Louis Freeh) 전 FBI 국장의 독립된 조사를 의뢰했다. 이 보고서는 펜실베이니아 주의 오랜 축구 감독 패터노가 스페니어, 컬리, 슐츠와 함께 1998년 초 샌더스키에 의한 아동 학대 의혹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스캔들이 터진 직후 스페니어는 사임했으며 이사회는 패터노와 컬리의 계약을 종료했다.

2016년 11월 3일, 교육부는 대학들이 캠퍼스에 대한 범죄를 신고하도록 하는 법률인 클러리법(Clery Act) 위반으로 펜실베니아주에 해당 역사상 가장 큰 벌금인 24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스캔들의 결과로,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 the 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는 펜실베이니아 주 축구 프로그램에 6천만 달러의 벌금, 4년간의 포스트시즌(post-season) 금지, 장학금 삭감, 그리고 1998년부터 2011년까지의 모든 승리 기록을 무효로 하는 제재를 가했다. 이러한 제재는 NCAA 회원 학교에 가해진 것 중 가장 가혹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마크 에머트(Mark Emmert) NCAA 총장은 “단순히 처벌만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풋볼이 학생 교육보다 절대 우위에 있지 않다는 걸 분명히 하는 겁니다” 라고 말했다. 빅 텐 컨퍼런스(The Big Ten Conference)[25]는 이후 1,300만 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2017년 3월 25일, 컬리, 슐츠, 스페니어는 아동 위험(charges of child endangerment)의 경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7년 6월 2일 스

25) 미국국 중서부 지역의 아이오와(Iowa, Minnesota), 네브래스카(Nebraska) 지역으로부터 동부의 펜실베이니아(Penssylvania) 지역에 이르기까지 스포츠 팀들의 명성과 더불어 학문적으로도 특화되어 명성을 날리는 최상의 수준으로 꼽히는 10개의 대학을 가리켰지만, 1990년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2011년 네브래스카 대학교(University of Nebraska), 2014년 메릴랜드 대학교(University of Maryland), 럿거스 대학교(Rutgers University)이 합류하면서 현재는 총 14곳으로 운영

페니어와 컬리, 슐츠는 샌더스키가 어린 소년들을 성추행했다는 2001년 혐의를 보고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펜실베이니아주 법무장관실 대변인에 따르면 총 형량이 4개월에서 12개월인 스페니어는 2년간 보호관찰을 받게 되며 7,5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컬리는 징역 7개월에서 2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3개월의 징역에 이어 가택연금까지 받고 5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슐츠는 징역 6개월에서 23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7년 항소심에서 스페니어의 경범죄 유죄 판결은 취소되었다.

[이후 변화]

샌더스키 스캔들 이후, 2012년 5월25일, 더 세컨드 마일은 펜실베이니아주 센터 카운티 법원의 승인을 요청하여 애로아동가족목사단체(Arrow Child & Family Ministries)[26]로 프로그램을 이전했다. 2012년 8월 27일, 더 세컨드 마일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피해자들이 제기한 미결 또는 향후 청구 건은 핵심 프로그램이나 자산이 이전 검토되기 전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Arrow Child & Family Ministry에 프로그램을 이전해 달라는 청원서에 체류를 요청했다. 2016년 3월, 수년 동안 애로아동가족목사단체와 펜실베이니아 법무장관이 조건부날인 증서(escrow)에서 보유할 남은 자금을 해체하고 분배한 후, 더 세컨드 마일은 해산되었다.

해당 사건이 연루된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에 한화로 약700억 원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됐다. 미국 대학스포츠협회는 미식축구팀 코치의 아동성추행 사건을 묵인하고 은폐한 펜실베이니아 주립대에 6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이 학교 미식축구팀이 1998년부터 쌓아온 111차례의 승리 기록도 삭제되었다. 대학 측은 총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대학스포츠의 본질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년 3월 26일, 미국 시민권을 위한 사무국(OCR: US Office for Civil Rights)은 펜실베이니아 주가 성희롱 민원을 제기한 학생들을 보호하는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OCR은 2014년 처음 출범한 이후 준수성 검토(compliance review)를 마쳤으며, 대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베스티 드보스(Betsy DeVos) 교육부 장관은 미국 교육부와 대학이

26) 아동에 대한 복지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사들의 단체

펜실베이니아주의 불만 처리, 정책 요구 사항보고, 기록 보관, 직원, 대학 경찰 및 학생들과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들의 훈련 등의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결의안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한계점]

CNN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누가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Who knew what when?)“ 밝혀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이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은 것은 대학 풋볼이 갖는 막대한 영향력에 기인한다. 대학 풋볼은 스포츠 그 이상의 거대한 비즈니스적 의미를 갖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학 풋볼은 미국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이다. 풋볼은 늦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수많은 시청자들을 TV 앞으로 불러 모으며 대형 경기장을 가득 차게 만든다. 미식축구팀은 수백만 달러의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으며 유명한 미식축구팀은 대학 인지도를 높인다. 아울러 높은 인지도는 대학 발전기금을 모으는 데 크게 기여한다. 실제로 펜스테이트는 대학 역사상 가장 많은 금액인 20억 달러’ 캐피털 캠페인(집중 거액 모금 캠페인)’을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샌더스키의 만행이 밝혀짐으로써 학교 이미지와 브랜드에 타격을 입히고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을 우려한 학교 관계자들이 사실을 은폐한 것이다.

한편 2011년 11월 10일, 조 패터노 감독의 사임 사실이 발표된 뒤 수천 명의 펜스테이트 학생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우리는 펜스테이트’를 외치며 밤늦게까지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패터노 감독의 해임에 항의하여 ‘조는 가면 안 돼’, ‘우리는 조가 돌아오기를 원해’, ‘We ♥ JoePa’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패터노 감독의 집을 찾아가기도 했다. 시위 학생들은 펜스테이트사건을 취재하는 언론에 적개심을 보이며 방송국의 취재 차량 밴을 뒤집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은 “펜실베이니아 밖에 있는 많은 미국인들은 이런 시위에 대해 당혹스러워한다. 사람들은 이러한 감정적인 표출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의 초점은 패터노 감독이 지휘하고 있는 동안 조감독에 의해 아동 성폭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맞춰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일부 인터넷사용자들도 펜스테이트 학생들의 시위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며 이들의 시위가 성폭행 피해자의 상처보다는 풋볼 승리와 학교 이미지, 학교 브랜드만을 소중하게 여기는 잘못된 태도라고 비판했다.

3.2 영국

3.2.1 스포츠 관련 주요 이슈 및 동향

영국의 스포츠인권 관련 정책은 인권침해 발생 후 사후대응적 측면보다는 사전방지를 위한 예방적 실천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예방적 접근의 대표적인 예로 2001년 설립된 아동보호스포츠부서(CPSU: Child Protection in Sport Unit)를 들 수 있다. 이 기구는 영국 내 발생하는 스포츠에서의 인권 침해 사건들이 많은 부분 아동과 청소년기에 발생한다는 점에 기반을 두어 아동/청소년 선수들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전국아동학대방지협회(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NSPCC)를 주축으로 스포츠 잉글랜드(Sport England), 스포츠 북아일랜드(Sport Northern Ireland), 스포츠 웨일즈(Sport Wales)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스포츠단체가 기금을 지원하나 운영은 독립적이다. 이 기구의 역할은 영국의 스포츠 코치와 지도자들, 선수 학부모가 지켜야할 인권 보호를 위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들에게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아동 및 학부모에게는 인권관련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영국의 스포츠 인권은 성폭력/폭력 등의 이슈와 더불어 스포츠에의 공평한 참여기회 보장, 스포츠에의 참여 확대, 성차별 철폐 등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사례로는 스포츠잉글랜드의 공공 자금을 지원받는 유소년스포츠신탁기구(YST: Youth Sport Trust)를 들 수 있으며 이 기관은 1994년에 설립되어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교육과정에서 기초스포츠 교육의 강화, 접근성 강화, 취약계층 아동의 스포츠향유 권리 향상 등을 목표로 한다. 또한 여성의 스포츠 참여에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성스포츠피트니스재단(WSFF: Women’s Sport and Fitness Foundation) 등의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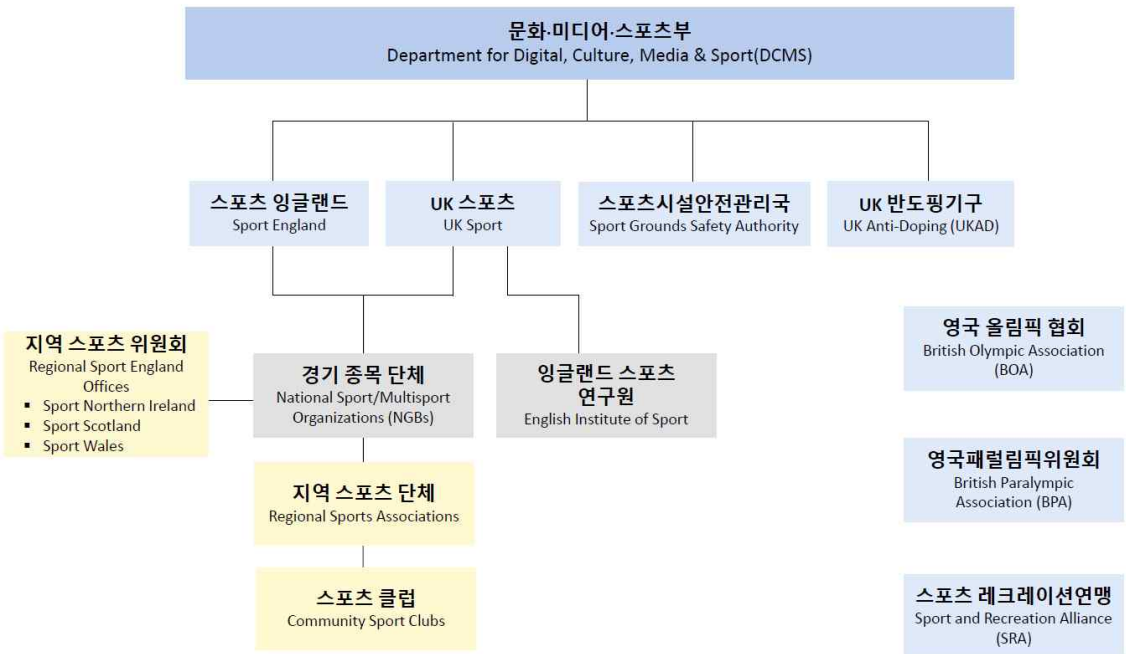
영국은 스포츠인권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예방적 접근을 중시한다. 이에 아동 · 청소년 스포츠선수들의 성폭력 · 폭력 · 차별 등 인권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스포츠 영역 안팎에서 스포츠와 인권관련 전문기구, 시민단체, 정부유관기관, 전문가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스포츠인권 보호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정부산하기관들은 스포츠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과 시스템을 마련하고 스포츠 인권보호 전문기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있다.

영국은 또한 지도자와 학생선수들의 부모가 스포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해야할 지침을 사례와 함께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배포한다. '세이프스포츠어웨이(SafeSportAway)' 가이드라인은 아동, 청소년이 집과 거리가 있는 장소에서 스포츠를 할 경우 안전과 인권을 위해 부모, 지도자 등이 준수해야할 지침을 안내하며, '세이프스포츠이벤트(SafeSportEvent)' 가이드라인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행사에서 준수해야하는 안전규칙과 인권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3.2.2 스포츠 거버넌스

그림 9. 영국의 스포츠 관련 기관 조직도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의 4개 지방정부로 구분된

다. 스포츠 정책은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의 관할 하에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체육협의회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대해 예술위원회가 1945년 설립되어 영국 문화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2000년대부터 이러한 정치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영국정부는 '세계 최고의 스포츠 국가' 정책을 기획했으며, '어린이 스포츠', '지역 스포츠', '엘리트 스포츠', '장애인 스포츠'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스포츠를 전국으로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 현장과 협력하여 시설 확보, 지도자 교육, 예산 보장 등 긴밀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스포츠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는 자신의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영국의 체육관련 정책은 엘리트체육 업무를 관장하는 UK스포츠(UK Sport)와 생활체육 업무를 관장하는 스포츠잉글랜드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엘리트체육□UK Sport 정책 전략의 핵심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이후 만들어진 '타협불가'의 원칙이다. 이는 메달 획득에 보다 가능성이 높은 종목과 선수들에게 보다 많은 재정을 집중하겠다는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세계 준의 경기력 프로그램(World Class Performance Programme), 세계수준의 경기대회(World Class Events), 인재 발굴 및 개발(Talent Identification & Development), 연구 및 혁신(Research & Innovation), 인재개발(People Development), 코칭(Coaching), 평등(Equality), 국제적 영향력(International Influence), 국제개발(International Development) 등의 9개 분야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9개의 핵심 사업에서 추구하는 가치지향은 유소년선수, 최상의 엘리트선수, 지도자, 스포츠의・과학자 등 세계 수준의 엘리트스포츠 경기력을 담보할 수 있는 인재육성과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생활체육 2012년 1월 스포츠잉글랜드는 생활체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삶을 위한 스포츠 2012-2017(A Sporting Habit for Life: 2012-2017)』라는 전략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구체적인 5가지 핵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젊은 세대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기회를 창출한다. 둘째, 스포츠 인재를 육성하고 발전시킨다. 셋째,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시설들을 제공한다. 넷째, 지역 당국과 각 종목별 스포츠 단체들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실

제적인 기회들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5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크게 전체 스포츠계획(whole sports plans), 지역투자(local investment), 시설(facilities), 학교(schools) 등 4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체 스포츠계획에서는 종목별 경기단체의 지원을 통해 14-25세에 해당하는 젊은 세대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제고하고자 하며, 특히 학생들이 학교를 마친 후 클럽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도록 보다 많은 스포츠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한다. 지역투자 영역에서는 학생들을 위해 스포츠 활동을 조직하고 운영하게 되는 대학 스포관계자들의 국가적 네트워크 구축, 소외된 지역의 젊은 층을 지원하기 위해 방문클럽 스포츠 프로그램의 범위 확대 그리고 어떠한 사업이 스포츠 참여율을 신장시키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조사 등에 보다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자 하였다. 시설 영역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장소에 스포츠 시설의 개방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보다 개선된 시설들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학교 영역에서는 지역사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 시설들을 개방토록 하는데 자원을 투자하고, 잉글랜드 모든 학교의 어린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경기/대회의 학교게임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DCMS, 영국올림픽위원회, 교육부, 보건부, 유스스포츠트러스트(Youth Sport Trust)[27]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영국 사회의 획기적인 변화를 준 계기는 1989년 제정된 유엔 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었다. 영국 정부는 1990년 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협약에 규정된 아동·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어떻게든지 보장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28]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더라도, 보장 정도가 성인과 동일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학생들은 인간으로서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지만, 학교 내에서는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 제한의 논리는 3가지로 정리된다.[29] 첫째, '부모대신원리(the common law doctrine of in loco parentis)' 이다. 미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이 원리는 원래 영국에서 나온 이론이다. 1770년의 영국 블랙스톤(Blackstone)은 '아버지는 친권의 일부분을 학교 교원에게 이양할 수 있다. 교원은 부모의

27) 유소년 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28) 이석배, 송요원, 이준순, 상게보고서, 28면.
29) 상게보고서.

입장에 서서 (in loco parentis)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부모와 같이 학생을 제약하고 교정할 권한을 갖는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30] 이러한 원리가 영국의 전통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둘째, 학생 자치의 원리 또는 단위학교 자치의 원리이다. 학교 구성원들이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 스스로 통제받는 것은 타인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의 전제는 학생들이 규칙 제정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학교가 공적 기능(public function)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견해이다. 학교가 공적 기관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해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영국 교육 현장을 보면,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 제한에 대한 법리는 3가지가 모두 섞여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대신원리’가 기초가 되고, 학교가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이라는 것과 ‘학생의 자치’가 섞여 있다.[31]

영국의 스포츠 행정은 문화・스포츠・미디어부 산하 비정부 공공기관인 UK스포츠와 스포츠 잉글랜드를 통한 정부 보조금 및 복권 기금의 배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기관의 기금은 주로 경기 종목 단체들로 배분되며 사실상 정부의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양쪽의 정책을 프로그램으로 구체화하여 실행하는 주체가 된다. 여기에서 UK스포츠는 엘리트체육관련 기금 배부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 기금을 배분받은 종목별 경기단체들은 엘리트체육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영국의 전국 단위 학교 스포츠 대회인 스쿨 게임은 생활체육, 학교체육 및 엘리트 체육을 연계하는 연결고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대회의 3단계인 광역 단위 대회에서 경기 종목 단체들이 유능한 선수들을 선발하고 자체 훈련 과정으로 편입시켜 마지막 4단계인 전국대회에 출전하게 한다. 이를 통해 우수한 학생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경기 종목 단체들의 엘리트 선수 육성 프로그램으로 합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장애인체육에서 엘리트 선수 육성은 UK스포츠가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은 스포츠 잉글랜드가 담당하고 있다.

학교 스포츠 정책에 관여하는 중앙 정부 조직들은 교육부, 보건부, 그리고 DCMS이며, 독립 자선단체인 청소년 스포츠 신탁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 조

30) 상게보고서, 29면.
31) 상게보고서,

직들은 주로 행정적인측면과 재정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청소년 스포츠 신탁은 체육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자문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학교 스포츠 재정 지원은 교육기금배분기관이 지방 정부 당국으로 배분하는 학교전용 보조금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 보조금은 교과과정별로는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 다만 교육부, 보건부, DCMS에 의해 조성된 '체육교육 및 스포츠 기금(PE and Sport Premium)'의 경우 초등학교의 체육교육과 스포츠에 한정하여 용도 지정된 지원금이다.

3.2.3 스포츠 관련 법・제도

(1) 1998년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8)

영국의 인권법에 따라 제1조에 권리와 자유(Schedules Section1(3)에 관한 사항과 제2조에 모든 사람의 생명권은 법으로 보호된다. 누구라도 형벌이 법으로 규정된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후 법원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도적으로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으며,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무력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명의 박탈은 본 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법 제5조는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로 모든 사람은 사람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2) 청소년활동센터법(Activity Centres (Young Persons' Safety 1995)

10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센터 및 운영자의 규칙을 규율하는 법률이 모험적인 활동에 참여한다.

(3) 아동법 1989(Children Act 1989)

최근 몇 년 동안 스포츠 코치에 가장 중요한 법률 중 하나는 아동보호이다. 아동보호는 1989년 아동법 및 기타 법률에 따라 부모와 다른 사람의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제도이며, 이 개념은 또한 스포츠 분야에

도입되었다. 영국 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스포츠 단체에 아동보호를 도입하기 위해 전국 아동 학대 예방 협회 (NSPCC: 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와 스포츠 잉글랜드가 공동으로 하는 CPSU가 2001년에 설립되었다.

(4) 아동청문회 (스코틀랜드) 법 2011(Children's Hearings (Scotland) Act 2011)

어린이 청문회, 청문회 전 패널 또는 법원이 아동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 결정을 내리는 경우 적용된다. 또한 어린이 청문회, 청문회 전 패널 또는 법원은 자녀의 어린 시절 동안 아동의 복지를 보호하고 촉진할 필요성을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본다(어린이 청문회 (스코틀랜드) 법 제26조). 또한 아동보호 명령에 따라, 아동이 지방 당국에 의해 보살핌을 받는다. 지방 당국은 보호 의무를 진다(어린이 청문회 (스코틀랜드) 법 제44조).

(5) 학교체육 대책

'학교 스포츠 파트너십'은 학교체육에 대한 구체적인 척도이며, 클럽 활동 등을 통해 가능한 한 아동의 요청에 대응함으로써 지역지도자와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한다. 또한 '신입회원', '현상 유지', '엘리트'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설 구축, 지도력 교육 등 조직 수립, 조직 전체의 지배구조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영국은 지역 스포츠 홍보를 위해 스포츠에 참여하는 여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가족의 경우 아침에 스포츠 수업을 개최하고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를 위한 보육원을 클럽을 신설해야 하며, 여성의 클럽의 경우 참여 수수료의 혜택이 주어진다.

다민족 영국에서도 소수 민족의 문제는 심각하다. 특히 2005년 7월 런던에서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의 가해자가 영국 태생의 소수 민족이라는 사실에 당시 사회에 긴장감 고조되었다. 특히 사건 이후에 소수 민족이 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창출하고 보증하는 것이 주요 정치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지역 스포츠는 대책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연맹과

연계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국 패럴림픽위원회(British Paralympic Committee)는 2003년에 설립되어 영국 스포츠뿐만 아니라 국영 복권 기금과 세계적 수준의 성과 계획을 위한 스폰서를 운영하고 있다. 패럴림픽 스포츠 단체(영국 휠체어 농구협회 등 장애인스포츠 관련 국가본부 및 국가 체육기구)와 장애인 유형에 따라 국가 체육 단체가 등록되어 있다. 위원회는 선수를 육성할 기회를 제공한다.

1998년에 설립된 장애인스포츠연맹(EFDS: English Federation of Disability Sport)은 영국 지역의 장애인스포츠 홍보에 관여하는 조직이다. 장애인이 거주 지역에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지점이 있으며, 코디네이터는 각 지점에 배정된다. 코디네이터는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스포츠 프로젝트와 이벤트를 개최하기 위해 영국 및 장애인스포츠 단체의 지부와 협력체계를 구성한다.

(6)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준수규칙

영국선수협회(Scottish Athletics Federation)는 모든 어린 선수들이 즐겁게 운동하며 육체적, 성적,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폭력에 대한 정의와 준수해야 할 규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은 아동폭력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내리고 구체화시켜 폭력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첫째, 육체적 폭력(physical abuse)이다. 부모나 어른에 의해 아이들에게 고의로 부상을 입히거나 부상임을 알면서도 예방하지 않았을 때를 얘기하며 부상에는 때리기, 흔들기, 쥐어짜기, 화상, 물기, 과도의 강압, 술, 마약이나 독극물, 질식이나 익사 시키려 하는 것 등이 포함한다. 또한 과도한 연습과 운동으로 인하여 성장기 발육에 장애를 미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둘째, 감정적 폭력(emotional abuse)이다. 아이들 보호를 등한시하거나 위협, 비꼬는 말투 사용, 비아냥거리거나 소리 지름, 자신감, 자존심을 상실하게 만드는 경우 등이 해당되며 위의 사항들은 어른들의 지속적인 무시 혹은 아이들의 노력이나 발달에 무관심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높은 기대로 인해 비현실적인 압력을 가할 때 나타난다.

셋째, 무시(neglect)이다. 아이들에게 충분한 옷, 음식, 따뜻함, 의료치료 등이 필요할 때, 챙겨주지 못하거나 적절한 조치 없이 아이들을 홀로 방치하였을 때, 사고나 위험의 위협에도 아이들을 방치했을 경우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성적 폭력(sexual abuse)이다. 어른들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아이들을 만날 때를 의미하며 아이들에게 성적 활동 즉 성교, 수음, 구강성교, 항문성교, 성기노출 등에 노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아이들의 구체적인 권리와 클럽에서 준수해야 할 규칙은 다음과 같다.

표 26. 아동의 구체적 권리와 클럽 규칙

아이들의 구체적인 권리	클럽에서 준수해야 할 규칙
• 아이들의 복지가 최우선이다. • 모든 아이들은 그들의 문화, 능력, 성별, 언어, 민족, 종교에 상관없이 폭력으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다. • 모든 폭력에 관한 의심이 의혹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들은 신중하고 엄격히 대응 한다. • 클럽이나 다른 조직들은 방침들을 준수하겠다는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 함께 참여하는 어른들은 보호와 함께 최상의 연습 환경을 제공하여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야 한다.	• 모든 관리원들과 위원들은 그 지역에서 어린이 학대에 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 바람직하지 못한 연습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 영국 운동선수 협회나 그 지역과 관련된 SAF(Scottish Athletics Federation)의 권장 사항을 이행한다. • 피해 아동에 대한 비밀을 유지한다.

구체적으로 주체별로 지켜야 할 규칙은 다음과 같다.

① 클럽에 소속된 아동 보호 관리인(Child Protection Officer)의 규칙

- 모든 클럽 자원봉사자, 관리자, 지도자들은 자원봉사 신청서 양식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SAF(Scottish Athletics Federation)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 문서를 송부해 주어야 한다.
- 다른 클럽 멤버들에게 보고서 형식에 대한 조언을 주고받아야 한다.

② SAF(Scottish Athletics Federation)가 따라야 하는 규정

- 필요할 시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아동 보호 담당관이나 클럽에 대한 행정지도를 수행한다.
- 위법 행위에 관한 결정
- 아동 보호 담당관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 제공
- 부적격자에 대한 전체 명단 보유
- 정책 관리

③ 영국 운동선수 위원회에서 지켜야 하는 규정
- 아동 보호 담당관의 훈련 프로그램 개발
- 모든 부적격 담당관들의 명단 보유
- 모든 정책 관리

④ 지도자가 지켜야 하는 규정
- 건강과 안전: 지도자들은 운동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하며 응급처지 시설과 응급실로 항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코치들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연습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 폭력 예방: 지도자들은 어린 선수들을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 지도자는 모든 아동학대에 관한 사항들을 숙지하고 유사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폭력예방을 위한 대응방법

영국선수협회(SAF: Scottish Athletics Federation)에서는 폭력예방을 위한 대응방법 도출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협회에서는 어린 학생운동선수들에게 폭력이 발생 되는 몇 가지 측면을 분석하여 그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적 대응법이 있다.

① 1단계-불평과 의혹을 유발하는 사건들에 대한 대응 방법
- 어느 한 아이가 당신에게 말할 수도 있다.
- 누군가가 한 사건을 보고하거나 또는 그 사건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

기할 수도 있다.

- 당신은 그 사건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다음과 같은 단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차분함을 유지하라: 부적적한 행동을 급하게 취해서는 안 된다.
- 아이를 안심시켜라: 아이들을 비난하지 말고 아이들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경청하고 신뢰하라: 아이들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 아이와 이야기할 수 있는 성인 한명을 참석시켜라: 진술을 불일치는 법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 질문을 최소화하라: 상당수의 경우 고개를 끄떡이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수 있고 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인식하는 것이 좋다. 만약 당신이 질문의 해야만 한다면 예/아니오 방식의 응답보다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현행 법령은 매우 엄격하므로 만약 타인에 의해 말이나 생각들이 아이들에게 주입된 것처럼 보인다면 아동학대 소송은 각하될 수도 있다.
- 아이가 말한 것을 명확하게 이해했음을 확인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적법한 기관에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 신분이 확인된 아동보호 인력과 상담하라: 당신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교환할 수 있다.
- 신뢰감을 유지하라.

<피해야 할 것>

- 공포감을 조성하지 말라.
- 비밀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이해시켜라: 당신은 가능한 최대의 신뢰감을 유지하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중단시키기 위해 다른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 아이에게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지 말라.
- 지연시키지 말라.
- 추가적인 조치로 인해 발생한 책임을 아이 탓으로만 돌리지 말라.
- 모든 경우에 있어서 만약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24시간 통화가 가능한 NSPCC로 전화 연락하여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② 2단계(기록): 아이가 말한 사실 또는 당신의 관심을 알아보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시켜 기록을 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 아이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 발생한 사건의 일자, 시간 그리고 의혹의 내용
- 아이의 행동과 감정상태, 타박상 또는 다른 상해를 설명하는 당신의

관찰 내용

- 사건에 대한 아이의 진술(만약 아이가 이야기 한다면)
- 관찰결과 당신이 아이에게 취한 행동과 아이에게 전달한 이야기, 보호자와의 접촉 여부

③ 3단계: 적법한 인물의 참여

보고서가 완성되었을 때 당신은 당신의 클럽을 책임지고 있는 아동보호 담당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로써 가장 적절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아동보고 담당관은 추가적인 조치의 필요 여부를 명시함과 동시에 해당 보고서를 SAF 임원에게 전달하고, 임원으로 하여금 징계위원회(Disciplinary Panel)를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아동보호 담당관의 사건 혹은 의혹에 대한 처리 방법이 아동의 인권에 반한다고 생각된다면 당신은 즉시 해당 기관의 책임자(학교장, 스포츠센터 관리자, 팀 관리자)와 접촉 하여 이를 기록해야 한다. 이후 해당 기관의 책임자는 즉시 사회복지단체 및 사법당국과 접촉해야 하며 동일한 성명의 기록, 공무원의 지정이 필요하며 추후 연락이 필요할 경우 통화시각, 일자와 함께 기록해야 한다. 접촉은 또한 SAF의 임원과 직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결코 지연시켜서는 곤란하다: 만약 당신이 앞서 제시한 사람들과 즉시 접촉할 수 없는 경우, 당신은 경찰이나 사회복지기관과 같은 관계 당국과 접촉해야만 한다. 만약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은 경우 NSPCC 무료 상담전화를 통해 조언을 구할 수 있으며 또는 지역 사회복지기관의 하부 부서와 접촉할 수 있다.

지정된 아동보호 담당관을 위한 지침은 다음과 같다.

- 잘못된 행위나 의혹에 관한 보고서가 당신의 관심사항이라면 의사결정은 제기된 의혹의 남용 여부 또는 조사의 불성실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만약 의혹이 남용된 경우, 다음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 의혹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해당 기관의 책임자 혹은 지역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보고와 이에 관해

기록한다.

- SAF의 임원에게 해당 사건을 알리고 부분적인 추이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한다. 임원은 징계위원회를 선정하기 전기간 동안 피고발인에 대한 처분을 내린다.
- 신뢰감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제기된 의혹이 불성실한 조사에 기인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기된 의혹을 기록할 것: SAF의 임원에게 해당 사실이 전달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징계위원회가 선정 될 수 있고 면밀한 조사가 실행될 수 있다.
- 긍정적인 실천 방안의 수립 및 촉진: 클럽과 스포츠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실천 방안을 전개해 나감으로써 아동학대를 감소시킬 수 있다. 클럽은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고 위해 요소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침을 확립해야 하며 클럽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은 만약 아동학대가 발생한 우려가 있고 그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숙지해야만 한다.
- 아동보호 담당관의 임명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핵심적인 사항이며 클럽 전체를 통해서 긍정적인 실천 방안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고, 클럽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러한 역할은 사례 제시, 간단한 훈련 발표, 전단지와 포스터의 활용, 클럽에서 활용되고 있는 분야를 통한 공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 위에서 제시한 절차들 이외에도 아동보호 담당관들은 클럽들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경우 자원봉사자들이 적절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자원봉사자 들은 사법 경찰의 심사 시 흔쾌히 응해야 한다. 작성된 서류는 요청이 있을 경우 SAF로 송부되어야 한다. 클럽들은 아이들의 집 전화번호가 표시된 아동 보호 지침서도 비치해 놓아야 한다. 아동보호 담당관이 자신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필요시 제공되어야 한다.

- 사진과 비디오의 사용-현재 스포츠 경기장 내에서 스포츠 사진과 영상의 오용이 증가 되고 있는 추세이며 아동학대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스포츠 센터들은 모든 사람들이 간단한 서류에 자신들의 성명, 주소, 자신들의 관심 분야를 간단한 서류에 기입하게 한 다음 사진기와 영상촬영기를 지참하게 하고 촬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가족 혹은 지도 목적으로 선의로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료의 잘못된 사용을 막기 위해서이다. 스포츠 클럽, 사건 담당자 및 스포츠 센터들은 이러한 실천 방안을 채택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가해자의 복직에 관한 법규는 다음과 같다.

- 자격이 정지되었거나 혹은 퇴출된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 동안 지속된다. 이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자는 복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 복직되는 경우는 없다.
- 위원회는 복직 요청에 대한 사전 심사를 해야 하는데 이는 사전심사가 필요할 경우에 한한다.
- 비록 결정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복직 요청에 대한 채택 혹은 기각 의사결정은 일반적인 위원회 업무처리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위원회는 추가적인 서면이나 구두 진술을 필요로 할 수 있다. 구두 진술의 경우 복직 신청자는 누군가를 동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는다. 이러한 경우위원회의 결정에 반하는 의사표현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아동학대로 인한 전과자의 경우 아이들과 관련된 직종에서는 자동적으로 퇴출된다.
- 모든 자원봉사자들은 과거의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고백하고 그 사실들은 은폐했을 경우 자격정지나 그에 따른 처분을 감수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자원봉사 신청서 양식' 을 작성하여야 한다.

책임소재에 관한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SAF는 복직 신청자 자신의 변호를 위해 취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수수료, 비용, 기타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신청자들에 대한 유해한 행동이나 고통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책임지지 않는다. 시행 방침에 대한 감독에 대한 내용도 다음과

같이 포함되어 있다.

- 사건 추이 및 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 시행 방침의 실행 가능성과 효과와 관련 일반적인 진술을 클럽 측에 요청해야 한다.
- 아이들과 함께 할 때는 항상 그 현장을 공개해야 하며 당신과 각각의 아이들이 관찰 반경 내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상황은 지양해야 한다.
- 만약 아이에게 신체적 접촉을 통한 지도가 필요하다면 지도는 공개적이어야 하며 해당되는 아이에게 우선 의향을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아이가 계속 움직이고 능숙한 자세를 유지하기가 곤란할 경우 세심함이 요구된다. 몇몇 학부형들은 아이들에 대한 신체적 접촉에 대단히 민감하므로 학부형들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 학부형들이 자신들의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는 곳이 바로 탈의실이다. 만약 탈의실을 감독하고자 한다면 감독관을 항상 2인 1조로 구성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 원정경기를 떠날 경우 아이들은 적어도 1명의 성인 남성과 1명의 성인 여성을 동반하여야 한다.
- 자원봉사자들과 전문지도자는 아이들의 권리와 인격을 존중해 주어야 하며 모든 아이들을 평등하게 대해 주어야 한다.
- 자원봉사자들과 전문지도자는 아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바람직하고 안전한 곳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며 영국육상연맹(UKA: UK Athletics) 와 SAF에서 제시한 모든 실행 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유사시에 대비하여 충분한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 지도자들은 선수지도 리더십과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어른들은 자신들이 지도하거나 옹호하고 있는 활동들이 아이들의 연령, 성숙도, 개인능력에 비추어 타당한가를 확인해야하며 단체 경기 참가가능 연령에 대한 UKA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어른들은 아이들의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더욱 계발시킬 필요가 있으며 규칙 위반과 금지된 도구의 사용 같은 일들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 어른들은 아이들의 개별 행동과 외관에 대한 높은 기준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어른들은 아이들을 과도하게 비판하거나 혹평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는 아이들의 자부심이나 자신감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래 언급한 상황들이 회피할 수 없는 상황들이라면 클럽의 책임자, 책임 기관, 부모나 보호자에게 고지함과 동시에 동의를 득한 후에만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정열적인 키스나 포옹을 지양하여야 하고 만약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연히 아이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하거나 또는 성적인 연상을 유발하거나 오해나 방해요소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일 경우, 가능한 신속하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 부모나 보호자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만 한다.

- 다른 아이들과 격리되어 홀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
- 단거리 자동차 여행 시 아이들을 혼자 데리고 가는 것
- 아이들이 당신과 함께 있을 경우 아이들을 당신의 집으로 데려가는 것

영국의 윤리 및 행동강령은 국립코칭재단은 영국연구소가 발간한 윤리강경으로 발전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브라인언 맥(Brianmac)'[32]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영국에서는 학생들도 기본적 인권의 주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영국은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과 관련하여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과 「유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존중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인권협약의 영향을 받아 제정된 영국인권법(Human Rights Act 1998)도 학생에게 적용된다.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구체적 조항은 영국 교육법에는 없다. 다만 교육법 제548조(section 548 of the Education Act 1996)와 '교육과 감사법' 제93조(section 93 of the Education and Inspections Act 2006)에는 체벌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8) 스포츠 잉글랜드(Sport England) 평등정책 2019

32) 영국의 스포츠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https://www.brianmac.co.uk/ethics.htm)

스포츠 잉글랜드는 노동 인구 전반에 걸쳐 평등과 다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행법의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부적절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을 실현한다. 연령, 장애, 성별 재배치(정체성 포함), 결혼, 시민 파트너십, 임신, 출산, 인종(색상, 국적 및 인종 또는 국적 포함), 종교 또는 신념, 성별 및 성적 지향에 관하여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있다. 평등법은 스포츠 잉글랜드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및 피해를 제거하고 있다.

(9) 전국아동학대방지협회(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전국아동학대방지협회(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NSPCC)은 교육자료 지도와 학생수업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였다. NSPCC에서는 학교에서의 학대에 관해 지속적인 아동학대, 집단따돌림, 가정폭력이 만연하고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경계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사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는데, 자녀의 행동의 변화, 성행위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성적으로 사용하는 명시적 언어, 성격의 변화, 불안함, 성적인 방법으로, 물건이나 장난감을 사용하는 것, 식습관의 변화, 특정장소에 대한 불안, 비밀을 공유하거나, 밝히기 꺼려함 등이 발견될 때, 보호자에게 비정상적이나 행동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학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보호책임자, 자녀보호정책을 펴고 있으며, 경찰 또는 NSPCC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아울러, 학교에서 학대에 대한 교육을 서술한다. 모든 학대를 경계하고, 아동을 위한 적절한 지원행동, 아이들에게 자부심과 자신감 및 존중하는 관계형성,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여, 광범위한 커리큘럼의 개발 및 발전, 양질의 아동 보호에 관해 참여 및 아동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NSPCC는 아이들에 대한 학대는 최악의 일 중에 하나임을 밝히고 있다. 학대는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발견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을 밝힌다.

부모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공하고 있다, 부모는 아이의 학대를 들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듣고 충격을 받지 말며, 침착하게 행동하기, 자녀가 하는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세부사항을 묻지 말기를 지시한다. 부모는 장녀에게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지 말고, 자녀에게 공유해야 함을 지도해야 한다고 말하며, 정보를 빨리 기록하고, 정보는 세부적인 날짜를 기입해야 한다고 지시하고 있다.

3.2.4. 스포츠 관련 인식현황

영국정부는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 스포츠 관련 단체와 클럽, 기관들에서 아동을 비롯한 취약한 스포츠 선수들의 인권이 오랜 기간 침해당해 왔고 현재도 지속되고 있음이 몇몇 엘리트선수들의 폭로로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제도적/법적 방지책 마련, 스포츠 인권관련 전담기구 설치 등을 추진해 왔다.

특히 스포츠계에서 일어나는 아동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2001년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 전담기구인 아동보호스포츠부서(Child Protection in Sport Unit, CPSU)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아동인권 관련 대응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예로는 2002년 영국 정부는 아동을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스포츠안전기준을 채택하고 부모, 지도자, 선수 등이 상황별 준수해야 할 안전 및 인권가이드를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아동이 집과 먼 거리에서 스포츠 활동을 할 경우에 지도자, 코치 등이 준수해야 할 안전에 대한 가이드인 ‘세이프스포츠어웨이(Safe Sport Away)’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행사에서 준수해야할 안전 및 인권 가이드인 ‘세이프스포츠이벤트(Safe Sport Event)’가 있다.

영국의 경우, 캐나다, 미국 등과 마찬가지로 스포츠에서 일어나는 인권이슈의 상당부분이 성폭력/성추행 등 성적 학대와 관련이 있으며 성인기보다는 아동기에 발생하고 성인이 된 후 피해사실을 밝히거나 이슈가 되는 경향을 보인다. 코치들의 언어폭력(경시, 위협, 굴욕적인 언어사용, 고함 등), 신체적 위협(선수들 앞에서 운동도구를 부러뜨리는 행위, 벽을 치고 물체를 던지는 행위 등)이 아동기 선수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하여 왔으나 이를 인권침해로

인식하거나 신고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최근에는 많은 성인 운동선수들이 학대의 사실을 폭로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성적학대에 관한 것이고 다른 유형의 학대는 적게 보고되거나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는 영국의 경우에도 스포츠계가 지도자의 권력과 권위를 악용하여 선수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학대를 자행하게 되는 구조적, 문화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스포츠 분야에서 아동 선수들이 경력을 쌓는 동안, 성과가 좋은 선수들은 압박감, 도전, 보상을 모두 경험한다. 그러나 성공한 선수는 이러한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부적절한 훈련방식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어린 선수들은 심지어 코치가 부모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단계가 올라가면서 이들의 운동 경력의 길을 결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코치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환경이다. 코치의 명성 또한 그들이 배출하는 선수들의 성과와 직결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선수들을 극한으로 밀어넣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언어적, 감정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추행, 성폭력 등 비합리적인 일들이 스포츠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종종 비밀리에 일어나고 있다. 만약 선수가 이것을 거절한다면, 선수들은 스포츠를 떠나도록 강요받거나 코치에게 야단을 맞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 또한 이러한 환경을 부추겼다.

영국정부는 이렇듯 그동안 스포츠계에 만연해 온 아동선수들의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2001년 CPSU를 설립하고 아동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구설립과 제도마련을 통해 훈련과정에서 자행되는 각종 폭력이 학대에 해당하며 이는 근절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지도자와 선수, 부모 모두에게 심어주고 특히 성적 학대의 근절을 위해 다양한 정부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2.4.1 성폭력

2015년 3월 ‘아동 성학대 독립조사기구(The Independent Inquiry into Child Sexual Abuse)’가 법정조사기구로 설치됐다. 이 기관은 연방기관 및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주 소속기관들이 아동들을 성적 학대와 착취로부터 보호하는데 있어 얼마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

국에서 아동 성학대는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젊은이가 성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유인하는 것을 비롯하여 접촉 및 비접촉 성학대, 아동 성 착취, 아동 성학대에 대비한 그루밍(grooming) 등을 포함한다. 이 기구는 아동 성학대에 대한 15건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아동 성학대의 성격과 규모를 파악하고 제도적 대응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밖에도 영국정부는 '진실프로젝트(The Truth Project)'를 통해 2016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아동성학대의 경험을 공유한 3,939명을 조사하였는데, 이 가운데 64명(2%)이 스포츠 맥락(위치나 가해자 기준)에서 발생한 아동 성학대의 피해자였다. 64명 중 58명은 대부분 스포츠 조직에서 활동하는 코치/자원봉사자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으며 학대장소로는 스포츠클럽(64명 중 39명)이 가장 많이 거론되었고 학교, 레크리에이션 클럽, 종교나 신앙에 기반을 둔 단체 등도 포함되었다. 가장 많이 언급된 스포츠는 축구(64명 중 14명)와 수영(64명 중 13명)으로 체조(64명 중 5명), 요트/카누/보트타기(64명 중 5명), 무술(64명 중 5명) 순이었다. 한 명 이상의 응답자가 언급한 다른 스포츠로는 육상(4명), 테니스(3명), 스쿼시(2명) 등이 있다. 게다가, 사이클링, 승마, 댄스, 크리켓, 아이스 스케이팅, 펜싱 등 다양한 스포츠에 대해 말하는 응답자들이 있었다.

이러한 진실프로젝트를 통해 성학대 피해자와 생존자들이 공유한 피해경험은 최근 몇 년 사이 영국 언론의 주목을 받은 엘리트 선수의 아동 성학대 피해사례보다 더 다양한 방식으로 빈번하게 성학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스포츠에 종사하는 지도자, 개인코치, 강사 등의 가해자가 부모의 보호가 부재한 상황을 만들어 아동과의 밤샘체류, 여행, 가해자의 집 방문시, 혹은 체육회나 협회 활동과 관련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성학대를 자행하는 방식이었다. 가해자들은 피해아동이 좀 더 선배 팀에서 뛸 수 있도록 하는 등 스포츠 관련 보상을 그루밍이나 강요의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어린 시절 스포츠계 성적학대를 적극적·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피해자가 대다수였다. 이들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으나 그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았고, 성인들은 이러한 피해자들이

보이는 행동적 변화나 시그널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다. 심지어 이러한 변화들이 매우 명백하고 학대 사실을 알린 경우에도 묵살당하거나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Bringer(2010)는 영국의 남자 수영 코치 19명을 대상으로 코치와 선수간의 성관계의 적절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는데, 이들은 16세 이하 선수들과의 성관계는 만장일치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었으나 17세 이상의 선수들과는 자율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3.2.4.2 폭력

영국의 엘리트 선수들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운동선수들의 스포츠 계급이 올라갈수록 코치들의 정서적 폭력행동의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3]. 이들 엘리트 선수들은 이러한 폭력의 정도가 엘리트 이전 수준에 비해 더 심각하다고 인식했으며 코치-선수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폭력을 경험하는 가능성이 일반선수들에 비해 컸다. 이들에게는 코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 운동선수의 훈련을 넘어 식습관, 수면 패턴, 심지어 대인관계 등 운동선수의 삶의 다른 영역으로 확장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서적으로 폭력적인 지도방식은 엘리트 운동선수들에게 흔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엘리트 아동 선수들의 경우에도, 코치들이 사용한 습관적인 '코칭 도구'는 종종 엘리트 아동 선수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되고 있다. 언어적 폭행은 아동 선수들에게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들이 어떠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게 된다. 엘리트 아동 선수들은 국제적인 선수가 되고자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이들 코치와 함께 훈련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아동 피해자들은 어른들의 압박으로 인하여 피해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 이는 비단 성폭력의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언어적, 신체적, 정서적 폭력의 상황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 학대 사실을 부모나 선생님, 운동 관계자들에게 알렸을 때 그것을 학대라고 인지하지 못하거나, 가해자들을 옹호하는 등의 반응을 보임으로써 아동들은 더 이상 코치들의

33) Gervis & Dunn, 2004

폭력적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고발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화로 인해 폭행, 성추행, 성폭행 등의 비합리적인 인권침해 상황들이 스포츠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종종 비밀리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엘리트 아동 운동선수 12명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행한 연구는 코치들이 그들에게 경시, 위협, 굴욕과 함께 자주 소리쳤다고 말했다. 선수의 시합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는 선수들 앞에서 물체를 던지는 행위, 벽을 치는 행위, 운동에 사용 되었던 도구들을 부러트리는 행위 등을 했다고 한다. 언어적 행동에는 체중과 외모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포함하여 소리 지르고, 업신여기고 욕을 하고, 굴욕감을 주는 언어도 포함되었다. 어린 운동선수들의 경우, 경기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인하여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그들의 한계 이상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과적으로 훈련과 학대의 차이를 구별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것은 정서적 학대에 대한 인식이 많은 어중간한 영역과 연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준다.

3.2.4.3 학습권

영국은 다양한 국립 스포츠 연구소를 통해 선수들의 의료적인 도움에서부터 라이프스타일 상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 허브를 설립했다. 라이프스타일 어드바이저는 학생 운동선수들이 스포츠와 교육 의무 사이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그들의 시간표를 몇 달 전부터 미리 계획하도록 돕고 있으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학생 선수들을 대신하여 협상을 진행하기도 한다. 영국의 학생선수들의 경우 라이프스타일 어드바이저의 지원, 학업과 훈련을 병행할 수 있는 학생-선수로서의 역할조화, 대학과 정부의 지원이 운동에서의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34].

이 때문에 영국 정부는 실질적으로 엘리트 스포츠 및 고등 교육 시스템 관리에 자금을 지원한다. 스포츠 연맹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운동선수들의 요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운동선수들이 스포츠 경기 등으로 인해 특별한 훈련 등이 요구될 때 학교 등에 관련 문서를 제출하거나 하여 선수

34) Aquilina and Henry 2010

들을 지원한다. 한 예로, 스털링대학교에서는 전 방위적인 스포츠 지원을 받는 학생선수들은 공부와 운동을 성공적으로 병행 중이다. 스털링대학교(University of Stirling)는 총 53개 스포츠팀을 운영 중이다. 모든 팀이 장학금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선수가 운동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학교 차원에서 다양한 방면에 힘쓰고 있다. 학생 자치 기구인 '스포츠 연합(Sports Union)' 에서는 스포츠 장학금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수백 명의 학생선수들이 학비 면제 등 기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받고 있다. 이러한 장학금 수령의 조건은 좋은 성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학교의 지원은 제한적으로 제공된다. 따라서 학생선수들은 장학금을 받기 위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게 되며 장거리 원정 경기가 잡혀 있어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빠져야 할 때는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튜터 제도를 통해 인터넷 강의나 보강 수업을 통해 보충한다.

3.2.5 사례

3.2.5.1 축구 - 배리 베넬(Barry Bennell) 사건

[사건 이슈화]

셰필드 유나이티드(Sheffield United) 등에서 프로 선수로 뛰다 지난 2002년 은퇴한 앤디 우드워드(Andy Woodward)가 2016년 BBC 방송에서 1980년대 크루 알렉산드라FC(Crewe Alexandra FC)의 유소년팀에서 활동하던 시절 당시 감독이었던 배리 베넬(Barry Bennell)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공개 증언을 했다. 그의 증언을 시작으로 크리스 언스워드(Chris Unsworth), 스티브 월터스(Steve Walters), 제이슨 던포드(Jason Dunford) 등 3명의 선수가 추가로 베넬과 같은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사건 요약]

우드워드는 방송에서 12세였던 당시 종종 베넬의 집에서 잠을 잤고 이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3명의 친구들과 베넬과 한 침대에서 잠을 자는 동안 베넬이 자신들을 더듬는 등의 성추행을 했으며 이후 50~100회 가

량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후 재판에서 베넬은 지금까지 7건의 범행은 인정했으나 1990년 이전에 벌어진 48건의 범행은 부인했다. 11명의 피해자 증언에 의하면 1979년부터 1990년 사이에도 범행이 일어났는데, 그 중 35건이 성폭행, 2건은 강간 미수였다. 나머지 11건은 심각한 수준의 성적 학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피해자들은 8세부터 14세까지의 소년이었다. 비슷한 범행으로 베넬은 1998년에도 9년을 감옥에서 보낸 바 있고 미국에서도 아동 성폭력 혐의로 4년을 복역한 바 있다. 또한 그는 2015년에도 축구 캠프에 참가한 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발당해 2년을 선고받았으나 가석방됐다. 베넬은 당시 구단의 몇몇 고위 관계자가 이 사실을 알고도 묵과했다고 진술하여 논란이 커졌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과거 맨체스터 시티(Manchester City) FC 수석 스카우터로 활동한 켄 반스(Ken Barnes) 외에 몇몇 구단 관계자가 자신이 벌인 아동 성추행 사건을 알고도 모른 체하였다고 주장했다.

[판결]

2018년 2월 최종 배심원 평결에서 베넬은 20년간 다른 소아성애자들과 114명의 아동 축구선수 피해자들을 교환했을 가능성이 제시됐으며 결국은 리버풀 크라운 법원에서 11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43건의 아동 성학대 혐의에 대해 「성범죄 법(Sexual Offences Act)」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31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클럽 최고위층에서는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당시 성폭행으로 정신적 피해와 잠재적인 수입 손실로 고통 받고 있는 아동들에게 재정적인 해결책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변화]

지난 20년 동안 영국 정부는 어린이와 취약한 개인에 대한 보호를 위한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특히 1999년 제정된 「아동법(Children’s Act)」은 아동들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해를 입힌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기관들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고, 5년 후 추가 입법을 통해 미성년자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등록해야 했다. 현재 영국 스포츠에 포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가운데, 어떻게 베넬 사건과 같은 범죄들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베넬에 대한 폭로 방송이 나간 이후 경찰은 약 100통 이상의 제보 전화를 받았고 아동단체 등을 통해 관련사실에 대한 잇단 제보가 이어졌다. 이후 맨체스터, 햄프셔, 체셔, 노섬브리아와 런던 등 경찰국은 청소년 축구팀들에서의 뿌리 깊은 성추문을 수사하기 시작했으며 피해 신고 접수를 위해 NSPCC 핫라인도 개설하였다. 이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성추행 추문에 연루된 축구클럽은 148개에 이르며 피해자는 429명, 용의자는 155명에 달했다.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연령은 4세부터 20세까지이며 대부분의 사건은 20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럽 차원에서는 맨체스터 시티와 크레우의 유력 인사들이 그 당시 난 성적 학대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했으며, 맨체스터 시는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약속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들은 또한 현재 사망한 아동 코치 존 브롬에 의한 또 다른 성학대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수백 명의 소년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맨체스터 시티는 이미 15개월 동안 조사를 받았고 2018년까지 보고된 바에 의하면 100만 파운드의 비용이 들었으며 4,000시간 동안 조사가 진행되었다.

해당 사건 이후 영국 축구협회(Football Association)에서는 아동이 포함된 클럽/리그는 아동들의 '안전보장'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관련자를 고용할 때는 범죄 기록 확인을 통해 심사를 받고 아동보호 워크숍과 복지 담당관 워크숍을 마친 복지담당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FA는 정부가 2014년 6월, 제도적 배경에서 벌어진 공적인 범죄와 관련된 아동 성학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설립한 경찰국의 '하이드런트 작전(Operation Hydrant)' 와도 긴밀하게 공조해 기관 차원에서 벌어진 공직자 성범죄 의혹 사건들도 조사하기 시작했다. 또한 2001년에 제정된 FA 헌장 표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대 문제를 다루려고 했고, 어린이 보호에 우선하여 풀뿌리 축구를 개선하려고 했다. 영국의 경우, 현재는 모든 사람들이 아동인권 침해나 착취와 관련하여 온라인 보호 센터나 신고기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3.2.5.2 축구, 하키 - 딜런 램(Dylan Lamb) 사건

[사건 이슈화]

전 하키 축구 딜런 램(Dylan Lamb)의 범죄는 그의 피해자 중 한명이 2016년 FA에 의해 알려진 배리 베넬 전 축구 코치의 아동 성폭행 사건에 대한 보도를 보고 경찰에 진술하며 밝혀졌다.

[사건 요약]

램은 범죄 당시 스윈튼(Swinton)에서 축구 코치였으며 이후에는 브릭(Brigg), 노스링커셔(North Lincolnshire)에서 하키 코치로 일했다. 가해자의 본명은 조나단 헤이손 프라이스(Johnathan Haythorne Price)이며 이후 딜런 램으로 개명하였다. 그는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30년간 로테르햄(Rotherham), 돈캐스터(Doncaster), 링컨셔(Lincolnshire) 등의 장소에서 13세에서 17세 사이의 소년 5명을 성폭행하였다. 피해자들의 실명은 법적인 이유로 밝혀지지 않았다.

수사를 지휘한 데트 콘 캐스 콜터(Det Con Kath Coulter)에 의하면 당시 13세였던 피해자는 램이 스윈튼에서 축구 코치로 일하며 멕스버러(Mexborough)에 살았을 때 학대가 시작되었고, 5년 동안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램이 브릭 근처에서 하키 코치로 재직 중이었을 당시 15세였던 두 번째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2019년 그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후 3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그의 범죄에 대해 진술했다.

램은 피해자들에게 식사나 생일선물 등을 사주면서 사심을 샀고 자신의 집에 초대하거나 캠핑과 같이 단 둘이 하룻밤을 묵는 여행을 주도하여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어린 소년들에게 끔찍한 학대를 가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그들의 편은 코치인 본인 외에는 없기 때문에 사실을 폭로해도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믿지 않을 것이라 협박하며 어린 피해자들의 신고를 막았다.

램이 저지른 끔찍하고 지속적인 학대로 피해자들은 여전히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램을 사회에서 마주쳤는데 당시 학대 받았던 때로 돌아간 느낌을 받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학대 기억으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술했다.

[판결]

13일 간 셰필드 크라운 법원(Sheffield Crown Court)에서 열린 재판에서 'Sexual Offences Act 1956'과 'Indecency with Children Act 1960'에 따라 11건의 강제 추행, 5건의 아동 성추행 등 총 21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배심원단에 의해 30년 실형이 선고되었다. 그는 2035년 1월 1일 이후에 가석방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변화]

배리 베넬과 딜런 램 사건 이후 FA는 축구 아동 성폭행 사건에 대해 수사하는 Operation Hydrant를 포함한 관련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그동안 언론에 제기된 이슈를 중심으로 해당 시기에 FA가 어떤 정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외부 법률고문이 주도하여 내부 검토를 실시했다. 또한 FA는 축구 선수였던 시절 성폭행을 당했던 피해자들이 독립적이며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미국아동학대방지협회(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NSPCC) 헬프 라인으로 알리도록 격려했다.

Operation Hydrant에서는 NSPCC 헬프라인과 경찰로부터 받은 정보를 수집하여 축구계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행 관련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수신한 정보의 분석은 피해자나 목격자와 관련이 있는지, 받은 정보가 새로운 것인지 중복된 정보인지 등을 판단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2016년 보도된 통계에 의하면 819건의 고발에서155명의 잠재적 용의자 확인되었다. 피해자로 확인된 사람들 중 98%가 남성이며, 학대 당시 피해자들의 연령은 4세부터 20세까지 다양하다. 대부분의 고발은 축구와 관련되어 있지만 다른 많은 스포츠들도 수사 대상이 되어왔다.

3.2.5.3 체조 - 영국 체조선수 학대 스캔들

[사건 이슈화]

미국 체조계의 성추행 스캔들을 다룬 다큐멘터리 "<우리는 영원히 어리지

않다>(Athlete A)" 가 넷플릭스에 공개된 후 영국의 전 체조 선수들이 언론 인터뷰와 SNS을 통해 영국의 체조계의 학대 사실을 폭로하였다.

[사건 요약]

캐서린 라이온스(Catherine Lyons)와 리사 메이슨(Lisa Mason) 등 두 영국 전직 체조 선수는 2020년 7월 영국 ITV와 인터뷰에서 코치에게 맞고 단식을 강요받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영국 체조계(British Gymnastics) 전 유럽선수권 대회 주니어 챔피언 출신인 라이온스는 7세일 때부터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려 왔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벽장에 갇히는 것을 시작으로 막대기로 상습 구타를 당해 몸에 늘 멍이나 손자국이 있었고,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며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해 집에 돌아와서도 정상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울거나 소리치면 식당 찬장에 갇혀 있어야 했고 코치는 음악소리를 크게 틀어놓아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했다. 그 후 코치에게 가서 본인의 행동과 태도에 대해 사과를 해야지만 훈련을 이어받을 수가 있었다고 한다. 캐서린은 체조 유망주였지만 모든 선수의 꿈인 올림픽 출전을 포기해야 할 만큼 고통스러운 정신적 학대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판정을 받았다.

또한 영연방국가들의 종합대회 커먼웰스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메이슨도 같은 방송에서 10세 이전부터 학대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코치가 손바닥이 벗겨지고 피가 날 때까지 철봉에 매달려 있게 했고, 이후 소독용 알코올을 손에 들이 부었다고 한다. 또한 체중을 줄여야 한다며 메이슨을 방에 가둔 채 굶겼고, 정강이가 골절된 상황에서도 진통제를 먹고 훈련하도록 강요했다고 폭로하였다. 이들 선수는 2012년 1월 영국 체조계에 코치의 학대 사실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 모든 폭로의 중심에 선 아만다 레딘(Amanda Reddin) 코치는 조사를 받고 자격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가 복직됐고, 추가 의혹이 제기된 뒤 2017년이 되어서야 다시 코치 자격이 정지됐다.

올림픽 동메달리스트였던 체조 선수 에이미 팅클러(Amy Tinkler)는 2019년 1월 20세의 나이로 신체적 부상을 이유로 은퇴 선언을 했다. 하지만 최근에서야 그녀의 SNS를 통해 코치들의 지속적인 학대로 인한 은퇴였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이와 관련해서 그녀는 2019년 12월 체조계에 정식으로 본인이 선

수 생활을 하면서 겪은 끔찍한 경험에 관한 항의서를 제출한 뒤 상세한 내용에 대해 3차례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

미디어를 통해 사건이 이슈화가 되어서야 체조협회는 코치와 관련된 불만사항은 직원안내서(employee handbook)에 따라 내부 수사를 진행하여 올해 8월 공식적으로 종결되었고 팅클러가 요구한 세부 내용은 '고용 프라이버시 권리'로 인해 공개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이렇게 피해자들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 폭로에 나선 것은 영국 체조계에서는 처음이다.

이들 외에 폭행과 괴롭힘을 당한 전·현직 체조선수가 수십 명에 이르지만, 내년 도쿄 올림픽을 앞둔 등의 이유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영국 체조계는 선수들의 폭로가 이어지자 "우리는 선수들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행동에 반대하며, 접수된 모든 폭력신고를 조사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훈련문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판결]

팅클러 사건은 내부 조사로 혐의 없음으로 결과가 나왔지만 선수들의 잇따른 추가 폭로가 이어지면서 접수된 모든 폭력 신고를 외부 조사로 전환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레이첼 라이트(Rachel Wright)와 니콜라 프레스턴(Nicola Preston)을 포함한 7명의 코치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변화]

영국 체조계는 2020년 7월 열린 이사회에서 선수들이 제기한 폭력 의혹에 대해 제인 멀카히 QC(Jane Mulcahy QC)가 독립 조사(Independent Review)인 White Review를 담당할 것이라 발표했다. 멀카히는 스포츠중재재판소를 포함한 민사재판소, 중재재판소, 스포츠재판소에서 25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 잉글랜드&웨일즈 크리켓 위원회 항소 패널로 있으며 테니스계의 반부패 청문위원이자 영국 복싱 통제 위원회의 항소 관리인이다. 그녀는 또한 스포츠 결의안 중재자 이자 조정관 패널로 재임 중이다. QC에게 독립 조사를 위탁하였지만, 조사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UK Sport와 Sport England에게도 공동수사를 요청했다.

2019년 8월 체조계 코치들의 불합리한 문화를 개선시키고 코칭 행동이 선

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것을 위해 영국 체조계에 등록된 모든 코치는 ‘긍정적 코칭(Positive Coaching)’ e-러닝 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모든 영국 선수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지하는 독립 기구인 영국선수위원회(British Athletes Commission, BAC)는 체조선수들이 안전하게 내부고발을 할 수 있도록 헬프라인을 미국아동학대방지협회(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NSPCC)와 협업하여 출범시켰다. 2020년 7월 한 달간 120명 NSPCC와 British Athletes Commission에 체조계에서의 학대 혐의를 신고한데 따라 영국 반도핑 기구(UK Anti-Doping, UKAD)는 2020년 8월 ‘A Sport Integrity Forum’이 설립하였다. 정부의 후원을 받는 포럼은 스완지 대학(Swansea University)과 협력하여 ‘스포츠통합전략(Sport Integrity Strategy)’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스포츠 단체들이 선수들의 존엄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도록 한다. 문화 · 미디어 · 스포츠부(DCMS)에서는 이 포럼의 진행상황을 매년 장관들에게 보고하기로 합의하였다.

3.3 캐나다

3.3.1 스포츠 관련 주요 이슈 및 동향

캐나다의 스포츠인권에 대한 문제는 캐나다 전 스포츠 장관이었던 켄트 헤르(Kent Hehr)가 2017년 앨버타 주 의회의 여성 직원들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것을 포함하여 이전부터 수차례 성희롱을 한 혐의가 제기된 이후 2018년에 장관직을 사직하면서 수면위로 올라왔다. 그의 사직과 관련하여 캐나다 총리 쥐스탱 트뤼도는 “어떤 종류의 괴롭힘도 용납될 수 없으며 캐나다인은 괴롭힘 없는 환경에서 생활하고 일할 권리가 있다. 우리 정부는 위법행위에 대한 모든 혐의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혐의를 제기하는 여성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후 그는 2019년 여성인 커스티 던컨(Kirsty Duncan)을 스포츠장관으로 임명하며 스포츠계의 변화를 꾀했다. 던컨장관은 캐나다 스포츠계에서 빈번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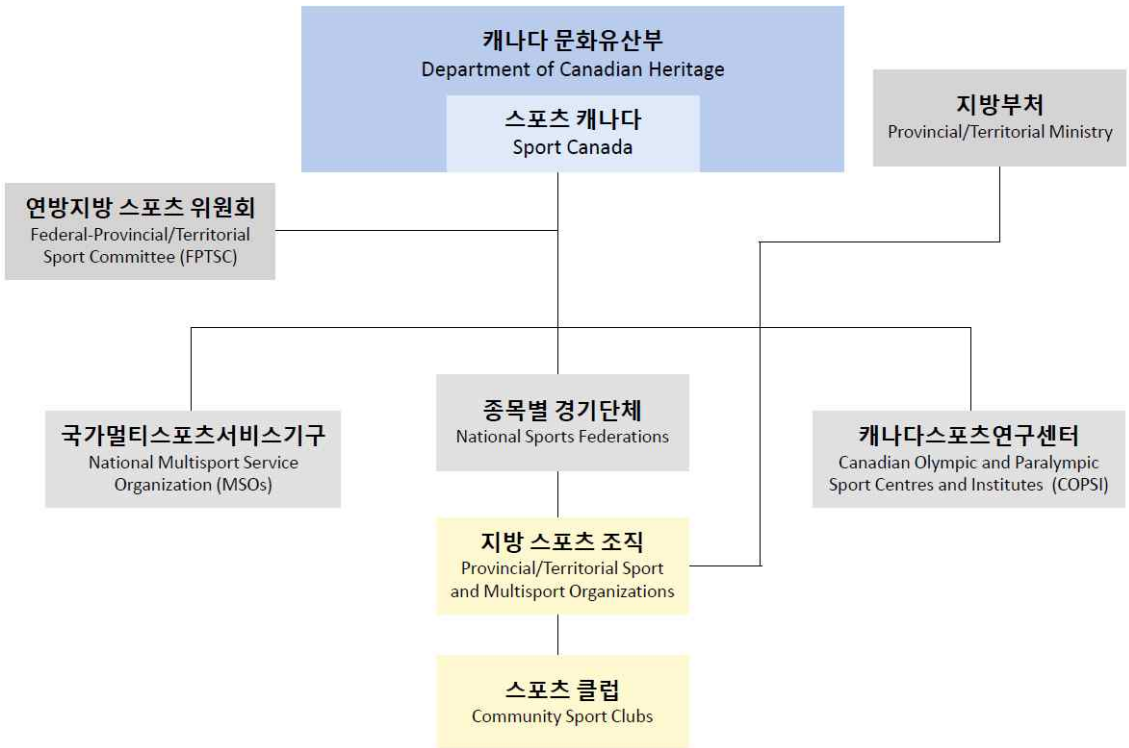
게 일어나는 성적 학대를 포함한 심각한 사례와 관련하여 이는 스포츠계의 문화가 시스템적인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스포츠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학대, 차별, 그리고 괴롭힘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고 이를 관리할 제3의 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지난 4월, 던컨 장관은 성폭력에 대한 경험, 관점 등을 공유하고 안전한 스포츠계를 만들기 위해 '스포츠 성평등 워킹그룹'을 만들었다.

스포츠계의 인권보호를 위해 2020년 캐나다 정부는 다음 두 가지의 이니셔티브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첫 번째 이니셔티브는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의 스포츠를 위한 행동 강령의 모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코칭 협회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20만 달러 이상의 초기 지원금은 협회가 2020년 봄 전국 세이프 스포츠 서밋(Safe Sports Summit)을 통해 전국의 선수, 코치, 아동 보호자, 연구원, 스포츠 단체 및 지방 정부와 함께 행동강령 모형을 개발하는데 사용되었다. 이러한 행동강령 모형개발은 전체 스포츠의 모든 단계에서 남용을 방지하고 조화로운 행동을 보장하기 위한 위함이며, 이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완성되면 스포츠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전국의 모든 스포츠 단체에 제공될 것이다. 더불어 이는 향후 교육 프로그램, 학대, 차별, 괴롭힘 사례의 관리, 그리고 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동 제재의 모델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이니셔티브는 우리 정부가 스포츠 캐나다(Sport Canada)에 성평등 사무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새로운 사무국은 양성평등 이니셔티브를 개발, 구현, 모니터링하고 캐나다 스포츠 시스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결과를 보장함으로써 2035년까지 모든 레벨에서 양성평등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두 가지 이니셔티브 이외에도 캐나다 정부는 연방기금으로 운영되는 스포츠단체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다. 다음 네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자원지금을 보류한다는 것이다. 첫째, 가해방지, 학대 및 차별방침의 의무화, 둘째, 괴롭힘, 학대 또는 차별이 발생한 경우 즉시 공개, 셋째, 독립적인 제3자 또는 기관을 통해 괴롭힘, 학대, 또는 차별 사례를 해결할 것, 그리고 넷째, 2020년 4월까지 스포츠인들에게 의무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3.3.2 스포츠 거버넌스

1995년 캐나다문화부법(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 Act, 1995)이 제정되면서 문화부에서는 캐나다의 문화와 시민생활 전반에 대한 폭넓은 권한 및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캐나다 문화부장관은 여성지위부 (Status of Women)에 관한 업무도 동시에 관장하는데, 복합문화를 관장하는 국무장관(Minister of State, Multiculturalism)과 스포츠를 관장하는 국무장관(Minister of State, sports)의 보좌를 받고 있다. 특히 스포츠 캐나다(Sport Canada)는 캐나다 문화유산부의 한 분과로서 캐나다에서 연방 스포츠 정책을 개발하고 스포츠 지원을 위한 자금 프로그램 그리고 스포츠와 관련된 특별 프로젝트를 관리한다. 특히 자금 프로그램의 자금은 선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며, 이는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직접 제공된다.

그림 10. 캐나다의 스포츠 관련 기관 조직도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하자면, 스포츠 캐나다 산하에는 스포츠 참여증대를 목표로 하는 캐나다스포츠 연구센터(Canadian Olympic and Paralympic Sport

Centres and Institutes)가 있으며, 국가스포츠 커뮤니티에 대한 특정 서비스 제공을 주도하거나 조정하는 국가멀티스포츠서비스기구(National Multisport Service Organization)가 있다. 국가멀티스포츠서비스기구의 역할은 코치교육 및 인증, 고등교육 기관에서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 북미 토착 원주민들의 스포츠를 위한 지원, 여성들의 적극적인 스포츠 참여 확대, 교육 및 중재를 포함한 스포츠 분쟁 해결 서비스, 조요 국내 및 국제스포츠 행사 프랜차이즈 지원, 그리고 스포츠 참여 촉진 등이 있다.

국가 스포츠 연맹(National Sport Federations)라고도 하는 국가 스포츠 기구(National Sport Organization)는 캐나다의 스포츠를 관리하는 국가 관리기구로써, 캐나다 내 모든 스포츠 프로그램과 국가 대표팀 선정 및 관리를 하며 더 나아가 국가 수준의 대회 및 토너먼트 개최를 관장하고 캐나다 국제대회 입찰 제안 및 지원을 한다. 국가 스포츠기구 밑에 있는 지방/연방 스포츠 기구(Provincial/Territorial Sport and Multisport Organizations)들은 캐나다의 10개 주정부와 3개 영토 정부의 스포츠 시스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 지원 프로그램 수준과 담당 지역은 주 그리고 영토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자금지원은 지방/영토 스포츠 조직 지원, 지방의 멀티 스포츠 서비스 조직 지원, 지역사회 보조금 및 인프라 프로그램을 통한 시설 지원, 일부 주 및 지방과 지역에서 멀티 스포츠게임 관리 등에 지원된다.

3.3.3 스포츠 관련 법 · 제도

1961년 9월 29일 제정된 캐나다 (구) 위트니스 아마추어 스포츠법은 2003년 신체활동과 스포츠에 관한 법률로 대체될 때까지 스포츠에 관한 기본법 역할을 했다. 현재 캐나다에서 스포츠와 관련한 기본법으로는 스포츠에 관한 법률을 들을 수 있다. 이 법은 캐나다의 Bill number c2로서 2003년 3월 19일 합의되어 2003년 6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시켰으며, 총4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원의원에서 발의되었던 신체활동과 스포츠 증진 법안은 2002년 10월 9일에 법안의 모든 절차가 끝났고, 2003년 2월 4일 하원에 이러한 행동이 전달되었으며, 상원에서의 수정이 2003년 2월 27일에 행해졌고, 2003년 3월 19일 여왕의 승인을 받았다.

① 헌법(CONSTITUTION ACT, 1982)

캐나다 헌법 제2조는 모든 사람이 향유하는 자유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캐나다 헌법 제2조).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의 생명, 자유, 안전권에 대한 권리와 근본적인 정의의 원칙에 따르지 않는 한 그 원리를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다(캐나다 헌법 제7조), 아울러 캐나다 헌법 제26조에는 헌장의 특정권리와 자유에 대한 보장은 캐나다의 어떤 다른 권리와 자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② 체육활동과 체육에 관한 법률(Physical Activity and Sport Act)

캐나다는 2003년 3월 19일 체육활동과 체육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캐나다 정부는 신체적 활동과 스포츠가 캐나다 문화와 사회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건강, 사회적 응집력, 언어적 이중성, 경제활동, 문화적 다양성 및 삶의 질 측면에서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인들 사이에서 신체 활동의 중요한 이점과 스포츠의 실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캐나다 정부는 명시된 원칙과 관련하여 신체 활동 및 스포츠 진흥에 전념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다양한 정부, 체육 활동 및 스포츠 커뮤니티, 그리고 체육 활동과 스포츠의 진흥을 위한 민간 부문 간의 협력을 장려하기를 희망하였다. 캐나다 정부는 신체활동 및 스포츠 법을 통해 신체활동을 촉진하고, 캐나다 정부의 정책에 관하여 실무 참여를 증대하고, 스포츠의 우수성과 캐나다 스포츠의 역량을 강화하는 체계를 설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제1조에서 ‘신체활동과 스포츠에 관한 법률이다’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체활동에 대한 정책에서 캐나다 정부의 정책 목적은 건강과 웰빙의 근본적 요소로서 신체활동을 증진하는 것, 모든 국민들이 그들의 삶속에서 신체활동을 통합함으로써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독려하는 것, 모든 캐나다인들의 활동적인 것을 막음으로써 직면하는 장애들을 줄임으로써 원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체육활동과 체육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캐나다의 국가 스포츠 조직에서도 스포츠 분쟁해결기구를 발견할 수 있다. 캐나다의 신체활동과 스포츠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두 가지의 단계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스포츠 위원회(체육활동과 체육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와 스포츠 분쟁해결기구(체육활동과 체육에 관한 법률 제9조~제35조)가 바로 그것이다. 이때, 스포츠 위원회는 신체활동과 스포츠 양 정책마다, 별개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캐나다의 스포츠 분쟁 해결센터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은 본 법률에서 분쟁 해결 사무국과 자원 센터를 포함하는 "센터"라 칭하는 캐나다 스포츠 분쟁 해결 센터로 불리기 위해 설립된다(신체활동 및 스포츠 법 제9조(1)).

아울러 캐나다는 피트니스 및 아마추어 스포츠 규정(Fitness and Amateur Sport Regulations(C.R.C.,c. 868)을 두어 생계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오로지 레크레이션, 피트니스 또는 즐거움을 위해 종사하는 운동활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캐나다 신체활동과 스포츠에 관한 법류상의 스포츠분쟁해결기구에 대한 규정은 제9조에서 제325조까지의 규정으로 스포츠분쟁해결기구를 규정한 법이라고 하여도 무방할 정도이다. 동법은 이러한 기구의 운영과 재정적 지원 그리고 공공의 서비스에 대한 관련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 스포츠분쟁해결기구는 스포츠분쟁에 대한 국내 대체적 분쟁해결의 사무, 대체적 분쟁해결에 관한 전문지식과 원조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다(체육활동과 체육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또한 스포츠 조직들 사이의 분쟁과 스포츠 조직과 관련된 사람들의 분쟁들도 포함하는 스포츠 분쟁을 해결한다. 스포츠분쟁해결기구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고 여기서 업무를 하게 된다(체육활동과 체육에 관한 법률 제14조).

③ 괴롭힘 및 학대 정책(Harassment and Abuse Policy)

모든 직원, 자원봉사자, 학생, 인턴 및 방문자는 인종, 피부색, 국적 또는 민족출신, 성별로, 종교, 나이, 결혼 또는 성적지향, 장애로 차별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괴롭힘이나 학대를 당하는 경우, 날짜, 시간, 행동의 성격 및 증인에 대한 서면기록을 준비해야하며, 이사, 파트너, 운영 및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Canadian Centres for Teaching Peace의 폭력예방을 위한 지침

캐나다의 Canadian Centres for Teaching Peace에서는 유소년 스포츠에서의 폭력 행위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있다. 캐나다는 현재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위기를 초래한 주원인은 바로 텔레비전인데, 텔레비전은 유소년들에게 폭력적인 선수들을 하나의 역할 모델로 소개하고 있으며 종종 스포츠에서 볼 수 있는 폭력성에 초점을 맞추곤 한다. 또한, 유소년 체육의 상업화는 유소년들에게 부적절한 경기스포츠를 너무 일찍 소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선수로 그리고 때로는 관람자로써 아이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교훈을 얻게 된다. 캐나다에서는 학교체육에 있어서 폭력, 승리를 쟁취하고 타인에 대한 우월함을 누리고자 하는 과도한 의지가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 주간 보호소와 보육원에 대한 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정규 교육체계도 동일하다). 유소년 체육 조직이 책임을 수행하기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제 다수의 학생들을 보유하고 그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스포츠 조직에도 또한 허가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 모든 지도자들(그리고 부모들)은 유소년의 성장과 생리 그리고 스포츠 철학, 그리고 스포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훈련을 지속해야 한다. 모든 지도자들의 이력은 철저하게 검증되어야만 한다.
- 모든 선수들, 부모들 그리고 지도자들은 각각의 역할이 수행해야 하는 행동 규칙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
- 다른 선수들에게 상해를 줄 수 있는 선수들을 경기로부터 배제하기 위해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과 폭력으로 의심되는 행동들은 필히 금지되어야 한다. 유소년 선수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지도자들이 선수들에게 요구하는 특정 방식의 행동도 높은 벌점을 부여해야 하며 만약 이러한 행동이 계속된다면 이는 제거되어야 한다. 경기와 실제 생활에 모두에 있어서 도덕성을 갖추어야만 한다.
- 말썽이 잦은 선수들은 단체 경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해야만 한다(적절한 기간 동안 참가 유보). 예컨대, ‘삼진 아웃제’ 도입이다.

- 지도자나 선수에 대한 폭력이나 욕설, 여성이나 동성애자에 대한 비방은 모두 금지되어야 한다.
- 경기 상대방에 대한 우호적인 관계는 권장되어야 한다. 즉, 모든 경기는 악수로 시작하여 악수로 끝을 맺어야 한다.
- 리그 경기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선수들의 부상 비율 정보는 선수들과 부모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 전문 스포츠 조직은 폭력을 반드시 감소시켜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만약 사회가 동물들과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닭싸움이나 개싸움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전문 스포츠 경기에 있어서도 그러한 폭력은 규제되어야 한다. 클럽 소유자들은 피고용자들이나 선수들이 수백만 달러를 지불한다고 해도 이들을 위험에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⑤ 예방과 주소에 대한 보편적 행동 강령스포츠의 매트릭스(Universal Code of Conduct to Prevent and Address Maltreatment in Sport)

Universal Code of Conduct to Prevent and Address Maltreatment in Sport(이하, UCCMS)는 Canadian Sport는 능력, 배경이 다른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및 영적 건강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 사회적 참여와 자부심 향상을 목적으로, 체육활동과 체육에 관한 법률(Physical Activity and Sport Act)은 ‘스포츠에 관한 캐나다 정부 정책은 공정하며,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대우한다. 아울러, 스포츠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공정하고 공평한 참여,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포함하여 가장 높은 윤리적 기준과 가치에 근거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스포츠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 투명하고 안전하며. 포괄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개인의 목표를 존중하고 모든 학대와 관련된 피해자, 사회, 지역을 보호한다. UCCMS는 스포츠에 있어 건강, 복지, 성과, 보안을 해하는 모든 행동을 심각한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 캐나다 스포츠 정책에 명시된 대로 캐나다 스포츠의 핵심을 수용하여 제정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UCCMS 2.2.1은 심리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태만, 학대와 연관된 모든 행위, 신뢰를 쌓는 체계적인 방법과 단계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

하고, 학대 프로세스(2.2.6)에 대해 보복금지규정을 두고 있으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실현함으로서 학대에 대한 선수들을 체계적이고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 2019년에 UCCMS은 아동 보호, 형사법, SDRCC위원회, 경찰, 성별, LGBTQ+, 장애인 및 장애인, 운동선수 및 코치, 아동 학대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학자 등 광범위한 조직 및 전문 분야의 전문가 20명 이상과 상담 친밀한 파트너 폭력. 이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통찰력과 전문 지식은 스포츠 부문이 제공한 피드백을 보완했다.

⑥ 원주민에 대한 스포츠 참여에 관한 캐나다의 정책(Sport Canada's Policy on Aboriginal Peoples' Participation in Sport)

캐나다 정부는 원주민에 대한 스포츠 참여에 관한 스포츠 캐나다의 정책을 마련하여, 캐나다의 문화유산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캐나다는 원주민 포괄정책을 펴고 있다. 원주민들이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게 캐나다 정부는 수십 년 동안 지원하고 있다. 특히 원주민(ASC), 북미 원주민 게임(NAIG), 지방 및 영토 원주민스포츠 거버넌스기구 설립하고, 캐나다헤리티지(Canadian Heritage)는 원주민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스포츠에 대한 가치 기반 접근 방식으로 꾸준히 실행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스포츠 정책을 조화롭고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스포츠 시스템의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캐나다인의 스포츠 경험을 증명하고자 함에 있다고 판단된다. 캐나다 스포츠 정책 역동적이고 최첨단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캐나다인 자신의 능력과 관심의 정도까지 스포츠에 참여하고 경험을 즐기며,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경쟁이 치열한 수준에서 일관되게 정책을 펼치고 있다.

3.3.4 스포츠 관련 인식현황

캐나다의 운동선수를 위한 정책 수립[35]의 시작은 지난 1994-1996년 여성 및 스포츠 그리고 신체활동 발전협회(Canadi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35) https://www.playthegame.org/news/news-articles/2019/0631_the-struggle-for-safe-sport-in-canada-one-step-forward,-two-steps-back/

of Women and Sport, CAAWS)가 공공 기금을 받는 국가 스포츠 단체 및 스포츠 캐나다와 협력하여 스포츠에서 괴롭힘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당시 정부의 정책은 모든 스포츠 조직이 권력 남용을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되었고, 그 결과 48개의 스포츠 관련 정책이 수립되었다. 본 정책의 하나로 정부 기금은 스포츠인들이 국가스포츠단체(National Sports Organization, NSO)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담당자를 새롭게 영입했다.

하지만, 정책수립 이후 1997년 전 주니어 아이스하키 코치 그레햄 제임스(Graham James)가 성범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대중들의 경각심이 높아졌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00년대 초 연방자문의원회가 소집되어 대책을 발표했다. 워킹그룹이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코치로 인증을 받기 위해 매 4년 캐나다코칭연합(Coaching Association of Canada)에 범죄기록을 제출해야만 하고, 협회 인증 프로그램에는 윤리적 결정에 대한 교육적 요소도 추가했다. 하지만,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캐나다 스포츠정책이 적용된 적은 청문회 당시만 본 정보를 가끔씩 참고 또는 이용하는 것이며, 프로세스에 대한 투명성도 없다는 게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NSO가 정직된 코치나 스포츠 관련 인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3-2015년 동안 스포츠캐나다(Sports Canada)와 NSO가 스포츠계의 괴롭힘이나 폭행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에 관한 평가 연구에 따르면 스포츠계 괴롭힘이나 학대와 관련하여 코치를 고발했던 사건도 언론에도 자주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정된 48개의 정책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NSO를 감시하는 단체나 담당관도 제대로 배치되지 않았고, 이 역할을 NSO의 직원이 직접 담당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스포츠인들이 겪은 다양한 학대(예를 들면 방치, 신체적, 정신적 학대 등)는 NSO가 정의한 학대의 기준과 다르다는 이유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코치와 운동선수 사이에 발생하는 성 문제에 관련 정책은 거의 미비하였다.

캐나다는 지난 20년 동안 스포츠계에서 성행하고 있는 학대에 관한 연구가 운동선수 관점에서 독립적인 연구로 진행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는 스포츠계 내 학대, 차별 및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문화변

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스포츠 커뮤니티와 협력하고 있다. 캐나다 과학 및 스포츠장관 커스티 던컨(Kirsty Duncan)은 캐나다에서 성적, 정서적 및 신체적 학대, 괴롭힘, 착취 및 차별을 포함해 모든 형태의 학대에 대한 선수들의 경험을 파악 및 측정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Athletes CA에게 연구자금을 지원했다. 이러한 지원 아래, 2019년 토론토 대학의 그레첸 커(Gretchen Kerr) 교수를 중심으로 총 세 명의 연구진은 현재 그리고 은퇴한 캐나다 국가대표팀 남녀선수들을 대상으로 스포츠계에 만연한 학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에서 스포츠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2035년까지 스포츠에서 성평등 및 운동선수의 관점에서 학대, 차별 및 괴롭힘을 해결하며 동시에 운동선수의 건강을 지원하는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대한 초석을 제공한다.

이 연구는 총 1,001명의 선수를 상대로 진행된 온라인 설문조사 중 764명은 현재 국가대표 대표선수였고 나머지 237명은 은퇴한 선수였다. 지난 10년 동안 선수들이 가장 자주 경험했던 학대의 형태는 방치와 소홀에 따른 심리적 피해였고 다음으로는 성적 및 신체적 피해로 집계되었다. 또한 모든 항목에 있어 현재 및 은퇴한 선수 중 남성들(39%)보다 여성들(61%)[36]이 더 많은 학대를 당했으며, 이중 은퇴한 선수들이 현재 선수들보다 더 많은 수를 차지했다. 심리적 피해의 경우는 코치와 고위 임원들 그리고 스포츠 관리자들의 태만하고 등한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되었으며, 신체적인 피해는 주로 코치들에 의해 발생하였다. 더 나아가 성적 피해는 코치와 동료들에 의해 일어났다. 본 연구는 선수들의 학대(심리적, 신체적, 성적, 그리고 방치)는 선수들에게 자해, 섭식장애, 그리고 장애 등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선수들이 은퇴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들 중 오직 15%만이 자신의 학대 경험 및 피해를 보고했고, 침묵하고 있는 나머지 피해자들은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수면으로 올라온 캐나다 스포츠계 인권실태를 바탕으로 캐나다 정부는 2019년 캐나다 스포츠계가 안전하고 윤리적이며 평등한 스포츠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2019-20년부터 향후 5년 동안 3천만 달러(약 255억5천6백만

36) 남녀구분 이외에도 지체장애운동선수(12%), 인종이 다른 운동선수(10%), 그리고 성소수자(7%)가 학대를 경험했다고 밝힘

원)를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 기금은 캐나다 가족, 운동선수, 코치 및 기타 참가자에게 더 나은 스포츠계를 만들기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또한 정부는 다음 네 가지의 수행하지 않을 시엔 자금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의무적으로 괴롭힘과 학대 및 차별정책을 강화한다. 둘째, 괴롭힘과 학대 그리고 차별 사건이 있을 시엔 즉시 공개한다. 셋째,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인 제3자 또는 기관을 바로 배치한다. 마지막으로 2020년 4월까지 모든 스포츠인과 스포츠 운영 관련자들에게 학대 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던컨(Duncan) 장관은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스포츠 단체를 위해 강력하고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이런 확고한 결정은 같은 해 2월 스포츠와 신체활동 및 레크레이션을 담당하는 연방-지방-영토(Federal-Provincial-Territorial)장관 회의에서 스포츠계 학대, 차별 및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발표한 ‘레드디어(Red Deer)선언문’을 바탕으로 한다.

3.3.4.1 성폭력

1998년부터 2018년까지 가장 형사입건이 많았던 종목은 하키였고, 그 사람 다음은 축구, 무술, 농구, 수영 순으로 이어지며, 유죄 역시 하키 종목에서 가장 많았다.

2019년 캐나다 CBC 뉴스 및 스포츠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전역의 최소 340명의 코치가 지난 20년간 미성년자 스포츠인을 학대했고 결국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중 222명의 코치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미성년자 스포츠인 성적 학대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전직 주니어 아이스하키 코치 그레이엄 제임스로 6명의 선수를 수백 번 학대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 하키 코치 길버트 두베(Gilbert Dubé)의 경우에도 2002년 2009년 아이 팀에서 4명의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5년 형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이것이 하키 코치의 첫 번째 유죄판결이 아니었다. 이미 그는 1993년 미성년자 성접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으나 2011년 두 번째 선고를 받기 전까지 그는 여러 하키팀에서 코치직을 맡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배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코치직으로 고용한 스포츠계를 비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당시 그를 고용했었던 하키퀘벡(Hocky Quebec)은 배경 조사 정책이 마련되어 있

다고 말했었지만, 이를 시행하는 것이 각 지역 하키클럽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코치들의 배경 확인은 필수지만 이것이 유일한 보호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캐나다 아동보호센터 교육기관의 디렉터 노니 클라센(Noni Classen)은 "우리는 우리가 아동을 보호하는 수단이 되는 형사 사법 시스템에 의존할 수 없다"[37]고 주장했다. 그녀는 많은 희생자가 몇 년 후까지 학대를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들이 지속해서 범죄를 저지른다고 말했다. 이럴 때, 범죄자 신원 조회에 표시될 기록이 없으므로 피의자들은 발각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코치를 상대로 제기한 340건의 형사 사건 중 1/3이 범죄 혐의가 발생한지 최소 10년 후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Kerr, et al. (2019)의 연구에 따르면, 가장 일반적으로 보고된 캐나다 스포츠인들의 성적인 피해는 성 차별적인 농담/언론(14%), 성적인 눈빛(8%), 성적으로 노골적인 의사소통(3%), 및 성적으로 부적절한 접촉(3%)이다. 또한 은퇴한 선수들의 대답은 성차별적인 농담과 발언(16%), 성적인 시선(13%), 성적으로 부적절한 접촉(7%), 성적으로 노골적인 의사소통(6%), 그리고 성행위 시도(6%)가 해당한다. 또한 현재 및 은퇴한 선수 모두 대부분 모두 대부분 성적인 학대는 동료와 코치에 의해 행해졌고, 현직에 있는 선수의 경우 코치(62%)에 의해 학대를 받았다.

3.3.4.2 폭력

캐나다 정부의 새로운 결정과 규제들은 2019 캐나다 동계 올림픽 전날 레드 디어(Red Deer)에서 만나 스포츠에서의 학대, 차별, 괴롭힘 방지를 위한 합의에서 시작됐다. 레드 디어 합의문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모든 캐나다인은 스포츠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안전하고, 환영하고, 포용적이고, 윤리적이고, 서로가 존중하는 환경에 있어야 한다. 정부는 모든 참여자의 존엄성, 권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그것은 스포츠에서 성별에 따른 폭력과 학대에 대한 무관용을 지킬 때 비로소 실현된다. 그

37) https://www.cbc.ca/sports/sexual-abuse-amateur-sports-canada-protecting-kids-1.5014330

리고 우리는 스포츠의 괴롭힘, 학대, 차별, 인식, 정책, 예방, 보고, 관리 및 모니터링 분야에서 공동의 정부 간 접근방식을 구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스포츠인들을 위해 캐나다 스포츠 시스템을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고 더 포용적으로 만들고자 했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최근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캐나다 스포츠인들은 지난 선수시절 당시 짓밟혀진 인권에 대해 보상받으려는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캐나다 체육계는 변화를 꾀하고 있다. 최근의 사례를 들면 2020년 6월 전 캐나다 하키리그 소속 선수 2명은 2008년부터 10년까지 서부하키리그에서 뛰었던 다니엘 카킬로와 개럿 테일러 선수가 "15-17세 당시 캐나다 하키리그에서 경기하는 동안 성폭력과 신체적인 폭행, 위협, 학대를 당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두 선수는 이에 대해 온타리오 고등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다른 리그의 여러 팀들이 힘을 얻어 캐나다 하키리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캐나다 하키리그 이사회는 위험요인, 학대, 괴롭힘, 괴롭힘과 관련된 현재의 정책과 관행, 그리고 참가자들이 정책을 위반하는 행동을 보고하기 위해 독립 검토 위원회의 임명에 동의했다. 이사회는 이와 관련하여 올 여름 말 위원장을 발표할 예정이며 2020-21 시즌에 맞춰 검토 작업이 완료될 것이다.

3.3.4.3 학습권

캐나다 정부는 대학 수업과 스포츠의 균형을 맞추려는 젊은 운동선수들을 위해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시작했다. 캘거리 대학 학생이자 패트릭 선수 인스테판 데니엘은 "일반 학생과 같은 양의 학업을 따라가면서 동시에 현역으로써 운동을 하며 운동선수를 은퇴한 이후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캐나다 선수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자 2015 년 캐나다 올림픽위원회는 운동선수들을 위한 '게임 플랜(Game Plan)'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본 프로그램은 캐나다 올림픽위원회(COC), 캐나다 장애인 올림픽위원회(CPC), 캐나다 스포츠 및 캐나다 올림픽 장애인 그리고 올림픽 스포츠 연구소 네트워크(COPSIN)간의 협력으로 캐나

다가 국가대표팀 선수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자원을 선수들에게 제공한다.

본 프로그램은 특히 국가대표 선수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캐나다 종합 운동선수 맞춤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으며, 총 다섯 개의 영역인 건강, 기술개발, 교육, 네트워크 커뮤니티, 그리고 커리어 분야로 나눠져 있다. 이는 학생 신분으로서 선수생활 동안 필요한 학습 내용들뿐만이 아니라 은퇴 후 삶을 계획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 및 교육을 맞춤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 17개의 기관들과 파트너십 제휴를 맺고 있다. 본 기관들은 파이낸스 분야의 Freedom 55 Financial과 Birch Hill Equity Partners, 사회적 기업 분야의 Canadian Forces Morale and Welfare Services, 교육 분야의 Classroom Champions, GradeSlam, 그리고 Head to Head, 사회복지 전문 서비스 분야의 Deloitte 그리고 JACOBS, 스포츠지원 FitSpirit, 정부서비스 지원 분야의 Government of Canada, 금융업과 소매업 분야의 LCBO, 네트워킹 분야의 LinkedIn, 엔지니어링 분야의 Maple Reinders, 뱅킹시스템 분야의 Moneris, 재활용 및 폐기물 서비스 분야의 Shred-it, 소비자 기술 분야의 TandemLaunch, 소비자 마케팅 분야의 Trend Innovations이다. 협력체들과 함께 운동선수는 더 나은 경력을 쌓을 수 있으며 이후 건강, 교육 및 경력계발에 집중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스포츠 리더로서 정신적으로 더 강한 운동선수를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3.3.5 스포츠인권 침해사례

3.3.5.1 피겨스케이팅 - 케빈 마이클 힉스(Kevin Michael Hicks) 사건

[사건 이슈화]

2012년 9월, 전 피겨 스케이팅 코치 케빈 마이클 힉스(Kevin Michael Hicks)는 1983년부터 1990년까지 스케이트 학생선수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후 두 번째 피해자가 등장하였고 폭행이 시작되었을 때 이들의 나이는 겨우 12세, 13세에 불과하였다.

[사건 요약]

힉스는 1974년 캐나다 주니어 남성 아마추어 챔피언이자 1975년 전국 주니어 챔피언이며, 이후 윈저 스케이팅 클럽을 대표하는 전국 수준의 피겨 스케이터로 명성을 얻었다. 그는 스케이트 캐나다 소속으로 1980년대에 온타리오 남부의 우드바인 윈터 스케이팅 클럽, 웨스턴 스케이팅 클럽, 윈저 스케이팅 클럽, 벌링턴 스케이팅 클럽을 포함하여 온타리오 전역의 여러 학교에서 피겨 스케이팅을 가르쳤다.

피해자 브라이언 제섭(Brian Jessup)은 10세에 스케이팅을 시작하여 비교적 늦은 나이였으나 재능이 있어 1980년대에는 온타리오의 떠오르는 피겨 스케이터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제섭이 12세가 되면서부터 힉스는 그를 성적으로 학대하기 시작하였고 이 학대는 6년 동안 지속되었다. 1983년 제섭이 13세가 되던 해부터는 성폭행이 시작되었고 이후 5년 동안 수백 번에 걸쳐 성적 학대를 당했다. 제섭은 19세 되던 때 그동안의 학대에 대해 함구하고 스케이트를 그만두었고 결국 그동안의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인해 20년 동안 술과 마약에 중독되어 살아오면서 2012년, 당시 48세가 되어서야 가족과 경찰에게 학대당한 사실을 털어놓을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는 8~90년대 당시의 사회 통념상 성적 학대에 대해 공개적으로 털어놓을 수 없었고, 지역 클럽에는 제섭과 같이 취약한 선수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재판에서 제섭의 정부 대리 변호인은 힉스와의 성관계가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할 수가 없었다. 그 당시 성관계의 동의 연령은 14세였고,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관련 조항이 없었다. 따라서 힉스 변호인은 법은 소급해서 강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섭이 14세 이후에도 힉스와의 성행위가 계속되었기에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힉스는 제섭에 대한 추가적인 성폭행 1건, 또 다른 스케이터에 대한 3건의 추가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판결]

2012년 9월 4건의 성폭행과 1건의 도난 혐의, 2013년 2월에 3건의 성폭행으

로 두 소년을 성폭행 한 혐의로 힉스는 토론토 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변화]

CBC News and Sports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년 간 캐나다 아마추어 스포츠에 관련된 최소 222명의 코치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들의 성범죄로 인한 18세 이하의 미성년 피해자는 600명이 넘었다. 현재는 캐나다 전역의 지역 스포츠클럽과 협회들이 문제가 된 코치들을 제명하고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스포츠윤리센터(Canadian Centre for Ethics in Sport, CCES)는 2018년 국가 안전 스포츠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 경찰, 아동 서비스센터, 교회, 보이스카우트 등 스포츠 내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소집하는 제안을 Sport Canada에 제출했다. 이는 도핑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CCES가 스포츠계에서 발생되는 성폭력, 성희롱 및 학대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보라인을 운영하여 제보 받은 사건들을 조사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CCES는 익명으로 도핑 의혹을 보도하는 제보라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성폭행 피해자들이 비밀을 보장받은 채로 안전하게 학대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한다.

스포츠계에서의 선수들에 대한 성적 학대에 대해 심각성을 깨달은 캐나다 연방정부는 체육부(Science and Sport) 장관인 커스티 던컨의 주도로 캐나다 코치협회(Coaching Association of Canada, CAC)와 함께 2019년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2020년부터 연방기금을 받는 국가 스포츠 기관들은 권력 및 지위 남용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원들에게 의무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소속선수들과 코치가 관련된 학대나 괴롭힘 등 인권이슈를 즉시 공개하지 않으면 자금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학대 사건의 경우 장관에게 직접 보고해야하며 운동선수 학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제3자 독립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Safe Sport Summit Series'에 21만 달러를 지원하여 캐나다 코치협회의 주도로 국가행동강령을 개발하고 성평등 전략의 개발 및 실행 부서인 성평등사무국을 창설하는 방안도 수립하였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선생님이나 코치처럼 권

위의 위치에 있는 자가 18세 미만의 어린이들과 성관계 할 시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2019년 던컨 장관이 발표한 ‘안전한 스포츠선언(Safe Sport Announcement)’은 모든 캐나다인이 안전하고 포용적이고 윤리적인 환경에서 스포츠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스포츠에서 성별에 따른 폭력과 학대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밝히고 있다. 2019년 수립된 정부의 지원책으로는 첫째, 관리자, 코치, 임원, 부모 및 선수에게 e-러닝, 세미나 및 워크샵 형태의 괴롭힘 및 학대에 대한 의무 교육의 제공, 둘째, 괴롭힘, 학대 또는 차별이 없는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내부 정책에 대한 격차를 줄이고 모범 사례를 강화, 셋째, 괴롭힘 및 학대 사례를 공개하고 조사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독립적인 제3자에 대한 접근 보장이 있다. 이러한 지원은 국가스포츠기구(National Sport Organization), 국가멀티스포츠서비스기구(National Multisport Service Organization) 및 캐나다스포츠센터(Canadian Sport Centres and Institute)가 담당한다.

2020년 캐나다 코칭협회는 스포츠캐나다(Sport Canada)의 지원을 받아 스포츠 단체의 모든 참가자가 스포츠에서의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 스포츠 안전교육(Safe Sport Training)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이프스포츠태스크포스(Safe Sport Task Force)에는 국가 및 지방 스포츠 관리기구, 주제별 전문가, 운동선수 단체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코치인증프로그램(National Coaching Certification Program, NCCP)에서 코치가 해당 교육을 이수할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3.3.5.2 하키 - 그레이엄 제임스(Graham James) 사건

[사건 이슈화]

1996년 NHL 캐나다 아이스하키 선수인 쉘든 케네디(Sheldon Kennedy)는 당시 주니어 아이스하키 코치였던 그레이엄 제임스(Graham James)가 12년 동안 자신에게 행한 성적 학대에 대해 고발하면서 해당 스캔들이 전국적으로 이슈화되었다.

[사건 요약]

1982년 당시 14세였던 케네디는 위니펙 근처의 한 아이스하키학교에 입학했을 당시 위니펙 워리어스팀(the Western Hockey League's Winnipeg Warriors)의 코치였던 제임스를 만났다. 제임스는 그의 집에서 케네디를 불러내 상습적으로 성폭행 했으며 부모와 친구에게 사실을 말할시 곤란한 일이 생길 것이라며 협박하였다. 제임스는 당시 자신이 맡고 있던 서부리그 소속 스위프트 커런트의 주전으로 케네디를 기용하고 나서도 6년 간 매주 2번씩 그를 불러내어 성추행했다. 이후 케네디는 이적했으나 제임스의 성폭행에 대한 충격으로 알코올중독증과 슬럼프에 시달려야 했다.

1996년 11월 제임스는 캘거리(Calgary) 경찰에 의해 10년 동안 케네디를 포함한 선수학생 2명에 대해 성폭행을 혐의로 기소되어 1997년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캐나다 하키협회(Canadian Hockey Association)는 그를 코치 자격을 박탈하였고, 스위프트 커런트 브론코스(Swift Current Broncos) 히키팀을 1989년 메모리얼 컵 우승으로 이끌고 하키 뉴스에 의해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었지만 형이 확정 난 후 명예가 취소되었다. 형을 마친 제임스는 연방 사면을 받고 스페인과 멕시코에 정착했다.

하지만 2009년 디오렌 플뢰리(Theoren Fleury)는 자신 역시 1980년대에 제임스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서전을 출판하면서 제임스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발시켰다. 2012년 3월 제임스는 플뢰리와 또 다른 익명의 피해자와 관련된 성범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매니토바 항소법원(Manitoba Court)에서 항소하였지만 형량은 5년으로 증가했다. 또한 2015년 5월 제임스는 추가로 1990년대 초 또 다른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3번째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으나, 2016년 9월 가석방되었다.

[판결]

제임스는 형법 제246.1조 및 271조에 의거해 1997년 케네디 사건으로 5년, 2012년 플뢰리 사건으로 2년, 2015년 익명의 피해자 사건으로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016년 9월 완전히 가석방되었다.

[이후 변화]

케네디는 여러 차례의 상담을 거쳐 마침내 2004년 내셔널 하키 리그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을 되찾았다. 그는 그 이후로 술과 마약을 끊고 건강관리에 전념하고 있다. 케네디는 학대와 괴롭힘 예방을 위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Respect Group과 웨인 맥닐(Wayne McNeil)의 도움으로 그의 삶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아동보호센터에 이사로 취임했다. 센터는 3년도 안되어 약 4,000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센터는 연간 150만 달러의 예산으로 운영되는데 그 중 3분의 2는 기업 후원자들로부터 지원받는다.

3.3.5.3 알파인 스키 - 버트랜드 차레스트(Bertrand Charest) 사건

[사건 이슈화]

캐나다 전 스키 코치인 버트랜드 차레스트(Bertrand Charest)는 10대 제자들 중 일부와 성관계를 맺었다. 그들 중 한 명이 임신을 했고, 차레스트는 그녀를 낙태시켰다. 1998년 3명의 선수들이 각자 차레스트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스키 연맹에 해당 사실을 폭로하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사건 요약]

2017년 퀘벡의 생제르메(Saint-Jérôme) 법정에서 전직 스키 코치 차레스트의 피해자들은 1991년과 1998년 사이에 발생한 성폭행으로 자신의 겪은 수년간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했다. 범죄 당시 12세에서 1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 선수들은 모두 그가 코치한 경쟁력 있는 스키 선수들이었다. 이후 1998년 차레스트는 알파인 캐나다(Alpine Canada)에서 해고되었다. 알파인 캐나다는 알파인, 파라 알파인 및 스키 크로스 레이싱을 위한 캐나다 국가관리기구이다.

2017년 6월, 1990년대 여성 9명에 대한 16건의 성폭행을 포함한 37건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2017년 8월 그는 항소했

지만, 2019년 8월 22일 퀘벡 항소법원은 37건의 유죄 판결 중 21건을 철회하고 21개월 형을 감형하여 전체 형량을 10년 3개월로 줄였다. 2017년 12월 18일 첫 번째 가석방 신청을 하였으나 퀘벡 항소법원의 Vauclair J. 판사에 의해 거부되었다가, 2020년 3월 캐나다 가석방위원회로부터 그의 재범 위험이 낮다는 통보를 받고 차레스트의 가석방을 승인하였다.

[판결]

법원은 차레스트에게 9명에 대한 21건의 성적 접촉 및 성적 착취로 9년 6개월 징역, 6명에 대한 15건의 성폭행으로 27년 징역, 1명에 대한 신체적 상해를 유발하는 성폭력 혐의로 6년 징역형을 부과했다. 최종적으로 부과된 형량은 12년 징역으로 집행되었는데, 이는 재판 전 구류를 참작하기 위해 감형된 것이다.

[이후 변화]

2018년 NDP(Canada's New Democrats)는 캐나다 스포츠의 성적 학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독립기구를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 NDP는 미국의 최근 통과된 스포츠 안전법(Safe Sport Act)과 유사하게 정부가 옴부즈맨, 법정 또는 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를 설립하는 법안을 고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포츠 안전법은 규정 준수를 보장하고 불만 사항을 조사할 책임이 있는 SafeSport라는 독립 기관을 만들었다. 이 기관은 완전히 독립적이고, 자금이 잘 갖춰져 있으며, 조사를 수행하는 증언과 문서 작성을 강요하고, 제재를 부과할 권한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2018년 12월 차레스트의 해자 제네비에브 시마르(Geneviève Simard), 게일 켈리(Gail Kelly), 안나 프찰(Anna Prchal)은 알파인 캐나다를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스포츠연맹이 슬로프 경기 성과와 후원금을 위해 해당 성폭행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차레스트가 2017년 6월에 유죄 판결을 받았을 당시 모두 미성년자였다. 그들은 각각 자신이 겪은 심리적, 신체적, 성적 학대에 대해 30만 달러, 징벌적 손해에 대해 각각 15만 달러를 청구했다. 그들에 따르면 알파인 캐나다가 성폭행에 발생에 대해 기본적인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다. 또한 차레스트는 국가 코치로 사임했지만 알파인 캐나다는 그

의 코치 면허를 철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 피해자들은 2020년까지 스포츠 단체의 구성원이 정신적, 신체적 학대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스포츠 당국이 따라야 할 규칙을 제정하며, 우려 사항이 제기될 때마다 독립적인 안전 담당자가 사안을 조사하고 적절한 후속 조치를 수행하도록 촉구했다.

3.4 일본

3.4.1 스포츠 관련 주요 이슈 및 동향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HRW)가 2020년 7월 20일 발간한 '일본 내 아동·청소년 운동선수 학대 실태' 보고서[38]에 따르면, 일본의 아동 운동선수들은 스포츠 훈련을 할 때 신체적, 성적, 언어적 학대를 겪고 있다고 박혔다. 또한 우울증, 자살, 신체적 장애, 학대로 인한 평생 외상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이 2020년 올림픽 유치에 도전하던 2013년, 유명 엘리트 선수 학대 사건 영상과 아동 선수들의 자살 사건이 잇따르면서 주요 스포츠 기관들이 스포츠에서의 아동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2018년에 아이치현 고등학교 야구 코치가 팀의 선수들을 때리고, 주먹질하고, 차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비디오가 공개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대중의 분노는 학대를 고발하기 위해 핫라인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개혁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러한 개혁이 규칙 대신 선택적 '가이드라인'이며, 진척상황이 미미하고 감시받지 못하고 있으며, 학대민원이나 통계에 대한 의무적인 보고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러한 학대는 아동학대에 대한 일본의 법, 국제 인권 기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선수 보호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일본의 아동 선수들은 트로피와 메달을 따기 위함이라는 명목 하에 잔인하게 구타를 당하고 언어 학대를 당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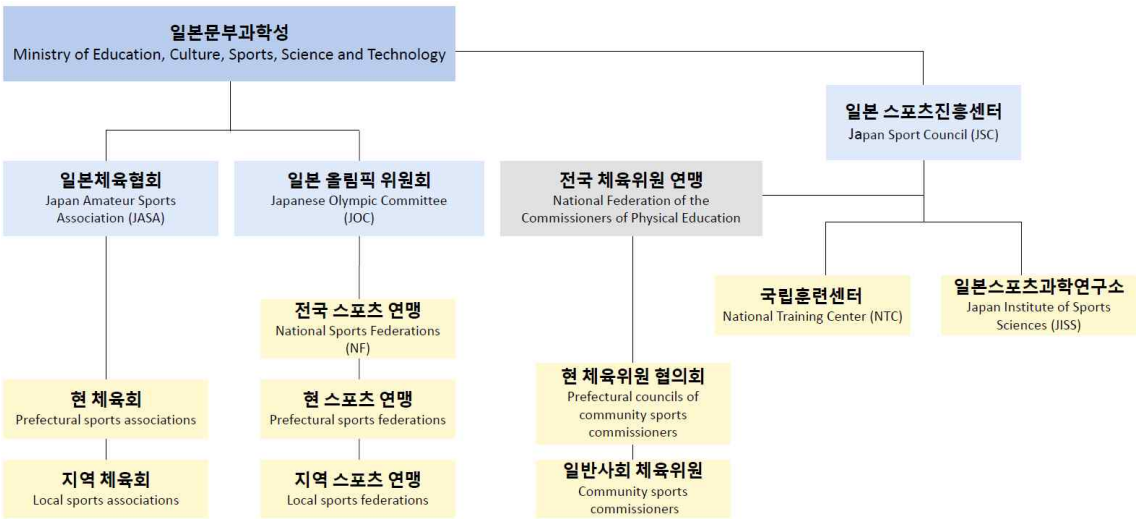
---

38) https://www.hrw.org/report/2020/07/20/i-was-hit-so-many-times-i-cant-count/abuse-child-athletes-japan

일본이 2021년 7월 도쿄에서 올림픽과 패럴림픽 유치를 준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것은 수백만 명의 아동 운동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일본과 전 세계의 법률과 정책을 변경할 수 있는 한 세대에 있을 단 한 번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국제법에 따라 정부는 아동의 놀이 권리와 폭력이나 학대 없이 살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아동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일본 어린이들에게 건강과 복지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폭력적인 코치에게 그들의 행동이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고,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스포츠에서 아동 폭력을 종식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 아동 운동선수에 대한 폭력을 끝내기 위해 명확한 의무와 기준에 따라 통일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4.2 스포츠 거버넌스

그림 11. 일본의 스포츠 관련 기관 조직도



학교스포츠는 문부과학성의 관할 하에 정책이 실시되고 있으며 학교체육의 충실, 어린이 체력향상, 전국체력・운동능력・운동습관 조사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일본의 중학교에서의 무도・댄스 교육 필수화되어 있다. 학교에서의 체육활동 중 사고방지 등 스포츠 기본법에서 규정한 안전한환 경하

에 일상적으로 스포츠를 즐기거나 지지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 하고 있다. 교원 수의 감소와 전문지도자의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포츠클럽 및 관계 단체와의 연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의 스포츠지도자를 외부 지도자로 초빙하는 방안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 학교와 지역지도자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 공공단체가 설치하는 스포츠지도자은행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3.4.3 스포츠 관련 법・제도

① 스포츠 기본법(スポーツ基本法)

일본은 스포츠가 일본사회에 활력을 만들어 내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넓게 기여하며, 스포츠의 국제적인 교류 공헌이 국제 상호 이해를 촉진하고 국제평화에 공헌하는 등, 스포츠가 국제적 지위 향상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며, 스포츠 강국의 실현을 목표로 국가 전략으로서 스포츠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였다(스포츠 기본법 부칙).

정부는 스포츠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 일체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하도록 스포츠 추진 회의를 만들어 문부과학성 및 후생 노동성, 경제 산업성, 국토 교통성 기타 관계 행정 기관 상호 연락 조정한다고 규정함으로 산발적으로 퍼져있는 정책에 대한 일원화를 꾀하였다. (스포츠 기본법 제30조).[39] 일본의 스포츠 기본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국가, 지방 공공단체의 책무
- 스포츠 단체의 노력
- 국민참여, 지원의 촉진
- 법제상의 조치 및 규제
- 관계자 상호의 제휴 및 협동
- 스포츠 기본계획
- 지방스포츠 추진 계획

39) 우리나라의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대한체육회, 여성가족부 일체적, 효과적 정책추진에 필요한 내용

- 스포츠 추진을 위한 기초적 조건의 정비
- 다양한 스포츠 기회의 확보를 위한 환경 정비
- 경기 수준의 향상
- 스포츠 추진회의
- 지방 자치단체의 스포츠 주진회의
- 스포츠 추진 위원
- 중앙정부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 심의회의 자문
- 스포츠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조직의 본연의 책무와 자세 검토
- 경과 조치

② 일본형법(日本刑法)

- 강제음란: 13세 이상의 남녀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3세 미만의 남녀에 대하여 음란한 행위를 한 자도 같다(일본형법 제176조).
-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이상의 여자를 간음한 자는 강간의 최로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일본형법 제177조).

③ 괴롭힘방지대책추진법(いじめ防止対策推進法)

따돌림을 당한 아동 등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고 그 심신의 건전한 성장 및 인격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임을 감안하여 아동 등의 존엄을 유지하기 때문에 왕따 방지 등을 위한 대책에 관한 기본 이념을 정하고 국가 및 지방 공공 단체 등의 책무를 밝히고, 따돌림 방지 등을 위한 대책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책정에 대해서 정하는 동시에 따돌림 방지 등 대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따돌림의 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괴롭힘방지대책추진법 제1조).

④ 일본 스포츠 기본계획

일본의 경우는 교육활동 중 하나로 운동부 활동이라는 제도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운동부 활동은 학생들의 자유 의지로 취미에 맞는 종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으며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클럽 활동과는 달리 교육과정에 포함하지 않는 방과 후의 자유로운 체육활동이며 이렇게 모인 학생들이 전국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어 각 경기 연맹에 등록한다. 일본과 한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차이는 이렇게 학생들이 간단히 팀을 만들 수 있다는 제도이다.

현재 학교 체육의 정상적인 운동과 운동 특기를 가진 학생의 자율적인 운동부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학교 운동부를 클럽화 시켜서 선수 인프라가 폭발적으로 확대된 상태이다. 초등부라는 개념도 사라지고 거의 100% 클럽화된 상황이며 전국대회는 방학에 개최되는 1개 대회가 전부다. 공부를 하고, 방과 후에 연습을 하며, 주말에 지역 리그 경기를 열며 체육회 주최 전국 대회에는 저학년 선수가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대회 출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즉, 체육특기자제도 개념이 거의 없어지고, 선수에게 학습권도 보장해주고 있었다.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활용해, 스포츠를 통해 사람들을 연결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스포츠기본법」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스포츠진흥법」 제4조에 따르면 ‘문부장관은 스포츠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스포츠진흥법의 제정에 따른 「스포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획은 실제로 오랜 세월 동안 실행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문부성 산하에 조직되어 있던 보건체육심의회가 제출하는 답신으로 「스포츠진흥기본계획」을 갈음하여 왔다. 그러나 1999년 5월 「스포츠진흥로또법」이 가결되어 제정됨에 따라 2000년 9월에 드디어 「스포츠진흥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일본은 스포츠는 세계 공통의 인류의 문화이며, 국민의 성숙한 문화로 스포츠를 더욱 정착시켜 풍요로운 미래를 만드는 것이 스포츠 진흥에 종사하는 사람의 가장 큰 사명으로 보고, 스포츠 즐거움이야말로 스포츠 가치의 핵심이며,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스포츠에 종사 자기실현을 도모하고, 스포

츠의 힘으로 빛나는 것이라고 본다. 이에 스포츠가 적극적이고 활력 있는 사회와 유대가 강한 세계를 만든다는 모토로 ‘스포츠를 즐기고, 삶을 즐기자(Enjoy Sports, Enjoy Life)’ 는 슬로건을 내세운다.

⑤ 스포츠 강국전략

일본은 스포츠입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고 스포츠를 통해 감동을 나누고, 서로를 돕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전략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이러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스포츠 활동의 기회를 확보하고, 안전하고 공정하게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고자 구체적으로 5개의 중점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첫째, 국민연령 등에 따른 스포츠기회의 창출 - 국민은 누구라도 각자의 체력, 연령, 기술, 흥미 및 목적에 따라 언제라도 어디서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생애 스포츠사회를 실현한다. 성인의 경우 주1회 이상 스포츠를 실시하는 사람이 국민의 3분의 2 (약65%) 정도가 되도록 하며, 주3회 이상은 3분의 1(약30%) 정도가 되도록 목표를 세운다. 주요정책으로는 ① 종합형 지역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하는 스포츠 환경을 정비한다. ② 지역스포츠를 담당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활용한다. ③ 지역스포츠시설의 정비, 학교체육시설 의 활용 등을 통해 스포츠시설을 확보한다. ④ 유아기 내지 학령기의 운동지침을 책정한다. ⑤ 어린이의 체력향상을 위해 스포츠기회를 충실히 한다. ⑥ 젊은이를 비롯한 성인들의 스포츠참가 기회를 확대한다. ⑦ 고령자의 체력단련을 지원한다.

둘째, 세계에서 경쟁력이 있는 선수 육성・강화 - 세계의 강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어린 선수시절부터 톱 수준의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강화체제를 구축한다. 이후 하계 또는 동계올림픽대회에서 과거 아테네대회(하계)의 최대 메달인 37개, 나가노대회(동계)의 최대메달인 10개를 뛰어 넘는 메달을 획득한다. 또한 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회득한 과거 최대의 입상자를 뛰어 넘는 입상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목표한다. 주요 정책으로는 ① 주니어선수 시기부터 톱 수준에 이르기까지 전략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② 톱 수준의 선수, 지도자 및 심판원의 해외연수를 지원한다. ③ 대학을 활용한 분산형 강화, 연구활동 거점네트워크를 구

축한다. ④ 국립스포츠과학센터(JISS)의 기능을 강화한다. ⑤ 국립훈련센터를 지원한다. ⑥ 여성선수가 활약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한다. ⑦ 국제경기대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 스포츠여행 사업을 촉진한다.

셋째, 스포츠계의 연대·협동에 의한 선순환의 창출 - 톱스포츠와 지역스포츠의 선순환을 창출하기 위해 전국 300개 정도의 광역 시정촌(市町村)을 거점지역으로 하여 종합형 클럽에 이미 은퇴를 한 톱클래스의 선수 등의 지도자를 배치한다. 또한 학교와 지역의 연대를 강화하고, 나아가 학교체육·운동부를 활용하여 지역의 스포츠인재를 확충한다. 주요정책으로는 ① 톱 수준의 선수가 지역스포츠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한다. ② 체육수업·운동부활동을 위한 외부지도자를 충원한다. ③ 주니어 시기부터 은퇴 후까지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사회공헌을 추진한다. ④ 대학을 활용한 분산형을 강화하고, 연구활동 거점네트워크를 구축하다. ⑤ 학교체육시설의 활용을 추진한다. ⑥ 스포츠단체의 연계 체제를 구축한다.

넷째, 스포츠계의 투명성 및 공평·공정성의 향상 - 스포츠단체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단체운영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또한 스포츠분쟁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하여 공평·공정한 스포츠계를 실현한다. 주요정책으로는 ① 스포츠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② 공평·공정한 스포츠단체의 운영을 확보한다. ③ 스포츠단체의 매니지먼트기능을 강화한다. ④ 스포츠분쟁의 신속하고 원활한 해결을 지원한다. ⑤ 도핑검사체제와 방지활동을 충실히 한다.

다섯째, 사회전체에서 스포츠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정비지역의 스포츠 활동을 추진하여 새로운 공공성의 형성을 촉진한다. 또한 스포츠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민운동의 전개 또는 세제개편에 따라 사회전체에서 스포츠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정비한다. 주요정책으로는 ① 새로운 공공질서를 담당하기 위하여 커뮤니티 스포츠클럽을 추진한다. ② 지역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을 정비한다. ③ 새로운 공공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세제개편을 검토한다. ④ 스포츠분야의 표창제도를 확충한다.

⑥ 폭력예방을 위한 운동부 운영

일본의 경우는 교육활동 중 하나로 운동부 활동이라는 제도에 의해 운영되

고 있다. 운동부 활동은 학생들의 자유 의지로 취미에 맞는 종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으며,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클럽 활동과는 달리 교육과정에 포함하지 않는 방과 후의 자유로운 체육활동이며 이렇게 모인 학생들이 전국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어 각 경기 연맹에 등록한다. 일본과 한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차이는 이렇게 학생들이 간단히 팀을 만들 수 있다는 제도이다. 현재 학교 체육의 정상적인 운동과 운동 특기를 가진 학생의 자율적인 운동부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학교 운동부를 클럽화 시켜서 선수 인프라가 폭발적으로 확대된 상태이다. 초등부라는 개념도 사라지고 거의 100% 클럽화 된 상황이며 전국대회는 방학에 개최되는 1개 대회가 전부다. 공부를 하고, 방과 후에 연습을 하며, 주말에 지역리그 경기를 열며 체육회 주최전국 대회에는 저학년 선수가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대회 출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즉, 체육특기자제도 개념이 거의 없어지고, 선수에게 학습권도 보장해주고 있었다.

3.4.4 스포츠 관련 인식현황

2020년 7월 20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HRW)는 ‘일본 내 아동・청소년 운동선수 학대 실태’를 발간하였다. 일본 내 50개 종목 전현직 선수 8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하고, 8개 스포츠 기관과의 면담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에서도 여러 스포츠 분야 선수들이 상습적인 폭력에 노출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동 운동선수들에 대한 신체적 폭력은 오랫동안 일본에서 스포츠의 일반적인 요소였고 종종 운동 경험의 일반적인 부분으로 인식되어 왔다. 전문가들은 일본 스포츠에서의 신체적 학대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일부는 스포츠에서의 폭력을 2차 세계대전 시대에 학교 교육에 유입된 군국주의와 결부시켜왔다. 그것의 뿌리는 수십 년 된 것일 수도 있지만, 일본의 어린이 운동선수들에 대한 신체적 폭력은 21세기까지 지속되어 왔다. 2012년에 발표된 한 연구는 일본과 영국에서 코치의 처벌 사용에 대한 태도를 비교했는데, 일본 선수와 코치가 체벌을 용인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40]

지난 2013년 일본올림픽위원회(Japanese Olympic Committee, JOC)는 체육계 폭력 근절을 위한 조치를 약속한 바 있다. 이는 당시 운동선수의 10% 이상이 경기활동 시 괴롭힘이나 희롱 등을 포함한 폭력 행위와 성희롱을 경험하고 있다는 내부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41] 또한, 당시 유도연맹 소속 코치들이 여성 선수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JOC는 유도연맹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하기도 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코치들에 의한 아동 선수 학대가 감소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는 반면, HRW는 현재 진행 중이고 여전히 일반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수많은 사례를 기록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전국 각 현에서 최소 39건의 아동 운동선수 학대 사례에 대한 게시된 계정이 밝혀졌다. 일본 등지에서 아동학대가 과소 보고되고 있는 것을 보면, 주목하지 못한 폭력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폭력 코치들에 대한 지속적인 책임감의 결여는 신체적인 폭력을 코칭 전술로서 지속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3.4.4.1 성폭력

HRW 보고서에 의하면, 24세 이하 조사 응답자 381명 중 5명은 어린 시절 스포츠에 참여하면서 성폭행이나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아동 성학대 경험이 자주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들이 나서기 어려운 여러 요인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아동 성학대는 과소신고된 범죄로, 문제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고했다. 성폭력의 경우 부상 치료를 핑계로 신체 접촉, 합숙소 내 성폭행 사례가 많았다. 한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여아동 선수가 12살 때부터 남자 선배와 남자 코치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한다. 성적 학대는 3년 동안 전지훈련 기간에 이루어졌으며, 여동생에게까지 성적학대를 시작했으나 코치는 방관했다. 또한 18살 때 부상을 당하자 남자 코치가 '치료를 위해 하는 일'이라며 매일 옷을 벗게 하고 알몸을 만졌다. 다른 인터뷰에서는 '최고 선수' 출신의 여자 축구팀의

40) Haruka Hagiwara and Sandy Wolfson, "Attitudes towards soccer coaches' use of punishment in Japan and England: A cross-cultur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vol. 11, no.1 (September 2012), pp. 57-69.

41) https://www.nikkei.com/article/DGXNASDG1903V_Z10C13A3CR8000/

남자 코치가 10대 선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무릎에 앉히고 침대로 들어와 ‘함께 놀자’고 했다는 내사 결과를 밝히기도 했다고 한다.

3.4.4.2 폭력

아동 운동선수들에 대한 폭력은 오랫동안 일본에서 스포츠의 일반적인 요소였고 종종 운동 경험의 일반적인 부분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아동 운동선수 폭력의 현재 또는 역사적 확산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보관하거나 입수하지 않고 있어 이를 정량화하기는 어렵다. 1990년 9월, 일본은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에 서명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1994년 4월 일본은 이 조약을 비준했는데, 이 조항에 착취 없이 일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가 명시돼 있다. 그러나 최근 발간된 HRW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림픽 메달을 준비하면서 어린 운동선수들은 전리품과 메달을 따는 명목으로 심하게 구타와 폭언을 당했다고 한다. 또한, 일본의 스포츠 폭력 금지법은 아동폭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스포츠를 포함하여 아동폭력금지법은 조직적인 스포츠에서의 폭력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른 행위들은 스포츠에서의 아동폭력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고, 법적으로 맹목적이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 결과 일본의 스포츠 문화는 트레이너들이 아동을 차별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아동폭력은 처벌이 가능하지만 스포츠연맹은 아동 운동선수 학대를 예방, 신고, 조사, 처벌할 수 있는 자체적인 자율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HRW는 “이러한 제도적 실패는 아동 운동선수들을 폭력에 취약하게 만든다”고 보고하였다.

일반적으로 경험되는 신체적 폭력의 형태 중, 가장 명백하게 폭력적인 것은 코치들이 손, 발 또는 다른 물건으로 선수들을 때리는 것이다. HRW 보고서는 24세 이하 응답자 381명 중 19%는 주먹질, 뺨 때리기, 발로 차기, 땅바닥에 내리꽂기, 물건으로 때리기 등을 겪었다고 답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감독에게 멱살을 잡히는 일은 흔한 것으로 대부분의 아동 선수들이 신체적 폭력 경험했으며 아직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아직 매를 안 맞았구나, 언제가 네 차례지?”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답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중학교 코치로부터 폭력 당했다고 말했다. 코치는 선수들을 발로 차고 가까운 거리에서 공을 던지곤 했고, 선수들이 헬멧을 쓰고 있을 때 감독은 방망이로 헬멧을 쓴 선수들을 때리곤 했다고 했다. 이러한 신체적 폭력은 연습이나 경기에서, 실수에 대한 처벌로 발생하였다.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폭력도 많았다. 인터뷰에 따르면, 코치가 배를 때리고 발길질을 하는 것은 평범한 것이고 유도에서처럼 선수를 던지고 선수가 경기에서 실수를 할 때 코치는 선수를 때리거나 펀치를 날리거나 발로 차거나 던지기도 한다고 답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맞기도 하고 피를 흘려도 멈추지 않고 계속 때리는 일도 많았다. 언론에 기록된 이런 유형의 폭력에 대한 유명한 사례도 있었다. 예를 들어 2017년 토치기현에 있는 고교 배구선수 A군(17)이 팀의 '연애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코치와 동료들에게 심한 구타를 당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팀의 선수들은 배구팀의 다른 멤버들과 데이트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코치는 선수 중 한 명이 여학생 관리자와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선수를 그라운드에 무릎 꿇게 하고, 선수의 가슴을 발로 차기도 반복했다. 그 선수의 팀 동료들도 그를 폭행했다.

전현직 아동 운동선수들은 또한 과도한 양의 음식을 먹도록 강요받거나 음식과 물을 보류하는 것에 대해 말했다. 응답자 중 25%는 과도한 양의 음식을 섭취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응답했고, 7%는 경쟁 중에 충분한 음식이나 물을 공급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코치가 선수들에게 화가 나 있을 때는 선수들이 요청을 해도 경기나 연습 중에 물을 주지 않아 고통을 주었다고 했다. 또 한 인터뷰에서는 감독이 운동장에 직접 음식을 주문했고, 연습이 끝난 후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그것들을 먹어야만 했다고 답했다. 전국대회에 참가하려면 하루 식사를 마쳐야 했으며, 매일 식사를 끝내지 못해 팀 감독에게 꾸지람을 받거나 일부 팀 동료들은 음식을 다 먹지 못해 연습과 경기에서 쫓겨났다고 보고했다.

어떠한 운동선수도 부상을 당했을 때 훈련을 강요당하거나 그들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훈련을 받아서는 안 된다. 조사 응답자 381명 중 22%는 부상 시 훈련을 강요받거나 과도한 훈련으로 처벌받는다고 응답했다. '달리기 처벌'을 설명했는데,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지칠 정도로, 강제로 뛰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게임에서 지는 경우, 집으로 뛰어서 가거나 오랜 시간 훈

련하는 것으로 처벌받았다고 보고하였다. 부상 중에도 경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매일 통증을 잊기 위해 연습할 때 진통제를 복용하며 상처가 낫지 않았지만 연습을 계속했다고 답했다. 부상은 과도한 연습으로 인한 것이었으나, 인터뷰 대상자와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종종 이러한 경험을 자신의 운동 훈련의 일반적인 부분으로 인식하였다.

응답자 중 6%는 머리를 자르거나 머리를 깎는 것을 벌로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이 처벌은 연습에 늦는 것과 같은 사소한 위반에 대한 것이었다. 인터뷰에서 삭발 유행을 언급하며 체육팀 학생들이 실수를 하면 선배나 코치로부터 팀 동아리방에서 면도기로 머리를 깎으라고 강요하는 일이 잦았다고 말했다. 모발은 몸의 일부분이고 자기표현의 일종인데 어쩔 수 없이 삭발을 해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폭력을 '애정', '성적 향상을 위한 훈육 방법'이라고 보는 응답자들도 많았다. 학대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몇몇 코치들은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인 성적향상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고 있다고 인식했다. 다수의 아동 선수들이 감독들이 방망이로 머리를 때리듯 사랑으로 때리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사랑으로 채찍질을 하고 있었다고 기억하기도 한다. 심한 폭력을 묘사한 선수들조차 폭력이 어떻게 사랑으로 뒤엉켰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신체적 폭력이 코치들에 의한 신체적 폭력 외에도 팀 동료들, 특히 나이든 팀원들의 폭력도 발생한다. HRW 보고서에 따르면 코치가 가해자로 가장 많이 지목됐지만, 두 번째로 가해자는 나이든 팀 동료나 선배였다. 이러한 형태의 폭력은 일본 스포츠 문화에 공통적인 사고방식인 더 열심히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 코치들이 폭력을 휘두르면 선배들은 후배들에게도 똑같이 폭력을 행사했다. 선수들 간 위계적 관계는 멘토링을 수반할 수 있지만, 경기에서 힘의 역동성은 때때로 어린 팀원에 대한 학대를 포함한다. 인터뷰에 의하면 선배에게 찍히면 그것은 "세상의 끝"이라고 표현했으며, 선배가 코치보다 더 가혹하게 과도한 양의 음식을 먹게 하기도 했다며 선후배 사이의 위계질서는 상상 이상이었다고 답했다.

신체적 폭력 못지않게 아동 선수들은 코치로부터 심한 폭언을 경험한다. HRW 보고서에 따르면 24세 이하인 381명 중 응답자의 총 18%가 언어폭력

을 겪었다고 답했다. 코치들은 반복적으로 멍청이, 바보라고 아동 선수를 불렀으며, 운동 실력에 대해서 비판하는 언어폭력을 가한다. 이러한 언어폭력은 아동 선수의 자살로 연결되기도 하는데, 2019년 이바라키현에 있는 15세 중학교 탁구선수가 코치의 학대가 원인이 되어 자살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소녀는 유서에 코치가 자신을 죽이거나 때리겠다고 협박했다고 썼다. 또한 코치가 동료들을 위협하고, 팀을 '멍청이들'이라고 부르며, 팀원들의 어깨를 밀치고, 팀 장비를 이리저리 던졌다고 썼다. 소녀는 자살하기 약 보름 전에 탁구 클럽의 연습을 중단했다.

폭력이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엄청나다. 스포츠에서의 폭력 경험은 운동선수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스포츠에 대한 즐거움을 감소시키고, 어떤 경우에는 평생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폭력의 결과로, 아동은 그들의 도덕적, 사회적, 정신적 발달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트라우마를 경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HRW 보고서에서 일본의 스포츠 청소년들 사이에서 스포츠 문화의 잔인한 조건의 결과로 자살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논의한다. UNCRC에 언급된 바와 같이, 아동은 폭력을 견디면서 개인 주체로 성장할 수 없다. 폭력을 사용하는 위험한 방법으로 훈련을 지속하면 아이들은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착취당하는 것이다.

3.4.4.3 학습권

Yoshihiko Yamamoto(2016)[42]는 공부와 스포츠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대학 운동선수들의 딜레마를 조사하고, 대학 운동선수들이 공부와 스포츠 클럽 활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본 연구에 따르면, 대학 운동선수들은 동아리 활동으로 매우 바쁜 경향이 있었다. 그들 중 다수는 거의 매일 클럽 활동에 참여하고 거의 매일 2~4시간씩을 보냈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시간을 갖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게다가, 이 연구의 60% 이상의 참가자들은 그들이 대학에서 클럽 활동과 공부를 모두 잘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동아리 활동이 신체적으로 너무 피곤하거나 수면시간이 부족한 대학 운동선

42) Yoshihiko Yamamoto. (2016). Japanese University Athletes' Dilemma: Study, Sport Performance, or Both, The IAFOR Journal of Education, 4(1), 146-168.

수들의 공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이 연구의 참여자의 약 90%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이 그들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많은 대학 운동선수들은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었지만 그들은 공부할 시간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일부 대학 운동선수들은 스포츠 추천을 받아 대학에 왔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에 진지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다. 이 연구의 많은 대학 운동선수들은 졸업 후 프로 스포츠 선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지만, 스포츠 추천으로 대학에 입학했기 때문에 그들의 클럽 활동에 진지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이러한 압력은 학교 스포츠 환경에 관한 일본의 전통적인 가치들 중 하나로, 공부를 덜 하고 스포츠 활동에 집중하려는 학생, 스포츠 활동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공부하려는 학생 등 두 가지 유형의 극단적인 학생들을 장려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교육 환경 속에서 특히 스포츠 학생들은 공부할 의욕을 상실하는 경향이 있으며, 프로 선수가 되지 못할 경우 미래 취업에 대한 위험도 감수한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대학 운동선수들은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이 그들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많은 대학 운동선수들, 특히 스포츠 추천을 받고 대학에 온 학생들은 그들의 스포츠 클럽에 진지하게 참여해야 할 강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 즉, 본 연구에 참여한 많은 대학 운동선수들은 졸업 후 프로 스포츠 선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지만, 스포츠 추천으로 대학에 입학했기 때문에 클럽 활동에 진지하게 참여해야 하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고 답했다.

3.4.5 스포츠 인권침해 사례

3.4.5.1 유도 - 소노다 류지 (園田 隆 二)사건

[사건 이슈화]

2012년 12월 여자 유도대표 선수 15명이 소노다 류지(園田 隆 二) 감독을 비롯한 코치진의 폭력 행위를 고발하는 문서를 일본 올림픽위원회(JOC:

Japanese Olympic Committee)에 제출하면서 사건의 내막이 밝혀졌다.

[사건 요약]

고발장에서 런던 올림픽을 대비한 합숙 훈련 중에 소노다 감독을 비롯한 코치진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게 한다는 핑계로 여자 유도 대표선수에게 죽도(竹刀)로 마구 때리기, 발로 걷어차기, 폭언 등의 폭력 행위를 자행해왔다. 코치는 그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팀에서 제거하겠다고 협박했다. 많은 선수들이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일본 팀에 있었을 때 발생하였다.

여자 유도계의 폭력 행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일본 유도계를 총괄하는 전일본유도연맹(AJF: All Japan Judo Federation))이 2012년 9월 말 런던올림픽 이후에 소노다가 특별 훈련을 위해 선수들에 대해 폭력을 가했다는 혐의에 대해 소노다를 인터뷰했고 그는 혐의를 인정했다. 2012년 11 월에 그는 연맹에 사과 편지를 쓰고 선수들에게 구두로 사과했다. 이에 대해 연맹은 결과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2012년 12월 초, 고소장은 JOC를 통해 연맹에 발송되었고, 소노다와 다른 남자 코치는 15명의 선수 중 일부에 대해서만 폭력과 권력 괴롭힘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다시 조사를 실시하고 혐의가 사실이라고 결론지었다. 연맹은 2013년 1 월 25 일 JOC에 소노다에 대한 처벌을 보고했다. 하지만 연맹은 당분간 소노다를 그 자리에서 해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연맹이 소노다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는 데 그친 경미한 대응에 여자 유도계의 분노는 계속되었다. 유도연맹에 따르면 전체 유도 선수의 약 20%가 여성이지만 이사진 26명 가운데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으며, 여성 지도자도 전체의 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2013년 유도연맹의 회장을 비롯하여 한 명의 고위 관리들이 이사회에서 사임하였다.

[판결]

인사이드 더 게임즈(Inside The Games)에 따르면 소노다는 자신의 유죄를 인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고발을 당하지 않은 채로 사건이 무마되었다.

[이후 변화]

2013년 4월 25일 일본체육회, 일본장애인체육회, 전일본고 체육회, 일본중학교 체육문화협회, JOC 5개 체육단체는 코치에 의한 선수들의 신체적 학대를 근절하겠다는 ‘스포츠 폭력 근절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선언문은 코치는 폭력에 의한 강압이나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 더 나은 선수나 팀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폭력이 코칭의 필요악이라는 개념을 거부해야 하며 선수의 운동능력 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인 발전도 함양하여 21세기 스포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공정한경기정신으로 체육인 육성에 힘써야 한다고 규명했다. 선수에 대해서는 공정한 경기정신으로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을 자신으로 존중하며, 어떠한 폭력 행위에도 관여하거나 암묵적으로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포츠 협회 및 단체에 대해서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폭력을 근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폭력사태 원인조사, 폭력근절에 관한 지침과 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상담서비스를 구축하는 등의 체제를 형성해야 함을 촉구했다.

JOC 집행위원회는 19일 AJF에 13개 지시를 내리기로 합의하였다. JOC 지침에는 폭력적인 코칭 금지, 선수가 조직 의사결정자에게 우려를 전달할 수 있는 틀 마련, 국가대표 선발의 투명성 강화, 코치 및 유도연맹 임원 여성 채용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 JOC는 스포츠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연맹이 관리하는 스포츠에서 폭력, 괴롭힘, 위법행위를 신고하기 위한 익명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JOC는 스포츠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연맹이 관리하는 스포츠에서 폭력, 괴롭힘, 위법행위를 신고하기 위한 익명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회계연도에 유도연맹의 연간 팀 육성 보조금을 삭감하고 연맹에 대한 연간 26만 달러 보조금을 취소하기로 발표했다.

JOC는 올림픽 헌장의 기본 원칙과 올림픽 가치를 존중하는 스포츠 활동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전국적인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캠페인은 일본에서 스포츠에 종사하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혐의를 조사하고 체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JOC 집행위원과 제3자 변호사로 구성된위원회는 최근 여자 유도 국

가대표팀의 전현직 선수 15명이 유도연맹에 대해 제기한 의혹을 조사했다. 위원회는 철저한 검토를 거쳐 심각한 위법행위가 발생했다고 결론지었다.

JOC이 진행한 연맹 내부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1,800명의 올림픽 선수 중 206명(11%)이 코치로부터 성희롱과 신체적 폭력을 겪었다고 밝혀졌다. NHK 공영 방송에 따르면 이들 중 20명은 부상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145명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가장 일반적으로 코치들은 경기 중 태도 문제를 빌미로 폭행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노다의 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자 유도계의 폭력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유도연맹은 '제3자 위원회'를 설치해 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조인과 학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사건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계획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감독이나 코치가 선수를 폭력으로 다스리는 일본의 스포츠 풍토는 여자 유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스포츠에서의 학대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일반적으로 모호하고 암시적이며,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명확한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광범위한 학대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일본의 스포츠 체벌 문화인 타이바츠(Taibutsu)와 관련 있다. 2020년 일본에서는 체벌이 금지되었지만 스포츠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타이바츠는 일본 스포츠 역사에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는 지원과 인격 구축에 있어 필수 요소로 여겨지며, 이러한 관행은 코치, 부모, 심지어 일부 선수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유지된다.

2020년 경기에 대한 일본의 입찰은 타이바츠 관행 중단을 목표로 하는 개혁으로 이어졌다. 국제인권감시기구(HRW: Human Rights Watch)는 일본이 스포츠에서 아동 학대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 행정기구를 설립하여 사례를 보고, 추적 및 시정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4.5.2 유도 - 마사토 우치시바(内柴 正人) 사건

[사건 이슈화]

일본의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마사토 우치시바(内柴 正人)는 그가 지도하던 학교 유도부에서 학생을 강간했다.

[사건 요약]

우치시바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남자 66kg 급 금메달을 획득한 일본 유도 선수이다. 그는 현역에서 은퇴한 후 2010년 4월부터 규슈간호복지대학의 객원교수 겸 유도 코치로 활동했다. 2011년 9월 20일, 그는 대학 유도부원들과 함께 합숙 훈련을 하러 갔는데 우치시바는 술에 취해 잠든 18세 여성 팀원을 강간했다.

그러나 우치시바는 도쿄에서 캠프 파티를 마치고 술에 취한 소녀와 합의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치시바가 코치했던 대학 유도팀 소녀가 술에 취해 노래방에서 잠든 후 호텔방에서 폭행했다.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상황을 인지했을 때 저항했지만 우치시바는 텔레비전의 볼륨을 높이고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았다. 이튿날 아침이 사실을 알게 된 여자 선수는 다량으로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기도했으며, 극도의 우울증에 시달리다 학교까지 그만뒀다. 피해자는 당시 정확한 나이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2011년 11월 대학은 성희롱 혐의로 우치시바를 코치 직책에서 파면했다.

[판결]

우치시바는 형법 제 178조 '강제 추행 및 강간(Constructive Compulsory Indecency and Rape)', 에 따라 강간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다. 일본 형법 178조 2항에 따르면, 준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않고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음주, 약물 사용 등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추행과 폭행을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며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 정해져 있다.

2012년 12월 26일 검찰은 "지도자로서의 한 치의 품평도 없고, 비열하기 짝이 없는 범행이다"며 우치시바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013년 2월 1일 도쿄지방법원은 "우치시바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우치 비사를 동경해 유도부에 들어간 여자 선수를 무방비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성폭행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검사의 구형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우치시바 측은 무죄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당일 도쿄고등 법원에 항소했다.

2013년 10월 4일, 도쿄 고등 법원에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되었지만, 변호인 측이 요구했던 피고인 질문의 기회와 새로운 증거의 채택이 모두 기각되었다. 심리는 30분 정도에 종료하여 당일 결심되었다. 2013년 12월 11일 "피고의 무죄주장은 불합리한 신용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소는 기각되었고, 우치시바측은 당일 상고하였다. 2014년 4월 23일 대법원은 피고인 측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이로써 징역 5년의 실형 판결이 확정된다.

한편 2017년 9월 15일에 우치시바는 가석방되었다. 2017년 12월 14일 우치시바의 징역5년의 형기가 만료되었다. 이후 2018년 7월 키르기스유도 연맹 총감독에 취임하여 우치시바는 7년 만에 유도계에 복귀하였다. 2020년 1월 24일부터 구마모토 현 야쓰시로시의 온천 목욕탕에 근무하며 총 책임자를 맡고 있다.

[이후 변화]

2013년 8월 23일 전일본 유도 연맹의 이사 23명이 2020년 하계 올림픽 유치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데 대해 사임했다. 우치시바는 2017년 11월 가석방되어 8월부터 키르기스스탄 국가 대표팀과 계약을 맺고 출국했다. 추방된 일본 올림픽 유도 챔피언이 키르기스스탄 감독으로 취임한 것이다. 우치시바는 2020년과 2024년 대회를 앞두고 젊은 선수들의 개발을 지원할 것이며 키르기스스탄의 선수와 코치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계점]

사건은 법률 시스템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성행위가 범죄로 판단되려면 '폭력 또는 협박'에 의한 것이거나 피해자가 '온전한 정신이 아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모든 형태의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를 처벌 가능한 범죄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범죄 충족사항을 폐지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문제는 2017년 성범죄에 대한 더 가혹한 처벌을 위해 형법이 개정되면서 활발하게 논의되었지만 사실상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4.5.3 농구 - 고무라모토(小村基被告) 사건

[사건 이슈화]

2012년 12월 22일 사쿠라노미야 고교의 농구부 감독을 맡고 있던 남성 교사 고무라 모토(小村基被告)가 농구팀 주장을 맡은 2학년 남학생에게 심각한 체벌을 가한 뒤 다음날 23일 학생이 자택에서 교복 넥타이로 목을 매 자살했다. 이 사건이 대서특필되고 일본 각지에서 학교 체벌을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사건 요약]

자살한 학생은 일상적으로 체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자살 전날 밤에는 30-40회 폭력을 당했다. 고무라는 체벌 사유에 대해 만족스러운 경기가 아니었다는 점을 이유로 경기의 휴식 시간이나 종료 후에 남학생의 얼굴 등을 손바닥으로 수십 번 구타하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고무라는 각종 선수권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학생들을 상대로 일상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

시 교육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고무라 감독은 자살한 주장 선수가 여자팀과의 연습 경기 중 볼을 뺏기자 “남자가 칠칠치 못하게 왜 여자에게 볼을 뺏기느냐”라며 손바닥으로 뺨을 수차례 가격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고무라 감독은 며칠 후 다른 학교 남자팀과의 연습 경기에서 주장 선수가 볼을 끝까지 쫓아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따귀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고무라는 면직 당했으며, 오사카의 시모토 도루(橋下徹) 시장은 사쿠라노미야 고교의 3개 학과 중 체육과와 스포츠건강학과의 신입생 모집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2013년 9월26일 고무라는 오사카 지방법원에 의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깊이 반성한다고 하며,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평생 짊어지며 반성하고 싶다”며 사과했다.

특이한 점은 졸업생의 상당수는 체벌은 자신의 실책으로 인한 것이라고 자책했다는 점이다. 이는 먼저 폭력으로부터 탈출구가 없었다는 것과 관련 있다. 사쿠라노 미야 고교에는 ‘체육과’와 ‘스포츠 건강 과학과’가 있는데,

농구부원의 90% 이상은 이 학과 출신이었다. 즉, 만약 체육과 스포츠 건강과학과 학생이 농구부 활동을 그만두면 수업 시수를 채우지 못해 중퇴 처리가 된다. 또한 스포츠가 강세인 고등학교에서는 체육과 교사의 권력이 매우 강한 것에 비해 보통과의 교사와 교장, 교감은 전혀 영향력이 없다는 것도 문제였다. 학교에서 그 누구도 체육 교사의 강압적이고 불합리한 체벌에 대해 항의를 할 수 없는 구조였다.

[판결]

오사카 지방법원은 오무라에게 9월 26일 징역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 집행유예는 고무라가 이미 징계면직이 되어 있는 것 등의 이유에 의한 것이다. 현재의 형법에서는 폭행과 상해에서 재판 이외에 방법이 아닌 범죄의 내용이나 본인의 반성도 등에서 보면 타당한 판결이지만 동시에 체벌 문제 관점에서 볼 때 해당 재판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받는다.

[이후 변화]

오사카 시는 사건 이후 시내 공립 학교동아리 활동 지침의 재정이나 상담창구 등을 설치했다. 1개월 이내에 본 사안에 관한 사실 조사와 사건 관계자에 대한 대처를 실시했다. 또한 전체 시립 학교 내 운동부의 폭력 행위・폭언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조사는 오사카 지역 감찰 팀에 의해 진행되었다.

또한 문부과학성은 사안이 공표된 이후 오사카 교육 위원회에게 사건에 대한 철저한 사실을 규명하며 그 결과를 문부과학성에 보고 하게 했다. 오사카 교육 위원회가 고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스포츠 폭력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2개를 제외한 모든 동아리에서 고문 교사의 폭행이나 폭언이 계속되어온 것이 밝혀졌다. 또한 후임 교장이 ‘플레이어즈 퍼스트’의 정신에 근거한 스포츠 모델 학교로 학교 만들기에 매진하겠다고 표명했다.

2019년 3월 11일 일본 농구 협회 JBA가 통합위원회를 설립하여 인간성, 지도력, 조직력을 높여 농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지침 결정 및 계발 활동을 촉구했다.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깨끗한 농구, 깨끗한 경기’ 메시지를 발

표하여 폭력과 폭언을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한계점]

오무라는 학생에 대한 폭행이라는 중대한 행위를 명확한 정책을 갖기보다 그 자리의 분위기만으로 반성한다고 발언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체벌 문제라는 시점으로 볼 때 이번 재판에 의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변호 측은 최종 변론에서 “체벌은 정신적 기술적으로 향상되길 바라는 마음의 일환이었다“라고 발언했다.

또한 사실이 아닌 정보를 덧붙여 스포츠 뉴스를 보도함으로써 이후 불합리한 체벌이 발생했을 때 학생에 대한 구제가 원활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여성을 데리고 기숙사에 들어간’ 등의 허위 수식어를 피해자에게 덧씌움으로써 언론의 오보는 학생 구제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3.5 호주

3.5.1 스포츠 관련 주요 이슈 및 동향

「Sport 2030」[43]은 2018년 수립된 호주의 첫 국가 스포츠 계획으로, 엘리트 스포츠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뛰어나고, 스포츠 무결성을 유지하고, 풀뿌리 스포츠 조직을 지원하고, 더 나은 건강과 복지를 위해 참여 수준을 높일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호주의 스포츠, 체육, 기술, 교육 및 기업 커뮤니티와 제휴하여 제공될 스포츠 및 신체 활동에 대한 비전과 계획이다.

본 계획은 더 많은 호주인들이 더 많은 활동을 더 자주하는 더 활동적인 호주 건설, 국제적인 스포츠 성공을 통한 국가적 자부심, 영감 및 동기 부여를 통한 스포츠 우수성 달성, 부패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하고 강력한 스포츠의 무결성 보호, 번창하는 호주의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산업 강화를 최우선으로 한다. Sport 2030의 전략적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뒷받침된다. 모두를 위한, 삶을 위한 스포츠와 신체적 활동 - 모든 호주인은

43) https://www.sportaus.gov.au/__data/assets/pdf_file/0005/677894/Sport_2030_-_National_Sport_Plan_-_2018.pdf

삶의 모든 단계에서 스포츠를 통해서든 다른 종류의 활동을 통해서든, 안전하고, 재미있고, 포용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운동을 수행할 수 있다, 경기장에서 이사회실에 이르기까지 인구를 대표하는 다양한 스포츠 분야 촉진한다, 다양한 스포츠 기회가 더 많은 호주인들을 활동하게 하고, 더 좋고, 다재다능한 선수들을 배출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를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Sport Australia의 업적에 기초하여, 호주인들이 스포츠의 성공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이고 건강하도록 영감을 주는 Sport Australia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다른 정부, 스포츠 또는 체육활동 조직, 상업적 또는 지역사회 조직 등, 비전과 원하는 결과를 공유하는 조직과 상호 유익한 협업 및 새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추가 연구 지원, 목표설정, 진행 상황 모니터링, 정책 및 프로그램 수정 등 학습, 적응 및 진화를 통해 우선순위를 뒷받침한다.

우선순위 영역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1) 만성 질환의 위험 감소 등 스포츠와 신체활동의 이점을 통해 호주인들의 신체건강을 개선, 2) 개선된 정신질환 관리와 더 큰 사회적 연결성을 포함하여, 스포츠와 신체활동의 인정된 정신건강 혜택을 통해 호주인들의 정신건강을 개선, 3) 개인의 발전을 성장시켜라 -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개인적 목표를 세우거나 시상대를 위해 노력하는 것, 활동적인 것은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4) 응집력 향상과 고립감 감소를 통해 지역사회를 강화시켜라, 5) 호주 경제에 대한 스포츠의 상당한 기여를 바탕으로 호주 경제 성장구축 등이다. 이러한 결과는 호주가 개인, 지역,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더 건강하고 번영하는 호주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이는 세계의 부러움이 될 스포츠의 성공을 기반으로 구축된 것이다.

3.5.2 스포츠 거버넌스

스포츠정책의 총괄기구인 호주스포츠위원회(Australia Sports Commission, ASC)는 생활스포츠 부분에서 국민들의 스포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Play. Sport. Australia’ 라는 진흥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은 정보의 수집 및 활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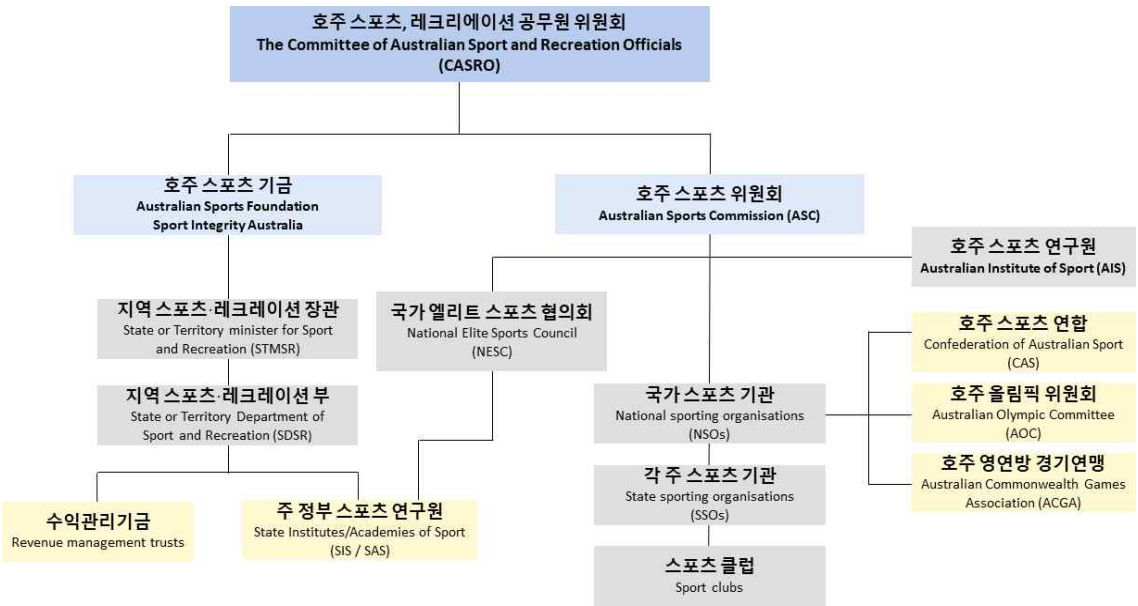
린이들에 집중-각 종목단체의 전반적인 거버넌스와 사업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ASC는 '스포츠는 소비자가 주도하는 산업' 임을 인지하고 스포츠정책 수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Play. Sport. Australia' 계획은 1단계로 정보의 수집과 분석부터 시작하였다. 매년 국민참여도 조사, 스포츠산업 연구, 스포츠정보 포털(Clearinghouse for Sport) 지속적 지원, 연 2회 주요과제에 대한 포럼 개최 등 다양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해 호주 아이들과 성인들의 운동성에 대한 실태 및 향후 30년 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징들을 발견하였다. ASC는 새로운 발견에 대해 계획의 2단계로써 호주의 초등학교 학생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Sporting Schools' 이다. 초등학생들에게 집중한 이유는 아이들의 '스포츠활동 참여의 지속적 성장' 이 장기적인 스포츠 수요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25년 전에 창설된 호주스포츠위원회(ASC: Australian Sports Commission)는 호주가 세계 스포츠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성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지금까지 ASC가 호주 스포츠의 높은 성과와 지역사회 스포츠를 개발하는데 있어 많은 기여를 해 왔지만, 변화하는 환경과 스포츠 분야에 대한 기대수준은 ASC의 주요한 역할과 구조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호주 스포츠 시스템이 국가적 스포츠 전략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하다. 전체 스포츠 시스템(엘리트 및 참여 스포츠)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들, 과제들, 그리고 혁신들을 생산해내는 창조자 스포츠와 관련된 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사 정부에 스포츠 정책과 기준들을 조언하는 조력자 다양한 스포츠 참여자들을 위한 정부의 재원분야 간 합의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협상가관련 관계자들 간의 소통을 이끌어내는 조력자로, 위의 사항들은 현재의 ASC의 비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호주에서는 유소년들에게 1일 컴퓨터게임 사용량을 2시간 이하로 줄이고, 그 대신 매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체육활동의 참가를 권장하는 '신체활동 참가권고문' 을 공포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는 점은 주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호주의 정책은 엘리트스포츠 육성정책을 펴고 있다. 국제경기 지원을 확대

함으로써 우수한 운동선수 및 유소년 선수를 발굴하고 국제대회 참가를 지원한다. 우수 선수를 위한 투자를 함으로써 세계 3위권/10위권 등의 특정 선수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선수들 훈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혁신 및 연구 진행한다. 호주 운동선수들과 팀 성과 향상을 위한 연구 재정지원, 스포츠 과학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높은 성과의 교육기관 및 아카데미의 혁신을 통해 20년 넘게 호주의 체육정책 시스템은 성공적이라 평가받아왔지만, 관계부처와의 협력 부족과 전략적 방향 부재 등으로 인해 그 효과가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하여 개혁과 재편성의 필요성 강조하고 있다. 또한 생활스포츠 육성 정책교육을 통해 호주 어린이들의 체육활동 참여 증가시키고 있다. 방과후지역사회스포츠(AASC: Active After-School Communities)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방과 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실시함으로써 2009년 기준 15만 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했다. 방과 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학교 체육수업 시간의 확대와 학교 체육 지도자들의 기술 향상을 위한 노력, 다목적 운동공간을 제공하여 어린이들의 체육활동 참여 독려 또한 여성과 호주 원주민들의 스포츠 참여를 위한 정책을 확대・추진하고 있다.

그림 12. 호주의 스포츠 관련 기관 조직도



호주의 경우 호주체육회(Australian Sports Commission)차원에서 스포츠에서

의 인권문제를 주도하고 있고 관련 정책 및 보고서를 만들어 내고 있다. 특기할만한 점은 스포츠지도자들이 철저히 선수폭력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며 폭력 및 성폭력 발생 시 선수의 인권침해 사례를 담당하는 담당자(Member Protection Officer, Member Protection Mediator)를 따로 두고 있다.

3.5.3 스포츠 법 · 제도

① 호주연방 헌법(Commonwealth of Australia Constitution Act)

헌법상 호주의 정치제도는 영국과 미국제도가 혼합된 특수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본 헌법은 외교와 통상, 국방과 이민정책에 관한 연방정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정부와 준주정부는 연방정부가 담당하고 있지 않은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형법(Criminal Code Act 1995)

형법 Subdivision C는 인간에게 반하는 범죄를 규정한다. Section 268.19에는 성폭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Section 268.14에는 강간을 규정한다. 강간과 성폭행의 경우, 벌칙을 2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호주인권위원회 법(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Act 1986)

호주스포츠위원회(Sport Australia, (구) Australian Sports Commission)이 2017년에 발간한 ASC 커뮤니티 인식조사(ASC Community Perceptions Survey)[44]에 따르면, 호주의 일반 대중은 자국의 스포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8세 이상의 호주 국적자 3,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다수(75%)가 호주가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존경을 받는다는 것에 동의하거나 강하게 동의했지만, 호주의 운동선수들이 긍정적인 롤 모델이라고 생각한다는 답변(62%)이나 호주의 전문 스포츠의 청렴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60%)를 보였다. 또한, 응답자의 77%가 정부가

44) https://www.sportaus.gov.au/__data/assets/pdf_file/0007/720583/ASC-Community-Perceptions-Survey-2017-Research-Report.pdf

스포츠의 청렴함(integrity)을 지키는 것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답변했다. 여기에서 스포츠의 청렴함을 저해하는 요인은 도핑, 승부 조작, 괴롭힘과 신체적 학대 및 성적인 학대와 같은 비윤리적 행위 등으로 정의된다. 선수 보조 인력(supporting personnel)의 비윤리적 행동은 최근 몇 년 동안 국제적으로, 그리고 호주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이다.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는 스포츠에서 가장 취약한 약자를 괴롭힘과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증가시켜왔다. 국가체육기관(National Sporting Organization, NSO)은 차별과 괴롭힘을 예방 및 해결하고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국가스포츠컨벤션(National Sports Convention, NSC)과 Play by the Rules가 스포츠 인권 문제에 크게 관여하고 있다.[45] 공교육을 통해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연방 차별 금지법에 따라 사람들의 불편사항을 처리하는 연방 정부 기관인 호주인권위원회(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AHRC)는 수년간 반인종차별운동을 위해 여러 지역 및 전국 스포츠 협회와 협력하고 있다. 또한, 호주인권위원회는 스포츠와 관련한 호주 연방 성차별 법(Australia's Federal Sex Discrimination Act)의 운영 정보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법률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인종차별 및 성차별에 관한 지침 모두 보다 포괄적인 스포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④ 스포츠 공정 오스트레일리아 법(Sport Integrity Australia Act 2020)

본법은 스포츠에 공정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스포츠 공정과 관련된 문제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국가 반도핑계획을 제정하고, 반도핑 협약과 유네스코 반도핑 협약을 이행한다. Sport Integrity Australia Act 3A에는 "이 법의 목적은 스포츠 공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기 위한 호주 스포츠 공정성의 확립과 호주의 스포츠 공정에 관련된 문제에 국가적 접근 방식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a) 공정하고 정직한 스포츠 경기와 결과를 달성하는 것, (b) 스포츠 경기장 안팎에서 선수, 관리자, 임원, 지지가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긍정적인 행동을 촉진하는 것, (c) 모든

45) https://www1.health.gov.au/internet/main/publishing.nsf/Content/the-review-of-australias-sports-integrity-arrangements

수준에서 안전하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스포츠 환경을 달성하는 것 (d) 스포츠 경연대회 및 스포츠 전반의 명성과 위상을 높이는 것으로 그 목적을 설시하고 있다. Sport Integrity Australia Act 는 국가 반도핑 계획, 공적인 협의, 기관, 스포츠행정기구 규칙, 규정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⑤ 스포츠 재판소법(National Sports Tribunal Act 2019)

호주의 스포츠 재판소법(National Sports Tribunal Act 2019)은 스포츠 분쟁의 공정한 심리 및 해결을 위한 효과적이고, 독립적이며, 전문적인 재판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도핑, 스포츠기구의 운영, 당사간의 분쟁, 일반적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스포츠에 관한 전반적인 분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⑥ 인권법(Human Rights (Parliamentary Scrutiny) Act 2011)

본법은 의회인권공동위원회 설치 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인권공동위원회, 구성원의 자격, 원한과 의사진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 인권선언에 대한 자유와 권리에 관해 1965년 12월 21일 뉴욕에서 행해진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 국제 협약([1975] ATS 40), 1966년 12월 16일 뉴욕에서 시행된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76] ATS 5), 1966년 12월 16일([1980] ATS 23) 뉴욕에서 행해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79년 12월 18일 뉴욕에서 행해진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 협약([1983] ATS 9), 1984년 12월 10일([1989] ATS 21) 뉴욕에서 행해진 고문 및 기타 잔혹, 비인간적 처우 처벌에 대한 협약, 1989년 11월 20일 뉴욕에서 개최된 아동권리협약([1991] ATS 4), 2006년 12월 13일 뉴욕에서 행해진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2008] ATS 12)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Human Rights (Parliamentary Scrutiny) Act 제3조).

⑦ 아동 성학대평가 기본계획

호주는 2018년 아동성학대국가재정비계획(National Redress Scheme for Institutional Child Sexual Abuse Act 2018)을 수행하였다. 이에 접촉남용, 노

출학대, 극한 상황에서의 학대, 제도적으로 취약한 아동의 학대, 생활에 침투되어 있는 학대 및 관련 성적 학대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제4조).

⑧ 스포츠 호주위원회 아동안전 약속 성명(Sport Australia Board Child Safe Commitment Statement)

Sport Australia는 호주의 주요 국가 스포츠 관리 및 자문 기관이며 광범위한 스포츠 정책을 제안한다. Sport Australia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동 안전 스포츠 프레임 워크를 통해 아동의 학대 및 태만. 취약한 선수들에게 해를 미치는 사항, 연령과 질병, 외상 또는 장애등을 이유로 당하는 착취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해결해야함을 규정하고 있다. 모든 어린이들과 구성원, 장애인, 아동 등을 포함하여, 형평성을 증진하고, 다양성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5.4 스포츠 관련 인식현황

호주의 스포츠 청렴도 평가 보고서(Report of the Review of Australia's Sports Integrity Arrangements 2018)[46]에 따르면, 호주의 일반 대중은 자국의 체육계를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의 2017년 18세 이상의 호주 국적자 3,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다수(75%)가 호주가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존경을 받는다는 것에 동의하거나 강하게 동의했지만, 호주의 운동선수들이 긍정적인 롤 모델이라고 생각한다는 답변(62%)이나 호주의 전문 스포츠(elite/high-performance sport)의 청렴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60%)를 보였다. 또한, 응답자의 77%가 정부가 체육계의 청렴함(integrity)을 지키는 것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답변했다. 여기에서 체육계의 청렴함을 저해하는 요인은 도핑, 승부 조작, 괴롭힘과 신체적 학대 및 성적인 학대와 같은 비윤리적 행위 등으로 정의된다. 선수 지원 인력(supporting personnel)의 비윤리적 행동은 최근 몇 년 동안 국제적으로, 그리고 호주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이다.

46) Commonwealth of Australia (2018) Report of the Review of Australia's Sports Integrity Arrangements, https://www1.health.gov.au/internet/main/publishing.nsf/Content/the-review-of-australias-sports-integrity-arrangements

스포츠에서 가장 취약한 참가자들을 괴롭힘과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특히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에 따라 책임이 증가하고 있는 영역이다.

3.5.4.1 성폭력

Sport Australia는 모든 호주인들이 성별, 성적 지향, 능력, 문화적 배경, 민족성, 위치 또는 삶의 단계에 관계없이 환영받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스포츠와 신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트랜스 및 성별에 따른 다양한 포함(Trans and Gender Diverse Inclusion)'을 지향한다. 모든 호주인들은 그들의 성별, 성적 지향, 능력, 문화적 배경이나 민족성에 관계없이 스포츠와 신체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지역 클럽에서 국가 스포츠 단체에 이르기까지 스포츠 단체가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모든 사람들이 존중과 존엄성을 가지고 대우받고 차별로부터 보호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Sport Australia는 호주 인권 위원회 및 주요 프로페셔널 및 참여 스포츠 연합과 협력하여 트랜스젠더와 성별이 다양한 스포츠 인구를 스포츠에 포함시키기 위한 지침을 개발했다. 이 지침은 스포츠 조직이 트랜스젠더 및 성별에 따라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포괄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촉진하는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한다.

본 가이드라인은 1984년(법)과 관련된 연방 성차별법의 운영에 관한 정보로 성과 성 정체성에 근거한 불법적이고 허용되는 차별, 성희롱, 피해의식이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기본적 인권 기반 원칙인 평등 원칙에 따라 포함을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침으로, 스포츠 참가, 차별과 괴롭힘의 사생활로부터의 자유, 다른 관련 법 분야도 고려한다. 2015년 위원회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LGB)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스포츠 단체들은 트랜스젠더와 성별에 따라 다양한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국가적 지침의 필요성과 관련 차별금지법의 운영과 동시에 모든 선수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 할 필요가 있다고 확인했다. 선수 건강, 안전 및 웰빙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스포츠 기관은 스포츠에

대한 관련 법률, 규칙, 규정, 정책 및 관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스포츠 단체가 법에 따라 지녀야 할 의무를 대체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본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주요 주제를 통해 안내된다.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성별, 성별에 관계없이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체 스포츠와 엘리트 스포츠를 구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일부 선수들에게는 공동체 차원의 참여가 엘리트 스포츠로 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트랜스젠더와 성별이 다양한 사람들이 스포츠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 스포츠 단체가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에 대한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

3.5.4.2 폭력

호주 스포츠 위원회(ASC)는 스포츠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담당하는 호주 정부 기관이다[47]. ASC는 1989년 호주 체육위원회법에 따라 1985년 설립됐으며 2013년 공공지배구조, 성과 및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된다. ASC는 체육부장관이 임명한 위원회의 지배를 받는다. 위원회는 ASC의 전반적인 방향을 결정하고, 위임된 결정에 대한 자원과 정책의 할당을 결정하며, 스포츠 장관에게 책임을 진다. ASC는 참여, 스포츠 및 스포츠 산업 성장과 관련된 지원 활동 등 광범위한 스포츠 분야를 주도할 책임이 있는 Sport Australia와 고성능 스포츠 시스템을 선도하는 기관인 호주스포츠연구원(AIS)으로 구성된다. ASC의 초점은 스포츠에 대한 참여를 통해 호주인들의 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키고 더 강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풀뿌리부터 엘리트 국제 경쟁의 정점에 이르기까지, 스포츠 산업과 더 넓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스포츠가 나이, 인종, 성별, 문화적 배경과 신체 능력에 상관없이 모든 호주인들을 참여시키는데 할 수 있는 역할을 옹호한다. 이를 위해 안전하고 윤리적이며 포괄적인 스포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스포츠의 역량 및 역량 구축의 '안전하고 포괄적인 스포츠(Safe and Inclusive Sport)[48]' 를 추구한다.

이 중 아동 안전을 위한 스포츠 지원인 '어린이 안전 스포츠(Child Safe Sport)' 는 아동과 젊은이들은 스포츠 환경에 있을 때를 포함하여, 항상 학대

47) https://www.sportaus.gov.au/sportaus/about
48) https://www.sportaus.gov.au/integrity_in_sport

에서 안전할 권리가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20 년 7월 1일부터 Sport Integrity Australia는 스포츠 부문의 아동 보호 책임을 맡았다. 스포츠 단체를 위해 개발된 스포츠 호주의 아동 안전 자료 모음은 스포츠 정보 센터에서 여전히 이용할 수 있다. Sport Australia의 Child Safe Commitment는 조직이 보살핌, 양육 및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얼마나 진지하게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것은 국가 보상 계획에 참여하는 데 반영된다. ‘Play by the Rules’ 는 아동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조직에 교육과 지원을 제공한다.

3.5.4.3 학습권

O’Neill 외(2017)의 연구[49]에서 학생 운동선수를 제자로 둔 교사 응답자는 ‘학생선수들은 학기 중 너무 많은 것을 놓치게 된다’ 고 말했다. 학생선수가 훈련 및 경쟁으로 인해 수업에 결석한 시간이 많을수록, 학교로 돌아가 수업내용과 과제물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부담이 가중된다. 한 교사 응답자는 자신의 학생 중 몇 명은 선발캠프를 위해 떠나야 했고, 이 선발캠프에서 많은 학생이 학업 성적을 유지하는 동시에 스포츠 훈련을 완료해야 해 어려움을 겪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 선발캠프를 위해 학생선수들은 16세 이후부터 매년 8주 동안 학교를 떠나 있어야 하고, 이는 고학년에 올라가서 학업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했다.

호주스포츠연구원(Australian Institute of Sport: AIS)[50]은 호주 선수들이 국제적인 성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고성능 스포츠 시스템을 이끌고 가능하게 하는 기관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그 중 선수들의 운동과 학업 및 삶의 균형 유지를 위한 통합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호주의 엘리트 선수가 스포츠 내/후기 동안 평생 직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운동선수 경력 및 교육(Career and Education) 프로그램은 평생 경력과 교육 결정을 내리는 호주 선수들을 돕기 위해 정보, 조언 및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운동선수로서 직업적 장점을 결

49) O'Neill, M. M., Calder, A. A., & Hinz, B. (2017). Student-Athletes in my Classroom: Australian Teachers’ Perspectives of the Problems Faced by Student-Athletes Balancing School and Sport. Australi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42(9).

50) https://www.ais.gov.au/career-and-education

정하거나, 어떤 직업 선택권이 존재하는지를 탐구하거나, 혹은 올바른 직업과 교육적 결정을 내리거나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선수들의 학습권과 인권 보호 및 경력관리를 지원한다. 본 프로그램에는 학습 및 교육 경험 추구에 있어 호주의 고성능 운동선수를 지원하는 ‘AIS 교육 장학금(AIS Education Scholarship)’, 전문 직업 조언 및 지도 서비스인 ‘직업의사 소개 네트워크(Career Practitioner Referral Network)’, 학습 기간 동안 엘리트 선수를 지원하는 ‘엘리트 선수 교육 네트워크(Elite Athlete Education Network)’, 엘리트 선수들이 미래 세대를 격려할 수 있는 평생의 성공적인 경력을 지원하는 ‘진화 작업 배치 프로그램(EVOLVE Work Placement Program)’, 엘리트 선수에게 제공되는 대학 장학금인 ‘엘리트 체육대학 장학금(Elite Athlete University Scholarships)’, 잠재적인 학생 운동선수가 자신의 운동 및 학업 미래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 프로그램인 ‘미국 대학 시스템 탐색(Navigating the USA Collegiate System)’ 등이 있다.

3.5.5 스포츠 인권침해 사례

3.5.5.1 수영 - 테런스 벅(Terrence Buck) 사건

[사건 이슈화]

2009년 9월 The Daily Telegraph는 전 호주 수영팀 코치이자 감독인 테런스 벅(Terrence Buck)의 과거 수영 커뮤니티 내 성폭행 혐의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면서 1990년대 말부터 벅에 의한 성추행 사건들이 조명되었다.

[사건 요약]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에서 은메달과 금메달을 딴 그레그 로저스(Greg Rogers)는 2005년 사고로 숨진 벅에게 어린 시절 학대를 당했다고 털어놨다. 벅은 전 올림픽 수영선수이자 코치이며, 그가 10대였던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크루벨리 서프 클럽(Clovelly Surf Club)에서 훈련했다. 로저스는 클럽에서 11살 때 벅에게 처음 학대를 당했으며 학대는 7년 동안 지속됐다고 말했다.

1956년부터 1968년까지 클럽에서 훈련하는 동안 같은 수영선수였던 AEA도 벅에게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으며 자신의 형제들이 성추행 당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 1968 년부터 1973 년까지 벅은 올림픽 경기에서 AEA의 코치를 맡았다. 성폭행 이후에도 벅은 AEA와의 성적인 관계를 가지려 하였다.

2000년 10월 27일 NSW 경찰은 벅이 AEA와 AEA의 형제들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벅에 대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대책위원회인 Strike Force Solano를 구성했으며, 5주 동안 진행된 조사를 통해 피해자이거나 목격자인 사람이 총 41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벅에 의한 13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제공했다.

벅은 2005년 3월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The Herald Sun에 따르면 2001년 변호사들이 벅이 어린 수영선수 수십 명을 폭행한 혐의를 경찰에 기소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들은 1998년에 시작된 조사 이후 증거 부족을 주장했다. 피해자 중에는 올림피아인 4명, 서핑 챔피언 2명,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 자살한 3명이 포함됐다.

The Daily Telegraph 매체는 “3개월 간 조사한 결과 벅의 성추행 혐의가 밝혀졌으며 NSW 경찰은 4명의 올림픽 수영 선수를 포함한 29명의 피해자와 목격자 명단을 받은 후, 시드니 올림픽이 끝날 무렵 Strike Force Solano를 비밀리에 결성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는 설명 없이 종료되었다”고 보도했다.

[판결]

2000년 10월 27일 NSW 경찰은 벅에 관한 성폭행 신고를 접수한 뒤 피해자와 목격자를 조사했다. 하지만 한달 후 경찰 조사는 증거가 너무 오래되었으며, 증거의 일관성 부족하며, 기타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는 등을 근거로 증거불충분으로 기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다.

[이후 변화]

2009년 12월 6일 Swimming Australia 이사회는 벅의 혐의에 관한 조사는 물론 수영 커뮤니티 내에서 성적인 학대에 대한 조치를 재정립하였다. 벅의 혐의가 제기된 보도에 대한 대응으로, 당시 Swimming Australia의 CEO였던

케빈 닐(Kevein Neil)은 법률 자문을 통해 수영 커뮤니티 내에서 성범죄 혐의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및 피해 신고자에 대한 개인 상담을 제공할 것을 권장했다. Swimming Australia 이사회는 법률 자문의 실행에 동의하였으며 혐의를 경찰 수사 부서에 회부하여 추가 검토를 할 것을 요청했다.

Swimming Australia는 벅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소속 직원의 수영 커뮤니티 내 성범죄 혐의에 대한 제보를 받겠다고 발표하였다. 닐은 언론을 통해 관련 문제에 대해 Swimming Australia는 경찰과 협력할 것이며 사건을 은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Public call(광범위한 제보를 접수한)의 결과 총 8건의 제보가 접수되었다. 제기된 혐의 보고가 중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Swimming Australia는 신고를 접수한 사람에게 경찰에 신고하거나 Swimming Australia가 접수자를 대신하여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권고했다. Swimming Australia는 신고자들이 단체로부터 법적인 자문을 구할 것을 권장했고, 접수된 신고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관련이 있거나 회원복지정책(Member Welfare Policy)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경우 Swimming Australia의 변호사에게 회부되었다.

3.5.5.2 수영 - 스콧 볼커스(Scott Volkers) 사건

[사건 이슈화]

사만다 라일리(Samantha Riley), 수지 오넬(Susie O’ Nell), 엘리 오버턴(Elli Overton) 등 호주 올림픽 수영선수의 코치로 유명한 스콧 볼커스(Scott Volkers)가 1980년대 당시 미성년자 선수 3명을 성추행 했다는 혐의가 2002년에 언론에 보도되어 크게 이슈가 되었다.

[사건 요약]

볼커스가 1980년대에 아스플리(Aspley)와 볼드 힐스(Bald Hills)의 브리즈번(Brisbane) 교외에서 당시 12-13세였던 미성년자 여성 수영선수 2명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2001년 8월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1명의 제보자가 2001년에 과거 그가 자신을 코치하던 당시 성추행을 했다는 것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시작되었고, 이후 2명의 제보자가 더 나타났다. 이후 2002년 3월 26일 볼커스는 경찰에게 체포되었는데 그가 체포되는 모습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며 사건이 이슈화되기 시작했다. 2002년 7월 볼커스에 대한 예비 심리(Committal hearing) 이후, 볼커스는 총 3명의 제보자에게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2002년 9월6일 볼커스의 법정대리인 마이클 번 QC(Michael Byrne QC)와 법무관 피터 실드(Peter Shield)는 검찰국장(DPP,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에게 연락하여 볼커스 사건을 논의했다. 볼커스의 법정 대리인 두 명과 Deputy DPP 인 폴 러트리지(Paul Rutledge)와 ODPP(Offices of the Public Prosecution) 판례 변호사(case lawyer)인 제이슨 데이비스(Jason Davis), 검사(Crown Prosecutor) 리차드 포인팅(Richard Pointing)이 참가하는 회의가 열렸으며 그 자리에서 서면제출이 발표되었다. 제출자는 볼커스에 대한 기소 중단을 고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2년 9월 18일 당시Queensland DPP였던 리넨 클레어(Leanne Clare)는 각 혐의와 관련하여 소송 철회(nolle prosequi)와 증거 불충분으로 볼커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판결과 함께, 당시 NSW의 DPP인 당시 마가렛 쿠넨(Margaret Cunneen)이 볼커스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조언을 Queensland DPP에게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가중되었다.

이로 인해 2002년 CMC(Crime and Misconduct Commission)은 볼커스 사건에서 DPP에게 제기되는 절차적 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할 것을 발표했다. 2002년 10월10일 CMC는 볼커스 사건조사의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자료가 있으며, CMC가 조사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기관이라고 발표했다.

2002년 11월 20일에서 21일 이틀에 걸쳐 CMC는 21명의 증인을 소환하여 형사법제도가 성범죄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8개의 정부 부처 및 기관, 10개의 법률 기관, 10개의 사회단체, 2개의 미디어 그룹, 3명의 전문가와 39명의 개인으로부터 서면제출서가 접수되었다. 이후 2003년 3월 CMC가 해당 사건의 조사보고서를 발행했다.

한편 2004년 1월 23일 Swimming Australia는 볼커스를 여성 수영선수 헤드코치로 임명하였다. 2004년 11월, 볼커스에 대해 폭로했던 여성 수영선수 중 한 명인 길버트(Gilbert)가 볼커스에 대한 기소를 위해 Queensland 형법 s686

조에 따라 허가를 요청했지만 기각되었다. 볼커스는 논란이 진행되던 때를 포함하여, 2010년까지 Queensland Academy of Sport에서 코치로 근무하였으며, 2010년 2월에도 Swimming Queensland의 헤드 코치로 임명되었다.

2014년 7월 2명의 고소인은 Royal Commission(왕립 위원회, 정부 자문위원회)에 아동 성학대 제도적 대응을 위한 증거를 제출했고, 이에 Royal Commission이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 각 제보자가 증거를 제시하였고, 그들의 증거는 다시 언론에 광범위하게 보도되었다. 이후 2015년 11월 Royal Commission이 해당 사건이 포함된 보고서를 발행했다. 2년 후인 2017년 11월 13일, 볼커스는 원고에 대한 혐의로 다시 기소되었고 추후에 다시 재판을 받기로 하였다. 2020년 3월,Queensland 지방법원의 데이빗 리드(David Reid) 판사는 검찰 측의 불합리한 수사 지연에 따른 영구 체류를 허용했다.

[판결]

2002년 9월 18일 증거 불충분으로 볼커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2004년 11월, 원고는 3건의 음란행위 혐의를 제기하여 형법 s686조에 따라 기소 허가를 요청했지만 기각되었다. 2010년 5월 31일 볼커스는 2009년 6월 1일 아동 관련 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blue card' 부여를 거부한 Children and Young People and Child Guardian[51] 위원장의 결정을 검토 받고자 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소는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그에게 blue card를 발급하지 않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2020년 3월 10일 볼커스는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로 당시의 2명의 고소인이 제기한 5건의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를 주장한 결과 해당 기소번호 236에 대한 절차를 영구적으로 유예하기로 결정되었다.

[이후 변화]

Royal Commission의 조사 이후, Swimming Australia는 아동보호과정을 감사하고 더 나은 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Child Wise 및 Australia Sports Commission과 협력하기 시작했다. 이후 누군가 코치를 대상으로 혐의를 제기

51) 참고: 2001년5월1일Queensland 정부에 의해 발효된 "Commission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and Child Guardian Act 2000 (the Children andYoung People Act)" 에 따라 아동관련 산업의 고용에서 새로운 고용심사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이 심사에서 통과하는 사람은 'bluecard'가 발급이 되며, blue card를 부여 받은 사람만이 아동관련 산업에서 고용될 수 있다.

할 시에 Swimming Australia는 우선 호주 수영코치 및 교사 협회(Australia Swimming Coaches and Teachers Association)와 함께 해당 코치가 인준된 회원인지 확인해야 한다.

2015년 당시 Swimming Australia의 CEO는 Swimming Australia가 정책과 절차에 있어 모든 지역 클럽의 회원보호 정보기록 보관과 지역 클럽이 회원보호 정책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클럽하우스에 규칙이나 정책에 대한 표지판이나 포스터 부착, 클럽 내 행위에 대한 회의 개최, 정책문서에 대한 접근성 향상, Child Wise와 협력하여 부모에게 제공되는 아동 복지 정책에 포함될 소셜 미디어와 관련된 그루밍 행동에 대한 자료 개발, 아동복지 온라인 강좌 이수자 기록, ‘trusted persons’에 관한 학부모 핸드북 수정을 포함해 다른 성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절대로 코치의 집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부모들이 확실히 알도록 조치를 취했다. 익명으로 신고하길 원하는 경우 신고를 접수하는 방법을 포함해 아이들이 피해 사실을 알릴 때 겪는 어려움을 인식하도록 정책을 수정하였다. 또한 Child Wise 리뷰를 통해 아동 보호 정책 개발에 있어 피해자의 의견을 구하며 과거의 사건을 제보하는 경우 구체적인 해결 방법 고려하는 정책이 고려되었다.

3.6 국제기구/단체

3.6.1 유럽연합(EU)

3.6.1.1 유럽연합의 스포츠인권 거버넌스

스포츠는 2009년 리스본 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유럽연합의 공식 영역으로 인정되고 유럽연합의 권한에 속하게 되었다. 이 조약의 발효로 유럽연합은 스포츠 경기를 담당하는 기관들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여성들, 특히 아동, 청소년 선수들의 신체적, 도덕적 건강함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권고할 수 있다[52]. 그러나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FEU: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 제6조 및 제165조에 기반하여 스포츠에서 유럽연합의 역량은 제한되어 있으며 유럽연합은 오직 국가 정부가 취한 스포츠 정책 조치를 지지, 조정 또는 보완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입법이나 다른 법적 구속력 있는 조치의 채택을 배제한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자신의 스포츠 관련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권고사항,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금 지원과 같은 ’소프트’ 정책 도구를 활용해 왔으며 이를 통해 수년간 유럽연합은 도핑, 승부조작, 신체활동 부족과 같은 초국가적인 문제들을 다루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해왔다.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스포츠의 독립성과 자율성으로 인해 스포츠 문제에 대해 국가 및 국제 사법권은 제한된 방식으로만 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것이 선수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의문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뜻이다.

이러한 논쟁을 예방하기 위해 2013년 유럽인권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두 번의 행사를 기획하여 스포츠 법과 주법 간의 잠재적 충돌을 국가 차원에서 방지하는 방법을 제기했다. 먼저 2013년 2월 15일 스트라스부르에서는 스포츠 중재 및 국가 중재에 관한 회의는 징계 절차 조정의 정치적 문제, 스포츠 중재 절차와 주 사법 시스템 체계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인권재판소 소속 국가들이 의견을 공유하고자 개최되었다. 이후 2013년 2월 14일 스트라스부르에서 유럽평의회와 국제인권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스포츠 사법 및 인권 세미나에서는 징계 제도에서 스포츠 무브먼트와 공법의 공존에 초점을 맞추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더 많은 상황과 사건이 대회 운영과 민사 법원이 결정한 잠정 조치 사이의 잠재적 또는 실제 충돌을 지적한 바 있다. 스포츠 규정은 인권을 준수하지 않아 도전을 받고 있으며, 스포츠 징계 당국과 공공 사법 당국 간의 협력을 구축하기 어렵다는 점이 논쟁의 요지였다. 세미나의 목적은 유럽인권재판소의 인권 보호 전문가와 스포츠중재재판소의 스포츠 중재 전문가 간의 대화를 기회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러한 행사들의 결과 확산을 위해 EPAS는 다음과 같은 안내서를 발행했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내서 5번 ‘스포츠 조직의 징계 및 중재 절차에서 유럽의 인권 보호(스포츠 무브먼트에서 사용)’가 있으며 안내서의 목적이 인권, 특히 국제 협약에 명시된 인권 존중 여부와 그 정도를 결정하

52) Katsarova & Halleux (2019), EU Sports policy: Going faster, aiming higher, reaching further,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인권이 실제로 스포츠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그러한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룬다. 안내서 6번의 내용에서는 '스포츠 무브먼트의 징계 및 중재 절차'가 제시되어 있다.

이 안내서는 위의 스포츠 무브먼트의 자율성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한 다음 이 원칙의 본질과 스포츠 관련 분쟁 해결, 스포츠 연맹의 징계 절차, 중재, 스포츠 관련 문제에서 주 법원의 역할을 다룬다.

또한 유럽 평의회도 스포츠에서의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유럽 평의회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평등, 소수민족 보호를 표방하고 있다. 아동보호, 온라인 혐오 발언, 유럽 최대 소수민족인 로마인의 권리 등 광범위한 이슈에 대해 캠페인을 벌이고 회원국들이 부패와 테러리즘에 맞서 싸우고 필요한 사법 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다. 베니스 위원회로 알려진 헌법 전문가 그룹은 전 세계 각국에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유럽 평의회는 여성과 가정폭력에 대한 폭력 예방 및 결합에 관한 협약, 사이버범죄에 관한 협약 등 국제협약을 통해 인권을 증진한다. 이러한 분야의 회원국들의 추이를 감시하고 독립된 전문가 감시기구를 통해 권고한다.

유럽 평의회는 스포츠와 관련해서도 유럽 44개 국가들의 어린이들을 스포츠에서의 학대로부터 보호하고자 다양한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입법 및 정책개선, 스포츠 구조, 활동 및 이벤트에 대한 어린이 보호 전략 수립, 행동규범개발, 코치, 스포츠 매니저, 및 정책 입안자 등 스포츠 전문가 양성 등이 있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과 협력을 통해 스포츠에서의 유소년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는 '프로세이프스포츠(Pro Safe Sport)'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윤리적이고 포괄적이며 안전한 스포츠를 위한 표준 및 정책 등을 수립하고 회원국의 정부간 스포츠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스포츠에서의 확대된 부분적 동의(Enlarged Partial Agreement on Sport, EPAS)'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EPAS가 초기에 작성한 다양한 권고안은 유럽 각료 이사회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스포츠 윤리의 문제, 스포츠 운동의 자율성, 이주와 관련된 위험으로부터 어린 선수들

을 보호하는 문제에 대해 지침을 담고 있다.

3.6.1.2 스포츠인권을 위한 결의안과 협약

유럽의회의 2016년 보고서[53]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스포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여성, 성인 선수 등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폭행, 성폭행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결의안, 권고문, 협약 등을 만들었다. 이러한 예로는 2000년에 발표한 '스포츠에서의 여성, 청소년, 어린이에 대한 성희롱과 학대 방지 결의안(Resolution on the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and abuse of women, young people and children in sport)'이다. 이 결의안은 유럽 회원국 평의회가 취할 일련의 조치를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스포츠에서의 성희롱의 규모를 확인하고 성 기반 폭력을 다루기 위한 절차와 제재를 규정하는 국가 정책을 준비하도록 돕기 위한 국가 차원의 연구와 데이터 수집의 위탁이 있다. 또한 스포츠 분야에 한정하지는 않지만, 유럽연합은 2007년 일명 란자로테 협약이라 불리는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의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을 채택하고 2010년에 발효하였다. 이 협약의 제5조는 스포츠를 언급하고 있는데, '각 당사자는 교육, 보건, 사회보호, 사법 및 법 집행 분야에서 아동과 상시적으로 접촉하는 사람 중 아동의 보호와 권리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54]. 2011년에는 이스탄불 협약으로 불리는 '여성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격퇴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preventing and combat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을 채택하였는데, 여기에는 18세 이하를 포함한 모든 여성이 스포츠, 문화, 여가생활, 교육 시설 등에서 모든 폭력과 성폭력을 예방하고 제거하는데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 협약에는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이 서명했고, 14개국이 협약에 비준했다.

2015년 1월에는 스포츠에서의 성불평등과 폭력의 지속 문제에 대응하기 위

53) Mergaert et al.,(2016), Study on gender-based violence in sport, Policy report, European Commission

54) Mergaert et al.,(2016), Study on gender-based violence in sport, Policy report, European Commission, p.13

해 ‘스포츠에서의 성주류화에 관한 권고안(Recommendations on gender mainstreaming in sport)’를 발표했다. 이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스포츠에서 성별에 근거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감시하며 경각심을 제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항의 절차, 징계 및 항의절차를 명확하게 한 정책을 시행하고 행동 강령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2017년에 들어서는 유럽연합 이사회와 회원국 정부의 대표자들은 ‘유럽연합 스포츠업무계획(European Union Work Plan for Sport)’을 채택했다. 이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 스포츠 분야에서 유럽 협력의 틀을 더욱 발전시키고 회원국들의 스포츠 정책을 지원, 조정 및 보완하는 역할을 강화할 것을 결의한 것이다. 이 결의안에는 회원국과 유럽연합 위원회가 우선시해야하는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스포츠의 청렴성, 미성년자 보호, 스포츠의 특수성을 고려한 훌륭한 거버넌스를 촉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듯 유럽연합은 스포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 청소년 · 성인 선수들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협약에 서명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강제하거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스포츠 관련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권고사항,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금 지원과 같은 ’소프트’ 정책 도구를 활용해 회원국 정부가 취한 스포츠 정책 조치를 지지, 조정 또는 보완하는 선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3.6.1.3 스포츠에서의 폭력과 성폭행 예방 프로젝트

유럽연합은 유럽평의회와 함께 스포츠 분야에서 폭력과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다. 스포츠에서의 아동 · 청소년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4년과 2017년에 ‘어린 선수들을 위한 프로세이프스포츠 프로젝트(Pro Safe Sport for Young Players, PSS)’와 PSS+를 진행했다. PSS 프로젝트는 스포츠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웰빙에 관한 지침, 권고 및 코치에게 제공되는 교육 키트이며 PSS+는 정부 및 비정부 조직 모두가 스포츠 아동 성폭력 관련 공약을 증진시키기 위한 도구 및 역량강화를 위한 키트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스포츠 기관과 코치에게 적

절한 학습도구를 제공하여 스포츠에서 어린 선수들에 대한 폭력과 성폭력 등의 학대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동 · 청소년 선수들의 신체적, 도덕적 복지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스포츠 지도자들, 코치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역량을 높여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스포츠에서의 어린이 보호(Child Safe Protecting in Sport, CSiS)는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진행하는 유럽 연합(EU)과 유럽 이사회(COE)의 공동 프로젝트이다. 이것의 주요 목적은 어린이 보호관의 직책 설정을 통해 스포츠 정책에서 효과적인 어린이 보호를 위해 유럽 국가들을 지도하고 동행하는 것이다. 이는 다음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한다. 첫째, 아동보호관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단계를 포함하여 스포츠 정책에서 효과적인 아동보호를 위한 맞춤 로드맵을 파트너 국가에 제공한다. 둘째, 로드맵 구현 및 CSO 역할 설정 시 역할을 수행할 사람들의 역량 및 기술을 개발한다. 셋째, 모든 어린이에게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보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어린이 보호관, 의사결정자, 코치, 스포츠 지도자, 트레이너 등)에게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실습자원들을 갖추도록 한다.

유럽 평의회의 경우, 유럽연합과 공동으로 진행한 ‘프로세이프스포츠(Pro Safe Sport)’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로 2017년 ‘대화시작(Start to talk)’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현재 크로아티아,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총 7개국에서 이 캠페인이 출범했다. 또한 2007년 윤리적이고 포괄적이며 안전한 스포츠를 위한 표준 및 정책 등을 수립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며, 회원국의 정부 간 스포츠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스포츠에서의 확대된 부분협정(Enlarged Partial Agreement on Sport, EPAS)’을 창설했다. 현재 39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는 EPAS는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인권, 차별금지, 성 주류화,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매년 컨퍼런스, 교육, 인식제고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EPAS가 초기에 작성한 다양한 권고안은 유럽 각료 이사회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스포츠 윤리의 문제, 스포츠 운동의 자율성, 이주와 관련된 위험으로부터 어린 선수들을 보호하는 문제에 대해 지침을 담고 있다.

3.6.2 UN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Zeid Ra’ ad Al Hussein는 “2018년 러시아에서 열린 월드컵은 스포츠의 통일된 힘을 완벽하게 보여줬다” 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월드컵이 스포츠가 헌신, 기술, 협력 및 존중의 의미로 왜 그렇게 중요해졌는지 상기시켜주며 민족과 국가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덧붙였다. Zeid가 스포츠인권센터를 설립하는데 도움을 준 것은 이러한 대형 스포츠 이벤트 덕분이었다. 제네바에 있는 스포츠인권센터는 스포츠 및 인권과 관련된 모든 주체들과 협력을 구축한다. 또한 지식을 공유하며 투명성과 책임을 개선하는 방법을 강화 및 형성하도록 돕는다. 센터의 목표는 국제 인권 기준에 맞춰 모든 스포츠의 국제 환경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스포츠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영감을 주는 고유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형 스포츠 이벤트는 지역 사회 및 지역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인권을 위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벤트에 필요한 새로운 경기장을 건설하기 위한 지역민들의 강제 퇴거, 건설 환경에서 안전하지 않은 노동 조건 또는 성별, 종교, 인종에 따른 괴롭힘과 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사무총장 Guy Ryder는 “스포츠산업은 스타 선수들로부터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스포츠 공원을 짓고 경기장을 건설하는 수백만 명의 노동자, 스포츠 용품을 제조하고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및 케이터링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고 밝혔다.

前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었던 Mary Robinson 센터장은 “우리는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여 스포츠의 자유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 말하며, 변화하는 스포츠 환경에 맞춰 실용적인 자원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Robinson 센터장은 “새로운 센터는 스포츠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수년간 개발하고 협력한 결과물이다.” 라며, “우리의 비전은 인권을 존중하는 스포츠의 세계다. 이 센터는 스포츠 단체, 이벤트 주최자, 영향을 받는 그룹 및 기타 단체와 협력하여 지식을 공유하고 역량을 구축하며 책임을 강화하는 공공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센터 자문위원회의 회원인 Commonwealth Games Federation의 최고 경영자인 David Grehemberg에 따르면, 스포츠는 인종, 종교, 국적과 같은 요소가

선수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립지대이다. 스포츠는 우정, 인간관계, 관용 및 공정한 플레이를 촉진하는 동시에 동료 인간의 긍정적인 태도를 개발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스포츠를 정치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이러한 대화가 우리에게 스포츠를 더 인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말한다.” 고도 밝혔다.

센터는 인권 및 대형 스포츠 이벤트 플랫폼 발전의 다음 단계다. 2016년에 형성된 이 플랫폼은 주요 스포츠 이벤트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 (선수, 방송사, 국제 스포츠 단체, 스폰서 등)의 대표자들과 인권 관련자들이 인권을 수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자리에 모이도록 했다.

“나는 이 독립적인 센터를 모든 인간의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에 대한 존중의 메시지를 지속하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 기반을 두고 스포츠 및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확대하는데 있어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Zeid는 밝혔다.

3.6.3 Human Rights Watch

민간단체인 Human Right Watch는 이 새로운 스포츠인권센터의 설립이 스포츠와 관련된 인권 침해를 억제하고 피해자를 도울 잠재력이 있다고 밝혔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센터는 올림픽과 현재 러시아에서 개최되고 있는 월드컵과 같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 관련 학대 사례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의 설립은 IHRB(Institute for Human Rights and Business)의 후원 아래 이루어졌으며, 前아일랜드 대통령이자 前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인 Mary Robinson이 센터장을 맡고 있다.

Human Right Watch의 Minky Worden은 “주요 스포츠 이벤트들이 언론인을 투옥 및 학대, 노동자의 권리 남용, 환경 파괴, 빈민촌 파괴 등을 자행하며 훼손되었다.” 고 밝혔다. 또한 “스포츠 팬들은 착취당하며 학대받고 심지어 건설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이 지은 경기장에 앉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스포츠인권센터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에 수반되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제

한하고 궁극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학습 및 개선을 위한 자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는 관계자들의 책임 범위를 늘리고 피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여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스포츠와 관련된 향후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Human Right Watch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 플랫폼에서 인권에 대한 보호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센터의 설립에 일조했다. 이 플랫폼은 스포츠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모인 정부 간 조직, 정부, 스포츠 단체, 선수, 조직위원회, 후원자, 방송사, 비정부 조직, 노동조합, 고용주 및 국가 인권 기관의 전례 없는 연합이다.

차기 월드컵은 2022년에 카타르에서 개최된다. 2010년 12월 카타르가 FIFA로부터 2022년 월드컵 개최를 유치한 이래로 카타르는 8개의 경기장, 호텔, 교통수단 및 기타 인프라를 건설해왔다. 카타르 당국은 월드컵 관련 인프라 프로젝트에 매주 5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Human Right Watch는 카타르가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카타르의 극심한 온도와 습도를 감안할 때 경기장과 기타 시설을 짓는 노동자들에게 특히 시급한 문제다.

“센터가 카타르 월드컵 관련 문제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는 센터가 학대를 종식시키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능력에 대한 중요한 첫 번째 테스트가 될 것이다.” 라고 Minky Worden은 밝혔다.

센터에는 FIFA, IOC, UEFA, Commonwealth Games Federation과 같은 스포츠 조직과 인권 침해를 더 잘 관리하고자 하는 기타 스포츠 기관이 포함된다. 또한 Human Rights Watch, Amnesty International, 국제투명성기구, 글로벌노동조합,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과 같은 비정부 감시자들도 포함될 것이다.

Human Rights Watch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부터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까지 대형 스포츠 이벤트와 관련된 심각한 학대를 기록한바 있다. 여기서 Building Workers International은 21명의 노동자가 경기장을 짓다가 사망했다고 기록했다. Human Rights Watch는 인권, 노동권, 반부패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존중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 국제 스포츠 단체를 옹호하는 비정부 단체와 노동조합의 국제 연합인 스포츠권리연합(SRA: Sport and. Rights Alliance)의 회원이다. Human Rights Watch는 센터가 다음 사항에 집중하는

기관이라고 밝혔다.

- 경기장 및 기타 인프라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의 사망 및 부상 근절을 위한 안전 개선
- 주요 국제 스포츠 이벤트와 관련된 인권 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 요구
- 스포츠와 그 밖의 분야에서 여성과 LGBT에 대한 체계적인 차별 대처
- 선수, 권리 감시자, 언론인 및 권리 옹호자의 보호 보장

"스포츠는 인간의 성취에 영감을 주고 축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요 스포츠 이벤트를 위해 한 명의 노동자가 죽거나 한 기자가 투옥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센터가 근로자, 언론인, 운동선수, 환경 운동가 및 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Worden은 말했다. 현재 이 기구는 다음의 기구로 발전했다.

스포츠와 인권 센터 (Centre for Sport and Human Rights)

스포츠인권센터는 국제스포츠 인권을 위한 단체다. 센터의 역할은 집단행동과 스포츠 기회 원칙의 장려를 통해 국제스포츠에서 인권을 완전히 존중하게 하는 것이다. 센터의 목표는 스포츠를 통한 인권 피해 예방 지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효과적인 구제 수단에 대한 접근 지원, 스포츠 및 스포츠 이벤트에서 긍정적인 인권 유산 장려의 세 가지이다.

2018년 6월에 출범한 센터는 현재는 자문위원회로 대표되는 조직이 수년 동안 작업한 결과이며, 네트워크를 통한 3년간의 집단행동 과정을 통해 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메가스포츠이벤트 플랫폼은 2015년 11월 인권및기업연구소(IHRB: Institute for Human Rights and Business)에서 처음 소집했으며 지식 공유, 진행 상황 평가, 과제 식별하기 위한 지역 및 글로벌 포럼 연구, 도구 생성, 이해 관계자 소집 등의 다양한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2년 반 동안 집단 행동의 가치를 입증했다. 메가스포츠이벤트 플랫폼의 운영위원회는 2017년 11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 2차 Sporting Chance Forum에서 공동 성명을 통해 센터 설립을 약속했다.

스포츠인권센터는 前아일랜드 대통령이자 前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인 Mary Robinson이 센터장을 맡고 있다. 센터는 2021년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조직으로

전환하기 전에 IHRB의 자회사로 변모하고 있다. 센터는 영국에서 자선 단체로 등록되어 있다. 2020년 동안 센터는 2021년부터 새로운 이사회가 임명 될 때까지 임시 이사회와 거버넌스 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이사회는 센터의 자문위원회를 통해 2년마다 소집되어 센터의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센터가 임무에 책임을 지도록 한다.

3.6.4 영연방 국가 인권 포럼 (Commonwealth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스포츠는 사회와 인권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스포츠는 존중과 페어 플레이의 원칙을 통해 국경을 넘어 사람들을 단결시킬 수 있고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스포츠는 차별 금지와 포용성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줄 수 있으며 평등한 참여가 어떤 것인지 보여줄 수 있다. 스포츠는 고정관념에 도전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가 사회의 장벽을 허물고 인권을 누리는데 있어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선수와 팬, 노동자와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에서 스포츠 관련된 사람들이 인권을 누리는데 여전히 문제들이 남아있다.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을 스포츠에 포함시키는데 있어 고유의 역할을 수행했다. 2018년 CFNHRI는 스포츠 및 인권에 관한 런던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국가인권기구가 스포츠 내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스포츠를 통한 인권 증진을 통해 사회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이 선언은 인종 차별, 양성 평등, 부패, 현대 노예 및 기후 정의와 같은 광범위한 인권 문제에 대해 정부, 스포츠 단체 및 시민 사회 단체에 조언과 지침을 제공하는 국가인권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이 선언은 국가인권기구의 고유한 모니터링 및 조사 권한뿐만 아니라 차별 및 인권 침해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지원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기능을 인정한다. 회원들은 지침을 개발하고, 정책 및 입법에 영향을 미치며, 지역,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 인권 문제에 대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스포츠와 인권을 발전시키고 있다.

3.7 그 외 국가

3.7.1 독일

3.7.1.1 스포츠 관련 주요 이슈 및 동향

독일올림픽스포츠연맹(DOSB: Deutscher Olympischer Sportbund)과 독일스포츠청소년국(Die Deutsche Sportjugend, dsj)은 2020년 12월에 ‘Safe Sport - 국경 위반, 성희롱 및 스포츠 폭력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55]’을 발간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포츠를 하는 것이 신체적 건강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웰빙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명백한 귀중한 공헌을 하지만,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친밀감과 친밀한 관계는 때때로 위험을 감수하고 남용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들이 스포츠에서의 학대와 폭력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스포츠클럽은 아동과 청소년 보호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책임이 있다. 이 보호 개념에는 신체적, 심리적 또는 성적 여부에 관계 이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에 반대하는 것도 포함되며, 청소년과 성인은 성폭력 사례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예방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목표는 2010년 처음으로 DOSB와 그 회원조직의 결의안(소위 ‘뮌헨 선언’)에서 서면으로 설정되었으며 2018년 새로운 결의안으로 재확인되었다.

3.7.1.2 스포츠 거버넌스

독일연방정부의 정책은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밀접한 상호연관성에 있다. 이와 같이 엘리트체육의 성공은 체육 전반의 발전과 확산에 촉매 역할을 한다는 점을 전제로 독일의 체육정책은 수립되고 있다. 엘리트체육 성공을 통한 국격 위상 강화하기 위해, 스포츠과학 연구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추진- 이를 위한 기관으로서 연방스포츠과학연구소, 라이프치히의 응용트레

55) https://safesport.dosb.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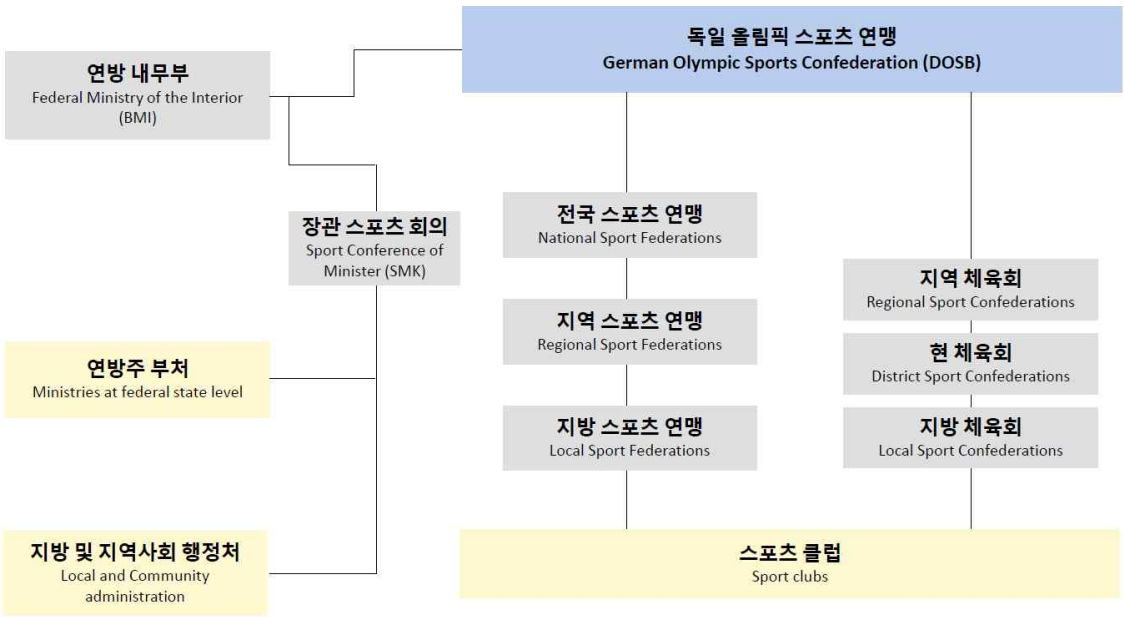
이닝연구소, 베를린의 스포츠측정연구소 등을 운용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생활체육을 위한 끊임없는 관심과 재정적 지원과 생활체육 육성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지만 연방정부는 생활체육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재정 지원, 전일제 학교와 방과 후 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체육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는 한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운동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상이군인의 체육활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의학적 관리와 전문적 지도 연방정부의 청소년 체육 육성 지원한다. 연방정부는 민간단체, 공공단체에 의해 수행되는 청소년 체육프로그램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재정을 지원학교와 스포츠클럽의 활동에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청소년 축제, 국제청소년체육프로그램 교류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인 “체육을 통한 사회적 통합 프로젝트”를 통해 인종차별주의의 방지, 연령층・사회계층간의 사회적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독일의 경우, 2006년 독일 체육회와 독일 올림픽 위원회가 통합되어 만들어진 독일 올림픽스포츠 연맹이 모든 경기 단체들의 상위단체로서 독일 스포츠 전체를 관장하고 있다. 정부 부처차원에서는 내무부과 스포츠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독일의 엘리트 체육은 독일 올림픽스포츠 연맹 산하 스포츠연맹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내무부는 이들 경기단체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2014년 내무부가 각 스포츠 연맹에 지원한 총 지원금은 약5천5백만 유로이다. 독일의 생활체육은 주정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그 근간은 바로 스포츠클럽이다. 전국에 약 91,000개의 스포츠클럽이 존재하며, 이들은 단순히 스포츠 활동뿐만 아니라 공공복지의 발전을 목표하고 있다. 학교체육 정책은 중앙정부에서는 교육연구부가 담당하고 있고 교육문화부 장관회의의 스포츠위원회의 스포츠 장관회의에서 학교체육이 논의된다. 독일 올림픽스포츠 위원회는 엘리트체육 발전에 있어서 청소년 스포츠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큼을 인식하고 ’청소년 스포츠계획 2020’을 만들어 학교체육과 엘리트 체육 분야의 협력을 주도한다. 학교체육에서 엘리트 선수는 주정부 관련 단체의 지휘를 받아 학생선수들이 학업과 스포츠를 병행하면서 엘리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교육과 관련된 연방법률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이 출범하면서 교육에 관한 관할이 연방이 아닌 주(州, Lnad)에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16개 주는 주 헌법에 교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학교법(Schulgesetz)을 가지고 있다. 독일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독일의 헌법인 독일기본법(GG)에 의해서 보장된다. 즉 학생의 기본적 인권 제한에 관한 논리는 헌법이론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림 13. 독일의 스포츠 관련 기관 조직도



3.7.1.3 스포츠 법・제도

독일은 종합적인 스포츠 법, 이른바 스포츠 기본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았다. 독일 연방 공화국 기본법(1949년)에서도 스포츠 조항은 눈에 띄지 않지만,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근거는 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 제2조의 '인격의 자유, 인신의 자유'에서 파생된다. 독일의 주 정부 수준에서는 베를린, 브레멘, 라인란트 팔츠 등의 국가가 스포츠 진흥에 대한 특별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독일연방정부의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밀접한 상호연관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둘째, 엘리트체육에 참가하는 우수선수들의 기저는 생활체육으로부터 시작되

며, 엘리트체육 선수의 성공은 생활체육에 긍정적인 자극제가 됨 이와 같이 엘리트체육의 성공은 체육 전반의 발전과 확산에 촉매 역할을 한다는 점을 전제로 독일의 체육정책은 수립되고 있다. 셋째, 엘리트체육 성공을 통한 국격 위상 강화로 엘리트체육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스포츠과학 연구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기관으로서 연방스포츠과학연구소, 라이프치히의 응용트레이닝연구소, 베를린의 스포츠측정연구소 등을 운용하고 있다. 넷째, 연방정부의 생활체육을 위한 끊임없는 관심과 재정적 지원이다. 생활체육 육성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지만 연방정부는 생활체육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재정 지원□전일제 학교와 방과 후 체육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체육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는 한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운동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상이군인의 체육활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의학적 관리와 전문적 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다섯째, 연방정부의 청소년 체육 육성 지원이다.

연방정부는 민간단체, 공공단체에 의해 수행되는 청소년 체육프로그램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재정을 지원□학교와 스포츠클럽의 활동에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청소년 축제, 국제청소년체육프로그램 교류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 “체육을 통한 사회적 통합 프로젝트”를 통해 인종차별주의의 방지, 연령층・사회계층 간의 사회적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다음은 독일에서 스포츠 관련법은 다양하며. 주요한 법과 정책 중심으로 살펴본다.

① 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제1조 제1항). 동법 제2조 제1항에 “권리의 행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되고, 헌법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어서도 아니되며, 도덕률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한다. 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도 평등조항을 두고 있는데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며,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또한 국가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가 실

제적으로 실현되도록 지원하고 현존하는 불이익이 제거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누구라도 자신의 성별, 가문, 인종, 언어, 고향, 출신, 신앙, 종교적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우대받지 아니하고, 누구나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 제3조).

② 독일형법전(Strafgesetzbuch (StGB))

- 제13장 성적 자기결정에 대한 죄(Dreizehnter Abschnitt Straftaten gegen die sexuelle Selbstbestimmung)
- 제17장 상해의 죄(Siebzehnter AbschnittStraftaten gegen die körperliche Unversehrtheit)
- 제18장 개인의 자유에 대한 죄(Achtzehnter AbschnittStraftaten gegen die persönliche Freiheit)

③ 스포츠 도핑 방지법(Anti-Doping-Gesetz-AntiDopG)[56]

도핑과 도핑 방법, 스포츠의 건강과 운동선수와 여성을 보호하고, 공정성과 동일한 기회에 스포츠 대회를 확보하며, 스포츠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스포츠 도핑 방지법 제1조).

④ 일반 평등법(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AGG))

독일의 일반평등법은 차별금지 조항을 두고 있으며, 본 조항으로 인해 인종 또는 민족, 성별, 종교, 장애, 나이 또는 성적 정체성에 의해서 차별되지 않는다(일반 평등법 제19조).

⑤ 독일의 학생들의 기본권에 대한 법과 제도

독일은 교육과 관련된 연방 법률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이 출범하면서 교육에 관한 관할이 연방이 아닌 주(Lnad)에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16개 주는 주 헌법에 교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학교법(Schulgesetz)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 주의 학교법에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보장에 관한 규정도 제한에 관한 규정도 들

56) 세계법제정보센터의 해석을 그대로 인용하였음.

어 있지 않다. 이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도 성인과 동일하게 보장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독일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독일기본법에 의하여 보장이 되고, 제한도 역시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불가능하다. 다만 대부분의 학교법은 학생에 대한 징계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징계조치는 교육조치(Pädagogische Maßnahmen)와 질서조치(Ordnungsmaßnahmen) 두 종류가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징계에 해당하는 질서조치가 허용되는 요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57]

또한 이러한 조치는 비례성의 원칙(Grundsatz derVerhältnismäßigkeit)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58] 또한 학칙제정이나 개정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1년에 3-4차례 열리는 각 주(州)의 교육부장관회의(Kultusministerkonferenz, KMK)에서 교육의 현안에 대하여 내리는 결정도 중요한 法源이 된다. 학생의인권보장과 관련하여 법률은 아니지만, 주별로 학생권리선언문을 채택한 경우도 있다. 예컨대, 헤센 주(Hessen)의 경우 체벌과 모욕적인 교사의 행위에 항의할 권리,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과잉징계에 대해 항의할 권리, 학생기록부를 열람할 권리, 자신의 징계에 대한 알권리와 반론할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⑥ 독일의 학교체육 관리 시스템

독일의 학교체육은 오랜 역사(1811년 sch-ulturnen(학교체조)으로 시작-Leibestibung-Leibeserziehung)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지 않은 분야이기도 하다. 독일의 학교체육은 학교에서의 '정규 체육활동(unterricht licher schuesport)'과 수업 외에 참가할 수 있는 '과외활동(auberunterricht licher schuesport)'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는 초등학교(Grundschule), 특수학교(Sonderschule), 도제학교(Realschule), 직업학교(Hauptschule), 짐나지움(Gymnasium)의 학교조직에 따라 수업목표와 내용 등에 차이가 있다. 독일의 모든 학교체육시설은 교육부나 학교장이 아닌 정부 체육국이 관할한다. 비영리로 운영되는 각 지역 스포츠클럽들이 간단한 절차만으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근처에 있는 학교 체

57) 헤센 주 학교법 제82조 제4항, 베를린 주 학교법 제63조 제1항.
58) 헤센 주 학교법 제82조의 위임을 받은 학교관계 구성에 관한 시행령 제64조 제1항,베를린 주 학교법 제63조 제1항.

육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독일 내 초등학교의 80% 이상, 중·고등학교는 100%에 가까운 학교들이 크고 작은 체육관을 하나 이상씩 갖추고 있다.

스포츠클럽들의 '체육과외'엔 최첨단 시설을 갖춘 체육관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체육관들이 오전엔 학교체육수업에, 방과 후엔 스포츠클럽들의 '과외활동'에 이용된다. 한 초등학교의 예를 살펴보면 독일의 헤어조그 초등학교에서는 바이에른주에 'sport nach'이라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3개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자발적으로 각 학교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스스로 진행을 한다. 헤어조그 초등학교는 레슬링, 하키, 탁구를 스포츠클럽과 연계하고 있다. 각 종목의 연계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레슬링은 월요일 오후에 경기 클럽과 연계하여 실시하며 스포츠클럽의 실기지도자가 운영하고 있다. 하키는 바이로이스 체조협회와 함께 연계하여 협회의 실기지도자와 학교의 하키 전공 체육교사가 학생들을 수준별로 나누어 지도한다. 탁구는 스포츠클럽과 연계하여 학생들을 수준별로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지도자를 고용하고 실기지도자 자격을 갖춘 대학생이 함께 지도한다. 이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스포츠를 전공하였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스포츠클럽 담당자와 직접 연락하기도 하고 공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스포츠클럽과의 연계 과정은 우선 스포츠클럽과 관계를 맺고 회의 후에 연계프로그램을 계약한다. 그런 다음, 지역 담당부서의 승인을 얻고 스포츠클럽의 재정 수준을 고려하여 스포츠 용품과 시설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한다. 연계프로그램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1년 후에도 학교와 클럽에서 다른 의견이 없거나 해약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되고 해약을 계약 당시와 같이 자율적인 의사에 맡긴다. 확정된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참여여부를 확인하고 학부모의 동의서를 받아 참여자를 모집한 후 진행한다.

3.7.1.4 스포츠 관련 인식현황

독일올림픽체육회(Deutscher Olympischer Sportbund, DOSB)가 2020년 12월에 'Safe Sport - 국경 위반, 성희롱 및 스포츠 폭력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

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59]' 에서는 성폭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다르고 있다. '성폭력'이라는 주제가 오랫동안 금기였던 이후 2010년부터 스포츠 등 대중적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양한 용어가 미디어 및 가이드의 설명에 사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독일어 전문 문헌에서 '성폭력' 이라는 용어가 확립되었으며, 이는 성적인 수단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권력 행사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된다. 이것은 만족에 관한 것이지만 약자들에게 힘을 행사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성폭력은 종종 심리적 또는 신체적 폭력과 같은 다른 형태의 폭력을 동반하며, 신체적 접촉이 없는 성희롱에서부터 국경 위반, 신체적 접촉을 통한 성행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보고서에서 세계보건기구(WHO)는 독일에서 백만 명의 소녀와 소년이 성폭력을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학교 수업 당 한두 명에 해당한다. 2016년 연구 프로젝트인 'Safe Sport'는 경쟁 선수의 성폭력 발생 빈도 및 유형과 비영리 조직 스포츠의 예방 및 개입 조치 실행 상태에 대한 독일 스포츠의 성폭력 데이터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본 프로젝트에서 독일 1,799명의 성인 운동선수들의 성폭력 경험이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기록되었다. 이 연구의 핵심 결과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모든 간부 운동선수의 약 1/3이 스포츠에서 어떤 형태로든 성폭력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영향을 받은 운동선수의 약 70%는 처음 폭력을 경험했을 때 18세 미만이었다.

아동 성폭력에 대한 공개 토론에서는 아동이 장기간에 걸쳐 성인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이른바 신체 접촉을 통한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가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는 심각하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삶에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준다. 모든 형태의 성폭력은 개인마다 다르게 인식되고 일회성 공격이나 다중 언어 성희롱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관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행동은 추가 공격의 예비 단계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벼운' 공격에 대해 클럽에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원칙적으로 모든 아동과 청소년은 성별, 출신, 사회적 계급, 성적 지향 및 건강 상황에 관계없이 스포츠에서 안전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연구에 따르면 성폭력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묘사될 수 있는 특정 아동 및 청소년

59) https://safesport.dosb.de/

그룹으로, 소녀와 젊은 여성이 남성보다 스포츠에서 성폭력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의 18%는 신체적 접촉 없이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25%는 경계의 성폭력을 경험했으며 5%는 신체적 접촉으로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성애가 아닌 성향(동성애, 양성애 또는 아직 완전하지 않음)을 가진 운동선수는 이성애 운동선수보다 훨씬 더 자주 성폭력을 경험한다고 답했다. 또한,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 연구에 따르면 신체적, 정신적 또는 정서적 장애가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은 장애가 없는 동료보다 모든 형태의 학대에 더 자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학대는 장애가 없는 청소년보다 약 3배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스포츠 활동은 일반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귀중한 발전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에서 성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조건을 자세히 분석해야 한다. 스포츠 분야에는 다음과 같이 성폭력을 조장 할 수 있는 다양한 구조와 조건이 있다.

- 신체 중심화 및 신체 접촉의 필요성
- 특정 운동복 : 일부 스포츠에서 특정 의복이나 과도한 노출
- 변화 및 샤워 상황
- 물류 프레임 워크 조건 : 차량의 비좁음과 운전자 서비스에 대한 의존, 하룻밤 체류와 결합되며, 개인정보 보호 및 감독 의무와 관련하여 높은 요구 사항이 수반됨
- 차폐된 상황 : 차폐 훈련 상황, 개별 회의, 개별 훈련.
- 의식 : 시상식에서의 포옹은 종종 당연하고 “정상“으로 간주 됨
- 낮은 문턱 접근 : 주요 장애물 없이 스포츠 클럽에 액세스 가능, 개방형 구조는 성폭력을 유발하는 사람들의 진입 장벽을 거의 나타내지 않음
- 역량 및 연령 격차 : 나이와 능력의 격차는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권력의 지위가 착취되고 열등한 지위로 밀려드는 불리한 권력 관계로 이어질 수 있음
- 성차별 및 역할

- 성능 지향, 규율 및 외부 결단 : 성능 지향 스포츠의 활동은 무엇보다도 경쟁에서의 성공에 맞춰져 있음, 때때로 부상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계속하도록 선수들에게 엄청난 압력을 가한 트레이너로부터 격려를 받음

그러나 상기와 같은 스포츠의 구조적 위험에 대한 분석이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개별 가해자가 개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동기가 생겼다면 스포츠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의 행사 및 은폐를 촉진할 수 있는 구조와 조건만 있을 뿐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3.7.2 프랑스

3.7.2.1 스포츠 관련 주요 이슈 및 동향

프랑스의 스포츠 인권은 가장 포괄적으로는 2006년 마련된 스포츠법전(Code du sport) 안에서 보호된다. 이 스포츠법은 스포츠 조직, 스포츠 관계자, 스포츠 실행 등에 관한 기존의 법령 규정을 나열하고 스포츠의 평등성, 공익성, 활동의 중요성 등을 선언하고 있다. 스포츠법은 독자적인 법의 영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매우 다양한 법적 성격을 지닌 까닭에 혼합법, 혹은 횡단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60] 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스포츠 활동과 관련한 분쟁은 민·형사법이 적용되고 스포츠 단체나 클럽의 행위는 단체 또는 회사법이 적용되며, 스포츠경기의 상업적 측면은 상행위 관련법이 적용되며, 행정법 또한 관련되기도 한다.[61]

프랑스의 스포츠 조직들은 스포츠법전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스포츠조직을 지원하는 구조이며, 단체의 형식으로 설립되는 민간 스포츠조직의 경우 인증을 취득하면 국가의 재정적 지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또한 프랑스국가올림픽·스포츠위원회(Comité national olympique et sportif français, CNOSF)가 있는데 도핑을 제외한 스포츠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CNOSF가 담당하는 까닭에 스포츠중재원(Chambre arbitrale du sport,

60) 문광진(2018), “프랑스의 스포츠법과 그 시사점”, 법학연구 60, 317-350
61) 문광진(2018), “프랑스의 스포츠법과 그 시사점”, 법학연구 60, 317-350

CAS)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종목별 협회 및 프로연맹이 있으며 종목별 협회에 필수로 가입이 되어야 하는 스포츠클럽 형태가 있다. 스포츠클럽은 국가의 인증을 받게 되면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인증을 위해서는 민주적 운영, 투명한 관리, 남녀 평등보장 등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 프랑스는 이러한 민간에 의해 설립된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스포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스포츠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스포츠클럽 등의 조직들이 스포츠 활동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임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관련 법 조항들을 적용함으로써 민간조직들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프랑스는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이슈를 관장하는 전담기구나 조직을 두지 않고 있다. 이는 프랑스 체육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2015년 체육부는 스포츠의 비폭력, 폭력, 차별에 대한 법적 지침을 갱신하고 스포츠의 가치에 반하는 행동의 정의와 법적 결과에 대해 스포츠의 포괄적이고 접근이 용이한 최신 법률 정보를 스포츠의 행위자들에게 제공한다. 이 지침은 10개의 주제 시트와 5개의 중점 영역(스포츠에서 인종차별, 동성애 혐오, 성적 행동의 범행결과에 대한 연계에 초점)으로 구성되어 각 스포츠 행위자가 스포츠에서 불성실성, 폭력 및 차별에 해당하는 행위를 인지하고 그 행위들의 구체적인 법적 결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에 대한 스포츠 관련자들(코치, 감독, 관련기관 종사자, 선수, 학부모 등)의 인지와 행동강령, 신고의무 등에 대한 인식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2019년 8개월에 걸쳐 프랑스 스포츠계의 성폭력 문제를 조사한 Disclose[62]에 따르면 스포츠 리그와 연맹은 종종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성폭행 피해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이나 지침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 Disclose는 28개 종목에서 77개의 사례를 밝혀내고 276명의 피해자들이 있음을 파악했다. 이는 1970년대부터 일어난 사건들로 이들 중 대부분은 사건이 일어날 당시 15세 미만의 아동 · 청소년이었다.

이러한 성폭행 사건들의 경우, 사법 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하여 유죄 판결이나 사법절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해당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77%에 달했고, 가해자가 재범을 저지르는 비율도 47%였다[63]. 스포츠법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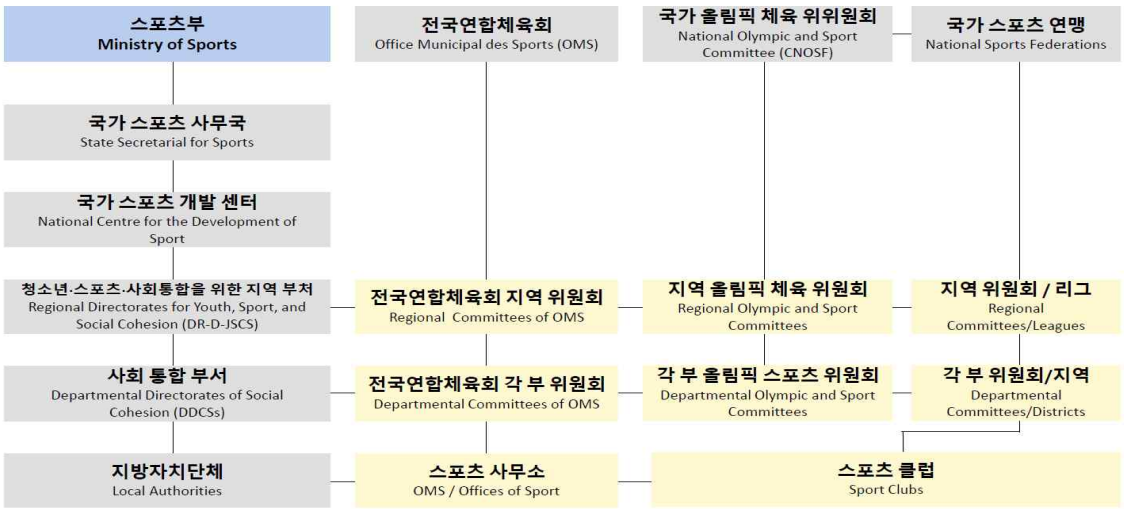
62) Disclose.ngo, 2019, “The dark side of sport: Lifting the lid on paedophilia in sport“, https://abus-sport.disclose.ngo/en 2020년 12월 4일 접속

따르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을 받은 코치나 감독은 운동선수를 훈련시키거나 스포츠 활동과 관련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지만 스포츠 행정가들과 관리자들은 이러한 법률에 대한 인식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Disclose는 프랑스의 스포츠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해 미국의 세이프스포츠센터와 같은 독립된 스포츠 인권관리기구를 두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체육부의 관장 하에 스포츠법과 스포츠인의 행동강령과 같은 지침을 제정하는 것이 주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3.7.2.2 스포츠 거버넌스

학교 스포츠 관련한 정책은 스포츠・청소년・공교육 및 지역사회 생활부와 교육부의 협력 하에 시행되는데 이는 의무적인 과정(체육 수업 등)으로 진행되는 것과 비의무적인 과정(스포츠 동아리 활동 등)으로 진행되는 것을 포함한다. 학교 스포츠 동아리들은 '초등학교체육연합', '학교체육전국연합', '프랑스 대학교체육연맹', '자율교육 총 체육연합', '대학교단체전국연합'의 다섯 개 연맹들이 관리하고 있다.

그림 14. 프랑스의 스포츠 관련 기관 조직도



63) Disclose.ngo, 2019, "The dark side of sport: Lifting the lid on paedophilia in sport", https://abus-sport.disclose.ngo/en 2020년 12월 4일 접속

이 연맹들은 정규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체육 수업을 조직하고 진행하며 이는 체육수업 교사들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진다. 지방 자치 단체는 학교 체육 협회에 지원금을 교부, 적절한 학교 체육환경 제공을 위한 운영 지원 등 학교 체육 진흥을 위해 구체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프랑스의 엘리트체육은 체육부 장관 주재의 엘리트스포츠국가위원회가 관할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정부, 프랑스 체육 올림픽 국가위원회, 엘리트 선수, 코치, 심판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스포츠의 가장 기초적인 조직형태로는 클럽을 소개할 수 있다. 클럽은 비영리사단의 전통적 유형(des associations de type classique)인 아마추어 클럽과 특별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스포츠단체(des groupments sportifs)인 직업(프로)클럽(les clubs professionnels)이 있다.

3.7.2.3 스포츠 관련 법・제도

스포츠기본권의 도입과 스포츠 활동의 촉진과 스포츠 선수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스포츠기본법 제정에 관한 논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스포츠법과 스포츠법전의 체계와 내용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한 프랑스 스포츠법은 민간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되는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하여 엘리트 스포츠 선수의 양성과 생활 스포츠에 대한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스포츠 활동이 학교나 실업팀과 같이 폐쇄된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까지도 스포츠 선수에 대한폭행, 성폭력과 같은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입시비리와 같은 부정행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이러한 환경은 시민으로 하여금 스포츠 활동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는 등 생활 스포츠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향후 논의되는 스포츠법제의 개선과 관련하여 민간에 의해 민주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스포츠클럽에 대해 국가가 공공서비스 보장의 차원에서 제도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엘리트 스포츠와 생활 스포츠의 동시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① 프랑스 헌법(Constitution)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권선언에서 정의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및 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정의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는 불가분적, 비종교적, 민주적, 사회적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출신, 인종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이법 앞에서 평등함을 보장한다.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 프랑스는 지방분권화 된 조직을 갖으며,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거하여 공화국에 결합하려는 의사를 표명하는 해외영토들에게 자유, 평등 및 우애의 보편적 이념에 기초하여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구상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프랑스 헌법 제1조).

② 스포츠법전(Code du sport)

프랑스에서 공식적인 스포츠법전의 탄생은 2006년 5월 23일 오르도낭스의 공포를 통해서부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스포츠 법전에 대한 연구는 학계와 전문가들에 의해 1997년 달로즈(Dalloz)출판사의 Code du Sport의 발간이 앞선다고 할 수 있다(현재 제11판이 2016년 6월에 개정 출간되었다). 달로즈 출판사에서 나온 스포츠법전은 당시 산재한 스포츠 관련 법령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하나의 스포츠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작업으로 평가되기도 하는데, 스포츠와 스포츠 단체에 대한 일반(공통)법적 내용과 사법재판과 행정재판의 판단사항들을 주석을 통해 해당 부분에서 부기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과 병행하여 정부의 공식적 스포츠법의 법전화 작업도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2004년 12월 9일 법률은 정부의 2006년 5월 23일 오르도낭스(제2006-596호)를 통해 법률부분에 대한 제정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법령의 명령에 관한 규정들(Partiereglementaire)은 1년 뒤인 2007년 7월 24일 데크레(제2007-1132호와 제2007-1133호)를 통해 추가되었다. 그리고 2008년 2월 28일 훈령(arrêté)을 통해 마지막 명령규정 부분인 Partie A가 추가되었다. 명령 조항 부부는 다시 2007년 7월 24일 데크레에 의해 모두 71개의 데크레 조항을 폐지하였는데, 최종적으로 2008년 2월 28일에 전기한 Partie A 부분이 정비가 되었다. 이와 같은 법제정비 과정을 통해 성립된 스

포츠법전의 성취는 국가법질서와 스포츠(법)질서간의 새로운 협력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라틴어 표현을 빌리면 ‘lex sportiva’의 확인을 통한 스포츠법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의 프랑스 법전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 프랑스법전 제1편은 신체와 스포츠 활동조직(기구)(L’organisation activités physiqueset sportives)의 제목 하에 제1장 스포츠 분야에 개입하는 공법인(Personnes publiques), 제2장 스포츠협회와 단체(les associations et sociétés sportives) 그리고 제3장 스포츠연맹과 프로리그(Fédérations sportives et ligues professionnelles)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1부는 신체와 스포츠 활동조직(Organisation des activités physiques et sportives)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칙(Titre Préliminaire) 제1편은 공법인, 국가, 국가영조물법인, 지방자치단체, 스포츠 기록평가, 선수촌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국가와 레지용간 임무와 권한의 배분, 특정 스포츠 공공서비스의 관리조직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구성된다. 제2편은 스포츠단체와 스포츠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스포츠단체(Associations sportives), 스포츠회사(Sociétés sportives)가 규정되어 있다. 제3편은 스포츠연맹과 프로리그로 구성되어 있고 스포츠연맹(Fédération sportives), 프로리그(Ligues professionnelles)가 규정되어 있다.

제2부는 대표기구와 중재기관으로 프랑스 국가스포츠올림픽위원회, 프랑스장애인스포츠위원회, 기타 기구, 스포츠인(Actuers du sport), 양성과 교육, 직업스포츠 양성, 무보수 스포츠교육, 운동선수, 엘리트스포츠(Sport de haut niveau), 직업선수, 운동선수에 적용될 기타 조항, 서포터즈(Supporteurs)에 대한 내용이 있다. 제3부는 운동선수의 건강과 금지약물복용(도핑)방지서장, 운동선수에 대한 약물조사, 금지약물복용(도핑)방지가 있다. 제4부는 동물에 대한 금지약물복용(도핑)방지, 스포츠의 실행(Pratique sportive), 스포츠 실행장소, 자연스포츠, 스포츠시설장비, 스포츠 활동에 수반된 의무사항, 보험가입의무, 위생과 안전의 보장, 스포츠 대회(Manifestation sportive), 스포츠대회의 조직, 스포츠대회의 안전, 스포츠대회의 경영(Expoitation des manifestation sportive)에 대한 규정이 있다.

③ 성폭력방지법(LOI n° 2012-954 du 6 août 2012 relative au harcèlement sexuel)

프랑스는 성폭력방지법으로 형법 제2권 제2장, 제3장 제4항을 보강하여, 성폭력방지법을 제정하였다. 성희롱은 성적인 내용으로, 자신의 품위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자신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 댓글이나 행동을 반복적으로 부과한다(성폭력방지법 제2조). 성폭력방지법 제3조는 권한을 남용하는 자, 15세 미성년자, 나이, 질병, 허약,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 또는 임신 상태로 특정한 취약성이 명백한 사람, 경제적 또는 사회적 상황이 불안정성으로 인해 취약성 또는 의존성이 명백한 자에게 행한 성폭력은 징역과 벌금이 가중된다.

④ 형법(Code pénal)

프랑스 형법은 15년 미성년자, 나이로 인한 질병과 약점이 있는 취약계층,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또는 임신 상태가 명백한 경우, 20년형의 징역형에 처한다(형법 제228-8조). 프랑스 형법 세션2는 성폭행에 관해 규정되어 있다. 폭력, 강압, 위협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으며, 강간 및 기타 성폭행에 대한 처벌규정이다(형법 제222-22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행위를 한 경우, 도덕적인문제, 피해자와 가해자의 법적인 관계, 권위, 연령 차이를 고려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성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취약성을 남용하는 것이 특징이다(형법 제222-22-1조). 아울러 강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강간의 형량은 최소 15년이며, 장애를 초래한 경우, 미성년자에게 저지른 경우, 권한을 남용하여 저지른 경우 등은 최소 20년 형으로 가중된다(형법 제222-23).

3.7.2.4 스포츠인권 관련 인식현황

2020년 초 프랑스 피겨스케이팅 선수인 사라 아비볼트가 자서전을 통해 15세부터 2년 동안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주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프랑스빙상연맹과 피겨스케이팅 관계자들은 이 사실을 철저히 은폐했다. 아비볼트의 자서전 출간 이후 프랑스 체육부는 빙상연맹과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30년간 20여명의 피겨 코치가 조직적으로 선수들에게 성적 학대나 폭력 · 폭언을 일삼

았던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들 코치 21명 중 12명은 선수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고, 7명은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 체육부는 프랑스 스포츠협회 내 선수들의 성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하였고 스포츠선수들의 성적 학대의 실태가 매우 심각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2005년에 발생했던 테니스 선수 이사벨 데몽조(Isabelle Demontgeot) 사건은 스포츠계 성폭력실태를 고발하고 체육계에 경종을 울리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에 2008년 프랑스 체육부 장관은 스포츠에서의 성폭력과 신체적 · 정신적 학대를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고 그 후 10년에 걸쳐 체육부 장관들이 스포츠인권에 대한 성명서와 홍보 캠페인 등을 진행했으나 효과는 미비했다.

Disclose의 조사[64]에 의하면, 스포츠에서 성폭력이 빈번히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사법제도의 실패로 보는 비율이 41%에 달했고, 스포츠 연맹이나 클럽들이 종종 성학대 스캔들로부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사법 당국까지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구조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27%에 달했다. 더욱이 스포츠조직의 경영자들이나 전문직 코치, 감독 등 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처법을 교육받거나 관련 법률에 관해 세부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상당히 무력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음이 드러났다. 프랑스 형법 40조는 조직의 대표나 공직자가 범죄 혐의 사실을 알고 있으면 법무당국에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법률 제434조 1항에 따르면, 성범죄나 범죄를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적절한 사법 당국이나 행정 당국에 알리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스포츠클럽에서의 성학대 의혹이 불거지면 몇 달 동안 머뭇거리는 경우가 잦고,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법적 요건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스포츠인권의 보호를 위해 특히 사법 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자발적 체육교사 통제시스템 부재, 조사 대상인 가해 혐의자의 활동의 지속적 허용,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감시 미비, 이해관계를 방어하기보다는 추문을 은폐하는 쪽을 택하는 공무원과 체육단체의 법적 책무에 대한 무지 등이 스포츠에서의 성적 학대 발생의 요인으로

64) Disclose.ngo, 2019, “The dark side of sport: Lifting the lid on paedophilia in sport“, https://abus-sport.disclose.ngo/en 2020년 12월 4일 접속

판단되기 때문이다.

한 예로 프랑스의 스포츠 강령 ‘L212-9조’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스포츠 활동을 가르치거나 훈련시키거나 주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육부와 특정 행정부는 스포츠 강사 인증카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해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공식 사법기록인 피자스프(Fijaisv)를 자동 점검하고 있으며 스포츠 단체들도 스포츠 강사나 전문코치 등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와의 체육활동을 담당하는 개인의 최종전과가 거의 확인되지 않고, 강사들은 전과 기록의 사전 확인 없이 스포츠 단체와 과외 활동에서 자영업을 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에 프랑스 스포츠계에서는 몇 년 전부터 자발적인 스포츠 강사의 필터링을 보장하는 입법 도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 체육부는 스포츠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비롯한 각종 인권침해 사건들의 방지와 선수보호를 위해 2015년 「문제예방과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스포츠클럽과 훈련센터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체육부의 스포츠 내 성폭력 예방 캠페인은 어린 시절 강간 피해자인 럭비선수 출신 세바스티앵 부일(Sébastien Boueilh)가 주도하고 있으며 그는 스포츠 내 성폭력을 예방하는 것의 가장 중요하고도 일차적인 방안으로 코치와 아동이 단둘이 있는 것을 피할 것, 강사와 운동선수를 위한 방을 분리할 것, 미성년자 운동선수를 집으로 초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등을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캠페인들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도 프랑스의 스포츠 선수의 인권이 체육부의 지침이나 스포츠법을 통해 보호받게 되어 있으나 정작 성폭력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이에 스포츠계에서는 미국의 세이프스포츠센터와 같은 독립된 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의 스포츠인권보호시스템이 사법제도와 스포츠 조직의 구조적 결함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조직적 결함을 밝히며 조직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을 지닌 독립된 스포츠인권기구는 보다 효과적으로 프랑스의 스포츠인권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3.7.2.4 스포츠인권 침해사례

3.7.2.4.1 테니스 - 이자벨 드몽조(Isabelle Demontgeot) 사건

[사건 이슈화]

2005년 당시 세계 랭킹 35위였던 프랑스 테니스 선수인 이자벨 드몽조(Isabelle Demontgeot)는 그녀의 책<테니스(Le tennis)>를 통해 전 코치인 레지스 데 카마레(Regis de Camaret)로부터 받은 수년간의 학대와 성폭행을 폭로하고 출판과 동시에 그를 고소하였다.

[사건 요약]

2005년, 이자벨은 1977년부터 1989년 사이에 15세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접촉한 혐의로 전직 테니스 코치인 카마레를 고소하였다. 이자벨은 14세 때부터 롤랜드 가로스(Roland Garros)의 호텔 및 테니스 클럽에서 9년 동안 카마레 코치로부터 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학대를 당했다. 이자벨 이외에도 소송 과정에서 몇몇 다른 여성들도 1980년대와 1990년대 사이 그에게 훈련을 받으면서 강간 또는 성적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카마레 코치가 혐의를 부인한데다 증언들이 대부분 공소시효가 끝나 추가적인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추가 소송 과정에서 전 프랑스 1위, 윔블던 결선 진출자는 카마레를 옹호하는 진술을 하였지만 이내 거짓 진술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결국 카마레 코치는 자신의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을 강간한 혐의로 7년간의 긴 법정 소송 끝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판결]

리옹 법원은 카마레 코치에게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8년 징역형을 내리고 그에게 평생 테니스를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검찰의 10년 내지 12년 징역형 요구에 비해 관용을 베풀었으나 변호인단은 카마레가 선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건을 기각하기를 원했다. 수사관들은 처음에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을 기각하려고 하였으나 검찰이 이 결정에 항소하여 8년형을 이끌어냈다.

[이후 변화]

이 사건 이후 체육부, 보건부, 프랑스테니스연맹(Fédération Francaise de Tennis, FFT) 등은 각각 예방조치 등을 내놓았다. 체육부의 경우, 2007년 성희롱 이슈를 다루는 실무그룹을 결성하고 보르도대학(University of Bordeaux)과 보르도병원(Hospital of Bordeaux)과 함께 2007~2009년 국가 내 스포츠계 성폭력/성추행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1,400명 이상의 선수에게 설문을 실시하여 이들이 어떠한 성적학대와 폭행을 경험했는지를 자세히 서술하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체육부는 성폭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이 일환으로 스포츠 센터의 교육자와 의료진에게 DVD를 통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보건부의 경우, 이 사건 이후 다음과 같은 4가지 조치를 마련하였다. 첫째, 보건부 관계자와 체육부 실무진이 함께 참여하여 성폭력/성추행 징계특화조치 등을 추가하는 윤리강령을 제정하였고 선수, 코치, 감독, 지도자들, 부모 등에 대한 선행 규칙도 제정하였다. 둘째, 스포츠 센터에서 예방 및 인식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셋째, 스포츠 센터에서 일하는 전문직을 대상으로 성폭력 주제가 포함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넷째, 스포츠 활동 중 일어난 성희롱·학대에 대해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기 위해 콜센터를 설치했다.

프랑스 테니스연맹은 2008년 '4단계 작전계획(plan d'action)'을 시행하였다. 이 계획은 예방적 차원에서 진행되는데 예를 들면 성폭력/성희롱 등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신고기관에 대한 전화번호를 클럽 네트워크 전체에 제공하고 모든 코치가 준수해야 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행동가이드도 배포되었다. 또한 연맹은 국가와 지역 훈련소의 모든 연금 수급자들의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어린 선수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희생양이 되는 심리를 심리학자들과 함께 찾아내고 스포츠 폭력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제도적 변화와 함께 인식의 변화도 촉구하고자 하였다.

3.7.2.4.2 피겨스케이팅 - 길레스 바이어(Gilles Beyer) 사건

[사건 이슈화]

2000년 세계 선수권 대회 동메달리스트였던 전 피겨 스케이팅 선수 사라 아비톨(Sarah Abitbol)은 2020년 1월 책 <긴 침묵(Un si long silence)>을 출판하여 전 피겨 스케이팅 코치 길레스 바이어(Gilles Beyer)가 1990년부터 1992년까지 반복적으로 자신을 강간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사건 요약]

사라 사건의 검찰 조사 이후 3명의 스케이트 선수들도 자신들이 전직 코치들에 의해 강간당했다고 주장했다. 조사에 따르면 1999년 베이어는 훈련 캠프 기간 중 미성년자 선수의 침실로 가서 어린 소녀들을 성추행했다. 베이어는 2000년 스포츠 장관이 주도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2011년까지 세계 선수권 대회 프랑스 청소년 팀 감독을 맡았다. 프랑스 빙상 연맹(French Ice Skating Federation, FFSG)의 디디에 가이하구에트(Didier Gailhaguet) 회장은 베이어가 2000년대 초반부터 젊은 스케이터 선수들에 대한 비행으로 몇 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피겨 스케이팅 연맹에서의 활동을 허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20년 2월 가이하구에트 회장이 사퇴했다.

프랑스 검찰은 2020년 2월 성폭행 혐의로 베이어에 대한 예비 조사에 착수했다. 베이어는 프랑스 언론 AFP에 보낸 서면으로 작성된 선언문에서 아비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음을 시인하며 사과했다. 프랑스의 록사나 마라시나누(Roxana Maracineanu) 스포츠 장관은 베이어에게 사임할 것을 요구했지만, 베이어는 실수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결코 잘못이 없다 주장하며 사임을 거부했다.

[판결]

파리 검찰은 아비톨이 베이어를 기소한 후 범죄 수사를 개시했다. 체육부에 따르면 한 명의 코치는 2월에 구금되었고 다른 5명은 4월에 코치 활동을 금지 당했다. 체육부 조사 결과 21명의 코치 중 12명이 ‘추행 또는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중 3명은 이전에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험이 있다. 그 밖에 7건의 사례에서 ‘신체적 또는 언어적 폭력’의 혐의로 조사 중이다. 하지만 베이어는 연맹의 징계위원회에 의해 스케이

트 링크 접근 금지 조치만 내려졌을 뿐 결정적인 제재를 받지 않았다. 베이어에 관한 사법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2단계 조사에서는 금융 및 행정관리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이 사건에서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려낼 예정이다.

[이후 변화]

아비톨의 폭로 이후 2020년 2월 프랑스 청소년체육부(France's Ministry of Youth Affairs and Sports)는 프랑스 빙상연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체육부는 IGESR (General Inspectorate of Education, Sport and Research)의 도움을 받아 전용 플랫폼을 개발해 스포츠 인권 현황을 조사했다. 플랫폼에 대한 청문회와 선수들의 증언을 분석한 결과 20명 이상의 피겨 코치들이 30년 넘게 10대 스케이트 선수들을 조직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증거가 드러났다. 체육부는 수사 결과 형사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파리 검찰에 보고서를 전달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21명의 코치 중 12명이 '추행 또는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중 3명은 이전에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험이 있다. 그 밖에 7건의 사례에서 '신체적 또는 언어적 폭력'의 혐의로 조사 중이다. 더 근본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FFSG의 비밀스런 운영 구조였다. 증인 진술을 분석한 결과 이 구조는 극소수의 관리자와 임원만이 참여하는 강력한 권한 집중 현상에 의한 것이며, 이로 인해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코치들 사이에 '침묵의 규범(omertà, a code of silence)'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징계 절차의 중단이나 간소화된 조사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체육부는 빙상연맹이 소속 구단이 감독이나 코치가 저지른 폭력 행위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도록 강제하는 윤리강령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해당 문제로 인해 그랑프리 피겨 스케이팅 시리즈가 지방 대회로 축소되었다.

[한계점]

아비톨에 따르면 가이하구에트의 사임은 시작일 뿐이며 연방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야한다고 전했다. 연방에는 여전히 가이하구에트의 관계자들이

침묵을 지키며 그의 체제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남아있으며, 여전히 코치와 미성년 선수간의 성폭행 문제가 만연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비톨은 예정된 수사에 연맹 ISU(Internationaux de France)이 수사와 관련된 회계를 정리했다는 의혹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으로 인해 스포츠계의 약물 남용 문제가 드러났다. 프랑스 빙상 연맹과 클럽에서 성적 학대와 언어폭력 혐의로 조사를 받은 20명 이상의 코치들이 약물 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다르면 코치들의 약물 남용 문제는 젊은 선수들의 조기 입문의 한 형태로 약물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3.7.2.4.3 축구 - 사이드 차베인(Saïd Chabane) 사건

[사건 이슈화]

2020년 1월 프랑스 축구리그 측 직원 1명, 다른 전직 스태프 1명을 포함한 여성 3명이 구단 총수 사이드 차베인(Saïd Chabane)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건의 포문이 열렸다.

[사건 요약]

이 사건은 프랑스의 2000년 세계 선수권 대회 동메달리스트였던 전 피겨 스케이팅 선수 사라 아비톨(Sarah Abitbol)이 코치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뒤 불거졌다. 3명의 여성이 차베인에 대한 혐의를 제기한 데 이어 수사관들에 의해 잠재적 피해자로 지목된 네 번째 여성도 차베인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폭행 사건에서 당시 20~25세였던 4명의 피해자가 차베인에 대해 성폭행 혐의를 제기했다. 첫 번째 피해자는 2019년 11월 말에 마드리드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녀에 따르면 2019년 차베인이 성적인 접촉을 위해 자신을 불러냈고, 직장에서 그녀의 가슴과 사적인 부분에 손을 댔다고 밝혔다.

첫 피해자의 폭로 이후 앵거스(Angers)의 수사관들은 과거 성적 학대 혐의를 조사한 결과, 차베인의 재직 기간 동안 그로부터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이유로 두 명의 다른 여성이 경찰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차베인은 공식적으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Angers Club 축구 구단은 차베인

이 자신에 대한 모든 의혹에 대해 수사관들과 적극 협조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판결]

차베인은 1월 말 소환통보에 응해 2월 5일 앵거스 경찰청에 출석했다. 첫 판결에서 '최대 7년의 징역형과 백만 유로 벌금형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절차법 규정에 따라 차베인은 현재 앙거스 검사가 개관한 조사의 일환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후 변화]

사건 이후 Ligue 1 side Angers(리그 1의 사이드 앵거스)는 파브리스 파베토본(Fabrice Favetto Bon)을 앵거스 SCO(Club Sportif Orne)의 차기 대표로 새로 임명했다. 그는 2020년 5월 29일부터 공식적으로 차베인으로부터 운영권을 이양 받았다. 파베토본은 차베인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으며, SCO 클럽 인수 당시 미지불 금액을 청구했다. 또한 파베토본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됨으로써 약화된 구단의 거버넌스를 재건하기 위한 활동을 유지해 가겠다고 선언했다.

Ⅳ. 해외 선진제도 도입에 관한 제언

개화기에 선교사들에 의해 학교 엘리트 체육이 도입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많은 발전과 가시적인 성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발전과 성과에 따른 커다란 부작용은 한국스포츠계의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스포츠계의 폭행, 폭력, 인권유린 등의 문제는 반복적인 형태로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다. 한국스포츠계의 구조적 문제점으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들이 어린 초등학교 운동부 선수들에게도 뿌리 깊은 상처로 자리 잡아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어린 선수들을 여러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있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정책들이 오래전부터 실시되어 오고 있다. 초등학교 학생 운동 선수의 인권 및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운동선수협회에서는 엄격한 규칙을 정하여 지키고 있다. 또한 체육 지도자들이 모든 정책들을 이해하고 정책에 따라 선수들을 지도하기 위해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선수들의 인권만을 관리하는 관리인을 두어 이를 법적인 제도장치 아래 시행하고 있다. 또한 운동부의 개념보다는 학생 선수들의 자율성에 맡기는 방과 후 자율적인 체육활동이 요구된다.

4.1 거버넌스적 측면

국내 스포츠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스포츠인권을 관할하는 ‘미국세이프스포츠센터(U.S. Center for Safe Sport)’와 같은 일원적 관리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스포츠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규정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세이프스포츠센터는 안전스포츠를 담당하는 독립된 정부기관이며, 국제 안전스포츠 분야에서 미국을 대표한다. 세이프스포츠센터는 학대(정서적/신체적/성적 학대 모두 포함)로부터 선수 보호에 대하여 NGB 뿐만 아니라 미국올림픽위원회에 대하여도 규율할 권한이 주어진다. 미국세이프스포츠센터는 이러한 학대 예방을 위하여 교육 및 적극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와 센터의 정책에 반하는 성적 학대에 대한 신고와 그 이후의 절차(조사 및 사건의 해결)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 있다. 또한 그러한 학대의 신고 및 후속 절차의 운영에

있어 고지와 청문을 공정하게 제공하고 신고자의 익명성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세이프스포츠센터에서 정하는 정책/절차는 미국법전 제36편 제220542조제a항제2호의 A목 내지 F목에 열거된 사항들이며, 이를 국내에 도입하여, 스포츠 인권분야의 거버넌스 문제에 대한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A) NGB, 패럴림픽 스포츠 단체, 또는 NGB/ 패럴림픽 스포츠 단체 산하에 소속된 모든 성인 회원을 비롯하여, 성인 회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아마추어 선수와 교류하는 사람은, 미성년자인 아마추어 선수에 대한 아동학대 대한 의심이 발생할 시, 다음의 각 기관으로 즉시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여야 함
   (i) 미성년자인 아마추어 선수가 아동학대를 경험하였음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사실을 알게된 경우, 센터로 신고해야할 의무발생
   (ii) 아동학대피해자법 제226조(미국법전 제34편 제20341조)에 따른 수사당국
(B) 신고자가 센터/ NGB/ 수사기관/ 기타 유관기관으로 아동학대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아동학대 전문가의 승인을 거쳐서 구축해야 함
(C) NGB/ 패럴림픽 스포츠 단체 산하 시설에서 제3자인 성인의 관찰이나 개입이 어려운 거리 또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인 선수와 그 선수의 법적 보호자가 아닌 성인이 단독으로 교류하는 것을 제한하는 합리적 절차를 규정해야 함
(D) 신고자에 대한 NGB 또는 패럴림픽 스포츠 단체의 보복을 금지하는 절차를 도입해야 함
(E) 감사 등 관리감독 절차를 마련해야 함
(F) NGB 또는 패럴림픽 스포츠 단체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신고를 대외적으로 비밀로하고, 센터에 공유하고 센터는 유관 NGB/ 패럴림픽 스포츠 단체/ 기타 기관으로 이를 공유하며, 해당 신고에 대한 의혹이 밝혀지는 때까지 사건 당사자인 성인은 미성년자 선수와의 교류를 정지(withhold)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아울러, 「국민체육진흥법」의 제18조의4의는 스포츠윤리센터의 고발 및 징계요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동조 제1항은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본 조문을 보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는 고발의 강제성을 내포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미국의 세이프 스포츠센터에 관해 규정한 미국법전 제36편 제220542조제a항제2호의 A목 “NGB, 패럴림픽 스포츠 단체, 또는 NGB/ 패럴림픽 스포츠 단체 산하에 소속된 모든 성인 회원을 비롯하여, 성인 회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아마추어 선수와 교류하는 사람은, 미성년자인 아마추어 선수에 대한 아동학대 대한 의심이 발생할 시, 기관으로 즉시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신고의 강제력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국민체육진흥법」의 제18조의4 제1항 후단을 개정하여,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스포츠윤리센터에 즉각적인 고발권 의무조항 마련된다면, 우리나라 선수들의 학대, 성폭력, 인권유린등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4.2 제도적 측면

미국의 스포츠 의료 면허 명확성법 2018(Sports Medicine Licensure Clarity Act of 2018)과 같은 법 도입을 통해 의료 인력을 전문화 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은 스포츠 의료 인력의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 및 면허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대상인 스포츠 의료 인력이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여 주로 활동하는 주(primary State) 이외의 다른 주(secondary State)의 선수, 선수단 또는 그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이 법에서 정하는 계약에 따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의료인이 가입한 책임보험 역시 secondary State에서의 선수/선수단/직원을 상대로 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현행 법률인 미국법전 제15편 제112장 제8601조에 해당한다.

또한 미국의 형법 제109B장 아동성범죄자 신상 및 범죄 등록부(8 USC Ch.

109B-Sex Offender and Crimes Against Children) 등록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성범죄자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만일 등록/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는 자가 연방법/ DC법/ 원주민부족법/ 준주법의 폭행죄(crime of violence)를 저지르는 때에는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을 가산한다.

그리고 인권보호에 관한 정책 제안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수업결손에 관한 문제는 현장 지도자들의 책임이 아니다. 행정적인 문제와 엘리트 체육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오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인권보호를 위한 선수 모니터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소년원 인권 모니터링의 경험을 미루어 보아 불시적인 인권보호 감시는 별 효과가 없고 사실적 관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을 거두기엔 힘들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인권보호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최근 최숙현 선수의 사례에서, 최선수가 팀닥터와 감독에게 폭행을 당하여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팀닥터란, 팀 피지션(team physician), 팀 주치의라고도 부르며, 선수들의 건강 검진이나 도핑 관리, 영양 관리 등 스포츠 의학 전 분야를 총체적으로 책임진다. 상시 혹은 비상시로 팀의 훈련이나 경기 중에 상주하며 운동선수가 경기나 훈련 중 부상을 당한 경우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한다. 또 선수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각각 선수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치료법을 처방하고, 경기 출장 여부와 복귀를 결정하며, 병력 자료 축적, 재활치료 등 선수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를 맡는다. 그러나, 최숙현 선수사건에서 ‘팀닥터’는 경주시체육회 회장이 인사위원회에서 밝힌바에 의하면, “A씨는 경주시청이 고용하지 않고 팀에서 필요시 치료를 위해 불러 횟수에 따라 개별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관계“라며 “물리치료사가 아닌 운동처방사“라고 밝혔다.

이같은 스포츠 의료인력관리와 자격요건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스포츠인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미국의 스포츠 의료 면허 명확성법 2018(Sports Medicine Licensure Clarity Act of 2018)과 같은 법 도입 제안한다.

구체적인 법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및 제9조의2의 스포츠지도사 및 건강운동관리사에 관한 조문에 자격 요건을 강화함은 물론, 스포

츠 의료인의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스포츠의료인력의 체계적인 국가관리시스템화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4.3 인식적 측면

(1) '프랑스의 엘리트 스포츠와 생활스포츠의 동시적 발전' 사례 참고

스포츠기본권의 도입과 스포츠 활동의 촉진, 그리고 스포츠 선수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스포츠기본법 제정에 관한 논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스포츠법 및 스포츠법전의 체계와 내용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한 프랑스 스포츠법은 민간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되는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하여 엘리트 스포츠 선수의 양성과 생활 스포츠에 대한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스포츠 활동이 학교나 실업팀과 같이 폐쇄된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까지도 스포츠 선수에 대한폭행, 성폭력과 같은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입시비리와 같은 부정행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이러한 환경은 시민으로 하여금 스포츠 활동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는 등 생활 스포츠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향후 논의되는 스포츠법제의 개선과 관련하여 민간에 의해 민주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스포츠클럽에 대해 국가가 공공서비스 보장의 차원에서 제도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엘리트 스포츠와 생활 스포츠의 동시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 '영국의 아동과 학부모 중심의 가이드라인 제작' 사례 참고

영국의 NSPCC는 'Talk PANTS'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된 교육자료지침을 통해 학교에서의 학대에 관해 지속적인 아동학대, 집단따돌림, 가정폭력이 만연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부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아이들에게서 보여지는 학대 신호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는데, 자녀의 행동의 변화, 성행위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성적으로 사용하는 명시적 언어, 성격의 변화, 불안함, 성적인 방법으로, 물건이나 장난감을 사용

하는 것, 식습관의 변화, 특정장소에 대한 불안, 비밀을 공유하거나, 밝히기 꺼려함 등이 발견될 때, 보호자에게 비정상적인 행동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학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보호책임자, 자녀보호정책을 펴고 있으며, 경찰 또는 NSPCC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또한 학교에서의 학대에 대한 교육을 서술한다. 모든 학대를 경계하고, 아동을 위한 적절한 지원행동, 아이들에게 자부심과 자신감 및 존중하는 관계형성,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여, 광범위한 커리큘럼의 개발 및 발전, 양질의 아동 보호에 관해 참여 및 아동의 권리를 강조하고 부모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공하고 있다. 부모는 아이의 학대를 들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듣고 충격을 받지 말며, 침착하게 행동하기, 자녀가 하는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세부사항을 묻지 말기를 지시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지 말고, 자녀에게 공유해야 함을 지도해야 한다고 말하며, 정보를 빨리 기록하도록 하고, 정보의 세부적인 날짜 기입에 관한 매뉴얼 등을 제공하고 있다.

(3) '캐나다의 스포츠분야의 다문화 포옹정책' 사례 참고

캐나다 정부는 '원주민에 대한 스포츠 참여에 관한 캐나다의 정책(Sport Canada's Policy on Aboriginal Peoples' Participation in Sport)'을 마련하여, 캐나다의 문화유산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캐나다는 원주민 포괄정책을 펴고 있다. 원주민들이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게 캐나다 정부는 수십 년 동안 지원하고 있다. 특히 원주민(ASC), 북미 원주민 게임(NAIG), 지방 및 영토 원주민스포츠 거버넌스기구를 설립하고, Canadian Heritage(Sport Canada)는 원주민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스포츠에 대한 가치 기반 접근 방식으로 꾸준히 실행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스포츠 정책의 조화롭고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스포츠 시스템의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캐나다인의 스포츠 경험을 증명하고자 함에 있다고 판단된다. 캐나다 스포츠 정책의 역동성과 최첨단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캐나다인 자신의 능력과 관심의 정도까지 스포츠에 참여하고 경험을 즐기며,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경쟁이 치열한 수준에서 일관되

게 정책을 펼치고 있다.

(4) '일본의 체계적인 스포츠 강국전략' 사례 참고

일본은 스포츠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고 스포츠를 통해 감동을 나누고, 서로를 돕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전략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이러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스포츠 활동의 기회를 확보하고, 안전하고 공정하게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5개의 중점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첫째, 주요정책으로는 ① 종합형 지역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하는 스포츠 환경을 정비한다. ② 지역스포츠를 담당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활용한다. ③ 지역스포츠시설의 정비, 학교체육시설 의 활용 등을 통해 스포츠시설을 확보한다. ④ 유아기 내지 학령기의 운동지침을 책정한다. ⑤ 어린이의 체력향상을 위해 스포츠기회를 충실히 한다. ⑥ 젊은이를 비롯한 성인들의 스포츠참가 기회를 확대한다. ⑦ 고령자의 체력단련을 지원한다.

둘째, 주요정책으로는 ① 주니어선수 시기부터 톱 수준에 이르기까지 전략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② 톱 수준의 선수, 지도자 및 심판원의 해외연수를 지원한다. ③ 대학을 활용한 분산형 강화, 연구활동 거점네트워크를 구축한다. ④ 국립스포츠과학센터(JISS)의 기능을 강화한다. ⑤ 국립훈련센터를 지원한다. ⑥ 여성선수가 활약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한다. ⑦ 국제경기대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 스포츠여행 사업을 촉진한다.

셋째, 주요정책으로는 ① 톱 수준의 선수가 지역스포츠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한다. ② 체육수업・운동부활동을 위한 외부지도자를 충원한다. ③ 주니어시기부터 은퇴 후까지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사회공헌을 추진한다. ④ 대학을 활용한 분산형을 강화하고, 연구활동 거점네트워크를 구축하다. ⑤ 학교체육시설의 활용을 추진한다. ⑥ 스포츠단체의 연계 체제를 구축한다.

넷째, 주요정책으로는 ① 스포츠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② 공평・공정한 스포츠단체의 운영을 확보한다. ③ 스포츠단체의 매니지먼트기능을 강화한다. ④ 스포츠분쟁의 신속하고 원활한 해결을 지원한

다. ⑤ 도핑검사체제와 방지활동을 충실히 한다.

다섯째, 주요정책으로는 ① 새로운 공공질서를 담당하기 위하여 커뮤니티 스포츠클럽을 추진한다. ② 지역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을 정비한다. ③ 새로운 공공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세제개편을 검토한다. ④ 스포츠분야의 표창제도를 확충한다.

(5) '독일의 학생들의 기본권에 강화 정책도입' 사례 참고

독일은 교육과 관련된 연방 법률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이 출범하면서 교육에 관한 관할이 연방이 아닌 주(Lnad)에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16개 주는 주 헌법에 교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학교법(Schulgesetz)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 주의 학교법에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보장에 관한 규정도 제한에 관한 규정도 들어 있지 않다. 이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도 성인과 동일하게 보장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독일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독일기본법에 의하여 보장이 되고, 제한도 역시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불가능하다. 다만 대부분의 학교법은 학생에 대한 징계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징계조치는 교육조치(Pädagogische Maßnahmen)와 질서조치(Ordnungsmaßnahmen) 두 종류가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징계에 해당하는 질서조치가 허용되는 요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헤센 주 학교법 제82조 제4항, 베를린 주 학교법 제63조 제1항).

또한 이러한 조치는 비례성의 원칙(Grundsatz derVerhältnismäßigkeit)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헤센 주 학교법 제82조의 위임을 받은 학교관계 구성에 관한 시행령 제64조 제1항, 베를린 주 학교법 제63조 제1항).

또한 학칙제정이나 개정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1년에 3-4차례 열리는 각 주(州)의 교육부장관회의(Kultusministerkonferenz, KMK)에서 교육의 현안에 대한 결정도 중요한 법원(法源)이 된다. 학생의 인권보장과 관련된 법률은 아니지만, 주별로 학생권리 선언문을 채택한 경우도 있다. 예컨대, 헤센 주(Hessen)의 경우 체벌과 모욕

적인 교사의 행위에 항의할 권리,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과잉징계에 대해 항의할 권리, 학생기록부를 열람할 권리, 자신의 징계에 대한 알권리와 반론할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6) 글로벌 아젠다의 적용

1) 스포츠와 인권, 법적 한계

BBC 기자는 최근 Hannah Mouncey와 Rachel McKinnon라는 두 명의 트랜스젠더 선수를 인터뷰하는 기사를 작성했다. 두 선수 모두 인권에 근거하여 그들은 여성 스포츠인에 포함된다. 스포츠는 법적으로 보편적 인권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비준국에 대해 법적 지위를 가진 UN 국제 인권 선언이나 규약에는 '스포츠 권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 인권 프레임 워크는 세계 인권 선언 (UDHR),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ESCR)으로 구성된다. 또한 아동 권리 협약 (CRC)은 소말리아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비준되어 법적 구속력이 있다. 스포츠는 보편적인 인권으로서 법적으로 보호되지는 않지만 더 넓은 인권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UDHR 제24조는 휴식과 여가에 대한 권리, ICESCR 제12 조는 '모든 사람이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향유할 권리', 제15조는 '문화에 참여할 권리'에 관한 것이다. 또한 CRC 제 31 조는 '아동의 휴식과 여가, 아동의 나이에 맞는 놀이 및 여가 활동,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권리가 엘리트 스포츠와 반드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정의가 배타적이며 자격에 따라 다르게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UN 국제 인권 선언과 규약은 남녀 간의 동등한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ICCPR 제2조는 특히 성별에 관계없이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으며, 제3조는 '현 규약에 명시된 모든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남성과 여성의 평등 한 권리'를 더욱 명확하게 언급한다. ICESCR은 개인을 사회 구조 내에 위치시키고 사회, 경제 및 문화 상품 서비스와 보다 균등한 기회의 분배를 위해 노력하는 사회 경제적 및

문화적 권리를 다룬다. 제2조에서는 성별에 근거한 차별을 제거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한다. CRC는 국가가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이 관할 내의 각 아동에 대해 본 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도록 요구하며 구체적으로 성별을 언급한다.

2) 스포츠와 페어플레이

올림픽 스포츠 정신은 공정한 플레이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2018년 IOC 헌장에서 올림픽의 7가지 기본 원칙을 설명하는 것이다. 원칙4는 '인권으로서의 스포츠'를 언급하지만 더 나아가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음'과 '우정, 연대 및 공정한 플레이 정신으로 상호 이해'를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권리에 대한 주장은 다른 모든 사람의 동등한 권리를 인정해야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인권 개념의 핵심이다. 이것이 원칙1에서 '보편적인 기본 윤리 원칙에 대한 존중'을 포함하는 이유이며, 원칙6은 '권리와 자유의 향유는… 어떤 종류의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한다'고 명시하고 구체적으로 성별을 지칭한다. IOC의 추가 미션1은 '스포츠에서 페어플레이 정신이 우세하다는 것'을 요약하고 있으며, 미션8은 구체적으로 '모든 수준과 모든 구조에서 여성의 스포츠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남녀평등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IOC 2018 윤리 강령은 위에 설명된 '우정, 연대 및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상호 이해가 필요한 올림픽 정신에 대한 존중'과 '인권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반복한다. 올림픽과 스포츠 무브먼트의 거버넌스에 대한 보편적 원칙은 '공정성과 페어플레이가 경쟁의 핵심 요소다. 페어플레이는 스포츠의 정신이다.'

3) 스포츠와 양성평등

IOC는 남녀 간의 공정성과 평등과 관련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남성만 참가할 수 있었던 1세기 전의 올림픽부터 선수의 40%가 여성이었던 2014년 동계 올림픽까지 여성의 올림픽 참가 역사를 설명했다.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는 여성이 선수의 45%를 차지했다. IOC의 스포츠 성평등 촉진 이니셔티브는 스포츠가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과 소녀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가장 강력한 플랫폼 중 하나라고 분명히 밝혔다. 올림픽 무브먼트의 리더인

IOC는 성평등에 관한 중요한 책임이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기본 인권이자 올림픽 헌장의 기본 원칙이다.

올림픽 무브먼트 역사에서 중요한 시기는 1900년에 처음으로 여성이 올림픽에 참가했으며 테니스, 세일링, 크로켓 승마 및 골프에 참가하는 선수의 2.2%(여성 22명)를 차지했음을 보여준다. 봅슬레이는 2002년에 여성에게 참가가 개방되었고 2006년에는 골프와 럭비, 2012년에는 복싱의 참가로 이어졌다. 차별 금지법은 많은 국가에서 법으로 확립되어 있으며, 실제로 영국에서는 평등법이 적용된다. 이는 (a)공정한 경쟁을 위해 또는 (b)경쟁자의 안전을 목적으로 성별의 재배정을 통해 단일 성별 스포츠에서 배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또한 '스포츠나 이벤트에서 한 성별의 평균적인 체력 또는 체격이 다른 성별의 평균에 비해 불리하게 될 상황'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밝혔다. 이 법안의 중요성은 성별의 특성과 관련하여 남녀 활동에서 간접적인 차별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따라서 여성이 스포츠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단일 성별 경기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스포츠에 대한 권리는 특정 개인이 어떤 수준에서, 어떤 종목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대신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와 공정한 경쟁의 중심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스포츠 규칙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었다. 모든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 한 공정하게 구성되어야한다. 따라서 IOC 및 국제스포츠연맹을 포함한 스포츠 기관의 주요 목적은 참가자를 위한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을 보장하는 것이다. 종목마다 연령 및 성별과 같은 규칙을 포함하여 다른 자격 기준이 있다. 모든 스포츠는 아니지만 많은 스포츠에서 여성이 인체 측정, 생리 및 성능 측정 범위에서 여성과 남성 사이의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여성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일 성별 범주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두 성별 범주 간의 변수에 대한 평균 측정값을 기반으로 한다. 예를 들어 2017-2020년 국제배구연맹 공식 배구 규정 2.1절에서는 '남자는 2.43m, 여자는 2.24m 높이로 설정된 네트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여성과 남성 사이의 신장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 예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신장 분포가 겹치더라도 신장이 경쟁 우위 인 경우, 선수들은 각 성별의 신장 범위에서 최고가 되는 경향이 있다. 스포츠

가 소녀와 여성에 대한 간접적인 차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여성과 남성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생물학적 차이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단일 성별 경기는 생물학적 이유로 인해 예외가 아닌 규칙이 되는 경향이 있으며, 여성을 위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함으로써 아직 평등이 달성되지 않았지만 동계 올림픽과 하계 올림픽에 참가하는 여성 비율이 경이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했다. 33세의 브라질 배구 선수 Tifanny Abreu는 2020 도쿄올림픽에서 여자 경기에 출전하는 최초의 남성 태생 트랜스젠더 선수 중 한 명으로 예상된다. IOC 트랜스젠더 지침은 도움이 되지 않고 모순적이다.

평등한 경기장, 공정한 플레이, 간접 차별 철폐라는 여성 스포츠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트랜스젠더 선수를 어떻게 분류할지에 대한 질문은 어렵다. 현재 IOC 트랜스젠더 가이드라인은 모순적으로 보인다. 공정 경쟁의 중심 원칙이 되는 포인트는 ‘스포츠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것이며 참여 제한은 필요하고 그 목표 달성에 비례하는 정도로 적절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IOC는 IOC 합의 회의에서 남성 및 여성 경기에서 경쟁 할 수 있는 자격을 결정할 때 아래 정신을 스포츠 조직이 고려하는 것에 동의했다.

-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환한 사람은 제한 없이 남성 부문에서 경쟁 할 수 있다.
-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사람은 다음 조건에 따라 여성 부문에서 경쟁할 수 있다.
- 선수는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성이라고 선언하고, 이 선언은 최소 4년 동안 변경할 수 없다.
- 선수는 첫 경기 전 최소 12개월 동안 혈청 내 총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10nmol/L 미만임을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IOC 트랜스젠더 지침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 DSD/인터 섹스 선수를 위해 설정된 규칙에서 단순히 빌려온 것으로 보인다. 10nmol/L 테스토스테론의 역치 수준은 여성의 평균 수준보다 10배 높게 설정되어 있다. 이 규칙은 또한 과거 테스토스테론에 노출된 후에 지속되는 경기력의 이점을 고려하지 않는다.

스포츠에 대한 권리는 다양한 국제 인권 규약 및 평등법에 명시된 바와 같

이 공정한 경기의 중요성과 특히 성별과 관련된 직간접적 차별을 모두 제거하는데 달려있다. 이것은 소녀와 여성 스포츠의 미래에 가장 중요하다. IOC 트랜스젠더 정책은 단일 성별 경기를 유지하는 생물학적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트랜스젠더 선수의 테스토스테론 근거로 여성 스포츠에 포함시키는데 불완전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불만족스럽다.

참고문헌

강창곤(2004), “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학업결손에 관한 인식”, 한국체육교육학회(편),『한국체육교육학회지』, 제8권 제4호, 92-105쪽.

고은하 외(2005), 「운동선수 구타 실태 조사 및 근절 방안」, 체육과학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2007),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문.

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2007), 「학교스포츠클럽 성공을 위한 정책제안」, 2007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고려대학교 스포츠교육학실(2006), 「학생선수도 공부하고 싶다: 학교운동부 실태에 대한 최초의 종합보고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국회문화관광위원회(2005), 「운동선수 구타 근절과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을 위한정책토론회」.

권인숙(2005), “헤게모니적 남성성과 병역의무: 카투사의 남성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편), 『한국여성학』, 제21권 제2호, 223-53쪽.

권인숙 외(2004), 「군대 내 남성 간 성폭력, 성의식 실태조사」, 한국성폭력상담소, 국가인권위원회.

김기오·강정호(2002), “고교 운동선수의 운동만족도와 아노미 및 사회적 일탈행동의관계”, 한국체육학회(편), 『한국체육학회지』, 제41권 제5호, 71-83쪽.

김병철(2007), “중·고 체조선수들의 체벌실태 및 코칭행동과 체벌인식에 관한 연구.”『한국스포츠리서치』 제18권 5호.

김석희(2007), “대학 운동선수들의 체벌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31호.

김선희(2007), “청소년 스포츠에 대한 반성과 실천적 대안: 전인적 청소년 스포츠.”『코칭능력개발지』 제9권 제3호.

김승재·김진희(2007), “스포츠교육모형에서의 젠더 관점”, 한국체육학회(편), 『한국체육학회지』, 제46권 제1호, 377-90쪽.

김신일(1999), “학습권의 정당성과 위상”,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편),

『교육이론과 실천』, 제9권, 5-13쪽.

김애랑(1994), “합숙훈련 기간과 조건이 운동선수의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球技種目을中心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김영갑·김동규(2001), “스포츠 현장의 체벌과 보상”, 『한국체육철학회지』, 제9권 제2호.

김용승(2007), “체벌과 선수의 정신력 강화”, 『스포츠과학』, 여름호.

김응식(2001), “체벌에 대한 운동선수와 지도자 태도”, 한국체육학회(편), 『한국체육학회지』, 제40권 제3호, 59-70쪽.

김익겸 외(2001), “운동선수와 일반학생의 자아개념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부설한국체육과학연구소(편), 『체육학논문집』, 제29집, 85-95쪽.

김재원 외(2004), “폭력을 경험한 운동선수의 정서상태 분석”, 한국체육학회(편), 『한국체육학회지』, 제44권 제2호, 133-40쪽.

김정명(1999), “청소년 인권의 사각지대: 체육특기생”, 한국청소년학회(편), 『청소년학연구』, 제6권 제2호, 21-40쪽.

남상우 외(2007), “스포츠에서의 성희롱 인식 차이 분석”, 한국체육학회(편), 『한국체육학회지』, 제46권 제4호, 117-27쪽.

류태호 외(2003), 「학교체육 정책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문석주·이강헌(2005), “중학교 운동선수들의 스포츠형태와 종목유형별 스트레스 수준”, 한국체육과학회(편), 『한국체육과학회지』, 제14권 제2호, 267-77쪽.

부록 1. 국가별 스포츠 인권 관련 주요 법제/정책

국가	자료유형	자료 주제	자료 제목	자료 제목_원문
미국	법제	헌법	헌법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미국	법제	체육	테드 스티븐스 올림픽/아마추어 스포츠법	Ted Stevens Olympic and Amateur Sports Act
미국	법제	체육	직업·아마추어 스포츠 보호법	Professional and Amateur Sports Protection Act
미국	법제	체육	스포츠에이전트 책임 신뢰법	Sports Agent Responsibility and Trust Act
미국	법제	체육	스포츠 의료 면허 명확성법 2018	Sports Medicine Licensure Clarity Act of 2018
미국	법제	체육	국가체력스포츠영양재단설립법	National Foundation on Fitness, Sports, and Nutrition Establishment Act
미국	법제	형사	형법 제11장 뇌물공여, 뇌물수수, 이해충돌 > 제224조 스포츠 시합에서의 뇌물	18 USC Ch. 11-Bribery, Graft, and Conflict of Interest
미국	법제	형사	형법 제11A장 아동지원	18 USC Ch. 11A-Child Support
미국	법제	형사	형법 제109A장 성적학대	18 USC Ch. 109A-Sexual Abuse
미국	법제	형사	형법 제109B장 아동성범죄자 신상 및 범죄 등록부	18 USC Ch. 109B-Sex Offender and Crimes Against Children
미국	법제	형사	형법 제110장 아동 성적 착취 및 학대	18 USC Ch. 110 Sexual Exploitation and Other Abuses of Children
미국	법제	인권_아동	아동학대피해자법	Victims of Child Abuse Act
미국	법제	형사	미국법전 제34편 제201장 피해자 권리, 보상 및 지원 (범죄피해자법 1984)	34 USC Chapter 201-Victim Rights, Compensation, and Assistance = Victims of Crime Act of 1984
미국	법제	인권_아동	미국법전 제34편 제209장 아동보호 및 안전	34 USC Chapter 209-Child Protection and Safety
미국	법제	인권_아동	미국법전 제34편 제211장 아동착취근절	34 USC Chapter 211-Combating Child Exploitation
미국	법제	인권_아동	미국법전 제34편 제213장 강간피해아동양육권	34 USC Chapter 213-Rape Survivor Child Custody
미국	법제	인권_아동	미국법전 제34편 제215장 성범죄자 이동의 사전고지	34 USC Chapter 215-Advanced Notification of Traveling Sex Offenders
미국	법제	인권_아동	미국법전 제34편 제401장 아동학대범죄 정보 및 신원조사	34 USC Chapter 401-Child Abuse Crime Information and Background Checks

미국	법제	체육	스페셜올림픽 스포츠 및 역량강화법 2004	Special Olympics Sport and Empowerment Act of 2004
미국	법제	체육	스포츠방송법	Sports Broadcasting Act
미국	법제	체육	직업복싱안전법	Professional Boxing Safety Act of 1996
미국	법제	인권_기타	민권위원회법	Civil Rights Commission Act of 1983
미국	법제	인권_기타	민권법	Civil Rights
미국	법제	인권_장애	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미국	법제	교육	초중등교육법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of 1965
미국	법제	교육	고등교육법	Higher Education Act of 1965
미국	법제	교육	팻시 타케모토 밍크 동등교육기회법	Patsy Takemoto Mink Equal Opportunity in Education Act
미국	법제	교육	팻시 타케모토 밍크 동등교육기회법 하위규정: 미국연방규정 제34편 제106부	34 CFR Part 106—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 IN EDUCATION PROGRAMS OR ACTIVITIES RECEIVING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미국	법제	체육	미국법전 제21편 제25장 약물남용금지 기타조항	21 USC CHAPTER 25—MISCELLANEOUS ANTI-DRUG ABUSE PROVISIONS
미국	법제	교육	지역학교 유소년 서비스 및 지도 지원금 사업법 1994	Community Schools Youth Services and Supervision Grant Program Act of 1994
미국	법제	체육	행정명령 제13889호, 2019.09.27.	Executive Order 13889 of September 27, 2019
미국	법제	체육	행정명령 제13265호, 2002.06.06.	Executive Order 13265 of June 6, 2002
미국	법제	체육	연방자문위원단법	Federal Advisory Committee Act
미국	법제	인권_기타	연방근로자 차별보복 금지 및 고시법 2002	Notification and Federal Employee Antidiscrimination and Retaliation Act of 2002
미국	법제	인권_기타	공정근로기준법 1938	Fair Labor Standards Act of 1938
미국	내규	체육	미국올림픽위원회 규칙	Bylaws of the United States Olympic & Paralympic Committee
미국	내규	체육	미국올림픽위원회 규칙 개정안, 2020.06.19.	Proposed Amendments to Bylaws of the United States Olympic & Paralympic Committee, June 19, 2020
미국	정책자료	체육	미국올림픽위원회: 반도핑 개혁에 대한 위원회 성명	USOC Statement Regarding Anti-Doping Reform

미국	정책자료	체육	미국올림픽위원회: 국가반도핑정책	USOPC National Anti-Doping Policy
미국	정책자료	체육	미국올림픽위원회 행동강령	USOPC Code of Conduct
미국	정책자료	체육	미국올림픽위원회: 이해충돌정책	Conflict of Interest Policy
미국	정책자료	체육	증정품 및 접대 정책	Gift and Entertainment Policy
미국	정책자료	체육	미국올림픽위원회 규칙 제9조의 제소 양식	Section 9 Complaint Form
미국	정책자료	체육	미국중재협회 신청양식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Complaint Form
미국	정책자료	체육 인권	미국올림픽위원회 선수안전정책	USOPC Athlete Safety Policy
미국	정책자료	체육	미국올림픽&패럴림픽운동 안전스포츠규정	Safesport Code for the U.S. Olympic and Paralympic Movement
미국	정책자료	체육	미국올림픽위원회 4개년 의회보고서 2009-2012	Quadrennial Congressional Reports 2009-12
미국	정책자료	체육	미국올림픽위원회 4개년 의회보고서 2013-2016	Quadrennial Congressional Reports 2013-16
미국	내규	체육	미국올림픽위원회 선수자문위원단 규칙	BYLAWS of the USOC ATHLETES' ADVISORY COUNCIL
미국	내규	체육	미국올림픽위원회 복합스포츠단체위원단 규칙	USOC MULTISPORT ORGANIZATIONS COUNCIL BYLAWS
미국	내규	체육	미국올림픽위원회 전국단위조직(NGB)위원단 규칙	USOC NATIONAL GOVERNING BODIES COUNCIL BYLAWS
미국	정책자료	체육	미국올림픽위원회 다양성실무단보고서 2011년 12월 12일	Diversity Working Group Report December 12, 2011
미국	정책자료	체육	미국올림픽위원회 안전한 훈련 환경을 위한 실무단: 미국올림픽위원회 이사회 권고 2010년 9월 28일	Working Group for Safe Training Environments: Recommendations to the USOC Board of Directors, September 28, 2010
미국	정책자료	체육	미국올림픽위원회 전국단위조직(NGB) 선수 협약 관련 정책	USOC Policy Regarding NGB Athlete Agreements
미국	정책자료	체육	선수-전국단위조직(NGB) 연대 조사위 보고서	Athlete & NGB Engagement Commission Report
미국	정책자료	체육 인권	미국올림픽위원회 선수옴부즈맨	Athlete Obmudsman: About Us
미국	정책자료	체육 인권	미국올림픽위원회 선수옴부즈맨: 선수법무지원사업	Athlete Obmudsman: Athlete Legal Aid Program
미국	정책자료	체육 인권	미국올림픽위원회 선수옴부즈맨: 선수법무지원사업 온라인 신청서	Athlete Obmudsman: Athlete Legal Aid Program Application
미국	정책자료	체육 인권	미국올림픽위원회 선수옴부즈맨: 선수법무지원사업 변호사 목록	Athlete Obmudsman: Attorneys

미국	정책자료	체육_인권	미국안전스포츠센터: 미성년 선수 학대 예방 정책	Minor Athlete Abuse Prevention Policies (MAAPP)
미국	정책자료	체육_인권	미국안전스포츠센터: 교육	Training and Education Services
미국	정책자료	체육_인권	미국안전스포츠센터: 교육과정 목록	Training: Browse our catalog of courses
미국	정책자료	체육_인권	미국안전스포츠센터: 성적 학대 생존자를 위한 정보	Resources for Survivors of Sexual Abuse
미국	정책자료	체육_인권	미국안전스포츠센터: 괴롭힘 예방(코치자료)	Preventing Bullying: What Great Coaches Need to Know
미국	정책자료	체육_인권	미국안전스포츠센터: 괴롭힘의 이해(리플렛)	Understanding Bullying
미국	정책자료	체육_인권	미국안전스포츠센터: 신참 괴롭힘의 이해(리플렛)	Understanding Hazing
미국	정책자료	체육_인권	미국안전스포츠센터: 대응·해결 절차	RESPONSE AND RESOLUTION PROCESS
미국	정책자료	체육_인권	미국안전스포츠센터: 중앙징계데이터베이스 개요 및 정의	Centralized Disciplinary Database: Overview & Definitions
미국	정책자료	체육_인권	미국안전스포츠센터: 중앙징계데이터베이스 심판기관이 전국단위조직(NGB), 지역연계단체(LAO), 미국올림픽&패럴림픽위원회(USOPC)인 사안	Centralized Disciplinary Database: MATTERS ADJUDICATED BY THE NGBS / LAOS / USOPC
미국	정책자료	체육_인권	미국안전스포츠센터: 중앙징계데이터베이스 이용약관	Terms and Conditions of Use
미국	정책자료	체육_인권	미국안전스포츠센터: 문제의 신고	Report a Concern
미국	정책자료	체육	대통령체력스포츠자문위원회(PCSFN) 소개	About PCSFN
미국	정책자료	체육	대통령체력스포츠자문위원회(PCSFN) 소개: 미션과 비전	About PCSFN > Our Mission & Vision
미국	정책자료	체육	대통령체력스포츠자문위원회(PCSFN) 소개: 근거법령	About PCSFN > Executive Orders and Charter
미국	정책자료	체육	대통령체력스포츠자문위원회(PCSFN) 소개: 연혁	About PCSFN > Our History
미국	정책자료	체육	대통령체력스포츠자문위원회(PCSFN) 소개: 2018.09.21.의사록	About PCSFN > Council Meetings
미국	정책자료	체육	대통령체력스포츠자문위원회(PCSFN) 소개: 2016.05.16.의사록	About PCSFN > Council Meetings
미국	정책자료	체육	대통령체력스포츠자문위원회(PCSFN) 소개: 2015.05.05.의사록	About PCSFN > Council Meetings
미국	정책자료	체육	대통령체력스포츠자문위원회(PCSFN) 소개: 2014.09.16.의사록	About PCSFN > Council Meetings
미국	정책자료	체육	대통령체력스포츠자문위원회(PCSFN) 소개: 국가체력재단	About PCSFN > Our Foundation
미국	정책자료	체육	미국 보건부: 국가 유소년 스포츠 전략 웹페이지	The National Youth Sports Strategy

미국	정책자료	체육	미국 보건부: 유소년층 체육 활동 증대 전략	Physical Activity Guidelines for Americans Midcourse Report: Strategies to Increase Physical Activity among Youth
미국	정책자료	체육	2018 체육활동 지침 자문단 과학 보고서	2018 Physical Activity Guidelines Advisory Committee Scientific Report
미국	정책자료	체육	미국 보건부: 미국인 체육활동 지침, 제2판	Physical Activity Guidelines for Americans 2nd Edition
미국	정책자료	체육	미국 보건부: 무브 유어 웨이 홍보사업	Move Your Way Campaign
미국	정책자료	교육	체육 교과 및 활동 증대: 학교 대상 기초자료 2019	INCREASING PHYSICAL EDUCATION AND PHYSICAL ACTIVITY: A FRAMEWORK FOR SCHOOLS 2019
미국	정책자료	교육	교내 체육 활동 종합 프로그램: 학교 지침	COMPREHENSIVE SCHOOL PHYSICAL ACTIVITY PROGRAMS: A GUIDE FOR SCHOOLS
미국	정책자료	체육	국가체력재단: 미국 유소년 스포츠 서약	American Youth Sports Pledge
미국	정책자료	체육	국가체력재단: 미국 유소년 스포츠 서약 참여자 명단	American Youth Sports Pledge
미국	정책자료	교육	국가체력재단: 대통령유소년체력사업(PYFP)의 체육교사 대상 자료	Physical Educator Resource Guide to the Presidential Youth Fitness Program
미국	정책자료	체육	국가체력재단: 대통령유소년체력사업(PYFP)의 학부모 대상 자료	Parent Resource Guide to the Presidential Youth Fitness Program
미국	정책자료	교육	국가체력재단: 체육 교육의 포용적 접근	Inclusive Approaches to Physical Education
미국	정책자료	교육	국가체력재단: 보조교사 협력에 대한 체육교사 지침	Physical Educator's Guide for Working with Paraprofessionals
미국	정책자료	체육	국가체력재단 연간보고서 2017	2017 Annual Report
미국	정책자료	체육	국가체력재단 연간보고서 2016	2016 Annual Report
미국	정책자료	체육	국가체력재단 연간보고서 2015	2015 Annual Report
미국	정책자료	체육	국가체력재단 소득세면제단체신고서 2017	2017 Form 990
미국	정책자료	체육	국가체력재단 소득세면제단체신고서 2016	2016 Form 990
미국	정책자료	체육	국가체력재단 소득세면제단체신고서 2015	2015 Form 990
미국	정책자료	체육	국가체력재단 소득세면제단체신고서 2014	2014 Form 990
미국	정책자료	체육, 인권	포용적보건센터: 포용적 보건 원칙 및 전략	Inclusive Health Principles and Strategies
미국	정책자료	교육	사례조사: 학교 기반 건강의 포용성	CASE STUDIES: Inclusion in School-Based Wellness

미국	정책자료	인권_기타	민권위원회 기관소개: 미션	U.S. Commission on Civil Rights > Mission
미국	정책자료	인권_기타	민권위원회 기관소개: 권한	U.S. Commission on Civil Rights > Powers
미국	정책자료	인권_기타	민권위원회: 2019년 실적보고서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PAR) FOR FISCAL YEAR 2019
미국	정책자료	인권_기타	민권위원회: 2018년 실적보고서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PAR) FOR FISCAL YEAR 2018
미국	정책자료	인권_기타	민권위원회: 2017년 실적보고서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PAR) FOR FISCAL YEAR 2017
미국	정책자료	인권_기타	민권위원회: 2016년 실적보고서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PAR) FOR FISCAL YEAR 2016
미국	정책자료	인권_기타	민권위원회: 2015년 실적보고서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PAR) FOR FISCAL YEAR 2015
미국	정책자료	인권_기타	민권위원회: 2014년 실적보고서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PAR) FOR FISCAL YEAR 2014
미국	정책자료	인권_기타	민권위원회: 2013년 실적보고서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PAR) FOR FISCAL YEAR 2013
미국	정책자료	인권_기타	민권위원회: 2012년 실적보고서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PAR) FOR FISCAL YEAR 2012
미국	정책자료	인권_기타	민권위원회: 2011년 실적보고서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PAR) FOR FISCAL YEAR 2011
미국	정책자료	인권_기타	민권위원회: 2010년 실적보고서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PAR) FOR FISCAL YEAR 2010
미국	정책자료	인권_기타	민권위원회: 전략기획 2018-2022	DRAFT STRATEGIC PLAN FOR FISCAL YEARS 2018 – 2022
미국	정책자료	인권_기타	민권위원회: 전략기획 2014-2018	DRAFT STRATEGIC PLAN FOR FISCAL YEARS 2014 – 2018
미국	내규	인권_기타	민권위원회: 고용기회평등 정책, 계획 및 절차	EEO Policies, Plans, and Procedures
미국	내규	인권_성별	민권위원회: 고용기회평등 정책, 계획 및 절차 > 민권위원회의 고용기회평등 약속	U.S. Commission on Civil Rights' Commitment to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미국	내규	인권_기타	민권위원회: 고용기회평등 정책, 계획 및 절차 > 직장 내 폭력 대응 정책 공고	Policy Statement on Wokplace Violence

미국	내규	인권_기타	민권위원회: 고용기회평등 정책, 계획 및 절차 > 괴롭힘 금지 정책	U.S. Commission on Civil Rights Anti-Harassment Policy
미국	내규	인권_성별	민권위원회: 고용기회평등 정책, 계획 및 절차 > 직장 내 성추행	U.S. Commission on Civil Rights Policy Statement on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미국	내규	인권_성별	민권위원회: 고용기회평등 정책, 계획 및 절차 >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 차별	U.S. Commission on Civil Rights Policy Statement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Discrimination
미국	내규		민권위원회: 고용기회평등 정책, 계획 및 절차 >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U.S. Commission on Civil Rights Policy Statement 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미국	내규	인권_기타	민권위원회: 고용기회평등 정책, 계획 및 절차 > 「연방근로자 차별보복 금지 및 고시법 2002」에 따른 기관보고서 2020	USCCR No FEAR Act Report FY 2020
미국	내규	인권_기타	민권위원회: 고용기회평등 정책, 계획 및 절차 > 「연방근로자 차별보복 금지 및 고시법 2002」에 따른 기관보고서 2020	USCCR No FEAR Act Report FY 2019
미국	내규	인권_장애	민권위원회: 고용기회평등 정책, 계획 및 절차 > (장애인 대상) 합리적 제공에 대한 행정 지시	Administrative Instruction: Provision of Reasonable Accommodation
미국	정책자료	인권_기타	민권위원회: "권리는 현실인가?" 2019년 법정보고서	Are Rights a Reality? 2019 Statutory Report
미국	정책자료	인권_기타	민권위원회: "미국 소수자 투표권 접근성 점검" 2018년 법정보고서	An Assessment of MINORITY VOTING RIGHTS ACCESS in the United States. 2018 Statutory Report
미국	정책자료	인권_인종	민권위원회: "유색인종 집단을 겨냥한 벌금 및 수수료" 2017년 법정보고서	TARGETED FINES AND FEES AGAINST COMMUNITIES OF COLOR. 2017 Statutory Report
미국	정책자료	인권_기타	민권위원회: "환자 거부" 2014년 법정보고서	Patient Dumping. 2014 Statutory Report
미국	정책자료	인권_성별	민권위원회: "군대 성폭력" 2013년 법정보고서	Sexual Assault in the Military. 2013 Statutory Report
미국	정책자료	인권_기타	민권위원회: "선거구 조정 및 2010 인구총조사" 2012년 법정보고서	Redistricting and the 2010 Census: Enforcing Section 5 of the Voting Rights Act. 2012 Statutory Report
미국	정책자료	인권_기타	민권위원회: "동등한 지위 관계에서의 폭력과 따돌림" 2011년 법정보고서	Peer-to-peer violence and Bullying: Examining the Federal Response. 2011 Statutory Report
미국	정책자료	인권_인종	민권위원회: "인종 중립적인 법률 집행인가?" 2010 중간보고서	Race Neutral Enforcement of the Law? Interim Report. 2010 Report

미국	배경자료	인권_인종	민권위원회: 미국 흑인에 대한 경찰 폭력 사태에 대한 오리건주위원단 성명	Oregon Advisory Committee to the U.S. Commission on Civil Rights Issues Statement in the Wake of Police Violence Black Americans
미국	배경자료	인권_인종	민권위원회: 형사사법체계의 인종차별을 규탄하는 코네티컷주위원단 성명	Connecticut Advisory Committee to the U.S. Commission on Civil Rights Statement Condemning Racism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Committing to Continue to Examine Racial Disparities in Connecticut Policing
미국	배경자료	인권_기타	민권위원회: 미국 이민국의 귀화신청 대기자명단의 코로나19 시국 중 처리를 촉구하는 콜로라도주위원단 성명	Colorado Advisory Committee Calls on the U.S. Commission on Civil Rights to Urge the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 to Address Naturalization Backlog by Modifying Oath and Allegiance Ceremonies During COVID-19 Crisis
미국	배경자료	인권_기타	민권위원회: 차기 대통령 선거 부재자 투표 도입을 촉구하는 인디애나주위원단 성명	Indiana Advisory Committee to the U.S. Commission on Civil Rights Urges Adoption of No-Excuse Absentee Voting in Upcoming Election
미국	배경자료	인권_인종	민권위원회: 경찰의 민간인 살해 이후 국면에서 일관되고 지속적인 민권 보장을 위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위원단 성명	South Carolina Advisory Committee to the U.S. Commission on Civil Rights Issues Statement Pledging United Support and Continued Commitment to Civil Rights in South Carolina After Police Killings
미국	배경자료	인권_인종	민권위원회: 경찰의 민간인 살해와 경찰행정의 총체적 변화를 촉구하는 매사추세츠주위원단 성명	Massachusetts Advisory Committee to the U.S. Commission on Civil Rights Issues Statement Regarding Police Killings and Urging Comprehensive Changes to Policing in the Commonwealth
미국	배경자료	인권_인종	민권위원회: 경찰의 민간인 살해에 대한 매릴랜드주위원단 성명	Maryland Advisory Committee to the U.S. Commission on Civil Rights Supports Statements by Commission and Advisory Committees on Police Killings

미국	배경자료	인권_인종	민권위원회: 인종 정의에 대한 테네시주위원단 성명	Tennessee Advisory Committee to the U.S. Commission on Civil Rights Issues Statement in Regard to Racial Justice
미국	배경자료	형사	민권위원회: "2018 경찰행정보고서"에 기초한 경찰 개혁을 촉구하는 미네소타주위원단 성명	Minnesota Advisory Committee to the U.S. Commission on Civil Rights Urges Police Reform based on 2018 Report on Police Practices
미국	배경자료	형사	민권위원회: 코로나19 위기 속 주내 이민자 구금에 대한 매사추세츠주위원단 성명	Statement of the Massachusetts Advisory Committee to the U.S. Commission on Civil Rights on the Detention of Immigrants in the Commonwealth During the COVID-19 Crisis
미국	배경자료	형사	민권위원회: 코로나19와 주내 수용자(收容者)에 대한 매사추세츠주위원단 성명	Statement of the Massachusetts Advisory Committee to the U.S. Commission on Civil Rights Regarding COVID-19 and Incarcerated Persons in the Commonwealth
미국	배경자료	형사	민권위원회: 주교정시설 내 코로나19에 대한 코네티컷주위원단 성명	Statement of the Connecticut Advisory Committee Concerned by COVID-19 in State Correctional Facilities
미국	배경자료	교육	민권위원회: 공교육의 소수자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변경 방안 조사에 대한 오클라호마주위원단 성명	Statement of the Oklahoma Advisory Committee to the U.S. Commission on Civil Rights Regarding Study of Changes to Affirmative Action in Public Education
미국	배경자료	인권_인종	민권위원회: 비원주민 공립학교에서 미국 원주민의 마스코트 사용에 대한 네브래스카주위원단 성명	Statement of the Nebraska Advisory Committee to the U.S. Commission on Civil Rights Regarding the Use of Native American Indian Mascots in Non-Native Public Schools
미국	배경자료	형사	민권위원회: 메인주의 증오범죄에 대한 메인주위원단 권고 (2020/4)	Advisory Memorandum on Hate Crimes in Maine
미국	배경자료	형사	민권위원회: 투표권과 중범죄 유죄확정에 대한 워싱턴주위원단 권고 (2020/6)	Voting Rights and Felony Convictions

미국	배경자료	인권_장애	민권위원회: 정신질환자와 웨스트버지니아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웨스트버지니아주위원단 권고	Advisory Memorandum on the Interaction Between Individuals with Mental Health Issues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West Virginia
미국	배경자료	형사	민권위원회: 노스다코다주 증오범죄에 대한 노스다코다주위원단 권고	Advisory Memorandum on Hate Crimes in North Dakota
미국	배경자료	인권_인종	민권위원회: 사우스다코다주 은근한 인종차별에 대한 주위원단 권고	Summary of Briefings on Subtle Racism in South Dakota
미국	배경자료	형사	민권위원회: 매사추세츠주 증오범죄에 대한 주위원단 권고	Advisory Memorandum on Hate Crimes in Massachusetts
미국	배경자료	인권_기타	민권위원회: 투표권에 대한 로드아일랜드주위원단 권고	Advisory Memorandum on Voting Rights Briefing
미국	배경자료	형사	민권위원회: 기소 투명성 강화를 위한 코네티컷주의회 법안에 대한 코네티컷주위원단 권고	Advisory Memorandum on Pending Legislation
미국	배경자료	인권_인종	민권위원회: 메인주 형사기소 및 판결의 인종차별에 대한 주위원단 권고	Racial Discrimination in Criminal Prosecution and Sentencing in Maine
미국	배경자료	인권_기타	민권위원회: 버몬트주 주거 차별에 대한 주위원단 권고	Housing Discrimination in Vermont
미국	배경자료	인권_기타	민권위원회: 인디애나주 투표권에 대한 주위원단 권고(2018/5)	Voting Rights in Indiana
미국	배경자료	인권_기타	민권위원회: 오하이오주 투표권에 대한 주위원단 권고(2018/5)	Voting Rights in Ohio
미국	배경자료	형사	민권위원회: 매릴랜드주 수수료, 벌금 및 보석(保釋) 제도개혁에 대한 주위원단 권고	Fees and Fines and Bail Reform in Maryland
미국	배경자료	인권_성별	민권위원회: 유타주의 민권과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에 대한 유타주위원단 보고서 (2020/7)	Civil Rights and the Gender Wage Gap in Utah
미국	배경자료	형사	민권위원회: 평등주 내의 증오범죄 점검에 대한 와이오밍주위원단 보고서 (2020/7)	Examining Hate Crime in the Equality State
미국	배경자료	인권_기타	민권위원회: 앨라배마주의 투표장벽에 대한 앨라배마주위원단 보고서 (2020/2)	Barriers to Voting in Alabama
미국	배경자료	형사	민권위원회: 미시시피주의 기소권과 민권에 대한 미시시피주위원단 보고서 (2020/6)	Prosecutorial Discretion and Civil Rights in Mississippi
미국	배경자료	인권_장애	민권위원회: 「공정근로기준법」 제14조제c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 장애인 임금 관련 청문 결과에 대한 애리조나주위원단 보고서 (2020/4)	Subminimum Wag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Under Section 14(c) of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미국	배경자료	인권_기타	민권위원회: 미시간주의 투표권과 접근성에 대한 미시간주위원단 보고서 (2020/4)	Voting Rights and Access in Michigan
미국	배경자료	형사	민권위원회: 아칸소주에 만연한 수감과 민권에 대한 아칸소주위원단 보고서 (2020/4)	Mass Incarceration & Civil Rights in Arkansas
미국	배경자료	교육	민권위원회: 오하이오주 교육비 지원과 민권에 대한 오하이오주위원단 보고서 (2020/2)	Education Funding and Civil Rights in Ohio
미국	배경자료	형사	민권위원회: 민권, 감옥 및 정신건강에 대한 네브래스카주위원단 보고서 (2020/3)	Civil Rights, Prisons, and Mental Health
미국	배경자료	교육	민권위원회: 버몬트주 학교교육 격차에 대한 버몬트주위원단 보고서 (2019/12)	School Discipline Disparities in Vermont
미국	배경자료	교육	민권위원회: 뉴욕의 교육 평등에 대한 뉴욕주위원단 보고서 (2020/2)	EDUCATION EQUITY IN NEW YORK
미국	배경자료	인권_인종	민권위원회: 델라웨어주 유색인종사회 내 묵시적 편견과 경찰행정에 대한 델라웨어주위원단 보고서 (2020/1)	Implicit Bias and Policing in Communities of Color in Delaware
미국	배경자료	형사	민권위원회: 테네시주 형사사법체계상 법적 비용 책임에 대한 테네시주위원단 보고서(2019/11)	Legal Financial Obligations in the Tennessee Criminal Justice System
미국	배경자료	교육	민권위원회: 매릴랜드주 학교교육 격차에 대한 매릴랜드주위원단 보고서 (2019/10)	Disparities in School Discipline in Maryland
미국	배경자료	형사	민권위원회: 매사추세츠주의 인신매매에 대한 매사추세츠주위원단 보고서(2019/8)	Human Trafficking in Massachusetts
미국	배경자료	교육	민권위원회: 캔자스주 민권과 교육비에 대한 캔자스주위원단 보고서(2019/9)	Civil Rights and Education Funding in Kansas
미국	배경자료	형사	민권위원회: 웨스트버지니아주 (형사상 유죄판결의) 부수적 결과가 민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위원단 보고서(2019/9)	Civil Rights Impacts from Collateral Consequeces in West Virginia
미국	배경자료	인권_기타	민권위원회: 알래스카주 원주민 투표권에 대한 주위원단 보고서(2019/6)	Alaska Native Voting Rights
미국	배경자료	인권_장애	민권위원회: 경찰행정과 사법행정 관련 정신건강의 시사점에 대한 네바다주위원단 보고서(2019/8)	Mental Health Implications for Policing Practices and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미국	배경자료	인권_기타	민권위원회: 시민권 및 귀화 신청 대기자명단에 대한 민권과 투표권 시사점에 대한 콜로라도주위원단 보고서(2019/9)	Citizenship Delayed: Civil Rights and Voting Rights Implications of the Backlog in Citizenship and Naturalization Applications
미국	배경자료	인권_장애	민권위원회: 조지아주의 장애인권과 민권에 대한 주위원단 보고서(2019/6)	Disability Rights and Civil Rights in Georgia
미국	배경자료	인권_기타	민권위원회: 하와이주 미크로네시아인의 기회평등 장벽에 대한 주위원단 보고서(2019/3)	Micronesians in Hawaii: Migrant Group Faces Barriers to Equal Opportunity
미국	배경자료	인권_장애	민권위원회: 메인주 정신질환자의 범죄화에 대한 주위원단 보고서(2019/5)	The Criminalization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es in Maine
미국	배경자료	인권_기타	민권위원회: 몬태나주 경계도시 차별에 대한 주위원단 보고서(2019/5)	Bordertown Discrimination in Montana
미국	배경자료	형사	민권위원회: 오리건주 인신매매에 대한 주위원단 보고서(2018/2)	Human Trafficking in Oregon
미국	배경자료	인권_기타	민권위원회: 로드아일랜드주의 페이데이 대출에 대한 주위원단 보고서(2018/10)	Payday Lending in Rhode Island
미국	배경자료	인권_기타	민권위원회: 콜로라도주 헌법의 "분리 정책 지원 금지" 조항 및 민권에 대한 그 영향에 대한 주위원단 보고서(2018/9)	THE COLORADO CONSTITUTION'S NO AID TO SECTARIAN INSTITUTIONS CLAUSE AND ITS IMPACT ON CIVIL RIGHTS
미국	배경자료	인권_기타	민권위원회: 뉴멕시코주의 노인 학대에 대한 주위원단 보고서(2018/1)	Elder Abuse In New Mexico
미국	배경자료	인권_기타	민권위원회: 루이지애나주 투표 장벽에 대한 주위원단 보고서(2018/6)	Barriers to Voting in Louisiana
미국	배경자료	인권_기타	민권위원회: 앨라배마주 투표 접근성에 대한 주위원단 보고서(2018/6)	Accessto Voting in Alabama
미국	배경자료	인권_기타	민권위원회: 애리조나주 투표권에 대한 주위원단 보고서(2018/7)	Voting Rights in Arizona
미국	배경자료	인권_기타	민권위원회: 텍사스주 투표권에 대한 주위원단 보고서(2018/7)	Voting Rights in Texas
미국	배경자료	인권_기타	민권위원회: 메인주 투표권에 대한 주위원단 보고서(2018/4)	Voting Rights in Maines
미국	배경자료	인권_기타	민권위원회: 뉴햄프셔주 투표권에 대한 주위원단 보고서(2018/3)	Voting Rights in New Hampshire
미국	배경자료	인권_기타	민권위원회: 일리노이주 민권과 투표에 대한 주위원단 보고서(2018/2)	Civil Rights and Voting in Illinois

미국	배경자료	형사	민권위원회: 뉴욕시 "깨진 유리창 이론" 경찰행정의 민권에 대한 시사점과 뉴욕경찰의 일반적 공공책임에 대한 뉴욕주위원단 보고서(2018/3)	The Civil Rights Implications of "Broken Windows" Policing in NYC and General NYPD Accountability to the Public
미국	배경자료	형사	민권위원회: 미네소타주의 민권과 경찰행정 실제에 대한 주위원단 보고서(2018/3)	Civil Rights and Policing Practices in Minnesota
미국	배경자료	형사	민권위원회: 위스콘신주 증오범죄와 인권에 대한 주위원단 보고서(2017/6)	Hate Crime and Civil Rights in Wisconsin
미국	배경자료	형사	민권위원회: 오하이오주 인신매매와 민권에 대한 주위원단 보고서(2017/6)	Human Trafficking and Civil Rights in Ohio
미국	배경자료	체육	NCAA: NCAA란 무엇인가?	What is the NCAA?
미국	배경자료	체육	NCAA: 세 개의 분과	OUR THREE DIVISIONS
미국	내규	체육	NCAA: 2020-2021년도 제1분과 매뉴얼	2020-21 NCAA Division I Manual
미국	내규	체육	NCAA: 2020-2021년도 제2분과 매뉴얼	2020-21 NCAA Division II Manual
미국	내규	체육	NCAA: 2020-2021년도 제3분과 매뉴얼	2020-21 NCAA Division III Manual
미국	배경자료	체육	NCAA: 스포츠맨쉽과 윤리 행동 위원회	Committee on Sportsmanship and Ethical Conduct
미국	내규	체육	NCAA: 정책집행	Enforcement
미국	내규	체육	NCAA: 정책집행 > 제1분과 위반대응절차	Enforcement > Division I Infraction Process
미국	내규	체육	NCAA: 정책집행 > 제1분과 내부운영절차	Enforcement > ENFORCEMENT: DIVISION I INTERNAL OPERATING PROCEDURES
미국	내규	체육	NCAA: 정책집행 > 제1분과 위반대응위원회	Enforcement > Division I Committee on Infractions
미국	내규	체육	NCAA: 정책집행 > 제1분과 위반상소위원회	Enforcement > Division I Infractions Appeals Committee
미국	내규	체육	NCAA: 정책집행 > 제1분과 위반상소위원회(1페이지)	Enforcement > Infractions Appeal Committee (1 page)
미국	내규	체육	NCAA: 정책집행 > 제1분과 위반상소위원회 명단	Enforcement > Division I Infractions Appeals Committee Roster
미국	내규	체육	NCAA: 정책집행 > 제1분과 정책집행 관련 가이드라인	Enforcement > Division I Enforcement Charging Guidelines
미국	내규	체육	NCAA: 정책집행 > 잠재적 위반의 처리 과정	Enforcement > Paths for Handling Potential Violations
미국	내규	체육	NCAA: 정책집행 > 위반의 구조와 수준	Enforcement > Violation Structure and Levels
미국	내규	체육	NCAA: 정책집행 > 협상을 통한 해결	Enforcement > Negotiated Resolution
미국	내규	체육	NCAA: 정책집행 > 즉결처분	Enforcement > Summary Disposition

미국	내규	체육	NCAA: 정책집행 > 위반사건청문위원회	Enforcement > Committee on Infractions Hearing
미국	정책자료	체육	NCAA: 정책집행 > 제1분과 위반 2019-20 연간보고서	Enforcement > Division I Infractions 2019-20 Annual Report
미국	정책자료	체육	NCAA: 정책집행 > 제1분과 위반 2018-19 연간보고서	Enforcement > Division I Infractions 2018-20 Annual Report
미국	정책자료	체육	NCAA: 정책집행 > 제1분과 위반 2017-18 연간보고서	Enforcement > Division I Infractions 2017-18 Annual Report
미국	정책자료	체육	NCAA: 정책집행 > NCAA 조사정보지침	Enforcement > NCAA Investigation Resource Guide
미국	정책자료	체육	NCAA: 정책집행 > 제1분과 수석코치의 책임(2018/4)	Enforcement > Responsibilities of Division I Head Coaches
미국	정책자료	체육	NCAA: 정책집행인증승인단(ECAG)	Enforcement > Enforcement Certification and Approvals Group (ECAG)
미국	내규	체육	NCAA: 정책집행인증승인단(ECAG) 종합 정책 및 절차	Enforcement > NCAA ENFORCEMENT CERTIFICATION AND APPROVALS GROUP COMPLETE POLICIES AND PROCEDURES
미국	정책자료	체육	NCAA: 정책집행인증승인단(ECAG) > 농구인증	Enforcement > Enforcement Certification and Approvals Group (ECAG) >Basketball Certification
미국	정책자료	체육	NCAA: 정책집행인증승인단(ECAG) > 농구인증 > 학교 외부 행사 준수사항 및 가이드라인	Enforcement > Enforcement Certification and Approvals Group (ECAG) >Basketball Certification > Nonscholastic Event Requirements and Guidelines
미국	내규	체육	NCAA: 정책집행인증승인단(ECAG) > 농구인증 > 리그 준수사항 및 가이드라인	Enforcement > Enforcement Certification and Approvals Group (ECAG) >Basketball Certification > League Requirements and Guidelines
미국	정책자료	체육	NCAA: 정책집행인증승인단(ECAG) > 스카우트 업무 승인	Enforcement > Enforcement Certification and Approvals Group (ECAG) > Scouting Services Approval

미국	내규	체육	NCAA: 정책집행인증승인단(ECAG) > 스카우트 업무 승인 > 정의, 내규, 준수사항	Enforcement > Enforcement Certification and Approvals Group (ECAG) > Scouting Services Approval > Recruiting/Scouting Service Definition, Legislation and Requirements
미국	내규	체육	NCAA: 정책집행인증승인단(ECAG) > 스카우트 업무 승인 > 신청 절차	Enforcement > Enforcement Certification and Approvals Group (ECAG) > Scouting Services Approval > Recruiting/Scouting Service Application Process
미국	내규	체육	NCAA: 정책집행인증승인단(ECAG) > 스카우트 업무 승인 > 자주하는 질문	Enforcement > Enforcement Certification and Approvals Group (ECAG) > Scouting Services Approval > FAQs
미국	내규	체육	NCAA: 정책집행인증승인단(ECAG) > 스카우트 업무 승인 > 제재조치	Enforcement > Enforcement Certification and Approvals Group (ECAG) > Scouting Services Approval > Adverse Actions
미국	내규	체육	NCAA: 정책집행인증승인단(ECAG) > 스카우트 업무 승인 > 연락체계 가이드라인	Enforcement > Enforcement Certification and Approvals Group (ECAG) > Scouting Services Approval > Communication Guidelines
미국	내규	체육	NCAA: 정책집행인증승인단(ECAG) > 스카우트 업무 승인 > 마감기한 가이드라인	Enforcement > Enforcement Certification and Approvals Group (ECAG) > Scouting Services Approval > Deadline Guidelines
미국	정책자료	체육	NCAA: 정책집행인증승인단(ECAG) > 스카우트 업무 승인 > 기관의 책임	Enforcement > Enforcement Certification and Approvals Group (ECAG) > Institutional Responsibilities Regarding Scouting Service Approvals
미국	정책자료	체육	NCAA: 독자적 책임소재파악 해결 절차(IARP)	Independent Accountability Resolution Process(IARP)
미국	정책자료	체육	NCAA: 독자적 책임소재파악 해결 절차(IARP) 개요	Independent Accountability Resolution: Overview
미국	정책자료	체육	NCAA: 독자적 책임소재파악 해결 절차(IARP) > 독자적 책임소재파악 총괄위원회	Independent Accountability Resolution Process(IARP) > Independent Accountability Oversight Committee

미국	내규	체육	NCAA: 독자적 책임소재파악 해결 절차(IARP) > 독자적 책임소재파악 총괄위원회 내부 절차	Independent Accountability Resolution Process(IARP) > Independent Accountability Oversight Committee Procedures
미국	배경자료	체육	NCAA: 독자적 책임소재파악 해결 절차(IARP) > 독자적 책임소재파악 총괄위원회 구성	Independent Accountability Resolution Process(IARP) > Independent Accountability Oversight Committee Roster
미국	정책자료	체육	NCAA: 독자적 책임소재파악 해결 절차(IARP) > 위반사건회부위원회	Independent Accountability Resolution Process(IARP) > Infractions Referral Committee
미국	내규	체육	NCAA: 독자적 책임소재파악 해결 절차(IARP) > 위반사건회부위원회 내부 절차	Independent Accountability Resolution Process(IARP) > Infractions Referral Committee Procedures
미국	배경자료	체육	NCAA: 독자적 책임소재파악 해결 절차(IARP) > 위반사건회부위원회 구성	Independent Accountability Resolution Process(IARP) > Infractions Referral Committee Roster
미국	판례	체육	NCAA: 독자적 책임소재파악 해결 절차(IARP) > 회부된 사건의 예	Independent Accountability Resolution Process(IARP) > Referred Cases
미국	정책자료	체육	NCAA: 독자적 책임소재파악 해결 절차(IARP) > 복합사건조사단	Independent Accountability Resolution Process(IARP) > Complex Case Unit
미국	내규	체육	NCAA: 독자적 책임소재파악 해결 절차(IARP) > 복합사건조사단 내부 절차	Independent Accountability Resolution Process(IARP) > Complex Case Unit Procedures
미국	정책자료	체육	NCAA: 독자적 책임소재파악 해결 절차(IARP) > 보안신고체계: 외부 이용자 가이드	Independent Accountability Resolution Process(IARP) > Secure Filing System: External User Guide
미국	정책자료	체육	NCAA: 독자적 책임소재파악 해결 절차(IARP) > 유한면책 자주하는 질문	Independent Accountability Resolution Process(IARP) > Limited Immunity Frequently Asked Questions and Answers
미국	정책자료	체육	NCAA: 독자적 책임소재파악 해결 절차(IARP) > 독자적 해결 판정단	Independent Accountability Resolution Process(IARP) > Independent Resolution Panel
미국	내규	체육	NCAA: 독자적 책임소재파악 해결 절차(IARP) > 독자적 해결 판정단 내부 절차	Independent Accountability Resolution Process(IARP) > Independent Resolution Panel Procedures

미국	배경자료	체육	NCAA: 독자적 책임소재파악 해결 절차(IARP) > 독자적 해결 판정단 구성	Independent Accountability Resolution Process(IARP) > Independent Resolution Panel Roster
미국	정책자료	인권_성별	NCAA: 성폭력 방지 자료집 개요	Sexual Violence Prevention Tool Kit
미국	정책자료	인권_성별	NCAA: 성폭력 방지 자료집 제2판(2019.8.)	SEXUAL VIOLENCE PREVENTION: An Athletics Tool Kit for a Healthy and Safe Culture | Second Edition
미국	배경자료	체육_인권	NCAA: 학생선수 신고식(신참 괴롭힘) 문제	Addressing student-athlete hazing
미국	정책자료	인권_성별	NCAA: 교내 성폭력에 대한 이사회 정책	NCAA Board of Governors Policy on Campus Sexual Violence
미국	배경자료	인권_성별	사법통계국: 대학생 연령대 여성의 성폭력, 1995-2013	Rape And Sexual Assault Among College-Age Females, 1995-2013
미국	배경자료	형사	범죄피해자 통계 2019	Criminal Victimization, 2019
미국	배경자료	형사	범죄피해자 통계 2018	Criminal Victimization, 2018
미국	배경자료	형사	범죄피해자 통계 2017	Criminal Victimization, 2017
미국	배경자료	형사	범죄피해자 통계 2016(수정)	Criminal Victimization, 2016, Revised
미국	배경자료	형사	범죄피해자 통계 2015	Criminal Victimization, 2015
미국	배경자료	형사	범죄피해자 통계 2014	Criminal Victimization, 2014
미국	배경자료	형사	범죄피해자 통계 2013	Criminal Victimization, 2013
미국	배경자료	형사	범죄피해자 통계 2012	Criminal Victimization, 2012
미국	배경자료	형사	범죄피해자 통계 2011	Criminal Victimization, 2011
미국	배경자료	형사	범죄피해자 통계 2010	Criminal Victimization, 2010
미국	판례		미국대법원 보스톡 대 조지아주 클레이튼 카운티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BOSTOCK v. CLAYTON COUNTY, GEORGIA
미국	판례		미국대법원 보스톡 대 조지아주 클레이튼 카운티 [CNN 보도]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BOSTOCK v. CLAYTON COUNTY, GEORGIA [CNN]
미국	판례		오스틴 대 오레건대학교	Austin v University of Oregon
미국	판례		왓킨스 대 뉴알바니 플레인 로컬 스쿨	Watkins v. New Albany Plain Local Schools
미국	판례		에반스 대 차머스	Evans v. Chalmers
미국	판례		미국안전스포츠센터 중앙징계데이터베이스 목록	U.S. Center for SafeSport > Centralized Disciplinary Database

미국	판례	인권 성별	도 대 보이어타운지역구교육청	Doe by & through Doe v. Boyertown Area Sch. Dist., 897 F.3d 518 (3d Cir. 2018), cert. denied sub nom. Doe v. Boyertown Area Sch. Dist., 139 S. Ct. 2636, 204 L. Ed. 2d 300 (2019)
미국	판례	인권 성별	D.M. 대 미네소타 고등학교 연맹	D.M. by Bao Xiong v. Minnesota State High Sch. League, 917 F.3d 994 (8th Cir. 2019)
미국	판례	인권 인종	부에나 레슬링 시합 두발규정 사건 계기 인종차별적 규정 수정 지침: 뉴저지주법무장관 보도자료	After Investigation of Hair-Cutting Incident at Buena Wrestling Match, AG Grewal Announces Statewide Guidance on Hairstyle Discrimination
미국	판례	인권 인종	부에나 레슬링 시합 두발규정 사건 계기 인종차별적 규정 수정 지침: 뉴저지주법무장관실 민권국 지침 (2019/9)	Guidance on Race Discrimination Based on Hairstyle September 2019
미국	판례	인권 인종	부에나 레슬링 시합 두발규정 사건 계기 인종차별적 규정 수정 지침: 뉴저지주고등학교체육협회(NJSIAA)와 민권국 간 합의문	Memorandum of Agreement between the New Jersey State Interscholastic Athletic Association and the Jew Jersey Division on Civil Rights
미국	판례	형사	2018 다마스커스고등학교 미식축구팀 성폭행 사건: 개요	Hazing
미국	판례	형사	2018 다마스커스고등학교 미식축구팀 성폭행 사건: 워싱턴포스트 2019.9.6.일자 보도	Washington Post: Cases wind down for teens charged in Damascus High School locker room attacks
미국	판례	형사	2018 다마스커스고등학교 미식축구팀 성폭행 사건: 베데스다매거진 2020.2.6.일자 보도	Bethesda Magazine: Updated: Lawsuit says culture of weekly sexual assaults allowed at Damascus for years
미국	판례	형사	2018 다마스커스고등학교 미식축구팀 성폭행 사건: 베데스다매거진 2020.8.10.일자 보도	Bethesda Magazine: 24-day trial set for Damascus High rape case
미국	판례	형사	2018 다마스커스고등학교 미식축구팀 성폭행 사건: 2019.3..30.일자 보도	WTOP News: Damascus High School incident prompts MCPS to issue new guidelines for athletic supervision
미국	판례	형사	2018 다마스커스고등학교 미식축구팀 성폭행 사건: 몽고메리카운티교육청 2018.12.19.일자 서한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Letter
미국	판례	형사	2018 다마스커스고등학교 미식축구팀 성폭행 사건: 몽고메리카운티교육장 2019.4.14.일자 성명	A Message to the Damascus High School Community from Superintendent Jack R. Smith Ph.D.

미국	판례	형사	2018 다마스커스고등학교 미식축구팀 성폭행 사건: 몽고메리카운티교육장 2019.5.14.일자 성명	A Message from Superintendent Jack R. Smith Ph.D.
미국	판례	형사	2018 다마스커스고등학교 미식축구팀 성폭행 사건: 몽고메리카운티교육청 외부기관평가 (발표)	EXTERNAL REVIEW OF THE SUPERVISION OF ATHLETICS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미국	판례	형사	2018 다마스커스고등학교 미식축구팀 성폭행 사건: 몽고메리카운티교육청 외부기관평가 (보고서)	Addressing Supervision Structures for Athletics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cluding Reporting Protocols for Bullying and Hazing Recommendations for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미국	판례	형사	2018 다마스커스고등학교 미식축구팀 성폭행 사건: 몽고메리카운티교육청 외부기관평가 (보고서 개요)	Addressing Supervision Structures for Athletics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cluding Reporting Protocols for Bullying and Hazing Summary of Findings & Recommendations from External Review of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미국	판례	형사	2018 다마스커스고등학교 미식축구팀 성폭행 사건: 몽고메리카운티교육청 외부기관평가 (보고서 개요 한국어)	스포츠, 운동팀과 방과 후 활동 감독 관리 구조에의 고찰 -불링, 왕따와 괴롭히기 신고를 포함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외부 검토에 따른 평가 결과와 추천 사항의 요약
미국	판례	형사	2018 다마스커스고등학교 미식축구팀 성폭행 사건: 민사소송 관련 몽고메리카운티교육청 성명	MCPS Statement on Damascus High School Civil Lawsuits
미국	판례	형사	2018 다마스커스고등학교 미식축구팀 성폭행 사건: 몽고메리카운티교육청 2020-2021학년도 교과외활동 핸드북	Extracurricular Activities Program FY 2021(2020-2021)
미국	판례	형사	2015 우다와고등학교 농구팀 성폭행 사건: 개요	Hazing
미국	판례	형사	2015 우다와고등학교 농구팀 성폭행 사건: 지방법원 판결문	Doe v. Hamilton Cty. Bd. of Educ., 329 F. Supp. 3d 543 (E.D. Tenn. 2018)
미국	판례	형사	2015 우다와고등학교 농구팀 성폭행 사건: 2016.10.11.일자 보도	WATE: Juveniles sentenced in Ooltewah High School rape case
미국	판례	형사	2015 우다와고등학교 농구팀 성폭행 사건: 2018.12.4.일자 보도	News Channel 9: Settlement amount revealed in fed. lawsuit against HCDE in 2015 Ooltewah rape case
미국	판례	형사	2015 우다와고등학교 농구팀 성폭행 사건: 2019.5.17.일자 보도	WDEF: Schools settle Ooltewah basketball hazing case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볼주립대학교(인디애나주, 05096001) 사건 개요	BALL STATE UNIVERSITY (IN) (05096001) > Summary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볼주립대학교(인디애나주, 05096001) 사건 조사결과	BALL STATE UNIVERSITY (IN) (05096001)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볼주립대학교(인디애나주, 05096001) 사건 합의문	BALL STATE UNIVERSITY (IN) (05096001)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아이다호폴스교육청 91(아이다호주, 10095002) > 사건 개요	Idaho Falls SD 91 (ID) (10095002) > Summary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아이다호폴스교육청 91(아이다호주, 10095002) > 사건 조사결과	Idaho Falls SD 91 (ID) (10095002) > Letter (of Compliance Review)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아이다호폴스교육청 91(아이다호주, 10095002) > 사건 합의문	Idaho Falls SD 91 (ID) (10095002)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버틀러대학교(인디애나주, 05116001) > 사건 개요	BUTLER UNIVERSITY (IN) (05116001) > Summary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버틀러대학교(인디애나주, 05116001) > 사건 조사결과	BUTLER UNIVERSITY (IN) (05116001)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버틀러대학교(인디애나주, 05116001) > 사건 합의문	BUTLER UNIVERSITY (IN) (05116001)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버틀러대학교(인디애나주, 05116001) > 사건 보도자료	BUTLER UNIVERSITY (IN) (05116001) > Press Release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콜럼버스시교육청(오하이오주, 15111036) > 사건 조사결과	COLUMBUS CITY SCHOOL DISTRICT (OH) (15111036)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콜럼버스시교육청(오하이오주, 15111036) > 사건 합의문	COLUMBUS CITY SCHOOL DISTRICT (OH) (15111036)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웨이크카운티교육청(노스캐롤라이나주, 11111040) > 사건 조사결과	WAKE COUNTY PUBLIC SCHOOL SYSTEM (NC) (11111040)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웨이크카운티교육청(노스캐롤라이나주, 11111040) > 사건 합의문	WAKE COUNTY PUBLIC SCHOOL SYSTEM (NC) (11111040) > Draft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휴스턴교육청(텍사스주, 06111061) > 사건 조사결과	HOUSTON ISD (TX) (06111061)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휴스턴교육청(텍사스주, 06111061) > 사건 합의문	HOUSTON ISD (TX) (06111061)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디어밸리교육청(애리조나주, 08111030) > 사건 조사결과	DEER VALLEY UNIFIED DISTRICT (AZ) (08111030)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디어밸리교육청(애리조나주, 08111030) > 사건 합의문	DEER VALLEY UNIFIED DISTRICT (AZ) (08111030)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힝험교육청(매사추세츠주, 01105003) > 사건 개요	HINGHAM (MA) (01105003) > Summary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힝험교육청(매사추세츠주, 01105003) > 사건 조사결과	HINGHAM (MA) (01105003)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힝험교육청(매사추세츠주, 01105003) > 사건 합의문	HINGHAM (MA) (01105003)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루이지애나주립대학교(루이지애나주, 06116001) > 사건 개요	LOUISIANA STATE UNIVERSITY-SYSTEM OFFICE (LA) (06116001) > Summary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루이지애나주립대학교(루이지애나주, 06116001) > 사건 조사결과	LOUISIANA STATE UNIVERSITY-SYSTEM OFFICE (LA) (06116001)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루이지애나주립대학교(루이지애나주, 06116001) > 사건 합의문	LOUISIANA STATE UNIVERSITY-SYSTEM OFFICE (LA) (06116001)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메리맥대학교(매사추세츠주, 01106001) > 사건 개요	MERRIMACK COLLEGE (MA) (01106001) > Summary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메리맥대학교(매사추세츠주, 01106001) > 사건 조사결과	MERRIMACK COLLEGE (MA) (01106001)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메리맥대학교(매사추세츠주, 01106001) > 사건 합의문	MERRIMACK COLLEGE (MA) (01106001)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에반스빌-밴더버그교육청(인디애나주, 05115002) > 사건 개요	EVANSVILLE-VANDERBURGH SCH CORP (IN) (05115002) > Summary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에반스빌-밴더버그교육청(인디애나주, 05115002) > 사건 조사결과	EVANSVILLE-VANDERBURGH SCH CORP (IN) (05115002)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에반스빌-밴더버그교육청(인디애나주, 05115002) > 사건 합의문	EVANSVILLE-VANDERBURGH SCH CORP (IN) (05115002)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포틀랜드교육청(메인주, 01115001) > 사건 개요	PORTLAND PUBLIC SCHOOLS (ME) (01115001) > Summary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포틀랜드교육청(메인주, 01115001) > 사건 조사결과	PORTLAND PUBLIC SCHOOLS (ME) (01115001)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포틀랜드교육청(메인주, 01115001) > 사건 합의문	PORTLAND PUBLIC SCHOOLS (ME) (01115001)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콜로니얼비치교육청(버지니아주, 11131190) > 사건 조사결과	COLONIAL BEACH PUBLIC SCHOOLS (VA) (11131190)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콜로니얼비치교육청(버지니아주, 11131190) > 사건 합의문	COLONIAL BEACH PUBLIC SCHOOLS (VA) (11131190)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프레시디오교육청(텍사스주, 06111022) > 사건 조사결과	PRESIDIO ISD (TX) (06111022)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프레시디오교육청(텍사스주, 06111022) > 사건 합의문	PRESIDIO ISD (TX) (06111022)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글로버스빌광역교육청(뉴욕주, 02111077) > 사건 조사결과	GLOVERSVILLE ENLARGED SCHOOL DISTRICT (NY) (02111077)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글로버스빌광역교육청(뉴욕주, 02111077) > 사건 합의문	GLOVERSVILLE ENLARGED SCHOOL DISTRICT (NY) (02111077)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플리머스지역교육청(미시간주, 15131020) > 사건 조사결과	PLYMOUTH-CANTON COMMUNITY SCHOOL (MI) (15131020)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플리머스지역교육청(미시간주, 15131020) > 사건 합의문	PLYMOUTH-CANTON COMMUNITY SCHOOL (MI) (15131020)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레이크센트럴교육청(인디애나주, 05131272) > 사건 조사결과	LAKE CENTRAL SCHOOL CORP (IN) (05131272)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레이크센트럴교육청(인디애나주, 05131272) > 사건 합의문	LAKE CENTRAL SCHOOL CORP (IN) (05131272)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몽고메리카운티교육청(켄터키주, 03131197) > 사건 조사결과	MONTGOMERY COUNTY SCHOOLS (KY) (03131197)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몽고메리카운티교육청(켄터키주, 03131197) > 사건 합의문	MONTGOMERY COUNTY SCHOOLS (KY) (03131197)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인디애나폴리스교육청(인디애나주, 05105002) > 사건 개요	INDIANAPOLIS PUBLIC SCHOOLS (IN) (05105002) > Summary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인디애나폴리스교육청(인디애나주, 05105002) > 사건 보도자료	INDIANAPOLIS PUBLIC SCHOOLS (IN) (05105002) > Press Release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인디애나폴리스교육청(인디애나주, 05105002) > 사건 조사결과	INDIANAPOLIS PUBLIC SCHOOLS (IN) (05105002)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인디애나폴리스교육청(인디애나주, 05105002) > 사건 합의문	INDIANAPOLIS PUBLIC SCHOOLS (IN) (05105002)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롱뷰교육청(텍사스주, 06131199) > 사건 조사결과	LONGVIEW ISD (TX) (06131199)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롱뷰교육청(텍사스주, 06131199) > 사건 합의문	LONGVIEW ISD (TX) (06131199)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사우던루이지애나대학교(루이지애나주, 06106001) > 사건 개요	SOUTHEASTERN LOUISIANA UNIVERSITY (LA) (06106001) > Summary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사우던루이지애나대학교(루이지애나주, 06106001) > 사건 조사결과	SOUTHEASTERN LOUISIANA UNIVERSITY (LA) (06106001)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사우던루이지애나대학교(루이지애나주, 06106001) > 사건 합의문	SOUTHEASTERN LOUISIANA UNIVERSITY (LA) (06106001)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뮤리에타밸리통합교육청(캘리포니아주, 09121441) > 사건 조사결과	MURRIETA VALLEY UNIFIED (CA) (09121441)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뮤리에타밸리통합교육청(캘리포니아주, 09121441) > 사건 합의문	MURRIETA VALLEY UNIFIED (CA) (09121441)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휴스턴교육청(텍사스주, 06121210) > 2014년 사건 조사결과	HOUSTON ISD (TX) (06121210)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휴스턴교육청(텍사스주, 06121210) > 2014년 사건 합의문	HOUSTON ISD (TX) (06121210)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왓킨스글렌센트럴교육청(뉴욕주, 02141071) > 사건 조사결과	WATKINS GLEN CSD (NY) (02141071)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왓킨스글렌센트럴교육청(뉴욕주, 02141071) > 사건 합의문	WATKINS GLEN CSD (NY) (02141071)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도체스터교육청(매릴랜드주, 03141122) > 사건 조사결과	DORCHESTER COUNTY PUBLIC SCHOOLS (MD) (03141122)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도체스터교육청(매릴랜드주, 03141122) > 사건 합의문	DORCHESTER COUNTY PUBLIC SCHOOLS (MD) (03141122)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사우스이스트델코교육청(펜실베이니아주, 03141102) > 사건 조사결과	SOUTHEAST DELCO SD (PA) (03141102)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사우스이스트델코교육청(펜실베이니아주, 03141102) > 사건 합의문	SOUTHEAST DELCO SD (PA) (03141102)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치노밸리교육청(캘리포니아주, 09131346) > 사건 조사결과	CHINO VALLEY UNIFIED (CA) (09131346)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치노밸리교육청(캘리포니아주, 09131346) > 사건 합의문	CHINO VALLEY UNIFIED (CA) (09131346)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스캇츠데일커뮤니티칼리지 (애리조나주, 08142078) > 사건 조사결과	SCOTTSDALE COMMUNITY COLLEGE (AZ) (08142078)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스캇츠데일커뮤니티칼리지 (애리조나주, 08142078) > 사건 합의문	SCOTTSDALE COMMUNITY COLLEGE (AZ) (08142078)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라파예트교육청(미시시피주, 06111239) > 사건 조사결과	LAFAYETTE CO SCHOOL DIST (MS) (06111239)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라파예트교육청(미시시피주, 06111239) > 사건 합의문	LAFAYETTE CO SCHOOL DIST (MS) (06111239)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빌링스교육청(몬태나주, 10141169) > 사건 조사결과	Billings SD No. 2 (MT) (10141169)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빌링스교육청(몬태나주, 10141169) > 사건 합의문	Billings SD No. 2 (MT) (10141169)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밀러스빌대학교(펜실베이니아주, 03142303) > 사건 조사결과	MILLERSVILLE UNIVERSITY OF PENNSYLVANIA (PA) (03142303)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밀러스빌대학교(펜실베이니아주, 03142303) > 사건 합의문	MILLERSVILLE UNIVERSITY OF PENNSYLVANIA (PA) (03142303)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락헤이븐대학교 클리어필드 분교(펜실베이니아주, 03142296) > 사건 조사결과	LOCK HAVEN UNIVERSITY OF PENNSYLVANIA-CLEARFIELD (PA) (03142296)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락헤이븐대학교 클리어필드 분교(펜실베이니아주, 03142296) > 사건 합의문	LOCK HAVEN UNIVERSITY OF PENNSYLVANIA-CLEARFIELD (PA) (03142296)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제프데이비스교육청(조지아주, 04141550) > 사건 조사결과	JEFF DAVIS COUNTY (GA) (04141550)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제프데이비스교육청(조지아주, 04141550) > 사건 합의문	JEFF DAVIS COUNTY (GA) (04141550)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하포드커뮤니티칼리지(매릴랜드주, 03142295) > 사건 조사결과	HARFORD COMMUNITY COLLEGE (MD) (03142295)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하포드커뮤니티칼리지(매릴랜드주, 03142295) > 사건 합의문	HARFORD COMMUNITY COLLEGE (MD) (03142295)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템플대학교(펜실베이니아주, 03142257) > 사건 조사결과	TEMPLE UNIVERSITY (PA) (03142257)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템플대학교(펜실베이니아주, 03142257) > 사건 합의문	TEMPLE UNIVERSITY (PA) (03142257)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홀리크로스대학교(매사추세츠주, 01112050) > 사건 조사결과	COLLEGE OF THE HOLY CROSS (MA) (01112050)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홀리크로스대학교(매사추세츠주, 01112050) > 사건 합의문	COLLEGE OF THE HOLY CROSS (MA) (01112050)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클래리언대학교(펜실베이니아주, 03142297) > 사건 조사결과	CLAR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A) (03142297)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클래리언대학교(펜실베이니아주, 03142297) > 사건 합의문	CLAR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A) (03142297)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캐나다대학교(캘리포니아주, 09142405) > 사건 조사결과	CANADA COLLEGE (CA) (09142405)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캐나다대학교(캘리포니아주, 09142405) > 사건 합의문	CANADA COLLEGE (CA) (09142405)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서니사이드교육청(워싱턴주, 10141390) > 사건 조사결과	Sunnyside SD No. 201 (WA) (10141390)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서니사이드교육청(워싱턴주, 10141390) > 사건 합의문	Sunnyside SD No. 201 (WA) (10141390)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데니슨대학교(오하이오주, 15142049) > 사건 조사결과	DENISON UNIVERSITY (OH) (15142049)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데니슨대학교(오하이오주, 15142049) > 사건 합의문	DENISON UNIVERSITY (OH) (15142049)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파올라교육청(캔자스주, 07141191) > 사건 조사결과	Paola U.S.D. #368 (KS) (07141191)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파올라교육청(캔자스주, 07141191) > 사건 합의문	Paola U.S.D. #368 (KS) (07141191)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블룸스버그대학교(펜실베이니아주, 03142304) > 사건 조사결과	BLOOMSBURG UNIVERSITY OF PENNSYLVANIA (PA) (03142304)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블룸스버그대학교(펜실베이니아주, 03142304) > 사건 합의문	BLOOMSBURG UNIVERSITY OF PENNSYLVANIA (PA) (03142304)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커츠타운대학교(펜실베이니아주, 03142298) > 사건 조사결과	KUTZTOW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A) (03142298)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커츠타운대학교(펜실베이니아주, 03142298) > 사건 합의문	KUTZTOW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A) (03142298)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뉴욕시교육청(뉴욕주, 02111028) > 사건 조사결과	NEW YORK CITY DEPARTMENT OF EDUCATION (NY) (02111028)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뉴욕시교육청(뉴욕주, 02111028) > 사건 합의문	NEW YORK CITY DEPARTMENT OF EDUCATION (NY) (02111028)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스프링필드교육청(미주리주, 07071195) > 사건 조사결과	Springfield R-XII School District (MO) (07071195)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스프링필드교육청(미주리주, 07071195) > 사건 합의문	Springfield R-XII School District (MO) (07071195)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콜링가/휴런통합교육청(캘리포니아주, 09141425) > 사건 조사결과	COALINGA/HURON JOINT UNIFIED (CA) (09141425)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콜링가/휴런통합교육청(캘리포니아주, 09141425) > 사건 합의문	COALINGA/HURON JOINT UNIFIED (CA) (09141425)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짐네드통합교육청(텍사스주, 06141331) > 사건 조사결과	JIM NED CONS ISD (TX) (06141331)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짐네드통합교육청(텍사스주, 06141331) > 사건 합의문	JIM NED CONS ISD (TX) (06141331)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윌크스카운티교육청(조지아주, 04141480) > 사건 조사결과	WILKES COUNTY (GA) (04141480)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윌크스카운티교육청(조지아주, 04141480) > 사건 합의문	WILKES COUNTY (GA) (04141480)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포레스트지역교육청(미시시피주, 06151040) > 사건 조사결과	FOREST MUNICIPAL SCHOOL DIST (MS) (06151040)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포레스트지역교육청(미시시피주, 06151040) > 사건 합의문	FOREST MUNICIPAL SCHOOL DIST (MS) (06151040)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로스엔젤레스교육청(캘리포니아주, 09151347) > 사건 조사결과	LOS ANGELES UNIFIED (CA) (09151347)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로스엔젤레스교육청(캘리포니아주, 09151347) > 사건 합의문	LOS ANGELES UNIFIED (CA) (09151347)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페이엣빌대학교(노스캐롤라이나주, 11142234) > 사건 조사결과	FAYETTEVILLE STATE UNIVERSITY (NC) (11142234)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페이엣빌대학교(노스캐롤라이나주, 11142234) > 사건 합의문	FAYETTEVILLE STATE UNIVERSITY (NC) (11142234)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시카고299지역교육청(일리오니주, 05111034) > 사건 조사결과	CHICAGO SCHOOL DISTRICT 299-CHICAGO PUBLIC SCHOOLS (IL) (05111034)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시카고299지역교육청(일리오니주, 05111034) > 사건 합의문	CHICAGO SCHOOL DISTRICT 299-CHICAGO PUBLIC SCHOOLS (IL) (05111034)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코츠빌교육청(펜실베이니아주, 03141011) > 사건 조사결과	COATESVILLE AREA SD (PA) (03141011)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코츠빌교육청(펜실베이니아주, 03141011) > 사건 합의문	COATESVILLE AREA SD (PA) (03141011)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럿거스대학교(뉴저지주, 02086001) > 사건 개요	RUTGERS UNIVERSITY-NEW BRUNSWICK (NJ) (02086001) > Summary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럿거스대학교(뉴저지주, 02086001) > 사건 조사결과	RUTGERS UNIVERSITY-NEW BRUNSWICK (NJ) (02086001)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럿거스대학교(뉴저지주, 02086001) > 사건 합의문	RUTGERS UNIVERSITY-NEW BRUNSWICK (NJ) (02086001)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시펜스버그대학교(펜실베이니아주, 03142301) > 사건 조사결과	SHIPPENSBURG UNIVERSITY OF PENNSYLVANIA (PA) (03142301)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시펜스버그대학교(펜실베이니아주, 03142301) > 사건 합의문	SHIPPENSBURG UNIVERSITY OF PENNSYLVANIA (PA) (03142301)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레이니대학교(캘리포니아주, 09142331) > 사건 조사결과	LANEY COLLEGE (CA) (09142331)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레이니대학교(캘리포니아주, 09142331) > 사건 합의문	LANEY COLLEGE (CA) (09142331)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로다이교육청(캘리포니아주, 09151232) > 사건 조사결과	LODI UNIFIED (CA) (09151232)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로다이교육청(캘리포니아주, 09151232) > 사건 합의문	LODI UNIFIED (CA) (09151232)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스티븐빌교육청(텍사스주, 06141150) > 사건 조사결과	STEPHENVILLE ISD (TX) (06141150)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스티븐빌교육청(텍사스주, 06141150) > 사건 합의문	STEPHENVILLE ISD (TX) (06141150)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메인랜드고등학교(뉴저지주, 02131141) > 사건 조사결과	MAINLAND REGIONAL HIGH SCHOOL DISTRICT (NJ) (02131141)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메인랜드고등학교(뉴저지주, 02131141) > 사건 합의문	MAINLAND REGIONAL HIGH SCHOOL DISTRICT (NJ) (02131141)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레이크워싱턴교육청(워싱턴주, 10151160) > 사건 조사결과	Lake Washington SD No. 414 (WA) (10151160)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레이크워싱턴교육청(워싱턴주, 10151160) > 사건 합의문	Lake Washington SD No. 414 (WA) (10151160)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앨라모사교육청(콜로라도주, 08141217) > 사건 조사결과	ALAMOSA RE-11J (CO) (08141217)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앨라모사교육청(콜로라도주, 08141217) > 사건 합의문	ALAMOSA RE-11J (CO) (08141217)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수피리어교육청(위스콘신주, 05151327) > 사건 조사결과	SUPERIOR (WI) (05151327)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수피리어교육청(위스콘신주, 05151327) > 사건 합의문	SUPERIOR (WI) (05151327)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이리커뮤니티칼리지(뉴욕주, 02142223) > 사건 개요	ERIE COMMUNITY COLLEGE (NY) (02142223) > Summary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이리커뮤니티칼리지(뉴욕주, 02142223) > 사건 조사결과	ERIE COMMUNITY COLLEGE (NY) (02142223)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이리커뮤니티칼리지(뉴욕주, 02142223) > 사건 합의문	ERIE COMMUNITY COLLEGE (NY) (02142223)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휴튼대학교(뉴욕주, 02142152) > 사건 조사결과	HOUGHTON COLLEGE (NY) (02142152)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휴튼대학교(뉴욕주, 02142152) > 사건 합의문	HOUGHTON COLLEGE (NY) (02142152)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이언스교육청(텍사스주, 06151535) > 사건 조사결과	EANES ISD (TX) (06151535)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이언스교육청(텍사스주, 06151535) > 사건 합의문	EANES ISD (TX) (06151535)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리버티빌교육청(일리노이주, 05161181) > 사건 조사결과	LIBERTYVILLE SCHOOL DIST 70 (IL) (05161181)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리버티빌교육청(일리노이주, 05161181) > 사건 합의문	LIBERTYVILLE SCHOOL DIST 70 (IL) (05161181)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길포드교육청(노스캐롤라이나주, 11141309) > 사건 조사결과	GUILFORD COUNTY SCHOOLS (NC) (11141309)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길포드교육청(노스캐롤라이나주, 11141309) > 사건 합의문	GUILFORD COUNTY SCHOOLS (NC) (11141309)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몬태나고등학교체육협회(몬태나주, 10164016) > 사건 조사결과	Montana High School Assn. (MT) (10164016)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몬태나고등학교체육협회(몬태나주, 10164016) > 사건 합의문	Montana High School Assn. (MT) (10164016)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포트스캇커뮤니티칼리지(캔자스주, 07052020) > 사건 조사결과	Fort Scott Community College (KS) (07052020)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포트스캇커뮤니티칼리지(캔자스주, 07052020) > 사건 합의문	Fort Scott Community College (KS) (07052020)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사우던미시시피대학교(미시시피주, 06156001) > 사건 조사결과	UNIVERSITY OF SOUTHERN MISSISSIPPI (MS) (06156001)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사우던미시시피대학교(미시시피주, 06156001) > 사건 합의문	UNIVERSITY OF SOUTHERN MISSISSIPPI (MS) (06156001)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코로나-노코 교육청(캘리포니아주, 09151191) > 사건 조사결과	CORONA-NORCO UNIFIED (CA) (09151191)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코로나-노코 교육청(캘리포니아주, 09151191) > 사건 합의문	CORONA-NORCO UNIFIED (CA) (09151191)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산타크루즈교육청(캘리포니아주, 09161189) > 사건 조사결과	SANTA CRUZ CITY HIGH (CA) (09161189)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산타크루즈교육청(캘리포니아주, 09161189) > 사건 합의문	SANTA CRUZ CITY HIGH (CA) (09161189)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먼마우스대학교(뉴저지주, 02156001) > 사건 조사결과	MONMOUTH UNIVERSITY (NJ) (02156001)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먼마우스대학교(뉴저지주, 02156001) > 사건 합의문	MONMOUTH UNIVERSITY (NJ) (02156001)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켄터키대학교(켄터키주, 03146002) > 사건 조사결과	UNIVERSITY OF KENTUCKY (KY) (03146002)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켄터키대학교(켄터키주, 03146002) > 사건 합의문	UNIVERSITY OF KENTUCKY (KY) (03146002)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웨인주립대학교(네브래스카주, 07102096) > 사건 조사결과	Wayne State College (NE) (07102096)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웨인주립대학교(네브래스카주, 07102096) > 사건 합의문	Wayne State College (NE) (07102096)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러셀카운티교육청(켄터키주, 03161851) > 사건 조사결과	RUSSELL CO (KY) (03161851)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러셀카운티교육청(켄터키주, 03161851) > 사건 합의문	RUSSELL CO (KY) (03161851)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UC버클리(캘리포니아주, 09152296) > 사건 조사결과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CA) (09152296)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UC버클리(캘리포니아주, 09152296) > 사건 합의문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CA) (09152296)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샌프란시스코대학교(캘리포니아주, 09156001) > 사건 조사결과	UNIVERSITY OF SAN FRANCISCO (CA) (09156001)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샌프란시스코대학교(캘리포니아주, 09156001) > 사건 합의문	UNIVERSITY OF SAN FRANCISCO (CA) (09156001)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다지시티커뮤니티대학교(캔자스주, 07162080) > 사건 조사결과	Dodge City Community College (KS) (07162080)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다지시티커뮤니티대학교(캔자스주, 07162080) > 사건 합의문	Dodge City Community College (KS) (07162080)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오하이오도미니칸대학교(오하이오주, 15162230) > 사건 조사결과	OHIO DOMINICAN COLLEGE (OH) (15162230)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오하이오도미니칸대학교(오하이오주, 15162230) > 사건 합의문	OHIO DOMINICAN COLLEGE (OH) (15162230)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레이크수피리어대학교(미시간주, 15162226) > 사건 조사결과	LAKE SUPERIOR STATE UNIVERSITY (MI) (15162226)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레이크수피리어대학교(미시간주, 15162226) > 사건 합의문	LAKE SUPERIOR STATE UNIVERSITY (MI) (15162226)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월쉬대학교(오하이오주, 15162233) > 사건 조사결과	WALSH UNIVERSITY (OH) (15162233)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월쉬대학교(오하이오주, 15162233) > 사건 합의문	WALSH UNIVERSITY (OH) (15162233)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미시간공과대학교(미시간주, 15162227) > 사건 조사결과	MICHIGAN TECHNOLOGICAL UNIVERSITY (MI) (15162227)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미시간공과대학교(미시간주, 15162227) > 사건 합의문	MICHIGAN TECHNOLOGICAL UNIVERSITY (MI) (15162227)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그랜드밸리주립대학교(미시간주, 15162220) > 사건 조사결과	GRAND VALLEY STATE UNIVERSITY (MI) (15162220)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그랜드밸리주립대학교(미시간주, 15162220) > 사건 합의문	GRAND VALLEY STATE UNIVERSITY (MI) (15162220)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루이스대학교(일리오니주, 05142367) > 사건 조사결과	LEWIS UNIVERSITY (IL) (05142367)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루이스대학교(일리오니주, 05142367) > 사건 합의문	LEWIS UNIVERSITY (IL) (05142367)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페리스주립대학교(미시간주, 15162222) > 사건 조사결과	FERRIS STATE UNIVERSITY (MI) (15162222)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페리스주립대학교(미시간주, 15162222) > 사건 합의문	FERRIS STATE UNIVERSITY (MI) (15162222)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노스우드대학교(미시간주, 15162229) > 사건 조사결과	NORTHWOOD UNIVERSITY (MI) (15162229)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노스우드대학교(미시간주, 15162229) > 사건 합의문	NORTHWOOD UNIVERSITY (MI) (15162229)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후드리버카운티교육청(오리건주, 10161092) > 사건 조사결과	Hood River County SD (OR) (10161092)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후드리버카운티교육청(오리건주, 10161092) > 사건 합의문	Hood River County SD (OR) (10161092)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핀들리대학교(오하이오주, 15162223) > 사건 조사결과	UNIVERSITY OF FINDLAY (OH) (15162223)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핀들리대학교(오하이오주, 15162223) > 사건 합의문	UNIVERSITY OF FINDLAY (OH) (15162223)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새기노밸리주립대학교(미시간주, 15162231) > 사건 조사결과	SAGINAW VALLEY STATE UNIVERSITY (MI) (15162231)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새기노밸리주립대학교(미시간주, 15162231) > 사건 합의문	SAGINAW VALLEY STATE UNIVERSITY (MI) (15162231)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웨인주립대학교(미시간주, 15162234) > 사건 조사결과	WAYNE STATE UNIVERSITY (MI) (15162234)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웨인주립대학교(미시간주, 15162234) > 사건 합의문	WAYNE STATE UNIVERSITY (MI) (15162234)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노던미시간대학교(미시간주, 15162228) > 사건 조사결과	NORTHERN MICHIGAN UNIVERSITY (MI) (15162228)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노던미시간대학교(미시간주, 15162228) > 사건 합의문	NORTHERN MICHIGAN UNIVERSITY (MI) (15162228)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클리브랜드교육청(미시시피주, 06131731) > 사건 조사결과	CLEVELAND SCHOOL DIST (MS) (06131731)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클리브랜드교육청(미시시피주, 06131731) > 사건 합의문	CLEVELAND SCHOOL DIST (MS) (06131731)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애쉬랜드대학교(오하이오주, 15162221) > 사건 조사결과	ASHLAND UNIVERSITY (OH) (15162221)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애쉬랜드대학교(오하이오주, 15162221) > 사건 합의문	ASHLAND UNIVERSITY (OH) (15162221)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티핀대학교(오하이오주, 15162232) > 사건 조사결과	TIFFIN UNIVERSITY (OH) (15162232)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티핀대학교(오하이오주, 15162232) > 사건 합의문	TIFFIN UNIVERSITY (OH) (15162232)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레이크이리대학교(오하이오주, 15162232) > 사건 조사결과	LAKE ERIE COLLEGE (OH) (15162225)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레이크이리대학교(오하이오주, 15162232) > 사건 합의문	LAKE ERIE COLLEGE (OH) (15162225)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피드몬트교육청(오클라호마주, 07161028) > 사건 조사결과	Piedmont Public Schools (OK) (07161028)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피드몬트교육청(오클라호마주, 07161028) > 사건 합의문	Piedmont Public Schools (OK) (07161028)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샤이엔마운튼교육청(콜로라도주, 08171139) > 사건 조사결과	CHEYENNE MOUNTAIN 12 (CO) (08171139)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크로켓통합교육청(텍사스주, 06161635) > 사건 조사결과	CROCKETT CO CONS CSD (TX) (06161635)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크로켓통합교육청(텍사스주, 06161635) > 사건 합의문	CROCKETT CO CONS CSD (TX) (06161635)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페킨지역교육청(일리노이주, 05151291) > 사건 조사결과	PEKIN COMM H S DIST 303 (IL) (05151291)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페킨지역교육청(일리노이주, 05151291) > 사건 합의문	PEKIN COMM H S DIST 303 (IL) (05151291)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뉴욕주립대학교알바니(뉴욕주, 02172037) > 사건 조사결과	SUNY AT ALBANY UNIVERSITY (NY) (02172037)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뉴욕주립대학교알바니(뉴욕주, 02172037) > 사건 합의문	SUNY AT ALBANY UNIVERSITY (NY) (02172037)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유니언힐교육청(캘리포니아주, 09171130) > 사건 조사결과	UNION HILL ELEMENTARY (CA) (09171130)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유니언힐교육청(캘리포니아주, 09171130) > 사건 합의문	UNION HILL ELEMENTARY (CA) (09171130)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세이크리드하트대학교(코네티컷주, 01136001) > 사건 조사결과	SACRED HEART UNIVERSITY (CT) (01136001)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세이크리드하트대학교(코네티컷주, 01136001) > 사건 합의문	SACRED HEART UNIVERSITY (CT) (01136001)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피츠버그주립대학교(캔자스주, 07106001) > 사건 조사결과	Pittsburg State University (KS) (07106001)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피츠버그주립대학교(캔자스주, 07106001) > 사건 합의문	Pittsburg State University (KS) (07106001)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그린우드교육청(펜실베이니아주, 03161007) > 사건 조사결과	GREENWOOD SD (PA) (03161007)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그린우드교육청(펜실베이니아주, 03161007) > 사건 합의문	GREENWOOD SD (PA) (03161007)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워싱턴주교육청(워싱턴주, 10115004) > 사건 조사결과	WA OSPI (WA) (10115004)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워싱턴주교육청(워싱턴주, 10115004) > 사건 합의문	WA OSPI (WA) (10115004)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크로셋교육청(아칸소주, 06131162) > 사건 조사결과	CROSSETT (AR) (06131162)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크로셋교육청(아칸소주, 06131162) > 사건 합의문	CROSSETT (AR) (06131162)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펜터킷교육청(매사추세츠주, 01161298) > 사건 조사결과	PENTUCKET (MA) (01161298)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펜터킷교육청(매사추세츠주, 01161298) > 사건 합의문	PENTUCKET (MA) (01161298)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아이오와대학교(아이오와주, 05152538) > 사건 조사결과	UNIVERSITY OF IOWA (IA) (05152538)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아이오와대학교(아이오와주, 05152538) > 사건 합의문	UNIVERSITY OF IOWA (IA) (05152538)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사우던일리노이대학교 카본데일(일리노이주, 05172224) > 사건 조사결과	SOUTHERN ILLINOIS UNIVERSITY-CARBONDALE (IL) (05172224)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사우던일리노이대학교 카본데일(일리노이주, 05172224) > 사건 합의문	SOUTHERN ILLINOIS UNIVERSITY-CARBONDALE (IL) (05172224)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포산교육청(텍사스주, 06171228) > 사건 조사결과	FORSAN ISD (TX) (06171228)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포산교육청(텍사스주, 06171228) > 사건 합의문	FORSAN ISD (TX) (06171228)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이니드교육청(오클라호마주, 07151052) > 사건 조사결과	Enid Public Schools (OK) (07151052)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이니드교육청(오클라호마주, 07151052) > 사건 합의문	Enid Public Schools (OK) (07151052)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달라스교육청(텍사스주, 06151216) > 사건 조사결과	DALLAS ISD (TX) (06151216)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달라스교육청(텍사스주, 06151216) > 사건 합의문	DALLAS ISD (TX) (06151216)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프랭클린카운티교육청(조지아주, 04151513) > 사건 조사결과	FRANKLIN COUNTY (GA) (04151513)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프랭클린카운티교육청(조지아주, 04151513) > 사건 합의문	FRANKLIN COUNTY (GA) (04151513)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포크카운티교육청(테네시주, 04151568) > 사건 조사결과	POLK COUNTY SCHOOL DISTRICT (TN) (04151568)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포크카운티교육청(테네시주, 04151568) > 사건 합의문	POLK COUNTY SCHOOL DISTRICT (TN) (04151568)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오리건주립대학교(오리건주, 10182045) > 사건 조사결과	Oregon State University (OR) (10182045)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오리건주립대학교(오리건주, 10182045) > 사건 합의문	Oregon State University (OR) (10182045)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조지폭스대학교(오리건주, 10172304) > 사건 조사결과	George Fox University (OR) (10172304)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조지폭스대학교(오리건주, 10172304) > 사건 합의문	George Fox University (OR) (10172304)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델라웨어밸리대학교(펜실베이니아, 03166001) > 사건 조사결과	DELAWARE VALLEY UNIVERSITY (PA) (03166001)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델라웨어밸리대학교(펜실베이니아, 03166001) > 사건 합의문	DELAWARE VALLEY UNIVERSITY (PA) (03166001)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미주리웨스턴주립대학교(미주리주, 07166001) > 사건 조사결과	Missouri Western State University (MO) (07166001)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미주리웨스턴주립대학교(미주리주, 07166001) > 사건 합의문	Missouri Western State University (MO) (07166001)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체메케타커뮤니티칼리지(오리건주, 10182013) > 사건 조사결과	Chemeketa CC (OR) (10182013)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체메케타커뮤니티칼리지(오리건주, 10182013) > 사건 합의문	Chemeketa CC (OR) (10182013)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니콜스주립대학교(루이지애나주, 06162077) > 사건 조사결과	NICHOLLS STATE UNIVERSITY (LA) (06162077)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니콜스주립대학교(루이지애나주, 06162077) > 사건 합의문	NICHOLLS STATE UNIVERSITY (LA) (06162077)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워렌시교육청(오하이오주, 15171433) > 사건 조사결과	WARREN CITY SD (OH) (15171433)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워렌시교육청(오하이오주, 15171433) > 사건 합의문	WARREN CITY SD (OH) (15171433)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타마콰지역교육청(펜실베이니아주, 03171333) > 사건 조사결과	TAMAQUA AREA SD (PA) (03171333)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타마콰지역교육청(펜실베이니아주, 03171333) > 사건 합의문	TAMAQUA AREA SD (PA) (03171333)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그린우드52카운티교육청(사우스캐롤라이나주, 11161371) > 사건 조사결과	GREENWOOD 52 COUNTY SCHOOL DISTRICT (SC) (11161371)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그린우드52카운티교육청(사우스캐롤라이나주, 11161371) > 사건 합의문	GREENWOOD 52 COUNTY SCHOOL DISTRICT (SC) (11161371)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하디카운티교육청(웨스트버지니아주, 03171233) > 사건 조사결과	HARDY COUNTY SCHOOL DISTRICT (WV) (03171233)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하디카운티교육청(웨스트버지니아주, 03171233) > 사건 합의문	HARDY COUNTY SCHOOL DISTRICT (WV) (03171233)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하트윅컬리지(뉴욕주, 02182167) > 사건 조사결과	HARTWICK COLLEGE (NY) (02182167)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하트윅컬리지(뉴욕주, 02182167) > 사건 합의문	HARTWICK COLLEGE (NY) (02182167)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어퍼퍼키오민교육청(펜실베이니아주, 03181175) > 사건 조사결과	UPPER PERKIOMEN SD (PA) (03181175)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어퍼퍼키오민교육청(펜실베이니아주, 03181175) > 사건 합의문	UPPER PERKIOMEN SD (PA) (03181175)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웨스턴네브래스카커뮤니티칼리지(네브래스카주, 07162108) > 사건 조사결과	Western Nebraska Community College (NE) (07162108)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웨스턴네브래스카커뮤니티칼리지(네브래스카주, 07162108) > 사건 합의문	Western Nebraska Community College (NE) (07162108)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미네소타대학교 트윈시티(미네소타주, 05152038) > 사건 조사결과	UNIVERSITY OF MINNESOTA-TWIN CITIES (MN) (05152038)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미네소타대학교 트윈시티(미네소타주, 05152038) > 사건 합의문	UNIVERSITY OF MINNESOTA-TWIN CITIES (MN) (05152038)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트리니티지역교육청(펜실베이니아주, 03181121) > 사건 조사결과	TRINITY AREA SD (PA) (03181121)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트리니티지역교육청(펜실베이니아주, 03181121) > 사건 합의문	TRINITY AREA SD (PA) (03181121)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캘리포니아세인트마리대학교(캘리포니아주, 09182225) > 사건 조사결과	SAINT MARY'S COLLEGE OF CALIFORNIA (CA) (09182225)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캘리포니아세인트마리대학교(캘리포니아주, 09182225) > 사건 합의문	SAINT MARY'S COLLEGE OF CALIFORNIA (CA) (09182225)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시애틀제1교육청(워싱턴주, 10181302) > 사건 조사결과	Seattle SD No. 1 (WA) (10181302)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시애틀제1교육청(워싱턴주, 10181302) > 사건 합의문	Seattle SD No. 1 (WA) (10181302)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햄버그지역교육청(펜실베이니아주, 03181367) > 사건 조사결과	HAMBURG AREA SD (PA) (03181367)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햄버그지역교육청(펜실베이니아주, 03181367) > 사건 합의문	HAMBURG AREA SD (PA) (03181367)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토머스모어대학교(켄터키주, 03182152) > 사건 조사결과	THOMAS MORE COLLEGE (KY) (03182152)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토머스모어대학교(켄터키주, 03182152) > 사건 합의문	THOMAS MORE COLLEGE (KY) (03182152)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밍고카운티교육청(웨스트버지니아주, 03161272) > 사건 조사결과	MINGO COUNTY SCHOOL DISTRICT (WV) (03161272)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밍고카운티교육청(웨스트버지니아주, 03161272) > 사건 합의문	MINGO COUNTY SCHOOL DISTRICT (WV) (03161272)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디어린저교육청(워싱턴주, 10181346) > 사건 조사결과	Dieringer SD No. 343 (WA) (10181346)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디어린저교육청(워싱턴주, 10181346) > 사건 합의문	Dieringer SD No. 343 (WA) (10181346)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롱비치교육청(캘리포니아주, 09161525) > 사건 조사결과	LONG BEACH UNIFIED (CA) (09161525)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롱비치교육청(캘리포니아주, 09161525) > 사건 합의문	LONG BEACH UNIFIED (CA) (09161525)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해즐렛교육청(뉴저지주, 02181470) > 사건 조사결과	HAZLET TOWNSHIP SCHOOL DISTRICT (NJ) (02181470)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해즐렛교육청(뉴저지주, 02181470) > 사건 합의문	HAZLET TOWNSHIP SCHOOL DISTRICT (NJ) (02181470)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앨함브라교육청(캘리포니아주, 09161548) > 사건 조사결과	ALHAMBRA UNIFIED (CA) (09161548)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앨함브라교육청(캘리포니아주, 09161548) > 사건 합의문	ALHAMBRA UNIFIED (CA) (09161548)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웍사해치교육청(텍사스주, 06161456) > 사건 조사결과	WAXAHACHIE ISD (TX) (06161456)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웍사해치교육청(텍사스주, 06161456) > 사건 합의문	WAXAHACHIE ISD (TX) (06161456)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태프트교육청(캘리포니아주, 09181344) > 사건 조사결과	TAFT UNION HIGH (CA) (09181344)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태프트교육청(캘리포니아주, 09181344) > 사건 합의문	TAFT UNION HIGH (CA) (09181344)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사우던일리노이대학교 에드워즈빌(일리노이주, 05166001) > 사건 조사결과	SOUTHERN ILLINOIS UNIVERSITY-EDWARDSVILLE (IL) (05166001)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사우던일리노이대학교 에드워즈빌(일리노이주, 05166001) > 사건 합의문	SOUTHERN ILLINOIS UNIVERSITY-EDWARDSVILLE (IL) (05166001)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아보열스교육청(루이지애나주, 06181451) > 사건 조사결과	AVOYELLES PARISH SCHOOL BOARD (LA) (06181451)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아보열스교육청(루이지애나주, 06181451) > 사건 합의문	AVOYELLES PARISH SCHOOL BOARD (LA) (06181451)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인디애나지역교육청(펜실베이니아주, 03161299) > 사건 조사결과	INDIANA AREA SD (PA) (03161299)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인디애나지역교육청(펜실베이니아주, 03161299) > 사건 합의문	INDIANA AREA SD (PA) (03161299)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매릴랜드대학교 볼티모어카운티(매릴랜드주, 03192117) > 사건 조사결과	UNIVERSITY OF MARYLAND-BALTIMORE COUNTY (MD) (03192117)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매릴랜드대학교 볼티모어카운티(매릴랜드주, 03192117) > 사건 합의문	UNIVERSITY OF MARYLAND-BALTIMORE COUNTY (MD) (03192117)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매릴랜드대학교 볼티모어시(매릴랜드주, 03192126) > 사건 조사결과	UNIVERSITY OF MARYLAND, BALTIMORE (MD) (03192126)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매릴랜드대학교 볼티모어시(매릴랜드주, 03192126) > 사건 합의문	UNIVERSITY OF MARYLAND, BALTIMORE (MD) (03192126)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라운드락교육청(텍사스주, 06191394) > 사건 조사결과	Round Rock ISD (TX) (06191394)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라운드락교육청(텍사스주, 06191394) > 사건 합의문	Round Rock ISD (TX) (06191394)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메나머니지역교육청(위스콘신주, 05171450) > 사건 조사결과	MENOMONIE AREA (WI) (05171450)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메나머니지역교육청(위스콘신주, 05171450) > 사건 합의문	MENOMONIE AREA (WI) (05171450)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오클랜드시티대학교(인디애나주, 05172002) > 사건 조사결과	OAKLAND CITY UNIVERSITY (IN) (05172002)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오클랜드시티대학교(인디애나주, 05172002) > 사건 합의문	OAKLAND CITY UNIVERSITY (IN) (05172002)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클리브랜드카운티교육청(아칸소주, 06141411) > 사건 조사결과	Cleveland County School District (AR) (06141411)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클리브랜드카운티교육청(아칸소주, 06141411) > 사건 합의문	Cleveland County School District (AR) (06141411)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클리브랜드카운티교육청(아칸소주, 06141411) > 사건 추가합의문	Cleveland County School District (AR) (06141411) > Modified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디킨슨주립대학교(노스다코다주, 05162047) > 사건 조사결과	DICKINSON STATE UNIVERSITY (ND) (05162047)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디킨슨주립대학교(노스다코다주, 05162047) > 사건 합의문	DICKINSON STATE UNIVERSITY (ND) (05162047)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네바다대학교 리노(네바다주, 10192134) > 사건 조사결과	University of NV-Reno (NV) (10192134)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네바다대학교 리노(네바다주, 10192134) > 사건 합의문	University of NV-Reno (NV) (10192134)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볼차탐지역교육청(일리노이주, 05191418) > 사건 조사결과	BALL CHATHAM C U SCHOOL DIST 5 (IL) (05191418)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볼차탐지역교육청(일리노이주, 05191418) > 사건 합의문	BALL CHATHAM C U SCHOOL DIST 5 (IL) (05191418)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프래밍엄교육청(매사추세츠주, 01181113) > 사건 조사결과	FRAMINGHAM PS (MA) (01181113)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프래밍엄교육청(매사추세츠주, 01181113) > 사건 합의문	FRAMINGHAM PS (MA) (01181113)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포틀랜드1J교육청(오리건주, 10191276) > 사건 조사결과	Portland SD 1J (OR) (10191276)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포틀랜드1J교육청(오리건주, 10191276) > 사건 합의문	Portland SD 1J (OR) (10191276)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산후안통합교육청(캘리포니아주, 09181076) > 사건 조사결과	SAN JUAN UNIFIED (CA) (09181076)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산후안통합교육청(캘리포니아주, 09181076) > 사건 합의문	SAN JUAN UNIFIED (CA) (09181076)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제71지역교육청(메인주, 01201076) > 사건 조사결과	RSU 71 - BELFAST (ME) (01201076)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제71지역교육청(메인주, 01201076) > 사건 합의문	RSU 71 - BELFAST (ME) (01201076)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볼주립대학교(인디애나주, 05192303) > 사건 조사결과	BALL STATE UNIVERSITY (IN) (05192303)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볼주립대학교(인디애나주, 05192303) > 사건 합의문	BALL STATE UNIVERSITY (IN) (05192303)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노스웨스트미시시피커뮤니티칼리지(미시시피주, 06202136) > 사건 조사결과	NORTHWEST MISSISSIPPI COMMUNITY COLLEGE (MS) (06202136)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노스웨스트미시시피커뮤니티칼리지(미시시피주, 06202136) > 사건 합의문	NORTHWEST MISSISSIPPI COMMUNITY COLLEGE (MS) (06202136)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링컨카운티교육청(미시시피주, 06171835) > 사건 조사결과	LINCOLN COUNTY SCHOOL DISTRICT (MS) (06171835)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링컨카운티교육청(미시시피주, 06171835) > 사건 합의문	LINCOLN COUNTY SCHOOL DISTRICT (MS) (06171835)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체임버스버그지역교육청(펜실베이니아주, 03191345) > 사건 조사결과	CHAMBERSBURG AREA SD (PA) (03191345)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체임버스버그지역교육청(펜실베이니아주, 03191345) > 사건 합의문	CHAMBERSBURG AREA SD (PA) (03191345)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비스타통합교육청(캘리포니아주, 09161494) > 사건 조사결과	VISTA UNIFIED (CA) (09161494)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비스타통합교육청(캘리포니아주, 09161494) > 사건 합의문	VISTA UNIFIED (CA) (09161494)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링컨대학교(펜실베이니아주, 03162170 및 03162174) > 사건 조사결과	LINCOLN UNIVERSITY (PA) (03162170 & 03162174)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링컨대학교(펜실베이니아주, 03162170 및 03162174) > 사건 합의문	LINCOLN UNIVERSITY (PA) (03162170 & 03162174) > Agreement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맥민빌교육청(오리건주, 10201041) > 사건 조사결과	McMinnville SD 40 (OR) (10201041) > Letter
미국	판례	인권 성별	교육부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맥민빌교육청(오리건주, 10201041) > 사건 합의문	McMinnville SD 40 (OR) (10201041) > Agreement
미국	사이트_법제		미국 연방정부 관보	The Federal Register
미국	사이트_법제		미국 연방정부 출판실 정부문서 포털	GovInfo
미국	사이트_법제		미국법전(현행 연방 법률)	The United States Code
미국	사이트_법제		미국 연방규정(온라인)	e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미국	사이트_법제		미국 연방정부 부처 웹사이트 모음	
미국	사이트_법제		미국 정부 포털	
미국	사이트_법제		미국 All Law (법률정보)	

미국	사이트_법제		미국 연방규정 전자포털	
미국	사이트_법제		미국 연방의회	The US Congress
미국	사이트_법제		미국 법무부 사법통계국 > 범죄유형별 정보 > 폭력범죄 > 성폭력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 Crime Type > Violent Crime > Rape and Sexual Assault
미국	사이트_법제		미국 교육부 > 민권실 분쟁해결 사례 데이터베이스	Department of Education > Office for Civil Rights Recent Resolution Search
미국	사이트_스포츠		미국대학경기협회(NCAA)	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 (NCAA)
미국	사이트_스포츠		미국대학경기협회(NCAA) 법제DB	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 (NCAA) Legislative Services Database
미국	사이트_스포츠		미국대학경기협회(NCAA) 주요위반사례데이터베이스	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 (NCAA) Major Infractions
미국	사이트_스포츠		미국아마추어경기연맹	
미국	사이트_스포츠		미국올림픽위원회	
미국	사이트_스포츠		미국정부지출	
미국	사이트_스포츠		대통령체력스포츠자문위원회	PCSFN (Presidential Council on Sports, Fitness and Nutrition)
미국	사이트_스포츠			LA parks and recreation
미국	사이트_스포츠			Seattle parks and recreation
미국	사이트_스포츠			The statistics portal
미국	사이트_스포츠		미국안전스포츠센터	U.S. Center for SafeSport
미국	사이트_스포츠		미국안전스포츠센터 중앙징계데이터베이스	U.S. Center for SafeSport > Centralized Disciplinary Database
미국	사이트_스포츠		미국반도핑기구	U.S. Anti-Doping Agency (USADA)
미국	사이트_스포츠		미국 보건부 질병예방보건증진실(ODPHP)	Office of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ODPHP)
미국	사이트_스포츠		국가체력재단	National Fitness Foundation
미국	사이트_스포츠		대통령유소년체력사업	Presidential Youth Fitness Program
미국	사이트_스포츠		스페셜올림픽: 포용적보건센터	Special Olympics: Center for Inclusive Health
미국	사이트_스포츠		CDC 교내보건사업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Healthy Schools
미국	사이트_스포츠		IMG 아카데미	IMG Academy
영국	법제		1997 괴롭힘방지법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

영국	법제		2006 회사법	Companies Act 2006
영국	법제		1974 산업안전보건법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영국	법제		2010 평등법	Equality Act 2010
영국	법제		2006 평등법	Equality Act 2006
영국	법제		1989 아동법	Children Act 1989
영국	법제		2004 아동법	Children Act 2004
영국	법제		아동(합리적 체벌의 항변 폐지)(웨일즈)법 2020	Children (Abolition of Defence of Reasonable Punishment) (Wales) Act 2020
영국	법제		2019 스토킹보호법	Stalking Protecting Act 2019
영국	법제	형사	1995 형사소송(스코틀랜드)법	Criminal Procedure (Scotland) Act 1995
영국	법제	형사	2019 취약증인(형사증거)(스코틀랜드)법	Vulnerable Witness (Criminal Evidence) (Scotland) Act 2019
영국	법제	형사	2019 형사책임연령(스코틀랜드)법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Scotland) Act 2019
영국	법제		2011 아동청문(스코틀랜드)법	Children's Hearings (Scotland) Act 2011
영국	법제	형사	2003 성범죄법	Sexual Offences Act 2003
영국	법제		2006 아동돌봄법	Childcare Act 2006
영국	법제		2016 아동돌봄법	Childcare Act 2016
영국	법제	교육	1998 학교표준기본법	School Standards and Framework Act 1998
영국	법제		2017 아동가족법	Children and Families Act 2014
영국	법제	교육	1996 교육법	Education Act 1996
영국	법제	교육	2002 교육법	Education Act 2002
영국	법제	교육	2005 교육법	Education Act 2005
영국	법제		1963 아동 및 청소년법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3
영국	법제		1996 가족법	Family Law Act 1996
영국	법제		2000 돌봄기준법	Care Standards Act 2000
영국	법제	체육	2020 버밍엄 영연방 게임법	Birmingham Commonwealth Games Act 2020
영국	법제	체육	2006 런던올림픽 및 패럴림픽 게임법	London Olympic Games and Paralympic Games Act 2006
영국	법제	체육	UK스포츠 왕실인가	UK Sport Board Royal Charter
영국	법제	체육	UK스포츠 왕실인가 개정	Amendments to the Charter of the United Kingdom Sports Council
영국	법제		1978 아동보호법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
영국	법제	인권	1998 인권법	Human Rights Act 1998

영국	법제	인권 성별	2004 성별인정법	Gender Recognition Act 2004
영국	정책자료		하원: 영국 스포츠 관련 기관 설명	Sport in the UK
영국	정책자료		하원 토론자료: 스포츠 분야 아동 및 유소년 보호	Safeguarding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sport
영국	정책자료		하원: 연구보고 제6836호, 2019년 12월 17일. 교내 체육 교과, 체육 활동 및 스포츠	Briefing Paper Number 6836, 17 December 2019. Physical education, physical activity and sport in schools
영국	정책자료		하원: 연구보고 제8785호, 2020년 3월 27일. 버밍엄영연방게임법안 [HL] 2019-21	Briefing Paper Number 8785, 27 March 2020. Birmingham Commonwealth Games Bill [HL] 2019-21
영국	정책자료		하원 토론자료: 스포츠에서의 차별	Discrimination in Sport
영국	정책자료		하원 토론자료: 스포츠에서의 인종차별	Racism in Sport
영국	정책자료		하원 토론자료: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쉽 축구 클럽의 입석 관중석 허용에 대한 전자민원 제207040호(토론자료)	E-petition 207040 relating to allowing Premier League and Championship football clubs to introduce safe standing
영국	정책자료		하원 토론자료: 후천적 뇌손상	Acquired brain injury
영국	정책자료		하원 연구보고 제8181호, 2017년 12월 14일. 잉글랜드 스포츠 참여도	Briefing Paper Number CBP 8181, 14 December 2017. Sport participation in England
영국	정책자료		하원 토론자료: 축구협회거버넌스	Governance of the Football Association
영국	정책자료		하원 토론자료: 청량음료산업에서 징수한 세입의 학교 스포츠 자금 할당	Allocation of funding from soft drinks industry levy for sport in schools
영국	정책자료		하원 연구보고 제7040호, 2016년 8월 11일. 아동 성학대 및 배경에 대한 자체조사	Briefing Paper Number 07040, 11 August 2016. The Independent Inquiry into Child Sexual Abuse and background
영국	정책자료		하원 연구보고 제4868호, 2016년 3월 18일. 2012 런던올림픽이 스포츠계에 미친 영향은?	Briefing Paper Number 4868, 18 March 2016. London Olympics 2012: a sporting legacy?
영국	정책자료		하원 토론자료: 실외 여가활동의 경제적 가치	Economic value of outdoor recreation
영국	정책자료		하원 연구보고 제6052조, 2015년 9월 10일. 학교체육협력사업	Briefing Paper Number 6052, 10 September 2015. School Sport Partnerships
영국	정책자료		[도서] 올림픽 영국: 1908년과 1948년 런던올림픽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	Olympic Britain: Social and economic change since the 1908 and 1948 London Games

영국	정책자료		연구자료 11/61, 2011년 8월 22일. 런던올림픽 및 패럴림픽 게임(개정)법안: 위원회 보고서	Research Paper 11/61, 22 August 2011: London Olympic Games and Paralympic Games (Amendment) Bill: Committee Stage Report
영국	정책자료		연구자료 11/34, 2011년 4월 21일. 런던올림픽 및 패럴림픽 게임(개정)법안	Research Paper 11/34, 21 April 2011. London Olympic Games and Paralympic Games (Amendment) Bill
영국	정책자료		스포츠 미래: 활동적 국가를 위한 새로운 전략	Sporting Future: A New Strategy for an Active Nation
영국	정책자료	체육	스포츠 미래: 제1차 연간보고서	Sporting Future - First Annual Report
영국	정책자료	체육	스포츠 미래: 제2차 연간보고서	Sporting Future - Second Annual Report
영국	정책자료		스포츠잉글랜드: 성별 임금 격차 보고서 2019	Gender Pay Gap Report 2019
영국	정책자료		스포츠잉글랜드: 동일임금 감사 보고서 2018	Equal Pay Audit Report 2018
영국	정책자료		스포츠잉글랜드: 평등정책 2019	Equal Policy 2019
영국	정책자료		스포츠잉글랜드: 다양성 행동계획 2017-2022	Diversity Action Plan 2017-2022
영국	정책자료		스포츠잉글랜드: 아동보호 자가진단정보집	Self Assessment Information Pack
영국	정책자료		스포츠잉글랜드: 보호	Safeguarding
영국	정책자료		스포츠에서의 동성애 혐오: 의회연도 2016-17 제7차 보고서	Homophobia in Sport: Seventh Report of Session 2016-17
영국	정책자료		스포츠 경기장 접근성: 의회연도 2016-17 제5차 보고서	Accessibility of Sports Stadia
영국	정책자료		스톤월: 스포츠의 성소수자 포용성에 대한 제언	Stonewall: Top tips for LGBT inclusion in sport
영국	정책자료		UK스포츠 소개, 이의제기 및 공익신고	UK Sport
영국	정책자료		UK스포츠 관리계약 2016-2020	UK Sport Management Agreement 2016-2020
영국	정책자료		UK스포츠 이사회 위임사항	UK Sport Board Terms of Reference
영국	정책자료		UK스포츠 이사회 이해관계 신고	UK Sport Board Declarations of Interest
영국	정책자료		UK스포츠 이사회 다양성 행동계획	UK Sport Board Diversity Action Plan 2017-2021
영국	정책자료		UK스포츠 거버넌스 행동계획	UK Sport Governance Action Plan
영국	정책자료		UK스포츠 스포츠거버넌스규약	A Code for Sports Governance
영국	정책자료		UK스포츠 연간보고서	Annual Reports
영국	정책자료		UK스포츠 선수 의견 및 대표성 점검 최종 보고서	ATHLETE VOICE AND REPRESENTATION REVIEW FINAL REPORT
영국	정책자료		UK스포츠 공개정책연구 2018	UK Sport Public Consultation 2018

영국	정책자료		UK스포츠 미래투자전략	UK Sport Future Investment Strategy statement
영국	정책자료		UK스포츠 사업계획 2017-2021	UK Sport Business Plan 2017-2021
영국	정책자료		스포츠 도핑 퇴치에 대한 조사 (2017-2019의회)	Combatting doping in sport inquiry (2017-2019)
영국	정책자료		문화체육 참여의 사회적 영향 조사 (2017-2019의회)	Changing Lives: the social impact of participation in culture and sport
영국	정책자료	인권_성별	「2004 성별인정법」 전체 이용자 대상 일반지침	The General Guide for all Users Gender Recognition Act 2004
영국	정책자료	체육	정신장애와 엘리트 체육 행동계획	Mental Health and Elite Sport Action Plan
영국	정책자료	체육	2010-2015 정부정책: 엘리트 스포츠 성과	2010 to 2015 government policy: elite sports performance
영국	정책자료	체육	2010-2015 정부정책: 스포츠 참여	2010 to 2015 government policy: sports participation
영국	정책자료	체육	생생한 영향: 2010-15 스포츠 정책 및 투자	A Living Legacy: 2010-15 Sport Policy and Investment
영국	정책자료	인권_성별	정부의 "여성스포츠자문단" 중간보고서	Interim Report of the Government's Women and Sport Advisory Board
영국	정책자료	인권_인종	형사사법체계 내의 인종간 격차 문제 2018	Tackling racial disparity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2018
영국	정책자료	인권_인종	형사사법체계 내의 인종간 격차 문제 2020	Tackling racial disparity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2020
영국	정책자료	인권_장애	국제연합「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영국 1차 이행보고서 [개요]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itial report on how the UK is implementing it [Overview]
영국	정책자료	인권_장애	국제연합「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영국 1차 이행보고서(본문~첨부A, B, C)	UK Initial Report O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영국	정책자료	인권_장애	국제연합「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영국 1차 이행보고서(첨부D, E)	UK Initial Report O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Annex D, Annex E)
영국	정책자료	인권_장애	영국 핵심 보고서: 국제연합「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영국 1차 이행보고서 추가 정보	UK Core Report: Additional information on the UK in support of the UK Initial Report o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영국	정책자료	인권_장애	영국 1차 이행보고서 관련 안건 목록(UN의 추가정보 제출요구서)	List of issues in relation to the initial repor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영국	정책자료	인권_장애	장애인의 권리: 영국 1차 이행보고서 추가 정보(2017년) [개요]	Disabled people's rights: information for the UK's first periodic review [Overview]
영국	정책자료	인권_장애	장애인의 권리: 영국 1차 이행보고서 추가 정보(2017년)	List of issues in relation to the initial repor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government response
영국	정책자료	인권_장애	장애인의 권리: 영국 1차 이행보고서 추가 정보(2017년) 첨부	Annexes A and B: additional information to support the response of the UK to the list of issues
영국	정책자료	인권_장애	영국의 1차 보고서에 대한 국제연합의 최종 검토 결과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initial repor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영국	정책자료	인권_장애	장애인의 권리: 영국 1차 이행보고서에 대한 국제연합 최종 검토 결과 후속보고서 2018 [개요]	Disabled people's rights: information following the UK's first periodic review [Overview]
영국	정책자료	인권_장애	영국 1차 이행보고서에 대한 국제연합 최종 검토 결과 후속보고서 2018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initial repor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initial government response
영국	정책자료	인권_장애	영국 1차 이행보고서에 대한 국제연합 최종 검토 결과 후속보고서 2018 > 장애인을 완전히 포용하는 사회를 위한 개선 사항: 장애인, 보건 및 노동 국무상의 서한	Progress on the UK's vision to build a society which is fully inclusive of disabled people: letter from the Minister for Disabled People, Health and Work
영국	정책자료	인권_장애	장애인의 권리: 국제연합 최종 검토 결과의 일부 권고사항에 대한 영국의 2019년 보고서 [개요]	Disabled people's rights: the UK's 2019 report on select recommendations of the UN periodic review [Overview]
영국	정책자료	인권_장애	국제연합 최종 검토 결과의 일부 권고사항에 대한 영국의 2019년 보고서	The UK's 2019 response to select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영국	정책자료	인권_장애	국제연합 최종 검토 결과의 일부 권고사항에 대한 영국의 2019년 보고서 > 장애인을 완전히 포용하는 사회를 위한 개선 사항 보고서 2019	2019 Progress Report on the UK's vision to build a society which is fully inclusive of disabled people
영국	정책자료	인권_장애	"디스어빌리티 컨피던트" 사업의 지향점 및 목표	Disability Confident aims and objectives
영국	정책자료	인권_장애	삶의 향상: 일, 건강, 장애의 미래	Improving Lives: The Future of Work, Health, and Disability

영국	정책자료	인권_성별	LGBT 행동계획: 2018-2019 연간 개선보고서	LGBT Action Plan: Annual Progress Report 2018 to 2019
영국	정책자료	인권_성별	LGBT 행동계획 2018	LGBT Action Plan 2018: Improving the lives of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people
영국	정책자료	인권_성별	모든 단계의 성평등: 변화를 위한 로드맵 [개요]	Gender equality at every stage: a roadmap for change [Overview]
영국	정책자료	인권_성별	모든 단계의 성평등: 변화를 위한 로드맵	Gender equality at every stage: a roadmap for change
영국	정책자료	인권_성별	성평등 모니터	Gender Equality Monitor
영국	정책자료	인권_성별	변화의 옹호: 성별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의 인생 전반에 걸친 영향	The Case for Change: How economic gender inequalities develop across the life course
영국	정책자료	인권_기타	인권의 시행: 의회 조사 [개요]	Enforcing Human Rights [Overview]
영국	정책자료	인권_기타	인권의 시행: 의회 조사	Enforcing Human Rights
영국	정책자료	인권_기타	인권의 시행: 정부 답변서	Enforcing human rights: government response
영국	정책자료	인권_기타	평등인권위원회: 영국은 더 공정한가? 평등과 인권의 실태 보고 2018	Is Britain Fairer? The state of equality and human rights 2018
영국	정책자료	인권_기타	평등인권위원회: 권한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 Our Powers
영국	정책자료	인권_기타	평등인권위원회: 권한 > 규율방침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 Our Powers > The Commission's regulatory approach
영국	정책자료	인권_기타	평등인권위원회: 권한 > 법원 관련 조치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 Our Powers > Court Action
영국	정책자료	인권_기타	평등인권위원회: 권한 > 심사, 조사 및 그 밖의 권한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 Our Powers > Inquiries, investigations and wider powers
영국	정책자료	인권_기타	평등인권위원회: 권한 > 변호인단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 Our Powers > Panel of Counsel
영국	배경자료	형사	진실규명프로젝트 주제 보고서: 스포츠계 아동의 성적 학대	Truth Project Thematic Report: Child sexual abuse in sports
영국	배경자료	형사	진실규명프로젝트 주제 보고서: 스포츠계 아동의 성적 학대 개요	Truth Project Thematic Report: Child sexual abuse in sports > Summary
영국	판례	형사	오프사이드트러스트 > 소식 및 성명	Offside Trust > News and Views
영국	판례	형사	배리 베넬 사건 판결문(2018)	Sentencing remarks of HHJ Goldstone QC: R -v- Jones (aka Barry Bennell)

영국	판례	형사	배리 베넬 사건 가디언 2020.10.8.일자 보도	Barry Bennell sentenced to fifth jail term for sexual offences against boys
영국	판례	형사	배리 베넬 사건 연합뉴스 2016.11.25.일자 보도	
영국	정책자료	체육	영국육상연맹(UKA): 징계, 준수의무 및 분쟁해결	DISCIPLINARY DECISIONS, COMPLIANCE MATTERS AND DISPUTE RESOLUTION
영국	판례	체육	영국육상연맹(UKA): 징계, 준수의무 및 분쟁해결 > 코치 자격증 결정	LICENSING DECISIONS - COACHES
영국	판례	체육	영국육상연맹(UKA): 징계, 준수의무 및 분쟁해결 > 사건관리단 결정례(코치)	CASE MANAGEMENT DECISIONS - Coaches
영국	판례	체육	영국육상연맹(UKA): 징계, 준수의무 및 분쟁해결 > Technical Offical 자격증 결정	LICENSING DECISIONS – TECHNICAL OFFICIALS
영국	판례	체육	영국육상연맹(UKA): 징계, 준수의무 및 분쟁해결 > 사건관리단 결정례(선수)	CASE MANAGEMENT DECISIONS - ATHLETES
영국	배경자료	체육	BBC 2020.8.19.일자 보도: UK스포츠, 2017년 이후 선수 대상 정서적 학대 및 방임 의심사례 19건 적발	BBC: UK Sport notified of 19 allegations of emotional abuse or neglect of athletes since 2017
영국	배경자료	체육	가디언: 영국체조협회, 엘리트 선수 학대 의혹 조사 예정	The Guardian: British Gymnastics to investigate alleged abuse of elite athletes
영국	정책자료	체육	영국체조협회: 신고 & 징계 정책과 절차	COMPLAINTS & DISCIPLINARY POLICY AND PROCEDURE
영국	정책자료	체육	영국체조협회: 신고정책	British Gymnastics Complaints Policy
영국	사이트_스포츠		UK스포츠	UK Sport
영국	사이트_스포츠		카운티 스포츠 파트너쉽 네트워크	Active Parnerships
영국	사이트_스포츠		스포츠 시설 안전 관리국	
영국	사이트_스포츠		스포츠 잉글랜드	Sport England
영국	사이트_스포츠		스포츠 스코틀랜드	Sport Scotland
영국	사이트_스포츠		스포츠 웨일즈	Sport Wales
영국	사이트_스포츠		스포츠 노던아일랜드	Sport Northern Ireland
영국	사이트_스포츠		문화·미디어·스포츠부	
영국	사이트_스포츠		스포츠경기장안전국	Sports Grounds Safety Authority
영국	사이트_스포츠		스쿨 게임	
영국	사이트_스포츠		액티브 플레이스	

영국	사이트_스포츠		액티비티얼라이언스	
영국	사이트_스포츠		스포팅이퀄스	
영국	사이트_스포츠		프라이드스포츠	
영국	사이트_스포츠		스톤월의 "무지개레이스"	
영국	사이트_스포츠		위민인스포트	
영국	사이트_스포츠		위민스 스포트 트러스트	
영국	사이트_스포츠		킥잇아웃	
영국	사이트_스포츠		스포츠아동보호단	Child Protection in Sport Unit
영국	사이트_스포츠		지역아동보호이사회	Local Safeguarding Children Boards
영국	사이트_스포츠		런던아동보호조합	London Safeguarding Children Partnership
영국	사이트_스포츠		영국체육회	UK Athletics
영국	사이트_스포츠		잉글랜드체육회	England Athletics
영국	사이트_법제		영국 법령정보(국가기록원)	UK legislation
영국	사이트_법제		영국 정부	
영국	사이트_법제		영국 관보	
영국	사이트_법제		영국 의회	
영국	사이트_법제		영국 의회 출판물 및 기록	
영국	사이트_법제		영국 의회하원 도서관	
영국	사이트_법제		영국 의회상원 도서관	
영국	사이트_법제		평등인권위원회 판례 검색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 Legal case search
영국	사이트_법제		영국 사법부 판례 검색	Courts and Tribunals Judiciary > Judgments
호주	법제	체육	1989 오스트레일리아스포츠위원회법	Australian Sports Commission Act 1989
호주	법제	체육	오스트레일리아스포츠도핑금지국(결과 및 경과조항)법 2006	Australian Sports Anti-Doping Authority (Consequential and Transitional Provisions) Act 2006
호주	법제	체육	국가스포츠재판소법 2019	National Sports Tribunal Act 2019
호주	법제	체육	호주공정스포법 2020	Sport Integrity Australia Act 2020
호주	법제	헌법	헌법	Commonwealth of Australia Constitution Act
호주	법제	형사	형법전 1995	Criminal Code Act 1995
호주	법제	인권_연령	연령차별법 2004	Age Discrimination Act 2004

호주	정책자료	인권_연령	호주인권위원회: 연령차별법 2004 한시적 예외 가이드라인	Temporary exemptions under the Age Discrimination Act 2004
호주	법제	인권_장애	장애차별법 1992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
호주	정책자료	인권_장애	호주인권위원회: 장애차별법 1992 한시적 예외가이드라인	Temporary exemptions under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
호주	법제	인권_인종	인종차별법 1975	Racial Discrimination Act 1975
호주	법제	인권_성별	성차별법 1984	Sex Discrimination Act 1984
호주	정책자료	인권_성별	호주인권위원회: 성차별법 1984의 한시적 예외 가이드라인	Temporary exemptions under the Sex Discrimination Act 1984
호주	법제	인권_기타	현대노예법 2018	Modern Slavery Act 2018
호주	정책자료	인권_기타	호주인권위원회: 현대노예법 2018 지지 성명	Statement of Support for an Australian Modern Slavery Act (2017)
호주	법제	인권_기타	호주인권위원회법 1986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Act 1986
호주	정책자료	인권_기타	호주인권위원회: 입법심사 가이드라인	Commission guidelines for the examination of enactments under Commission legislation
호주	정책자료	인권_기타	호주인권위원회: 법정절차 개입 가이드라인	Intervention in court proceedings - The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Guidelines
호주	정책자료	인권_성별	오스트레일리아스포츠위원회 정책자료: 성추행 대응	Australian Sports Commission: Responding to Sexual Misconduct
호주	정책자료	인권_아동	오스트레일리아스포츠위원회 정책자료: 아동안전	Australian Sports Commission: Sport Australia Board Child Safe Commitment Statement
호주	정책자료	체육	오스트레일리아스포츠위원회 정책자료: 도핑금지	Australian Sports Commission: Anti-doping policy
호주	정책자료	인권_성별	성전환 성다양성 지침 2019	Trans and Gender Diverse Guidelines 2019
호주	정책자료	인권_성별	성찰적프레임워크: 성전환자 다양한 성적지향성의 사람을 스포츠계에 포함하기 위한 지침	Reflective Practice Framework: Guidelines for the inclusion of transgender and gender diverse people in sport
호주	정책자료	인권_기타	호주인권위원회: 차별 관련 연방 법률 보고서 2016	Federal Discrimination Law 2016
호주	정책자료	인권_기타	호주인권위원회: 차별 관련 연방 법률 개혁의 우선순위(2019)	Discussion paper: Priorities for federal discrimination law reform (2019)
호주	정책자료	인권_기타	호주인권위원회: 위원회계획서 2020-2021	Corporate Plan 2020-2021
호주	정책자료	인권_기타	호주인권위원회: 위원회계획서 2019-2020	Corporate Plan 2019-2020
호주	정책자료	인권_기타	호주인권위원회: 위원회계획서 2018-2019	Corporate Plan 2018-2019

호주	정책자료	인권_기타	호주인권위원회: 위원회계획서 2016-2017	Corporate Plan: 2016 - 2017
호주	정책자료	인권_기타	호주인권위원회: 호주의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 이행(2020)	Implementing OPCAT in Australia (2020)
호주	정책자료	인권_인종	호주인권위원회: 격차해소2020 (원주민)	Close the Gap (2020)
호주	정책자료	인권_인종	호주인권위원회: 격차해소2019 (원주민)	Close the Gap (2019)
호주	정책자료	인권_인종	호주인권위원회: 격차해소2018 (원주민)	Close The Gap - 10 Year Review (2018)
호주	정책자료	인권_인종	호주인권위원회: 격차해소2017 (원주민)	Close the Gap - Progress & Priorities report 2017
호주	정책자료	인권_인종	호주인권위원회: 격차해소2016 (원주민)	Close the Gap - Progress & Priorities report 2016
호주	정책자료	인권_인종	호주인권위원회: 격차해소2015 (원주민)	Close the Gap - Progress & Priorities report 2015
호주	정책자료	인권_인종	호주인권위원회: 격차해소2014 (원주민)	Close the Gap - Progress & Priorities report 2014
호주	정책자료	인권_인종	호주인권위원회: "집으로 데려오다" 인터액티브 정보 페이지	Bringing Them Home - interactive resource (2017)
호주	정책자료	인권_인종	호주인권위원회: 사회정의와 원주민 권리 보고서 2016	Social Justice and Native Title Report 2016
호주	정책자료	인권_인종	호주인권위원회: 사회정의와 원주민 권리 보고서 2015	Social Justice and Native Title Report 2015
호주	정책자료	인권_인종	호주인권위원회: 사회정의와 원주민 권리 보고서 2014	Social Justice and Native Title Report 2014
호주	정책자료	인권_인종	호주인권위원회: 사회정의와 원주민 권리 보고서 2013	Social Justice and Native Title Report 2013
호주	정책자료	인권_인종	호주인권위원회: 원주민 권리 보고서 2012	Native Title Report 2012
호주	정책자료	인권_인종	호주인권위원회: 사회정의 보고서 2012	Social Justice Report 2012
호주	정책자료	인권_인종	호주인권위원회: 원주민 권리 보고서 2011	Native Title Report 2011
호주	정책자료	인권_인종	호주인권위원회: 사회정의 보고서 2011	Social Justice Report 2011
호주	정책자료	인권_인종	호주인권위원회: 원주민 권리 보고서 2010	Native Title Report 2010
호주	정책자료	인권_인종	호주인권위원회: 사회정의 보고서 2010	Social Justice Report 2010
호주	정책자료	인권_인종	원주민 채용 전형	Targeted recruitment of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people
호주	정책자료	인권_인종	호주인권위원회: UN 원주민 인권 선언 현장 지침	Community Guide to the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호주	정책자료	인권_아동	호주인권위원회: 아동인권보고서 2019	Children's Rights Report 2019
호주	정책자료	인권_아동	호주인권위원회: 아동인권보고서 2017	Children's Rights Report 2017
호주	정책자료	인권_아동	호주인권위원회: 아동인권보고서 2016	Children's Rights Report 2016
호주	정책자료	인권_아동	호주인권위원회: 아동인권보고서 2015	Children's Rights Report 2015

호주	정책자료	인권_아동	호주인권위원회: 아동인권보고서 2014	Children's Rights Report 2014
호주	정책자료	인권_아동	호주인권위원회: 아동인권보고서 2013	Children's Rights Report 2013
호주	정책자료	인권_아동	호주인권위원회: 호주아동인권 점검결과	Children's Rights in Australia: a scorecard
호주	정책자료	인권_아동	호주인권위원회: 호주-뉴질랜드 아동보호위원회 성명 2019	Australian and New Zealand Children's Commissioners and Guardians Communiqué: November 2019
호주	정책자료	인권_아동	호주인권위원회: 호주-뉴질랜드 아동보호위원회 성명 2018.11.	Australian and New Zealand Children's Commissioners and Guardians Communiqué 12-14 November 2018
호주	정책자료	인권_아동	호주인권위원회: 호주-뉴질랜드 아동보호위원회 성명 2018.05.	Australian and New Zealand Children's Commissioners and Guardians Communiqué 15-16 May 2018
호주	정책자료	인권_아동	호주인권위원회: 호주 아동보호위원회 성명 2017.11.	Australian Children's Commissioners and Guardians Communiqué 15-16 November 2017
호주	정책자료	인권_아동	호주인권위원회: 호주 아동보호위원회 성명 2015.05.	Australian Children's Commissioners and Guardians Communique 20–21 May 2015
호주	정책자료	인권_아동	호주인권위원회: 호주 아동보호위원회 성명 2014.11.	Australian Children's Commissioners and Guardians Communique 11 November 2014
호주	정책자료	인권_아동	호주인권위원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보고서 2018	Report to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8)
호주	정책자료	인권_아동	호주인권위원회: 소년원 환경 및 처우에 대한 호주아동보호위원회 성명 2017	ACCG Statement on Conditions and Treatment in Youth Justice Detention (2017)
호주	정책자료	인권_아동	호주인권위원회: 사이버 따돌림과 방관	Cyberbullying and the Bystander
호주	정책자료	인권_성별	호주인권위원회: 호주 직장 내 성추행 조사 보고서 2020	National Inquiry into Sexual Harassment in Australian Workplaces
호주	정책자료	인권_성별	호주인권위원회: 호주 직장 내 성추행 조사 보고서 현장 지침 2020	National Inquiry into Sexual Harassment in Australian Workplaces: Community Guide
호주	정책자료	인권_성별	호주인권위원회: 호주 직장 내 성추행 조사를 위한 담론 진행방법 안내	Have your Say – Conversation Toolkit (2018)
호주	정책자료	인권_성별	호주인권위원회: 소매유통노동자조합 회원 성추행 보고서 2019	Sexual harassment of SDA members (2019)
호주	정책자료	인권_성별	호주인권위원회: 제4차 호주 직장 내 성추행 전국 조사 2018	Everyone's business: Fourth national survey on sexual harassment in Australian workplaces (2018)

호주	정책자료	인권 성별	호주인권위원회: 직장 내 성추행 근절을 위한 중소사업장 대상 지침	Supporting workplaces to end workplace sexual harassment: A Guide for Small Businesses in Australia
호주	정책자료	인권 성별	호주인권위원회: 직장 내 성추행 근절을 위한 고용주 대상 정보	Ending workplace sexual harassment: A resource for small, medium and large employers
호주	정책자료	인권 성별	호주인권위원회: 직장 내 성추행 인지 및 대응에 대한 근로자 대상 정보	Recognising and responding to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Information for employees
호주	정책자료	인권 성별	호주인권위원회: 뉴잉글랜드대학교 기숙사 외부검토 보고서	Independent review of residential colleges at the University of New England (2019)
호주	정책자료	인권 성별	호주인권위원회: 골프계 성인/미성년 여성 대상 기회의 평등 지침 2019	Guidelines: Equal opportunity for women and girls in golf (2019)
호주	정책자료	인권 성별	호주인권위원회: 성평등 동력의 발산(2017)	Unleashing the power of gender equality (2017)
호주	정책자료	인권 성별	호주인권위원회:「성차별법 1984」에 따른 특별조치 가이드라인 2018	Guidelines: Special measures under the Sex Discrimination Act 1984 (Cth) (2018)
호주	정책자료	인권 성별	호주인권위원회: 호주 대학 내 성폭력 및 성추행 국가보고서 (2017)	Change The Course: National Report on Sexual Assault and Sexual Harassment at Australian Universities (2017)
호주	정책자료	인권 성별	호주인권위원회: 성평등 담론(2017)	A Conversation in Gender Equality (2017)
호주	정책자료	인권 성별	호주인권위원회: 성적 지향 성정체성 및 제3의 성 권리 2015	Resilient Individuals: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 Intersex Rights 2015
호주	배경자료	인권 성별	호주인권위원회: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 차별 분석 보고서	Addressing sexual orientation and sex and/or gender identity discrimination: Consultation Report (2011)
호주	배경자료	인권 성별	호주인권위원회: 가정폭력사망에 대한 국가 제도 검토	A National System for Domestic and Family Violence Death Review
호주	정책자료	인권 성별	호주인권위원회: 남성중심산업 내 여성 전략서 2013	Women in male-dominated industries: A toolkit of strategies (2013)
호주	정책자료	인권 성별	호주인권위원회: 남성중심산업 내 여성 2012	Women in Male-Dominated Industries (2012)
호주	배경자료	인권 성별	호주인권위원회: 두려움 없이 일하기_성추행 전국전화설문 결과 보고	Working without fear: Results of the Sexual Harassment National Telephone Survey
호주	정책자료	인권 성별	호주인권위원회: 성차별 및 성추행 관련 권리(2012)	Know your rights: Sex discrimination and sexual harassment (2012)

호주	배경자료	인권_성별	호주인권위원회: UN 여성폭력 특별관 방문 보고서	Australian study tour report - Visit of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호주	배경자료	인권_성별	호주인권위원회: 격려, 지지, 실천_직장 내 성추행에 대한 주변인의 자세	Encourage. Support. Act!: Bystander Approaches to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2012)
호주	정책자료	인권_성별	호주인권위원회: 여성인권 증진 방안	Mechanisms for advancing women's human rights: A guide to using the Optional Protocol to CEDAW and other international complaint mechanisms
호주	정책자료	인권_성별	호주인권위원회: 성평등 청사진 2010	Gender Equality Blueprint (2010)
호주	정책자료	인권_기타	호주인권위원회: 연례보고서 2018-2019	Annual Report 2018-2019
호주	정책자료	인권_기타	호주인권위원회: 연례보고서 2017-2018	Annual Report 2017-2018
호주	정책자료	인권_기타	호주인권위원회: 연례보고서 2016-2017	Annual Report 2016-2017
호주	정책자료	인권_기타	호주인권위원회: 연례보고서 2015-2016	Annual Report 2015-2016
호주	정책자료	인권_기타	호주인권위원회: 연례보고서 2014-2015	Annual Report 2014-2015
호주	정책자료	인권_기타	호주인권위원회: 긍정적 인권 개혁 모델 2019	Discussion paper: A model for positive human rights reform (2019)
호주	정책자료	인권_인종	호주인권위원회: 인종차별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는 방법 지침	Let's talk race: A guide on how to conduct conversations about racism
호주	정책자료	인권_인종	호주인권위원회: 2018년 이후 인종차별금지정책	Anti-Racism in 2018 and Beyond (2018)
호주	정책자료	인권_인종	호주인권위원회: 국가인종차별금지전략 2012	The National Anti-Racism Strategy
호주	정책자료	인권_인종	호주인권위원회: 국가인종차별금지전략 1년 검토보고	Racism. It Stops With Me and the National Anti-Racism Strategy: One year on
호주	정책자료	인권_인종	호주인권위원회: 국가인종차별금지전략 요약 평가 및 향후 방향	National Anti-racism Strategy and Racism. It Stops With Me Summary Evaluation and Future Direction
호주	정책자료	인권_인종	호주인권위원회: "인종차별, 내가 끝낸다" 대국민공고 2017 개요	Fact Sheet: Racism. It Stops With Me Community Service Announcements 2017
호주	정책자료	인권_인종	호주인권위원회: 차별로부터의 자유_인종차별법 40주년 기념보고서	Freedom from Discrimination: Report on the 40th anniversary of the Racial Discrimination Act

호주	배경자료	인권_인종	호주인권위원회: 인종차별법 쟁점_인종차별법 40주년 기념 학술대회 논문집	Perspectives on the Racial Discrimination Act: Papers from the 40 years of the Racial Discrimination Act 1975 (Cth) Conference
호주	정책자료	인권_인종	호주인권위원회: 간과: 고객 다양성에 대한 사업사례	Missing out: The business case for customer diversity (2017)
호주	정책자료	인권_인종	호주인권위원회: 인종평등의제 2012-2016	Agenda for racial equality 2012-2016
호주	정책자료	인권_인종	호주인권위원회: 외국인 학생의 인권 원칙 검토 및 문제점 2015	International Students' Human Rights: a review of the Principles and the issues
호주	정책자료	인권_인종	호주인권위원회: 외국인 학생의 인권 증진과 보호 원칙	Principles to promote and protect the human rights of international students
호주	정책자료	인권_장애	호주인권위원회: 장애인 폭력이 없는 미래 2018	A Future Without Violence (2018)
호주	정책자료	인권_장애	호주인권위원회: 장애인권위원 임기 중간 보고(2016.7. ~ 2019.1.)	Working towards Equality for People with Disability Mid-Term Report (July 2016 – January 2019)
호주	정책자료	인권_장애	호주인권위원회: 장애인권위원 임기 계획	Working towards Equality for People with Disability
호주	정책자료	인권_장애	호주인권위원회: 장애인 인권: 장애인의 권리 신장	Disability rights: Facilitating the empowerment of people with disability
호주	정책자료	인권_장애	호주인권위원회: 일할 의지_호주 고령층 장애인의 고용 차별에 대한 국가조사 2016	Willing to Work: National Inquiry into Employment Discrimination Against Older Australians and Australians with Disability (2016)
호주	정책자료	인권_장애	호주인권위원회: 일할 의지_고용주를 위한 모범 사례	Willing to Work: Good Practice Examples for Employers (2016)
호주	정책자료	인권_장애	호주인권위원회: 호주 장애인에 대한 고용 차별	Issues paper: Employment discrimination against Australians with disability
호주	정책자료	인권_장애	호주인권위원회: 법 앞의 평등	Equal Before the Law
호주	배경자료	인권_장애	호주인권위원회: 형사사법제도에서 장애인의 사법접근성에 대한 배경자료	Background Paper on Access to Justice for People with Disability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호주	배경자료	인권_장애	호주인권위원회: 형사사법제도의 정신질환자 및 인지기능장애인	People with mental health disorders and cognitive impairment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호주	정책자료	인권_장애	호주인권위원회: 장애인 권리와 차별	Know your rights: Disability discrimination
호주	정책자료	인권_장애	호주인권위원회: 2010 정신질환이 있는 근로자_관리자를 위한 실무 지침	2010 Workers with Mental Illness: a Practical Guide for Managers

호주	정책자료	인권_기타	호주인권위원회: 인권과 테크놀로지 논의자료 2019	Human Rights and Technology: Discussion Paper (2019)
호주	정책자료	인권_기타	호주인권위원회: 인권과 테크놀로지 사전자료 2018	Human Rights and Technology Issues Paper (2018)
호주	정책자료	인권_기타	호주인권위원회: 인권에 대한 호주의 국가적 논의 2019	Free and equal: An Australian conversation on human rights (2019)
호주	정책자료	인권_기타	호주인권위원회: 변화를 위한 선도: 문화적 다양성의 청사진과 포용적 리더쉽에 대한 재고(再考) 2018	Leading for Change: A Blueprint for Cultural Diversity and Inclusive Leadership Revisited (2018)
호주	정책자료	인권_기타	호주인권위원회: 변화를 위한 선도: 문화적 다양성의 청사진과 포용적 리더쉽 2016	Leading for Change: A blueprint for cultural diversity and inclusive leadership (2016)
호주	정책자료	인권_기타	호주인권위원회: 투자에서의 인권 2017	Human rights in investment (2017)
호주	정책자료	인권_기타	호주인권위원회: 인권과 책임 입문	An Introduction to Huma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호주	정책자료	인권_기타	호주인권위원회: 신고 조정 업무 헌장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Complaint Information Service, Investigation and Conciliation Service > Charter of Service
호주	정책자료	인권_기타	호주인권위원회: 신고 메인화면	Complaints
호주	정책자료	인권_기타	호주인권위원회: 신고안내	Complaint Guides
호주	정책자료	인권_기타	호주인권위원회: 신고안내_1신고자 대상 정보	Information for people making complaints
호주	정책자료	인권_성별	호주인권위원회: 신고안내_1신고자 대상 정보_성차별법에 따른 신고	Information for people making complaints > Complaints under the Sex Discrimination Act
호주	정책자료	인권_성별	호주인권위원회: 신고안내_1신고자 대상 정보_성차별법에 따른 신고_성정체성	Information for people making complaints > Complaints under the Sex Discrimination Act: Gender Identity
호주	정책자료	인권_성별	호주인권위원회: 신고안내_1신고자 대상 정보_성차별법에 따른 신고_제3의 성	Complaints under the Sex Discrimination Act: Intersex Status
호주	정책자료	인권_성별	호주인권위원회: 신고안내_1신고자 대상 정보_성차별법에 따른 신고_성지향성	Complaints under the Sex Discrimination Act: Sexual Orientation
호주	정책자료	인권_장애	호주인권위원회: 신고안내_1신고자 대상 정보_장애차별법 신고	Complaints under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호주	정책자료	인권_인종	호주인권위원회: 신고안내_1신고자 대상 정보_인종차별법 신고	Complaints under the Racial Discrimination Act

호주	정책자료	인권_인종	호주인권위원회: 신고안내_1신고자 대상 정보_연령차별법 신고	Complaints under the Age Discrimination Act
호주	정책자료	인권_기타	호주인권위원회: 신고안내_1신고자 대상 정보_불법차별	Information for people making complaints: Unlawful Discrimination
호주	정책자료	인권_기타	호주인권위원회: 신고안내_1신고자 대상 정보_고용 및 업무 차별	Complaints about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occupation
호주	정책자료	인권_기타	호주인권위원회: 신고안내_1신고자 대상 정보_인권과 국제노동기구	Information for people making complaints: Human rights and ILO
호주	정책자료	인권_기타	호주인권위원회: 신고안내_2신고절차	The Complaint Process
호주	정책자료	인권_기타	호주인권위원회: 신고안내_2신고절차_성별, 인종, 장애, 연령차별 관련 신고	The complaint process for complaints about sex, race, disability and age discrimination
호주	정책자료	인권_기타	호주인권위원회: 신고안내_2신고절차_영연방의 인권침해	The complaint process for complaints about breaches of human rights by the Commonwealth
호주	정책자료	인권_기타	호주인권위원회: 신고안내_2신고절차_고용차별	The complaint process for complaints about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based on religion, criminal record, trade union activity, sexual preference, political opinion and social origin
호주	정책자료	인권_기타	호주인권위원회: 신고안내_2신고절차_조정의 이해와 준비_불법차별	Understanding and preparing for conciliation: Unlawful Discrimination
호주	정책자료	인권_기타	호주인권위원회: 신고안내_2신고절차_조정의 이해와 준비_인권과 국제노동기구	Understanding and preparing for conciliation: Human rights and ILO
호주	정책자료	인권_기타	호주인권위원회: 신고안내_3호주수어 신고정보	Complaint information in Auslan
호주	정책자료	인권_기타	호주인권위원회: 신고안내_4조정절차 소개	Conciliation – how it works
호주	정책자료	인권_기타	호주인권위원회: 신고안내_4조정절차 소개_변호인 자료	Information for advocates and lawyers participating in conciliation
호주	정책자료	인권_기타	호주인권위원회: 신고안내_5피신고자 대상 정보	Information for people and organisations responding to complaints
호주	사이트_법제		호주법률정보	
호주	사이트_법제		호주법률정부기구	
호주	사이트_법제		호주 정부	
호주	사이트_법제		호주 의회	
호주	사이트_법제		호주인권위원회 결정례 1985-2001	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Commission
호주	사이트_법제		호주연방법원 판례	Federal Court of Australia

호주	사이트_법제		호주연방지안법원 판례	Federal Magistrates Court of Australia
호주	사이트_법제		중개표준이사회	Mediator Standards Board
호주	사이트_스포츠		호주스포츠위원회(ASC)	Australian Sports Commission (ASC)
호주	사이트_스포츠		호주공정스포츠	Sport Integrity Australia
호주	사이트_스포츠		호주인권위원회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호주	사이트_스포츠		호주육상협회	Athletics Australia
호주	사이트_스포츠		COMPPS	The Coalition of Major Professional & Participation Sports (COMPPS)
호주	사이트_스포츠		호주클럽협회	Clubs Australia
EU	법제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EU	법제		유럽연합 교육, 연수, 유소년 및 스포츠 사업인 '에라스무스 플러스' 설립 규정	Consolidated text: Regulation (EU) No 1288/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13 establishing 'Erasmus+': the Union programme for education, training, youth and sport and repealing Decisions No 1719/2006/EC, No 1720/2006/EC and No 1298/2008/EC
EU	법제		'시민을 위한 유럽' 사업 2014-2020 신설에 대한 이사회 규정	Council Regulation (EU) No 390/2014 of 14 April 2014 establishing the 'Europe for Citizens' programme for the period 2014-2020
EU	법제	인권	유럽인권협정(정식명칭: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협정)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EU	법제	인권	유럽인권협정 개정 의정서 제15호	Protocol No. 15 amending 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EU	법제	인권	유럽인권협정 개정 의정서 제15호 설명자료	Protocol No. 15 amending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Explanatory Report
EU	법제	인권	유럽인권협정 개정 의정서 제15호 유럽인권법원의견	Opinion of the Court on Draft Protocol No. 15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U	정책자료		유럽의 민주적 생활에 유소년층의 참신하고 효율적인 방법의 참여 독려에 대한 결의	Resolution of the Council and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s of the Member States, meeting within the Council, on encouraging new and effective forms of participation of all young people in democratic life in Europe
EU	정책자료		유소년층 지원 유럽협력을 위한 새로운 체제에 대한 이사회 결의 2010-2018	Council Resolution of 27 November 2009 on a renewed framework for European cooperation in the youth field (2010-2018)
EU	정책자료		유럽연합 스포츠 실무계획(2017.07.01. - 2020.12.31.)	European Union Work Plan for Sport(1 July 2017 - 31 December 2020)
EU	정책자료		성별 관점에서 바라본 교육제도의 코치를 위한 분석	Mapping and analysis of education schemes for coaches from a gender perspective
EU	정책자료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스포츠 분야 성별에 근거한 폭력에 대한 연구	European Commission: Study on Gender-Based Violence in Sport
EU	정책자료		에라스무스 플러스 사업 지침 2020	Erasmus+ Programme Guide 2020
EU	사이트_법제		유럽연합법령포털	EUR-Lex
EU	사이트_법제		EU조달관보(TED)	Tenders Electronic Daily (TED)
EU	사이트_법제		유럽인권법원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U	사이트_스포츠		교육, 유소년, 스포츠, 문화 총괄국	Directorate-General Education, Youth, Sport and Culture (DG EAC)
노르웨이	사이트_법제		노르웨이 법령정보(영문)	
노르웨이	사이트_스포츠		노르웨이올림픽위원회	
노르웨이	사이트_스포츠		노르웨이올림픽위원회	
캐나다	법제		헌법	The Constitution Acts
캐나다	법제		체육활동 및 스포츠법	Physical Activity and Sport Act
캐나다	법제		체력 및 아마추어 스포츠 규정(체육활동 및 스포츠법 하위규정)	Fitness and Amateur Sport Regulations
캐나다	법제		문화유산장관을 법률 목적상 스포츠 관련 장관으로 지정하는 명령(체육활동 및 스포츠법	Order Designating the Minister of Canadian Heritage to be the Minister for the purposes of that Act in respect of sport

캐나다	법제		추밀원 구성원인 보건장관을 법률 목적상 체육 관련 장관으로 지정하고 추밀원 구성원인 스포츠장애인장관을 법률 목적상 스포츠 장관으로 지정하는 명령	Order designating the Minister of Health, a member of the Queen's Privy Council for Canada, as the Minister for the purposes of that Act in respect of physical activity and designating the Minister of Sport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a member of the Queen's Privy Council for Canada, as the Minister for the purposes of that Act in respect of sport
캐나다	법제		캐나다국가체육법	National Sports of Canada Act
캐나다	법제		캐나다비영리법인법	Canada Not-for-profit Corporations Act
캐나다	법제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PIPED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PIPEDA)
캐나다	법제	형사	형법전	Criminal Code
캐나다	법제	인권 기타	캐나다 권리장전	Canadian Bill of Rights
캐나다	법제	인권 기타	캐나다 인권법	Canadian Human Rights Act
캐나다	법제	형사	캐나다 범죄피해자 권리장전	Canadian Victims Bill of Rights
캐나다	법제	형사	고위험 아동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법	High Risk Child Sex Offender Database Act
캐나다	정책자료		2012년 캐나다스포츠정책	2012 Canadian Sport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스포츠 학대를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보편행위규범 제5.1판 (2019년)	Universal Code of Conduct to Prevent and Address Maltreatment in Sport, v5.1(2019)
캐나다	정책자료		스포츠 학대를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보편행위규범 제5.1판_배경자료	Context Document: Universal Code of Conduct to Prevent and Address Maltreatment in Sport, v5.1(2019)
캐나다	정책자료		지체장애선수 학대 현황 보고서	Maltreatment in Canada: A Focus on Para-Athletes
캐나다	정책자료		연방-주-준주 스포츠위원회(FPTSC) 스포츠여성소녀실무단 보고서	FPTSC Work Group on Women and Girls in Sport — RECOMMENDATION REPORT
캐나다	정책자료		보도자료: 여성스포츠 관련 연방정부의 역사적 공표	[Press Release] Historical Federal Announcement for Women and Sport
캐나다	정책자료		2019 캐나다 고급 실적 스포츠 전략 PDF	2019 Canadian High Performance Sport Strategy PDF
캐나다	정책자료		아동성적학대 신고 절차	Child Sexual Abuse, Steps for Reporting
캐나다	사이트_법제		캐나다 현행 법령(법무부)	

캐나다	사이트_법제		문화유산부 체육 정책 및 법령	
캐나다	사이트_법제		안전스포츠훈련	Safe Sport Training
캐나다	사이트_법제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인권재판소 > 인권결정례	British Columbia Human Rights Tribunal > B.C. Human Rights Decisions
캐나다	사이트_법제		캐나다법률정보원	Canadian Legal Information Institute
캐나다	사이트_스포츠		스포츠정보자료원(SIRC)	Sport Information Resource Centre (SIRC)
캐나다	사이트_스포츠		캐나다올림픽위원회(COC)	Canadian Olympic Committee (COC)
캐나다	사이트_스포츠		캐나다스페셜올림픽	Special Olympics Canada
캐나다	사이트_스포츠		온더포디엄	Own The Podium
캐나다	사이트_스포츠		캐나다국가대표선수연맹	AthletesCAN
캐나다	사이트_스포츠		캐나다게임위원회(CGC)	Canada Games Council (CGC)
캐나다	사이트_스포츠		캐나다대학경기협회(CCAA)	Canadian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CCAA)
캐나다	사이트_스포츠		캐나다코치협회(CAC)	Coaching Association of Canada (CAC)
캐나다	사이트_스포츠		캐나다체육보건교육(PHE Canada)	Physical and Health Education Canada (PHE Canada)
캐나다	사이트_스포츠		캐나다스포츠분쟁원	Sport Dispute Resolution Centre of Canada
캐나다	정책자료		우수한 성적의 캐나다 국가대표 및 유소년대표 선수 대상 스포츠 관련 뇌진탕 가이드라인	SPORT-RELATED CONCUSSION GUIDELINES FOR CANADIAN NATIONAL AND NATIONAL DEVELOPMENT HIGH-PERFORMANCE ATHLETES
캐나다	정책자료		문화유산부: 적극적 참여_성인 및 미성년 여성을 위한 스포츠 정책	Actively Engaged: A Policy on Sport for Women and Girls
캐나다	정책자료		문화유산부: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 정책(2006.6.)	Policy on Sport for Persons with a Disability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국가대표선수연맹: 다양성, 형평성 및 접근성 정책	DIVERSITY, EQUITY AND ACCESS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국가대표선수연맹: 직장 내 존중 정책	RESPECT IN THE WORKPLACE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국가대표선수연맹: 접대 정책	HOSPITALITY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국가대표선수연맹: 분쟁 해결 정책	DISPUTE RESOLUTION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국가대표선수연맹: 징계 및 신고 정책	DISCIPLINE AND COMPLAINTS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국가대표선수연맹: 이해충돌정책	CONFLICT OF INTEREST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국가대표선수연맹: 행동강령 및 윤리정책	CODE OF CONDUCT AND ETHICS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국가대표선수연맹: 개인정보 보호정책	PRIVACY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국가대표선수연맹: 소셜 미디어 정책	SOCIAL MEDIA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게임위원회: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	CANADA GAMES COUNCIL (“CGC”)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게임위원회: 징계 및 신고 정책	CANADA GAMES COUNCIL (“CGC”) Discipline and Complaints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게임위원회: 행동강령정책	CANADA GAMES COUNCIL (“CGC”) Conduct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게임위원회: 이의제기 정책	CANADA GAMES COUNCIL (“CGC”) Appeal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대학경기협회 운영규칙	Canadian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 Operating Code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대학경기협회: 지도의 자질 지도부의 성적으로 평등한 구성의 모범 사례	THE LEADING EDGE: GOOD PRACTICES FOR CREATING GENDER-EQUITABLE BOARDS IN SPORT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올림픽위원회: 행동강령정책	Policy statement on conduct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올림픽위원회: 접근성 정책	POLICY # 4.4 Accessibility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올림픽위원회: 접근성 장벽 방지 및 제거를 위한 다년 접근성 계획	CANADIAN OLYMPIC COMMITTEE MULTI-YEAR ACCESSIBILITY PLAN TO PREVENT AND REMOVE BARRIERS TO ACCESSIBILITY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코치협회: 개인 정보 보호 정책	(Coaching Association of Canada) Personal Information privacy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코치혐회: 국가코치자격프로그램(NCCP) 정책 및 이행기준	NCCP Policy and Implementation Standards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코치협회: 국가코치자격프로그램(NCCP) 윤리강령	NCCP Code of Ethics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코치협회: 행동강령 및 징계절차	COACHING ASSOCIATION OF CANADA (CAC) CODE OF CONDUCT with DISCIPLINARY PROCEDURES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코치협회: 긍정적 사업장 정책 및 이행 프로그램	POSITIVE WORKPLACE POLICY AND IMPLEMENTATION PROGRAM

캐나다	판례		[비공개 극비 사항] 2015년 10월 6일자로 위임받은 사항에 따라 개시한 외부검토 결과에 대한 캐나다올림픽위원회로의 요약보고서	[PRIVATE & STRICTLY CONFIDENTIAL] Summary Report Prepared for the CANADIAN OLYMPIC COMMITTEE On the Results of the Independent Review Constituted under Terms of Reference dated October 6, 2015
캐나다	배경자료		캐나다의 스포츠 관련 뇌진탕 방지 및 관리에 관한 정책 개발의 제언	Recommendations for policy development regarding sport-related concussion prevention and management in Canada
캐나다	배경자료		정책에서 발전으로: 여성 코치 양성 및 유지를 위한 노력	From Policy to Progress: Working to Develop and Retain Female Coaches
캐나다	내규		캐나다코치협회 규칙	GENERAL BY-LAW COACHING ASSOCIATION OF CANADA
캐나다	정책자료		온더포디엄: 괴롭힘 및 학대 정책	Harassment and Abuse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체육보건교육: 형평성 및 평등 정책	PHE Canada - STATEMENT of POLICY and PROCEDURE: Equity and Equality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체육보건교육: 접근성 정책	STATEMENT of POLICY and PROCEDURE: Accessibility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체육보건교육: 분쟁 해결 정책	STATEMENT of POLICY and PROCEDURE: Dispute Resolution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체육보건교육: 회원행동강령	Code of Conduct for Members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체육보건교육: 뇌진탕 정책	STATEMENT of POLICY and PROCEDURE: Concussion Protocol
캐나다	정책자료		스페셜올림픽캐나다: 이의신청 정책	SPECIAL OLYMPICS CANADA, APPEAL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스페셜올림픽캐나다: 이의신청 흐름도	Appeal Policy Flowchart
캐나다	정책자료		스페셜올림픽캐나다: 행동윤리강령	SPECIAL OLYMPICS CANADA, CODE OF CONDUCT AND ETHICS
캐나다	정책자료		스페셜올림픽캐나다: 징계 및 신고 정책	SPECIAL OLYMPICS CANADA, DISCIPLINE AND COMPLAINTS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스페셜올림픽캐나다: 징계 및 신고 흐름도	Discipline and Complaints Policy Flowchart
캐나다	정책자료		스페셜올림픽캐나다: 분쟁 해결 정책	SPECIAL OLYMPICS CANADA, DISPUTE RESOLUTION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스페셜올림픽캐나다: 혈액 매개 전염성 감염 정책	SPECIAL OLYMPICS CANADA, BLOOD-BORNE CONTAGIOUS INFECTIONS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스페셜올림픽캐나다: 참가자격 정책	SPECIAL OLYMPICS CANADA, ELIGIBILITY FOR PARTICIPATION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스페셜올림픽캐나다: 다운증후군 참가자 자격의 정책	SPECIAL OLYMPICS CANADA, ELIGIBILITY FOR PARTICIPANTS WITH DOWN SYNDROME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스페셜올림픽캐나다: 대회참여선정을 위한 선수 확인 정책	SPECIAL OLYMPICS CANADA, ATHLETE IDENTIFICATION FOR COMPETITION SELECTION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스페셜올림픽캐나다: 선수지명 및 지명의 재검토 정책	SPECIAL OLYMPICS CANADA, ENDORSEMENT & ENDORSEMENT RECONSIDERATION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스페셜올림픽캐나다: 정책 검토 프로세스	Policy Review Process
캐나다	정책자료		스페셜올림픽캐나다: 접근성 정책	SPECIAL OLYMPICS CANADA Accessibility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스페셜올림픽캐나다: 2017-2020년 캐나다 특별 올림픽 전략 계획	Special Olympics in Canada Strategic Plan 2017-2020
캐나다	정책자료		스페셜올림픽캐나다: 디비저닝	Divisioning
캐나다	정책자료		스페셜올림픽캐나다: 국가대표팀 프로그램	National Team Program
캐나다	배경자료		캐나다 아마추어 스포츠 국가 대체분쟁해결제 시행을 위한 권고사항	Recommenda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a NationalAlternateDisputeResolutionSystem ForAmateurSportinCanada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스포츠분쟁원: 스포츠 주요 종목 선정기준	SELECTION CRITERIA FOR MAJOR EVENTS IN SPORT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스포츠분쟁원: 기관운영보고서 2004-2005	Sport Dispute Resolution Centre of Canada-Report on the operations of the SDRCC for 2004-2005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스포츠분쟁원: 행정의 공정운영에 대한 지침	Guide to Administrative Fair Play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스포츠분쟁원: 조사단의 조사지침	INVESTIGATION UNIT - INVESTIGATION GUIDELINES
캐나다	정책자료		스포츠정보자료원: 차별, 괴롭힘, 학대 정책	Discrimination, Harassment and Abuse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스포츠정보자료원: 형평성 접근성 정책	Equity and Access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스포츠정보자료원: 분쟁 해결 정책	Dispute Resolution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스포츠정보자료원: 뇌진탕 정책	Concussion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FPTSC 스포츠 여성 및 소녀 작업 그룹 — 정책제안 보고서	FPTSC Work Group on Women and Girls in Sport — RECOMMENDATION REPORT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의 신체 활동 증가와 좌식 생활 저감을 위한 공통 비전: 움직입시다 2018	A Common Vision for Increasing Physical Activity and Reducing Sedentary Living in Canada: Let's Get Moving (2018)
캐나다	배경자료		캐나다 소외계층의 스포츠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및 사업 방안, 제2판	Policy and program considerations for increasing sport participation among members of underrepresented groups in Canada. 2nd Edition
캐나다	배경자료		캐나다 소외계층의 스포츠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및 사업 방안: 문헌조사	Policy and program considerations for increasing sport participation among members of underrepresented groups in Canada: A Literature Review
캐나다	배경자료		"캐나다 스포츠 정책(2012)"의 형성평가와 신체이해도·장기적선수개발의 주제별 검토	"Canadian Sport Policy (2012) Formative Evaluation and Thematic Review of Physical Literacy and LTAD
캐나다	정책자료		위니펙 커뮤니티 스포츠 정책	Winnipeg Community Sport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사회적 유산 참조서	SOCIAL LEGACIES REFERENCES
캐나다	정책자료		생활 사회 정책: 행동 강령	SPORT FOR LIFE SOCIETY POLICY: CODE OF CONDUCT
캐나다	정책자료		생활체육 정책: 뇌진탕 지침	SPORT FOR LIFE SOCIETY POLICY: CONCUSSION GUIDELINES
캐나다	정책자료		생활체육 정책: 이해의 충돌	SPORT FOR LIFE SOCIETY POLICY: CONFLICT OF INTEREST
캐나다	정책자료		생활체육 정책: 차별, 괴롭힘&학대	SPORT FOR LIFE SOCIETY POLICY: : DISCRIMINATION, HARASSMENT&ABUSE
캐나다	정책자료		생활체육 정책: 형평성과 접근성	SPORT FOR LIFE SOCIETY POLICY: EQUITY AND ACCESS
캐나다	정책자료		생활체육 정책: 채용 및 선별	SPORT FOR LIFE SOCIETY POLICY: HIRING AND SCREENING
캐나다	정책자료		생활체육 정책: 공식 언어	SPORT FOR LIFE SOCIETY POLICY: OFFICIAL LANGUAGES
캐나다	정책자료		생활체육 정책: 개인 정보 보호 및 민감한 정보	SPORT FOR LIFE SOCIETY POLICY: PRIVACY AND SENSITIVE INFORMATION

캐나다	정책자료		생활체육 정책: 위험 관리	SPORT FOR LIFE SOCIETY POLICY: RISK MANAGEMENT
캐나다	정책자료		여성과 소녀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 정신-사회적 요인 해결	Actively Engaging Women and Girls: Addressing the Psycho-Social Factors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레슬링 관계자 협회 (CAWO)정책및절차	CANADIAN ASSOCIATION OF WRESTLING OFFICIALS (CAWO)POLICIES&PROCEDURES
캐나다	정책자료		행동 강령 2019 - 캐나다 알파인	Code of Conduct 2019 - Alpine Canada Alpin
캐나다	정책자료		코칭 행동 강령 – 캐나다 알파인	Coaching Code of Conduct – Alpine Canada Alpin
캐나다	정책자료		괴롭힘 행동 강령 - 캐나다 알파인	Harassment Code of Conduct - Alpine Canada Alpin
캐나다	정책자료		내부 고발자 정책 - 캐나다 알파인	Whistle Blower Policy - Alpine Canada Alpin
캐나다	정책자료		소셜 미디어 정책 - 캐나다 알파인	Social Media Policy - Alpine Canada Alpin
캐나다	정책자료		어린이 안전 스포츠 - 최종 승인을 위한 캐나다 알파인 알핀	Safe Sport for Children - Alpine Canada Alpin For Final Approval Sept
캐나다	정책자료		ACA 뇌진탕 관리 프로토콜: 지방및클럽레벨(2019-2020)	ACA CONCUSSION MANAGEMENT PROTOCOL: ProvincialandClublevel(2019-2020)
캐나다	정책자료		경쟁력 - 알파인, 알파인 및 스키 크로스	COMPETITIVE- alpine, para-alpine and ski cross
캐나다	정책자료		올림픽 리커브 궁수(남녀) 카딩 정책 및 2020/21 카딩 사이클 프로세스	OLYMPIC RECURVE ARCHERS (MEN AND WOMEN) CARDING POLICY AND PROCESS FOR THE 2020/21 CARDING CYCLE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양궁 - 심사 정책 2019년1월13일이사회승인	Archery Canada - Screening Policy ApprovedbytheBoardofDirectorsonJanuary13,2019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양궁 규칙 & 월드 양궁 2019	RULES OF ARCHERY CANADA & WORLD ARCHERY 2019
캐나다	내규		캐나다 양궁 헌장 및 절차	BOOK 1- CONSTITUTION & PROCEDURES 2019 (ARCHERY CANADA)
캐나다	정책자료		제2권- 이벤트 (캐나다 양궁)	Book 2 - Events (ARCHERY CANADA)
캐나다	정책자료		제3권 - 타겟 양궁 2019	Book 3 - TARGET ARCHERY 2019
캐나다	정책자료		제4권 - 필드 및 3D 양궁 2019	Book 4 - FIELD AND 3D ARCHERY 2019
캐나다	정책자료		제5권 - 다양한 양궁 라운드 및 스키-아케리	Book 5 - Miscellaneous Archery Rounds and Ski-Archery
캐나다	정책자료		6권 - 도핑 방지 규칙	Book 6 - Anti-Doping Rules

캐나다	내규		캐나다 양궁의 내규	Bylaws of Archery Canada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양궁 - 남용 정책	Archery Canada - Abuse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양궁 - 대체 분쟁 해결 정책	Archery Canada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양궁 캐나다 어필 정책	Archery Canada Appeal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양궁 - 선수권 대회 개최 정책	Archery Canada - Championship Hosting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양궁 - 행동강령 및 윤리강령	Archery Canada - Code of Conduct and Ethics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양궁 - 뇌진탕 프로토콜	Archery Canada - Concussion Protocol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양궁 - 이해충돌 정책	Archery Canada - Conflict of Interest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양궁 - 규율 및 불만사항 정책	Archery Canada - Discipline and Complaints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Archery Canada- Equity and Inclusion Policy	Archery Canada- Equity and Inclusion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양궁 - 금융 정책	Archery Canada - Financial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양궁 - 인적 자원 정책 매뉴얼	Archery Canada - Human Resource Policy Manual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양궁 - 멤버십 정책	Archery Canada - Membership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양궁 - 개인 정보 보호 정책	Archery Canada - Privacy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양궁 - 상호주의 정책	Archery Canada - Reciprocation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양궁 - 리스크 관리 정책	Archery Canada - Risk Management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양궁 - 심사 정책	Archery Canada - Screening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양궁 - 소셜 미디어 정책	Archery Canada - Social Media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양궁 - 트랜스 포커스 정책	Archery Canada - Trans Inclusion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양궁 - 자원봉사자 인식 정책	Archery Canada - Volunteer Recognition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양궁 - 우편 정책에 의한 투표	Archery Canada - Vote by Mail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애슬레틱스 캐나다 도핑 정책	Athletics Canada Doping Policy
캐나다	내규		캐나다 육상 선수 규칙	ATHLETICS CANADA BYLAWS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육상 경기 기술 규칙	ATHLETICS CANADA TECHNICAL RULES
캐나다	정책자료		선수 보호 지침	ATHLETE PROTECTION GUIDELINES
캐나다	정책자료		행동 및 윤리 강령	CODE OF CONDUCT AND ETHICS
캐나다	정책자료		다양성, 지분 및 편입 정책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괴롭힘 정책	HARASSMENT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육상 캐나다 내부고발자 정책	ATHLETICS CANADA WHISTLEBLOWER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2016~2017년 체육 규칙 및 규정	Athletics Rules and Regulations 2016-2017
캐나다	정책자료		국가대표 선발 규정집	NATIONAL TEAM SELECTION RULES BOOK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육상 선수 - 국가 대표팀 매뉴얼	ATHLETICS CANADA - NATIONAL TEAM ATHLETE'S MANUAL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육상 선수 - 국가 대표팀 직원 매뉴얼	ATHLETICS CANADA - NATIONAL TEAM STAFF MANUAL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육상 – 국가대표팀 감독 매뉴얼	ATHLETICS CANADA – NATIONAL TEAM STAFF MANAGER'S MANUAL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배드민턴 - 건강한 운동선수 정책	Badminton Canada - Healthy Athlete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배드민턴 양성평등 정책	BADMINTON CANADA GENDER EQUITY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배드민턴 뇌진탕 프로토콜	BADMINTON CANADA CONCUSSION PROTOCOL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배드민턴 괴롭힘 정책	Badminton Canada Harassment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배드민턴 자기자본 및 접근 정책	BADMINTON CANADA EQUITY AND ACCESS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배드민턴 행동 강령	Badminton Canada Code of Conduct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배드민턴 규율 및 불만사항 정책	Badminton Canada Discipline and Complaints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배드민턴 내부 심판 절차	Badminton Canada Internal Appeal Procedure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배드민턴 감독 가이드	BADMINTON CANADA DIRECTOR'S GUIDE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배드민턴 이사회자체평가정책	Badminton Canada Board of Directors Self-Evaluation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배드민턴 전무 평가 정책	Badminton Canada Executive Director Evaluation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배드민턴 법학 검토 정책	BADMINTON CANADA BY-LAW REVIEW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배드민턴 이해충돌 정책	Badminton Canada Conflict of Interest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2021년 캐나다 도핑 방지 프로그램	2021 CANADIAN ANTI-DOPING PROGRAM
캐나다	정책자료		스포츠 금지 행위에 관한 캐나다 정책	Canadian Policy on Prohibited Conduct in Sport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의 스포츠 윤리 행동 전략	Canadian Strategy for Ethical Conduct in Sport
캐나다	정책자료		성별 다양성	Sex and Gender Diversity
캐나다	정책자료		고용주 의무	Employer Obligations
캐나다	정책자료		차별 방지	Preventing Discrimination

캐나다	정책자료		직장 내 숙박시설 정책 개발	Developing a Workplace Accommodation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환경 민감성 및 무향 정책	Environmental sensitivity and scent-free policies
캐나다	정책자료		직장에서의 임신과 인권 고용주를위한가이드	Pregnancy and Human Rights In the Workplace AGuideforEmployers
캐나다	정책자료		일과 돌봄의무의 균형유지 지침	A Guide to Balancing Work and Caregiving Obligations
캐나다	정책자료		임신과 직장에서의 인권	PREGNANCY & HUMAN RIGHTS IN THE WORKPLACE
캐나다	정책자료		베이스볼 캐나다 선수권 대회 참가 가이드 (팀직원)	BASEBALL CANADA CHAMPIONSHIPS-Participant Guide (TEAMSTAFF)
캐나다	정책자료		베이스볼 캐나다 선수권 대회 개최 가이드	BASEBALL CANADA CHAMPIONSHIPS-HOSTING GUIDE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농구 학대 정책	CANADA BASKETBALL ABUSE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농구 고객서비스정책접근성표준-AODA	CANADA BASKETBALL AccessibilityStandardsforCustomerServicePolicy-AODA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농구 도핑 반대 정책	CANADA BASKETBALL ANTI-DOPING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농구 어필 정책	CANADA BASKETBALL APPEAL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농구 선수보호지침	CANADA BASKETBALL ATHLETEPROTECTIONGUIDELINES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농구 행동및윤리강령	CANADA BASKETBALL CODEOFCONDUCTANDETHICS
캐나다	내규		캐나다 농구 규칙 제1호	BYLAW # 1 CANADABASKETBALL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농구 기밀유지정책	CANADA BASKETBALL CONFIDENTIALITY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농구 이해상충정책	CANADA BASKETBALL CONFLICTOFINTEREST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농구 징계및불만사항정책	CANADA BASKETBALL DISCIPLINEANDCOMPLAINTS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농구 분쟁해결정책	CANADA BASKETBALL DISPUTERESOLUTION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농구 형평성및편입정책	CANADA BASKETBALL EquityandInclusion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농구 이벤트규율절차	CANADA BASKETBALL EVENTDISCIPLINEPROCEDURE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농구 안전스포츠정책	CANADA BASKETBALL SAFESPORT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농구 직장내괴롭힘정책	CANADA BASKETBALL WORKPLACEHARASSMENT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바이애슬론 캐나다("바이애슬론 캐나다") 안전스포츠정책설명서	BIATHLON CANADA ("Biathlon Canada") SAFESPORTPOLICYMANUAL
캐나다	내규		캐나다 바이애슬론 규칙 제1호	BY-LAW NO. 1 BiathlonCanada
캐나다	내규		봅슬레이 캐나다 스켈레톤 업무 수행에 대한 일반 규칙	A by-law relating generally to the conduct of the affairs of Bobsleigh Canada Skeleton
캐나다	정책자료		봅슬레이 캐나다 스켈레톤 행동및윤리정책일반강령	Bobsleigh CANADA Skeleton GENERALCODEOFCONDUCTANDETHICS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봅슬레이 캐나다 스켈레톤 자원봉사행동강령	Bobsleigh CANADA Skeleton VOLUNTEERCODEOFCONDUCT
캐나다	정책자료		행동 강령 이사회및위원회	CODE OF CONDUCT BOARDOFDIRECTORSANDCOMMITTEESOFTHEBOARD
캐나다	정책자료		봅슬레이 캐나다 스켈레톤 - 차별 및 괴롭힘 정책	Bobsleigh CANADA Skeleton - Discrimination and Harassment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뇌성마비 스포츠 협회 - 학대 정책	CANADIAN CEREBRAL PALSY SPORTS ASSOCIATION - Abuse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뇌성마비 스포츠 협회 - 행동강령 및 윤리강령	CANADIAN CEREBRAL PALSY SPORTS ASSOCIATION - Code of Conduct and Ethics
캐나다	정책자료		CANADIAN CEREBRAL PALSY SPORTS ASSOCIATION - Discipline and Complaints Policy	CANADIAN CEREBRAL PALSY SPORTS ASSOCIATION - Discipline and Complaints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뇌성마비 스포츠 협회 - 성과 파트너 정책	CANADIAN CEREBRAL PALSY SPORTS ASSOCIATION - Performance Partner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뇌성마비 스포츠 협회 - 직장 내 괴롭힘 정책	CANADIAN CEREBRAL PALSY SPORTS ASSOCIATION - Workplace Harassment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뇌성마비 스포츠 협회 - 선수 및 코치를 위한 소셜 미디어 가이드라인	CANADIAN CEREBRAL PALSY SPORTS ASSOCIATION -Social Media Guidelines for Athletes and Coaches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뇌성마비 스포츠 협회 - 불온한 해결 정책	CANADIAN CEREBRAL PALSY SPORTS ASSOCIATION -Dispute Resolution Policy
캐나다	내규		캐나다 아마추어 복싱 협회 - 내규	CANADIAN AMATEUR BOXING ASSOCIATION - BY-LAWS

캐나다	정책자료		행동 강령 - 캐나다 복싱	CODE OF CONDUCT - BOXING CANADA
캐나다	정책자료		괴롭힘 정책 및 절차 - 캐나다 복싱	Harrassment Policy and Procedures BOXING CANADA
캐나다	정책자료		규율정책 - 캐나다 복싱	Discipline Policy BOXING CANADA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권투 선수 - 개인 코치 정책	BOXING CANADA - PERSONAL COACH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권투 - 소셜 미디어 정책	BOXING CANADA - Social Media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기사 및 규칙 - 캐나다 권투	Articles and Rules - Boxing Canada
캐나다	정책자료		정책 및 절차 매뉴얼 - 캐나다 아이스하키	POLICIES and PROCEDURES MANUAL - Broomball Canada
캐나다	내규		카누 카약 캐나다 규칙	Canoe Kayak Canada BYLAWS
캐나다	정책자료		카누 카약 캐나다 - 행동강령 및 윤리강령	CANOE KAYAK CANADA - Code of Conduct and Ethics
캐나다	정책자료		카누 카약 캐나다 - 이해충돌 정책	CANOE KAYAK CANADA - Conflict of Interest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카누 카약 캐나다 - 분쟁해결정책	CANOE KAYAK CANADA - DISPUTERESOLUTION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카누 카약 캐나다 - 포함 정책	CANOE KAYAK CANADA - Inclusion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카누 카약 캐나다 - 정의	CANOE KAYAK CANADA - DEFINITIONS
캐나다	정책자료		카누 카약 캐나다 - 안전한 스포츠 정책 매뉴얼	CANOE KAYAK CANADA - SAFE SPORT POLICY MANUAL
캐나다	정책자료		카누 카약 캐나다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책	CANOE KAYAK CANADA - POLICY CONCERNING -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캐나다	정책자료		크리켓 캐나다 행동 강령	Cricket Canada Code of Conduct
캐나다	정책자료		크리켓 캐나다 규율 및 불만사항 정책	Cricket Canada Discipline and Complaints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크리켓 캐나다 이사회 오리엔테이션 정책	CRICKET CANADA BOARD OF DIRECTORS ORIENTATION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크리켓 캐나다 법관별 심사 정책	Cricket Canada By-Law review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크리켓 캐나다 리스크 관리 정책	Cricket Canada Risk Management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크리켓 캐나다 선수 중심 정책	Cricket Canada Athlete-Centeredness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크리켓 캐나다 크리켓 캐나다 양성평등정책	Cricket Canada Cricket Canada Gender Equity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크리켓 캐나다 괴롭힘 정책	Cricket Canada Harassment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크리켓 캐나다 분쟁 해결 및 내부 호소 정책	Cricket Canada Dispute Resolution and Internal Appeal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크리켓 캐나다 제재 정책	Cricket Canada Sanction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크리켓 캐나다 국내 이벤트 정책	Cricket Canada Domestic events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크리켓 캐나다 선수 선발 정책	Cricket Canada Player Selection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크리켓 캐나다 이해충돌 정책	Cricket Canada Conflict of Interest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크리켓 캐나다 후원 정책	Cricket Canada Sponsorship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크리켓 캐나다 인사 정책	Cricket Canada Human Resource policies
캐나다	정책자료		크리켓 캐나다 감독 및 관리자 임명 정책	Cricket Canada Coach and Manager Appointment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크리켓 캐나다 안전 스포츠 정책	Cricket Canada Safe Sport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크리켓 캐나다 통신 정책	Cricket Canada Communication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사이클 캐나다 행동 강령 정책	Cycling Canada Code of Conduct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사이클링 캐나다 규칙 2	Cycling Canada RULE OF TWO
캐나다	정책자료		다이빙 플롱건 캐나다 행동과관련된정책	DIVING PLONGEON CANADA POLICYRELATINGTOCONDUCT
캐나다	정책자료		다이빙 플롱건 캐나다(DPC) 코치선별정책	Diving Plongeon Canada (DPC) CoachScreening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다이빙 플롱건 캐나다 어필정책	DIVING PLONGEON CANADA APPEAL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개인의 존중과 괴롭힘 예방 정책	Respect of Individuals and Harassment Prevention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직장 내 개인 정보 보호(PIPEDA)	Privacy in the Workplace (PIPEDA)
캐나다	정책자료		승마 캐나다 학대 정책(개인)	EQUESTRIAN CANADA ABUSE POLICY (INDIVIDUALS)
캐나다	정책자료		승마 캐나다 선수 보호 지침	EQUESTRIAN CANADA ATHLETE PROTECTION GUIDELINES
캐나다	내규		승마 캐나다 규칙 제1호	EQUESTRIAN CANADA BYLAW #1
캐나다	정책자료		승마 캐나다 행동 및 윤리 강령	EQUESTRIAN CANADA CODE OF CONDUCT AND ETHICS
캐나다	정책자료		승마 캐나다 뇌진탕 정책 및 뇌진탕 행동 강령	EQUESTRIAN CANADA CONCUSSION POLICY AND CONCUSSION CODE OF CONDUCT

캐나다	정책자료		이벤트 절차 중 캐나다 승마 관련 시정 조치	EQUESTRIAN CANADA CORRECTIVE ACTION DURING EVENTS PROCEDURE
캐나다	정책자료		승마 캐나다 훈련, 불만 사항 및 항소 정책	EQUESTRIAN CANADA DISCIPLINE, COMPLAINTS, AND APPEAL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승마 캐나다 거버넌스 매뉴얼	EQUESTRIAN CANADA GOVERNANCE MANUAL
캐나다	정책자료		승마 캐나다 소셜 미디어 정책	EQUESTRIAN CANADA SOCIAL MEDIA POLICY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펜싱 연맹 – HPP 선수 협정	THE CANADIAN FENCING FEDERATION – HPP ATHLETE AGREEMENT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펜싱 연맹 이사회의 조직, 역할 및 책임	Organization,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Canadian Fencing Federation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펜싱 연맹- 행동 강령	Canadian Fencing Federation- Code of Conduct
캐나다	정책자료		위원회 조직, 구조 및 역할에 관한 캐나다 펜싱 연맹 정책	Canadian Fencing Federation Policy on Committee Organization, Structure and Roles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펜싱연맹-이해충돌 정책	Canadian Fencing Federation- Policy on Conflict of Interest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펜싱 연맹 - 차별과 괴롭힘에 관한 정책	Canadian Fencing Federation- Policy on Discrimination and Harassment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펜싱 연맹 - 차별과 괴롭힘에 관한 정책	Canadian Fencing Federation- Dispute Resolution Policy and Procedures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펜싱 연맹 - 직업 건강과 안전에 관한 정책	Canadian Fencing Federation- Policy on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캐나다	정책자료		캐나다 펜싱 연맹 - 조직 위험 관리 정책	Canadian Fencing Federation - Organizational Risk Management Policy
캐나다	판례		캐나다선수연맹 > 안전스포츠 > 자격정지 목록	Athletics Canada > Safe Sports > Suspended Individuals
캐나다	판례		캐나다선수연맹 > 안전스포츠 > 자격정지 사례: 랜디 브룩스	Athletics Ontario Complaint Hearing Panel Report: Randy Brookes

캐나다	판례		캐나다선수연맹 > 안전스포츠 > 자격정지 사례: 이본 뷰캐넌	OFFICE OF THE ATHLETICS CANADA COMMISSIONER IN THE MATTER OF A COMPLAINT CONCERNING EVON BUCHANAN OF THE PROJECT ATHLETICS AND ATHLETICS CANADA NOTICE OF INTERIM SUSPENSION
캐나다	판례		캐나다선수연맹 > 안전스포츠 > 자격정지 사례: 앤드루 맥이니스	OFFICE OF THE ATHLETICS CANADA COMMISSIONER IN THE MATTER OF CODE OF CONDUCT COMPLAINTS CONCERNING ANDREW (ANDY) MCINNIS RECONSIDERATION DECISION
캐나다	판례		캐나다선수연맹 > 안전스포츠 > 자격정지 사례: 데이빗 스캇-토마스	OFFICE OF THE ATHLETICS CANADA COMMISSIONER IN THE MATTER OF A COMPLAINT CONCERNING DAVE SCOTT THOMAS
노르웨이	정책자료		스포츠 팀의 법적 규범-Bokmål	Lovnorm for idrettslag - bokmål
노르웨이	정책자료		감독자-스포츠 팀의 법적 규범	Veileder - lovnorm for idrettslag
노르웨이	정책자료		스포츠 팀의 법적 규범-Nynorsk	Lovnorm for idrettslag - nynorsk
노르웨이	정책자료		스포츠 팀에 대한 법적 규범의 변경	Endringer i lovnorm for idrettslag
노르웨이	정책자료		스포츠 팀 동맹의 법적 규범	Lovnorm for idrettslagsallianser
노르웨이	정책자료		감독자-스포츠 팀 동맹의 법적 규범	Veileder - lovnorm for idrettslagsallianser
노르웨이	정책자료		스포츠 팀 동맹에 대한 법적 규범의 변경	Endringer i lovnorm for idrettslagsallianser
노르웨이	정책자료		스포츠위원회의 법적 규범-Bokmål	Lovnorm for idrettsråd - bokmål
노르웨이	정책자료		스포츠위원회에 대한 법적 규범-Nynorsk	Lovnorm for idrettsråd - nynorsk
노르웨이	정책자료		감독자-스포츠위원회의 법적 규범	Veileder - lovnorm for idrettsråd
노르웨이	정책자료		스포츠위원회의 법적 규범 변경	Endringer i lovnorm for idrettsråd
노르웨이	정책자료		스포츠 서클의 법적 규범	Lovnorm for idrettskretser
노르웨이	정책자료		특수 조합의 법적 규범	Lovnorm for særforbund
노르웨이	정책자료		감독자-특수 조합의 법적 규범	Veileder - lovnorm for særforbund
노르웨이	정책자료		특수 지구 및 지역에 대한 법적 규범	Lovnorm for særkretser og regioner
노르웨이	정책자료		감독자-특수 지구 및 지역에 대한 법적 규범	Veileder - lovnorm for særkretser og regioner

노르웨이	정책자료		특구 및 지역에 대한 법적 규범 변경	Endringer i lovnorm for særkretser og regioner
노르웨이	정책자료		특수 조합의 법적 규범 변경	Endringer i lovnorm for særforbund
노르웨이	정책자료		스포츠에서 성희롱 및 학대를 방지하기위한 지침	guidelines to prevent sexual harassment and abuse in sports
노르웨이	정책자료		노르웨이 스포츠 협회 및 올림픽 및 패럴림픽위원회의 법률	LOV FOR NORGES IDRETTSFORBUND OG OLYMPISKE OG PARALYMPISKE KOMITÉ
노르웨이	배경자료		노르웨이 아동의 스포츠 권리와 코치 재능 이해	Norwegian Children's Rights in Sport and Coaches' Understanding of Talent
노르웨이	정책자료		스포츠에 관한 아동의 권리 아동 스포츠에 관한 조항	CHILDREN'S RIGHTS IN SPORT THE PROVISIONS ON CHILDREN'S SPORT
노르웨이	정책자료		노르웨이의 스포츠 정책	Sport policy in Norway
노르웨이	정책자료		스포츠 정책 2011-2015	Sport Policy Document 2011–2015
노르웨이	정책자료		스포츠 정책 수립: 노르웨이의 경우	Policy making in sport: the Norwegian case
노르웨이	정책자료		노르웨이 남북 국가들과의 문화 및 스포츠 협력을위한 전략	Strategy for Norway's culture and sports co-operation with countries in the South
노르웨이	정책자료		스포츠 정책 2007-2011	Sport Policy Document 2007–2011
노르웨이	정책자료		스포츠 정책 2015-2010	Sport Policy Document 2015–2010
노르웨이	정책자료		스포츠 정책 2019-2023	Sport Policy Document 2019–2023
노르웨이	정책자료		전략 2019-2023	strategiske-satsingsomrader-2019-2023
노르웨이	정책자료		노르웨이 스포츠 협회 그리고올림픽및패럴림픽위원회 2017년연례보고서	NORGES IDRETTSFORBUND OG OLYMPISKE OG PARALYMPISKE KOMITÉ ÅRSRAPPORT2017
노르웨이	정책자료		노르웨이 스포츠 협회 그리고올림픽및패럴림픽위원회 2016년연례보고서	NORGES IDRETTSFORBUND OG OLYMPISKE OG PARALYMPISKE KOMITÉ ÅRSRAPPORT2016
노르웨이	정책자료		스포츠에서의 성평등: 직원, 코치, 및 관리자 간 성비 균형에 중점을 둔 보고	Likestilling i idretten Et notat med vekt på kjønnsbalansen blant ansatte, trenere og ledere i særforbund
노르웨이	정책자료		노르웨이 스포츠에 대한 상태 보고서 (남성, 여성)	en tilstandsrapport om norsk idrett
노르웨이	정책자료		어린이 및 청소년 스포츠 노르웨이스포츠를위한NIF의 개발계획No.01	Barne- og ungdomsidrett NIFsutviklingsplannr.01fornorskidrett
노르웨이	정책자료		성인 스포츠 노르웨이스포츠를위한NIF의 개발계획번호02	Voksenidrett NIFsutviklingsplannr.02fornorskidrett

노르웨이	정책자료		장애인을위한 스포츠 노르웨이스포츠를위한NIF의 개발계획No.04	Idrett for mennesker med funksjonsnedsettelse NIFsutviklingsplannr.04fornorskidrett
노르웨이	정책자료		2018 년 주요 수치 보고서	RAPPORT OM NØKKELTALL 2018
노르웨이	정책자료		2017 년 주요 수치 보고서	RAPPORT OM NØKKELTALL 2017
노르웨이	정책자료		2016 년 주요 수치 보고서	RAPPORT OM NØKKELTALL 2016
노르웨이	정책자료		국가 청소년 스포츠 전략	National_Youth_Sports_Strategy
독일	정책자료		연방스포츠과학연구(BISp)의 설립 법령	Errichtungserlass über das Bundesinstitut für Sportwissenschaft (BISp) vom
독일	정책자료		연방스포츠과학연구소(BISp)의 과학 자문위원회에 대한 절차 규칙	GESCHÄFTSORDNUNG für den Wissenschaftlichen Beirat des Bundesinstituts für Sportwissenschaft (BISp)
독일	정책자료		독일 스포츠 클럽 : 조직 및 사람. 독일 2017/2018 스포츠 개발 보고서	Sportvereine in Deutschland: Organisationen und Personen Sportentwicklungsbericht für Deutschland 2017/2018
독일	정책자료		국가 스포츠 관리 기관의 품질 및 성능 측정	Quality and Performance Measurement in National Sport-Governing Bodies
독일	정책자료		젊은 선수에 포함 엘리트 스포츠 학교와 정규 학교에서 학교 및 패럴림픽 경쟁 스포츠의 호환성	Inklusion im Nachwuchsleistungssport Vereinbarkeit von Schule und paralympischem Leistungssport an Eliteschulen des Sports versus Regelschulen
독일	정책자료		BISp 보고서 2017/2018	BISp Report 2017/2018
독일	정책자료		DOSB 모델	Das Leitbild des DOSB
독일	정책자료		DOSB 전략: 2028	Strategie DOSB: 2028
독일	정책자료		DOSB 작업프로그램	DOSB Arbeitsprogramm
독일	정책자료		DOSB 법령	SATZUNG DES DOSB
독일	정책자료		DOSB 절차의 일반 규칙	ALLGEMEINE GESCHÄFTSORDNUNG DES DOSB
독일	정책자료		DOSB의 기록 규정	AUFNAHMEORDNUNG DES DOSB
독일	정책자료		DOSB의 재정 규정	FINANZORDNUNG DES DOSB
독일	정책자료		DOSB의 관리위원회 및 사무실에 대한 사무국의 절차 규칙	GESCHÄFTSORDNUNG FÜR DAS PRÄSIDIUM, DEN VORSTAND UND DIE GESCHÄFTSSTELLE DES DOSB
독일	정책자료		DOSB 명예 규칙	DOSB Ehrenordnung

독일	정책자료		DOSB 좋은 거버넌스 규정	GOOD GOVERNANCE REGULARIEN
독일	정책자료		DOSB 윤리강령	DOSB Ethik-Code
독일	정책자료		DOSB-DSJ 조정 계약	Koordination Vereinbarung
독일	정책자료		개방적이고 다양하며 민주적인 사회를위한 DOSB와 DSJ의 명확한 입장	Klare Haltung für eine offene, vielfältige und demokratische Gesellschaft
독일	정책자료		2018년-2020년 기본 전략 위치	Strategische Grundpositionen 2018 bis 2020
독일	정책자료		주요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국가 전략의 대략적인 개념	Grobkonzept für eine Nationale Strategie Sportgroßveranstaltungen
독일	정책자료		전략 개념_스포츠에 대한 포용	Strategiekonzept INKLUSION IM UND DURCH SPORT
독일	정책자료		독일 올림픽 스포츠 연맹(DOSB)과 독일 스포츠 청소년(dsj)의 포용에 대한 입장 보고서	Positionspapier des Deutschen Olympischen Sportbundes (DOSB) und der Deutschen Sportjugend (dsj) zur Inklusion
독일	정책자료		DOSB 통합 및 스포츠-스포츠 클럽과 사회의 미래 요소	DOSB Integration und Sport – Ein Zukunftsfaktor von Sportvereinen und Gesellschaft
독일	정책자료		스포츠에서 성폭력에 대한 보호	SCHUTZ VOR SEXUALISIERTER GEWALT IM SPORT
독일	정책자료		명예코드	Ehrenkodex
독일	정책자료		DOSB 조직도	Sport in Deutschland-dt
독일	정책자료		DOSB 조직도 영문	Sport in Deutschland-eng
독일	정책자료		DOSB 사무실	Organigramm der Geschäftsstelle
독일	정책자료		독일 스포츠의 좋은 거버넌스	GOOD GOVERNANCE IM DEUTSCHENSPORT
독일	정책자료		독일 스포츠의 좋은 거버넌스 영문	Good Governance in german Sports
독일	정책자료		윤리강령 샘플	Muster-Ethik-Code
독일	정책자료		좋은 거버넌스 모범 연맹 업무의 무결성을위한 행동 강령	GOOD GOVERNANCE MUSTER-Verhaltensrichtlinien zur Integrität in der Verbandsarbeit
독일	정책자료		좋은 거버넌스 모범 연맹 업무의 무결성을위한 행동 강령 영문	GOOD GOVERNANCE EXEMPLARY Code of Conduct for Integrity in Federation Work
독일	정책자료		DOSB 사명 선언	UNSER LEITBILD
독일	정책자료		DOSB의 윤리위원회	ETHIKKOMMISSION DES DOSB
독일	정책자료		DOSB 선수위원회와 선수 협회에 관한 토론 문서	Diskussionspapier zur Athletenkommission und zum Verein Athleten

독일	정책자료		제 16 차 독일 올림픽 스포츠 연맹 총회	16. Mitgliederversammlung des Deutschen Olympischen Sportbundes
독일	정책자료		16 차 DOSB 총회 의제	16. DOSB-Mitgliederversammlung TAGESORDNUNG
독일	정책자료		16. 사무국과 이사회의 총회 보고서	16. Mitgliederversammlung BERICHT DES PRÄSIDIUMS UND DES VORSTANDS
독일	정책자료		2019년 윤리위원회 보고서	Bericht der Ethikkommission für das Jahr 2019
독일	정책자료		2019 년 12 월 7 일 제 16 차 DOSB 총회 제안 결의안	BESCHLUSSVORLAGE für die 16. DOSB-Mitgliederversammlung am 7. Dezember 2019
독일	정책자료		항목 14 DOSB 법령 수정	TOP 14 Änderung der Satzung des DOSB
독일	정책자료		2019 년 12 월 7 일 제 16 차 DOSB 총회 제안 결의안	BESCHLUSSVORLAGE für die 16. DOSB-Mitgliederversammlung am 7. Dezember 2019
독일	정책자료		트레이너를위한 작업 계약 프레임 워크의 개선	VERBESSERUNG DER ARBEITSVERTRAGLICHEN RAHMENBEDINGUNGEN FÜR TRAINERINNEN
독일	정책자료		2019 년 12 월 7 일 제 16 차 DOSB 총회 제안 결의안	BESCHLUSSVORLAGE für die 16. DOSB-Mitgliederversammlung am 7. Dezember 2019
독일	정책자료		독일 스포츠 법령의 기초	Stiftung Deutscher Sport_Satzung
독일	정책자료		최고의 올림픽 협회의 공연 스포츠 직원의 전문화	PROFESSIONALISIERUNG DES LEISTUNGSSPORTS PERSONALS DER OLYMPISCHEN SPITZENVERBÄNDE
독일	정책자료		DOSB I Young Talent Sports Framework 가이드 라인	DOSB I Nachwuchsleistungssport Rahmenrichtlinien zur Förderung des Nachwuchsleistungssports
독일	정책자료		젊은 인재 스포츠 컨셉 2020	Nachwuchsleistungssportkonzept 2020
독일	정책자료		DOSB I 지원 포인트 개념 2013 년부터 지원 포인트 시스템의 추가 개발	DOSB I Stützpunktkonzept Weiterentwicklung des Stützpunkt Systems ab 2013
독일	정책자료		DOSB의 경쟁 스포츠를위한 새로운 제어 모델	Neues Steuerungsmodell Leistungssport des DOSB
독일	정책자료		비상 상황에서 전문적인 행동	PROFESSIONELLES AGIEREN IN NOTFALLSITUATIONEN

독일	정책자료		응용 스포츠 심리학 가이드	WEGWEISER ANGEWANDTE SPORTPSYCHOLOGIE
독일	정책자료		2018 년 1 월 1 일 올림픽 하계 및 동계 스포츠 핵심 구조 / 관리 정의의 적용	Anpassung der aderstrukturen/Kaderdefinitionen im Olympischen Sommer- und Wintersport zum 01.01.2018
독일	정책자료		스포츠, 정보 및 의견 교환 개혁	LEISTUNGSSPORTREFORM INFORMATIONS- UND MEINUNGSAUSTAUSCH
독일	정책자료		경쟁 스포츠의 구조 개편 및 일류 스포츠 육성	Neustrukturierung des Leistungssports und der Spitzensportförderung
독일	정책자료		독일 연방 하원 스포츠위원회 회의 - 경쟁 스포츠 재편 및 일류-스포츠 육성	Sitzung des Sportausschusses des Deutschen Bundestages_Neustrukturierung des Leistungssports und der Spitzensportförderung
독일	정책자료		쾰른 트레이너 아카데미의 규정	Satzung trainerakademie köln
독일	법제		도핑 피해자를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제 2 법	zwites gesetz uber eine finanzielle hilfe fur dopingopfer der DDR
독일	정책자료		스포츠 정책	Sportpolitik
독일	정책자료		경쟁 스포츠의 구조 개편 및 일류 스포츠 육성	Neustrukturierung des Leistungssports und der Spitzensportförderung
독일	정책자료		연방 정부의 13 차 스포츠 보고서	13. Sportbericht der Bundesregierung
독일	정책자료		운동 선수를 위한 연금 제도 구축 개념	Konzept zum Aufbau einer Altersversorgung für Athletinnen und Athleten
독일	정책자료		경쟁 스포츠의 구조 조정	Neustrukturierung des Leistungssports und der Spitzensportförderung
독일	정책자료		IAT/FES 협회 정관	Satzung des Vereins IAT/FES
독일	정책자료		조직도 2012	Organigramm 2012
독일	정책자료		dsj 사명선언문	dsj Mission
독일	정책자료		독일 스포츠 청소년의 절차 규칙	Geschäftsordnung der Deutschen Sportjugend
독일	정책자료		독일 스포츠 청소년의 청소년 규정	Jugendordnung der Deutschen Sportjugend
독일	정책자료		독일 스포츠 청소년의 명예 규정	Ehrungsordnung der Deutschen Sportjugend
독일	정책자료		스포츠에서의 성폭력 반대 (행동지침)	Gegen sexualisierte Gewalt im Sport
독일	정책자료		스포츠에서의 성폭력 반대	Gegen sexualisierte Gewalt im Sport
독일	정책자료		dsj 교육-청소년-스포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Bildung - Jugend - Sport. Gemeinsam Zukunft gestalten

독일	정책자료		자아상과 가장 중요한 전략적 연합 목표	Selbstverständnis sowie die übergreifenden, strategischen Verbandsziele
독일	내규		독일 장애인 스포츠 협회 (DBS) 규칙	S A T Z U N G des Deutschen Behindertensportverbandes (DBS) e.V.
독일	정책자료		독일 장애인 스포츠 협회의 청구 지침	Abrechnungsrichtlinien des Deutschen Behindertensportverbandes e.V.
독일	정책자료		절차의 일반 규칙	Allgemeine Geschäftsordnung
독일	정책자료		독일 장애인 스포츠 협회 (DBS)의 입학 규정	Aufnahmeordnung des Deutschen Behindertensportverbandes e.V. (DBS)
독일	정책자료		반도핑코드 2015	Anti-Doping Code 2015
독일	정책자료		독일 장애인 스포츠 협회 (DBS)의 반 도핑위원회 절차 규칙	Geschäftsordnung für die Anti-Doping-Kommission des Deutschen Behindertensportverbandes (DBS)
독일	정책자료		독일 장애인 스포츠 협회 (DBS)의 "교육"위원회 절차 규칙	Geschäftsordnung für den Ausschuss „Lehrwesen" des Deutschen Behindertensportverbandes (DBS)
독일	정책자료		경쟁 스포츠 절차 규칙	Geschäftsordnung für den Bereich Leistungssport
독일	정책자료		독일 장애인 스포츠 협회 (DBS)의 "의학"영역에 대한 절차 규칙	Geschäftsordnung für den Bereich „Medizin" des Deutschen Behindertensportverbandes (DBS)
독일	정책자료		독일 장애인 스포츠 청소년 이사회의 절차 규칙	Geschäftsordnung des Vorstandes der Deutschen Behindertensportjugend
독일	정책자료		독일 장애인 스포츠 협회 (DBS)의 "재활 스포츠"위원회 절차 규칙	Geschäftsordnung für den Ausschuss „Rehabilitationssport" des Deutschen Behindertensportverbandes (DBS)
독일	정책자료		독일 장애인 스포츠 협회 상임위원회 절차 규칙	Geschaftsordnung fur das Prasidium des Deutschen Behindertensportverbandes e.V.
독일	정책자료		독일 장애인 스포츠 협회 이사회의 절차 규칙	Geschäftsordnung des Kuratoriums des Deutschen Behindertensportverbandes e.V.
독일	정책자료		독일 장애인 스포츠 협회 (DBS)의 법률 시스템	Rechtsordnung des Deutschen Behindertensportverbandes e.V. (DBS)

독일	정책자료		독일 장애인 스포츠 청소년 (DBSJ)의 청소년 규정	Jugendordnung der Deutschen Behindertensportjugend (DBSJ)
독일	정책자료		스포츠를 통한 UN 장애인 권리 협약 이행	Umsetzung der UNBehindertenrechtskonvention im und durch Sport
독일	정책자료		독일 장애인 스포츠 협회의 스포츠 규정	Sportordnung des Deutschen Behindertensportverbandes
독일	정책자료		독일 장애인 스포츠 협회 교육 지침	Richtlinien für die Ausbildung im Deutschen Behindertensportverband e.V.
독일	정책자료		독일 스포츠 연맹 영역의 자격을위한 기본 지침	Rahmenrichtlinien für Qualifizierung im Bereich des Deutschen Sportbundes
독일	정책자료		독일 장애인 스포츠 협회 (DBS) 교육 / 교육위원회 절차 규칙	Geschäftsordnung für den Ausschuss Bildung/Lehre des Deutschen Behindertensportverbandes (DBS)
독일	정책자료		독일 장애인 스포츠 협회의 성폭력 예방 및 개입에 관한 입장문	Positionspapier zur Prävention von und Intervention bei sexualisierter Gewal im Deutschen Behindertensportverband e.V.
독일	사이트_스포츠		키엔바움스포츠	
독일	사이트_스포츠		Sporthilfe	
독일	사이트_스포츠		BISp	
독일	사이트_스포츠		DOSB	
독일	사이트_스포츠		독일 내무부 (BMI)	
독일	사이트_스포츠		IAT	
독일	사이트_스포츠		DSJ	
독일	사이트_스포츠		독일장애인스포츠협회(DBS), 독일장애인청소년스포츠협회 (DBSJ)	
프랑스	법제	체육	체육법전	Code du Sport
프랑스	법제	형사	형법전	Code pénal
프랑스	법제	교육	교육법전	Code de l'éducation
프랑스	정책자료		국가 교육, 청소년 및 스포츠부 공식 게시판 1번 - 2019년 1월 20일	Bulletin officiel ministère Education nationale, Jeunesse et Sports - N° 1 - 20 janvier 2019

프랑스	정책자료		국가 교육, 청소년 및 스포츠부 공식 게시판 – 2월 2일 – 2019년 2월 20일	Bulletin officiel ministère Education nationale, Jeunesse et Sports - N° 2 - 20 février 2019
프랑스	정책자료		국가 교육, 청소년 및 스포츠부 공식 게시판 - 3번 - 2019년 3월 20일	Bulletin officiel ministère Education nationale, Jeunesse et Sports - N° 3 - 20 mars 2019
프랑스	정책자료		국가 교육, 청소년 및 스포츠부 공식 게시판 – 4월 4일 – 2019년 4월 20일	Bulletin officiel ministère Education nationale, Jeunesse et Sports - N° 4 - 20 avril 2019
프랑스	정책자료		국가 교육, 청소년 및 스포츠부 공식 게시판 5번 - 2019년 5월 20일	Bulletin officiel ministère Education nationale, Jeunesse et Sports - N° 5 - 20 mai 2019
프랑스	정책자료		국가교육청소년체육부 공식전보 6월 20일 2019년 6월 20일	Bulletin officiel ministère Education nationale, Jeunesse et Sports - N° 6 - 20 juin 2019
프랑스	정책자료		국가 교육, 청소년 및 스포츠부 공식 게시판 - 2019년 7월 7일 - 20일	Bulletin officiel ministère Education nationale, Jeunesse et Sports - N° 7 - 20 juillet 2019
프랑스	정책자료		교육청 공식 게시판 - 2019년 8월 20일 8월 20일	Bulletin officiel ministère Education nationale, Jeunesse et Sports - N° 8 - 20 août 2019
프랑스	정책자료		국가 교육, 청소년 및 스포츠부 공식 게시판 - 2019년 9월 20일	Bulletin officiel ministère Education nationale, Jeunesse et Sports - N° 9 - 20 septembre 2019
프랑스	정책자료		국가 교육, 청소년 및 스포츠부 공식 게시판 – 10월 10일 – 2019년 10월 20일	Bulletin officiel ministère Education nationale, Jeunesse et Sports - N° 10 - 20 octobre 2019
프랑스	정책자료		2012년 12월 20일 국가교육체육부 공식 게시판	Bulletin officiel ministère Education nationale, Jeunesse et Sports - N° 12 - 20 décembre 2019
프랑스	정책자료		국가 교육, 청소년 및 스포츠부 공식 게시판 - 2020년 1월 20일	Bulletin officiel ministère Education nationale, Jeunesse et Sports - N°1 - 20 janvier 2020
프랑스	정책자료		국가 교육, 청소년 및 스포츠부 공식 게시판 - 2020년 2월 20일	Bulletin officiel ministère Education nationale, Jeunesse et Sports - N° 2 - 20 février 2020
프랑스	정책자료		2012년 3월 20일 국가 교육, 청소년 및 스포츠부 공식 게시판	Bulletin officiel ministère Education nationale, Jeunesse et Sports - N° 3 - 20 MARS 2020
프랑스	정책자료		2020년 4월 20일 국가 교육, 청소년 및 스포츠부 공식 게시판	Bulletin officiel ministère Education nationale, Jeunesse et Sports - N° 4 - 20 avril 2020
프랑스	정책자료		2020년 5월 5일 – 20일 국가 교육, 청년 스포츠부 공식 게시판	Bulletin officiel ministère Education nationale, Jeunesse et Sports - N° 5 - 20 mai 2020

프랑스	정책자료		2012년 6월 20일 국가교육체육부 공식 게시판	Bulletin officiel ministère Education nationale, Jeunesse et Sports - N° 6 - 20 juin 2020
프랑스	정책자료		2020년 7월 7일 - 20일 국가교육체육부 공식 게시판	Bulletin officiel ministère Education nationale, Jeunesse et Sports - N° 7 - 20 juillet 2020
프랑스	정책자료		2020년 8월 20일 국가교육청소년체육부 공식 게시판	Bulletin officiel ministère Education nationale, Jeunesse et Sports - N° 8 - 20 août 2020
프랑스	정책자료		금지 물질 및 방법	vigueur des substances et méthodes interdites
프랑스	정책자료		AUT, 국가 차원	AUT, niveau national
프랑스	정책자료		2019-57년 심의	délibération n° 2019-57
프랑스	정책자료		장애인을 그들의 협회에 수용하는 것	Accueillir une personne en situation de handicap dans son association
프랑스	정책자료		장애인 운동화 교육	Entraîner un-e sportif-ve en situation de handicap
프랑스	내규		CPSF 규칙	Les statuts du CPSF
프랑스	정책자료		가치윤리헌장	Charte des valeurs et d'éthique
프랑스	정책자료		항독제 규제	Règlement applicable en matière de lutte antidopage
프랑스	정책자료		2019년 특별 보고 AG	Compte rendu AG extraordinaire 2019
프랑스	정책자료		패럴림픽 선택 위원회 규정	Règlement du Comité paralympique de sélection
프랑스	정책자료		주요 선택 원칙	Grands principes de sélection
프랑스	배경자료		체육법전(L-141.4 및 R-141-5 ff.)	articles L-141.4 et R-141-5 et suivants du Code du sport
프랑스	정책자료		중요한 공공 행로를 제시합니다.	donnees essentielles marches publics
프랑스	정책자료		참고 No. 2020-ES-01: 2020년의 스포츠 시설 정책	Note n°2020-ES-01 : Politique de l'Agence en faveur des équipements sportifs pour l'année 2020
프랑스	정책자료		참고 2020-DFT-01: 2020년 지역 스포츠 프로젝트(TPS) 정책	Note n°2020-DFT-01 : Politique de l'Agence en faveur des projets sportifs territoriaux (PST) pour l'année 2020
프랑스	정책자료		참고 2020-DFT-02: 2020년 연방 스포츠 프로젝트 정책	Note n°2020-DFT-02 : Politique de l'Agence en faveur des projets sportifs fédéraux (PSF) pour l'année 2020

프랑스	정책자료		참고 No. 2020-DFT-03: "익사 예방 및 물에 대한 익숙함 형성" 관련 자금의 배분 및 방향	Note n°2020-DFT-03 : Répartition et orientations des crédits liés à la « Prévention des noyades et développement de l'Aisance aquatique »
프랑스	정책자료		참고 No. 2020-DFT-04: 지역 연대 기금, "연방 스포츠 프로젝트" 이외의 조치 지원 및 스포츠에서의 성폭력 방지에 관련된 자금의 배분 및 방향	Note n°2020-DFT-04 : Répartition et orientations des crédits liés au fonds territorial de solidarité, au soutien d'actions hors « projets sportifs fédéraux » (PSF) et à la lutte contre les violences sexuelles dans le sport
프랑스	정책자료		2019년 2월 19일 채택된 일반 규정	Règlement général adopté au 19 février 2019
프랑스	내규		국립스포츠기관 설립 헌장	Convention constitutive de l'Agence nationale du Sport - 4 octobre 2019
프랑스	정책자료		CA - 2020년 6월 25일	CA - 25 juin 2020
프랑스	정책자료		CA - 2020년 3월 5일	CA - 5 mars 2020
프랑스	정책자료		CA - 2019년 12월 9일	CA - 9 décembre 2019
프랑스	정책자료		CA - 2019년 10월 8일	CA - 8 octobre 2019
프랑스	정책자료		AG - 2019년 8월 8일	AG - 8 octobre 2019
프랑스	정책자료		CA - 2019년 6월 18일	CA - 18 juin 2019
프랑스	정책자료		AG - 2019년 비행 24회.	AG - 24 avril 2019
프랑스	정책자료		CA - 2019년 4월 24일	CA - 24 avril 2019
프랑스	정책자료		CA - 2019년 3월 13일	CA - 13 mars 2019
프랑스	정책자료		CA - 2019년 2월 19일	CA - 19 février 2019
프랑스	정책자료		간소화된 개발 요청서	Formulaire simplifié de demande d'aménagement
프랑스	정책자료		중재 규정	Règlement d'intervention
프랑스	정책자료		프랑스 스포츠가 데이터 주위에 모인다!	Le sport français se rassemble autour de la Data !
프랑스	사이트_스포츠		국립자원센터	
프랑스	사이트_법제		프랑스 법률정보	Légifrance
일본	법제		형법	刑法
일본	법제		인신보호법	人身保護法
일본	법제		아동복지법	児童福祉法
일본	법제		장애인 기본법	障害者基本法
일본	법제		스포츠 기본법	スポーツ基本法
일본	법제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일본	법제		사립학교법	私立学校法
일본	법제		학교교육법	学校教育法

일본	정책자료		스포츠청 정책 홈페이지	
일본	정책자료		스포츠기본계획	スポーツ基本計画
일본	정책자료		스포츠진흥제비(토토)	スポーツ振興くじ（toto）
일본	정책자료		스포츠입국전략	スポーツ立国戦略
일본	정책자료		스포츠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	スポーツ政策に関する調査研究
일본	정책자료		지방스포츠 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	地方スポーツ政策に関する調査研究（平成24年度）
일본	정책자료		스포츠청의 기본 방향에 관한 조사 연구	スポーツ庁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事業（平成24年度）
일본	정책자료		해외스포츠 기본 계획에 관한 조사 연구	海外のスポーツ基本計画に関する調査研究（平成25年度）
일본	정책자료		스포츠 기본계획 평가에 관한 조사 연구	スポーツ庁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事業（平成25年度）
일본	정책자료		스포츠 기본 방향에 관한 조사 연구 사업	スポーツの経済効果に関する調査研究（平成26年度）
일본	정책자료		스포츠 경제효과에 관한 조사 연구	スポーツ庁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事業（平成26年度）

부록 2. 캐나다 종목별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1. 바이애슬론(biathlon)

BIATHLON CANADA (“Biathlon Canada”)

SAFE SPORT 안전 스포츠 정책 매뉴얼

□ 정의

○ “클럽(Club)” - 부문(Division) 회원이고 바이애슬론 캐나다에 등록된 클럽

○ “불만 제기자(Complainant)” - 불만을 제기하는 당사자

○ “일(Days)” -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한 요일

○ “징계 위원장(Discipline Chair)” - 독립 사례 관리자가 징계에 정의된 책임을 담당하도록 지명된 개인

○ “부문(Division)” - 바이애슬론 캐나다 회원인 지방/영토 협회

○ “독립 사례 관리자(Independent Case Manager)” - 본 정책에 따라 특정 불만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바이애슬론 캐나다에서 지명된 개인으로 바이애슬론 캐나다의 회원이거나 소속되어서는 안 됨

○ “개인(Individuals)” - 바이애슬론에 고용되었거나 활동에 참여한 부문, 클럽 및 개인으로서 참가자, 선수, 코치, 컨벤더, 임원, 자원봉사자, 관리자, 관리자, 부모, 보호자 및 관중이 포함됨

○ “응답자(Respondent)” - 불만에 응답하는 당사자

○ “영향 당사자(Affected Party)“ - 본 정책에 따라 내려진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본 정책에 따라 자신의 권리에 따라 항소를 청구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항소인(Appellant)“ - 결정을 호소하는 당사자들

○ “항소 사례 관리자(Appeal Case Manager)“ - 바이애슬론 캐나다에서 임명하는 개인으로서 본 항소 정책을 감독하기 위해 모든 직원, 위원회 위원, 자원봉사자, 감독 또는 독립 제3자

○ “당사자(Parties) - 항소인, 응답자, 피해 당사자 및 이의에 영향을 받는 기타 개인
○ “권한 있는 사람(Person in Authority)” - 바이애슬론 캐나다 또는 캐나다 내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 개인. 코치, 매니저, 지원 담당자, 그리고 이에 국한되지 않는 부서 및 클럽 보호자 및 감독

1) 안전한 스포츠 정책(SAFE SPORT POLICY)

□ 목적
○ 이 정책은 바이애슬론 캐나다가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법을 설명함.

2) 행동 및 윤리 강령(CODE OF CONDUCT AND ETHICS)

□ 정의
○ “ 학대(Abuse)” - 바이애슬론 캐나다의 학대 정책에 정의됨
○ “차별(Discrimination)” - 하나 이상의 금지 된 근거에 근거한 개인의 차별 대우. 인종, 시민권, 국적 또는 민족, 피부색, 종교, 나이, 성별, 성적 취향, 성 정체성 또는 표현, 결혼 여부, 가족 상태, 유전적 특성 또는 장애
○ “부서(Division)” - 바이애슬론 캐나다의 회원인 주 / 영토 협회
○ “ 괴롭힘(Harassment)” -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성가신 발언 또는 행위. 환영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거나 합리적으로 알려야 함
○ “성희롱(Sexual Harassment)” -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인에 대한 성가신 발언 또는 행동. 성별, 성적 취향, 성별 식별 또는 성별 표현, 여기서 코멘트 또는 행위가 반갑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나 합리적으로 알려져야함. 또는 권유 또는 승진을 한 사람이 수여, 승인 또는 혜택을 거부하거나 개인에 대한 진급을 거부하고 그 사람은 이를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 함
○ “직장(Workplace)” -사업 또는 업무 관련 활동이 수행되는 모든 장소
○ “직장 괴롭힘(Workplace Harassment)” - 직장 내 근로자에 대한

불쾌한 발언 또는 행동 환영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거나 합리적으로 알려야 함

○ “직장 폭력(Workplace Violence)” - 직장 내 근로자에 대한 사람의 신체적 힘 사용 또는 위협. 근로자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힐 수있는 사업장 신체 운동 시도 및 근로자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힐 수있는 직장 내 근로자에 대한 강제 등

□ 목적

○ 이 강령의 목적은 안전하고 긍정적인 환경을 보장하는 것임. 바이애슬론 캐나다는 동등한 기회를 지원하며 차별적 관행을 금지하고 모든 개인이 존중과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함

3) 남용 정책(ABUSE POLICY)

□ 정의

○ “취약한 개인(Vulnerable Individuals)” - 아동 / 청소년 (미성년자) 및 성인 또는 나이, 장애 또는 기타 상황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위치에 있거나 신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을 확률이 일반 대중보다 더 큰 사람

□ 목적

○ 바이애슬론 캐나다는 남용이 없는 스포츠 환경을 지향함

○ 이 정책의 목적은 개인에게 학대에 대해 교육하고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대 또는 의심되는 학대를 보고하고 해결하는 것임

4) 조사 정책 - 차별, 괴롭힘 및 학대(INVESTIGATIONS POLICY - DISCRIMINATION, HARASSMENT, AND ABUSE)

□ 정의

○ “사례 관리자(Case Manager)” - 훈육 및 훈육에 따라 불만을 관리하도록 임명된 개인

□ 목적

○ 바이애슬론 캐나다는 차별, 괴롭힘, 직장의 모든 사례를 제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운영 및 활동 내에서 괴롭힘, 직장 폭력, 성희롱 및 학대 등
○ 이 정책은 개인이 차별, 괴롭힘, 직장의 사례를 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함

5) 징계 및 불만 사항 정책(DISCIPLINE AND COMPLAINTS POLICY)

□ 목적
○ 개인, 부문 및 클럽은 캐나다의 바이애슬론 정책, 내규, 규칙 및 규정, 행동 및 윤리 강령을 준수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 정책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6) 분쟁 해결 정책(DISPUTE RESOLUTION POLICY)

□ 목적
○ 바이애슬론 캐나다는 대체 분쟁 해결(Alternate Dispute Resolution, ADR)의 원칙을 지지하며 분쟁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협상, 촉진 및 중재 기술에 전념함
○ 대체 분쟁 해결은 장기간의 항고나 불만 또는 소송과 관련된 불확실성, 비용 및 기타 부정적인 영향을 피함
○ 바이애슬론 캐나다는 모든 개인, 부서 및 클럽이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며, 문제 해결 및 협상 기법을 사용하여 서로의 차이를 해결할 것을 권장함
○ 바이애슬론 캐나다는 협상 타결안이 보통 다른 분쟁 해결 기법을 통해 해결된 결과보다 바람직하다고 믿음
○ 개인과의 분쟁과 개인 간의 분쟁에 대한 협상된 결의는 강력하게 권장됨
□ 정책의 적용
○ 본 정책은 모든 개인, 부문 및 클럽에 적용됨
○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그러한 행동 방침이 상호 이익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는 경우 분쟁의 어느 시점에서든 대체 분쟁 해결의 기회를 추구할

수 있음

7) 항소 정책(이의제기 정책) (APPEAL POLICY)

□ 목적

○ 바이애슬론 캐나다는 항소 정책을 제공하여 바이애슬론 캐나다가 내린 특정 결정에 대해 공정한 항소를 가능하게 함

□ 정책의 적용

○ 바이애슬론 캐나다가 내린 결정에 직접 영향을 받는 개인, 부문 또는 클럽은 본 정책의 '항소 사유' 섹션에 따라 항소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결정에 항소할 권리가 있음

○ 자격(Eligibility), 선정(Selection),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규율(Discipline), 멤버십(Membership)과 관련된 바이애슬론 캐나다의 결정에 적용됨

- 고용(Employment), 도핑 위반(Infractions for doping offenses), 종목 규칙(The rules of the sport), 바이애슬론 캐나다 이외의 기관이 정한 선발 기준 및 정책, 팀 선정기준의 내용, 자원봉사자/코치 임명과 관련된 결정은 적용되지 않음

8) 내부 고발자 정책(WHISTLEBLOWER POLICY)

□ 목적

○ 본 정책의 목적은 사람들이 부당 대우나 보복의 두려움 없이 직장에서의 범법행위(Wrongdoing)를 고발할 수 있는 안전한 절차를 갖도록 하는 것임

□ 범법행위(Wrongdoing)에 대한 정의

○ 법을 위반하는 것

○ 바이애슬론 캐나다 행동강령 및 윤리강령을 고의로 또는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

○ 작업장 폭력과 괴롭힘에 대한 캐나다의 바이애슬론 정책을 고의로 또는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

○ 참가자, 자원봉사자 또는 다른 개인의 생명, 건강 또는 안전에 대한 위험을 범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 개인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지시하거나, 바이애슬론 캐나다 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기타 부정 행위
○ 사기를 치는 행위

□ 서약(Pledge)
○ 바이애슬론 캐나다는 본 정책의 조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을 해고, 처벌, 징계 또는 보복 또는 차별하지 않기로 약속함
○ 바이애슬론 캐나다 소속으로 본 서약서를 위반하는 자는 징계 처분을 받음

□ 범법행위 보고(Reporting Wrongdoing)
○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범법행위 혐의로 구성된 행위에 대한 서면 서술(조치 날짜 및 시간 포함)
- 잘못을 인지하거나, 영향을 받거나, 공모할 수 있는 다른 개인의 신원 및 역할
-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간주되어야 하는 이유
- 범법행위가 보고서를 제출하는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9) 소셜 미디어 정책(SOCIAL MEDIA POLICY)

□ 정의
○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 블로그, YouTube, Facebook, Instagram, Tumblr, Snapchat, Twitter 및 개인 웹 사이트와 같은 새로운 컴퓨터 매체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모든 용어

□ 서문(Preamble)
○ 바이애슬론 캐나다는 개인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소셜 미디어에서 자주 일어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
○ 바이애슬론 캐나다의 행동 강령 및 윤리 강령이 요구하는 행동 기

준에 미달하는 행위를 저지른 개인은 규율 및 불만 정책(Discipline and Complaints Policy) 내에서 확인된 징계 제재를 받게 됨

□ 해당 행위

○ 바이애슬론 캐나다 규율 및 불만 정책과 행동 및 윤리 강령에 따라 다음의 소셜 미디어 행위는 경미하거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됨

- 소셜 미디어에 개인 또는 바이애슬론 캐나다에 관한 모욕적이거나 해롭거나 불쾌하거나 폄하적인 의견 또는 사진/동영상을 게시하는 것
- 선수 및 코치, 감독 및 직원, 임원 및 선수 등 관계의 힘의 불균형이 있는 개인 간의 부적절한 개인적 또는 성적 관계

□ 개인의 책임(Individuals Responsibilities)

○ 개인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 활동을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함

○ 바이애슬론 캐나다가 소셜 미디어에서 비공식적으로 개인과 관련된 경우 개인은 언제든지 바이애슬론 캐나다에게 이 계약을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소셜 미디어 사용 시 개인은 바이애슬론 캐나다와 관련하여 개인의 역할과 지위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모델링해야 함

○ 소셜 미디어 게시 후 콘텐츠를 삭제하는 것은 개인이 바이애슬론 캐나다 규율 및 불만 정책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아님

10) 선별 정책(SCREENING POLICY)

□ 서문

○ 바이애슬론 캐나다는 선별 요원과 자원봉사자가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며 지역사회에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포츠 단체들 사이에서 일반적인 관행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함

□ 정책의 적용

○ 재무, 감독 또는 취약한 개인과 관련있는 바이애슬론 캐나다에 신뢰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역할에 있는 모든 개인에게 적용됨

□ 심사 위원회(Screening Committee)

○ 본 정책의 시행은 바이애슬론 캐나다에서 임명된 1명 또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바이애슬론 캐나다 심사 위원회의 책임하에 있음
- 바이애슬론 캐나다는 심사위원회에 임명된 구성원이 이 정책에 따라 문서를 정확하게 심사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기술, 지식 및 능력을 보유하도록 보장함

○ 심사 위원회는 본 정책의 조건에 따라 이사회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를 검토하고 충원 적절성에 관한 결정을 내림

11) 위험 관리 정책(RISK MANAGEMENT POLICY)

□ 서문

○ 바이애슬론 캐나다는 자신의 결정과 행동이 확립된 표준과 조직 가치를 반영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위험을 관리하는데 전념함

□ 목적

○ 본 정책의 목적은 바이애슬론 캐나다 내에서 위험이 어떻게 관리될 것인지에 대한 지침서를 제공하는 것임

○ 일반적으로 바이애슬론 캐나다는 리스크 관리를 조직 성과 개선을 위한 포괄적인 접근법으로 간주함

○ 본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다른 목적을 가짐
- 단순히 소송 및 재정적 손실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 리스크 관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 강화
- 직원 및 이사회 교육기능 수행
- 장기간에 걸쳐 바이애슬론 캐나다 내 '위험 관리 문화' 향상에 기여

○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리스크 관리에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음
- 참가자, 자원봉사자, 직원의 부상 또는 손실을 방지하거나 제한
- 불필요한 소송으로부터 바이애슬론 캐나다 및 캐나다 회원 보호 지원
- 바이애슬론 캐나다가 모든 해당 법률, 규정 및 표준을 준수하도록 보장
- 바이애슬론 캐나다가 회원, 파트너, 후원자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품질과 관련성 향상
- 향상된 비즈니스 관리 및 인적 자원 관리 관행 촉진
- 지역사회에서 바이애슬론 캐나다 브랜드, 명성, 이미지 제고

- 전반적으로 바이애슬론 캐나다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

□ 절차

○ 1. 정보에 입각한 환경 스캔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잠재적 위험 파악

○ 2. 위험의 가능성과 결과를 고려한 위험의 중요성 평가

○ 3. 가능성, 결과 또는 모두를 줄임으로써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의 개발 및 구현

12. 선수 보호 지침(ATHLETE PROTECTION GUIDELINES)

□ 목적

○ 권한이 있는 사람(Person in Authority)이 선수들에게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함

- '권한이 있는 사람(Person in Authority)'은 바이애슬론 캐나다 내에서 코치, 관리자, 지원 담당자, 보호자 및 감독을 포함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의미함
- 바이애슬론 캐나다는 선수들과 상호작용하는 모든 관계자에게 의사소통, 여행, 라커룸/탈의실/회의실, 사진 및 비디오, 신체접촉 등에 관한 지침을 강력하게 권고함

13. 환급 정책(RECIPROCATION POLICY)

□ 목적

○ 본 정책의 목적은 바이애슬론 캐나다, 부문 및 클럽이 적용하는 모든 징계 제재의 국가 시행과 인준을 보장하는 것임

○ 바이애슬론 캐나다는 전국의 모든 바이애슬론 참가자들에게 안전한 스포츠의 중요성을 인식함

○ 바이애슬론 캐나다는 괴롭힘, 차별, 학대, 직장 괴롭힘, 직장 폭력 및 성희롱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처리하고 조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제3자를 고용할 의무를 가짐

14) 정책 검토 정책(POLICY REVIEW POLICY)

□ 목적

○ 본 정책의 목적은 바이애슬론 캐나다 정책 검토를 공식화하는 것임

□ 내용

○ 일정

- 바이애슬론 캐나다는 총지배인 또는 이사회의 재량에 따라 2년마다 정책을 검토함
- 바이애슬론 캐나다 고용 정책 매뉴얼은 매년 검토됨

○ 검토 및 사업부 제안서

- 바이애슬론 캐나다 총지배인이 바이애슬론 캐나다 정책에 대한 검토를 주도함
- 필요에 따라 위원회 또는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으며, 정책의 추가, 삭제 또는 수정사항은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이사회에 제출됨

15) 기록 보존 정책(RECORDS RETENTION POLICY)

□ 목적

○ 본 정책의 목적은 바이애슬론 캐나다에서 유지해야 하는 기록과 문서를 어느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하는지를 기술하는 것임

□ 내용

○ 기관은 법률에 따라 특정 문서와 기록을 보관해야 함

○ 기타 기록은 법적 요건이 없더라도 신중한 기관이 보관해야 함

○ 기록은 바이애슬론 캐나다 등록 사무소에 보관함

2. 생활체육(sports for life)

SPORT FOR LIFE SOCIETY POLICY

1) 행동 강령(CODE OF CONDUCT)

□ 정책 성명

○ 모든 생활체육 대표(Sport for Life Representative)는 타인의 재산을 존중하고 고의적으로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며, 모든 연방, 지방 및 시법을 준수해야 하며, 생활체육회(Sport for Life Society)의 법, 정책, 절차,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생활체육 대표는 폭력,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을 구성하는 어떠한 행동도 삼가야 함

○ 생활체육 대표는 다른 사람에게 부적절한 활동을 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시도로 권력이나 권위의 사용을 삼가야 함

□ 정의

○ 생활체육 대표(Sport for Life Representative) - 직원, 계약자, 자원봉사자, 연구원, 이사, 위원, 위원회 위원 및 관리자 등 생명 사회를 위한 스포츠 협회에 고용되거나 대리하여 활동한 개인

○ 고객(Clients) - NSO, PSO, MSO 및 생활체육회(Sport for Life Society) 전문 지식을 보유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 생활체육회(Sport for Life Society) 서비스 사용자

○ 직장(Workplace) - 업무 또는 업무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장소

□ 정책의 적용

○ 행동 강령은 생활체육회의 핵심 가치와 일치하는 적절한 행동에 대한 기대치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생활체육 대표가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작업장 내에서 안전하고 긍정적인 환경을 보장함

○ 생활체육회는 동등한 기회를 지원하고 차별적 관행을 금지하며 모

든 생활체육 대표, 고객, 회원, 이사 및 자원 봉사자들이 존중받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함

○ 이 규정은 생활체육회의 작업장, 사업, 활동 및 이벤트 이외의 생활체육회 사원의 행위가 생활체육회 및 그 업무 및 스포츠 환경 내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생활체육회의 독자적인 재량에 따라 결정됨

□ 절차

○ 생활체육 대표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짐

- 신체적 능력, 성별, 인종, 국적, 성적 지향, 연령, 결혼 여부, 종교, 정치적 신념, 장애 또는 경제적 상태에 관계 없이 대표자와 고객을 존중함
- 스포츠 리더십과 윤리적 행동을 일관되게 보여줌
- 부당하게 차별되는 관행을 시정하거나 방지함
- 담당자와 고객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함

○ 차별, 괴롭힘 또는 학대에 해당하며, 개인이나 집단을 향한 인종차별적, 성차별적, 모욕적, 악의적인 발언 및 행동은 삼가야 함

○ 직장 내 괴롭힘(workplace harassment)이 직장 내 근로자에 대한 짜증나는 발언이나 행위로 정의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동을 자제해야 함

○ 직장 내 폭력(workplace violence)이 직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신체적 상해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수 있는 행위, 직장에서 근로자에게 신체적 상해를 가하는 행위, 신체적 상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 등은 금지함

○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 달갑지 않은 성적 발언 및 성 접대 요청 또는 성적 행위로 정의되는 경우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삼가야 함

○ 반도핑 규정을 위반하거나 캐나다 도핑방지 프로그램에 제재를 받

고 있는 고객과 코칭, 훈련, 경기, 교육, 행정, 관리, 운동 개발 또는 감독을 목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삼가야 함

○ 본 강령을 위반한 생활체육 대표는 제재에 대한 적절한 징계를 받아야 함

2) 차별, 괴롭힘 및 학대(DISCRIMINATION, HARASSMENT & ABUSE)

□ 정책 성명

○ 생활체육회는 스포츠나 직장에서의 차별, 괴롭힘 또는 학대를 용인하지 않음

□ 정책의 적용

○ 본 정책은 협회의 회원과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생활체육 대표에게 적용됨

○ 협회의 모든 회원과 직원이 모든 괴롭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

○ 본 정책은 차별, 괴롭힘 및 학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정의

○ 항소인(Appellant) - 징계 위원회의 결정에 항소하는 개인

○ 고소인(Complainant) - 사업, 활동 또는 행사 과정 중에 직원, 이사, 자원봉사자, 코치, 선수, 임원 및 협회 회원의 위법 행위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 징계위원회(Disciplinary Committee) - 주요 징계 위반 사항을 다루기 위해 구성된 임시 위원회

○ 묵과(Condonation) - 차별, 괴롭힘 또는 학대가 발생하였음을 알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권한을 가진 자

○ 사실 확인자(Fact Finder) - 성희롱 불만사항과 관련하여 조사 및 권고할 적절한 배경과 교육을 받은 협회를 위한 스포츠 협회에 의해

계약된 개인

○ 학대 연락 담당자(Harassment Liaison) - 차별, 괴롭힘, 학대 문제에 정통한 협회의 지정자

○ 조사 보고서(Investigation Report) - 세부 사항 요약 및 상황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사실 확인자가 작성한 조사 결과

○ 피고인(Respondent) - 고소인이 생각하는 행동의 피고인 개인은 차별, 괴롭힘 또는 학대를 구성함

○ 책임 있는 성인(Responsible Adult) - 고소인 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미성년자가 지정한 부모, 보호자가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 고소인을 대신하여 발언할 수 있음

○ 보복(Reprisal) - 보복 또는 보복 위협은 차별, 괴롭힘 및 학대와 관련된 상황에서 직권 상대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의 악화 요인임

□ 절차

○ 예방

- 생활체육회는 차별, 괴롭힘,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헌신하며 모든 직원, 계약자 및 이사회 이사가 행동 강령에 서면으로 동의해야 함
- 생활체육 대표는 조직 내에서 역할을 시작한 지 1개월 이내에 “직장 내 존중(Respect in the Workplace)” 교육을 받아야 함

○ 책임

- 협회 이사회는 이 정책의 실행을 책임지며 불만 사항에 대해 결정함
- 생활체육회는 학대 연락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불만 사항을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갖추도록 고용된 모든 사실 조사자의 자격 증명을 검토함

○ 기밀성

- 보고된 모든 사항은 신속하고 철저하며 공정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며, 모든 관련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짐

○ 학대 관련 연락자

- 생활체육회 이사회가 선정한 개인이며, 자신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교육을 받게 됨

○ 사실 확인자

- 생활체육회는 아마추어 스포츠를 위한 대안적 분쟁 해결 프로그램에 의해 설립된 훈련된 개인들을 고용함

3) 고용 및 심사(HIRING AND SCREENING)

□ 정책 성명

○ 생활체육회는 가능한 각 직위의 요건을 수행할 가장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선발하기 위해 헌신함

□ 정책의 적용

○ 평등 및 접근 정책(Equality & Access Policy)은 생활체육회가 사람들에게 모든 평등한 범위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보장함

□ 절차

○ 채용공고

- 결원 후보자는 기존 직원 또는 외부 직원일 수 있음
- Society 내의 모든 기존 직책 또는 신규 직책은 채용 공고를 필요로 함

○ 고용 확인, 참조사항 및 권고사항

- 협회는 모든 최종 고용 후보자의 고용 참조를 확인함
- 고용 제의는 충족된 기준 확인에 따라 결정됨
- 신청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후보자의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참조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음

4) 뇌 손상에 관한 지침 (CONCUSSION GUIDELINES)

□ 정책 성명

○ 본 정책의 목적은 생활체육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의

안전과 안녕을 보장하는 것임

○ 이 정책은 온타리오 관광문화체육부(Ontario Ministry of Tourism)에 의해 개발된 뇌 손상 지침(Concussion Guidelines)에 기초함

□ 정의

○ 뇌 손상(Concussion)은 뇌 기능에 변화를 일으켜 다음과 같은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신체 (예: 두통, 어지러움), 인지 (예: 집중 또는 기억의 어려움), 감정/불안 (예: 우울증, 자극성), 수면에 관련된 사항(예: 졸음, 잠들기 어려움)

□ 정책의 적용

○ 본 규정은 생활체육회 사업 및 활동에 종사하는 생활체육 대표에게 적용됨

○ 생활체육회는 비즈니스 및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책임 있는 예방적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믿음

□ 절차

○ 초기 대응, 의료 검사 및 신체 활동 복귀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광문화체육부(Ministry of Tourism, Culture and Sport)의 뇌 손상 지침(Concussion Guidelines)을 참조

5) 이해 상충(CONFLICT OF INTEREST)

□ 정책 성명

○ 이 정책의 목적은 이해 상충(Conflict of Interest) 상황의 착취를 방지하는 행동 표준을 제공하는 것임

○ 생활체육 대표는 윤리적, 법적, 재정적 또는 기타 이해 상충을 피하고 그들의 활동과 이익이 생활체육회 또는 그 복지에 대한 의무와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정책의 적용

○ 이 정책은 생활체육 대표 담당자에게 적용됨

□ 정의

○ 이해 상충(Conflict of Interest) - 어떤 자격으로든 생활체육회를 대표하는 개인 또는 조직이 생활체육회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개인, 가족, 재무, 비즈니스 또는 기타 이해관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

6) 평등 및 접근(EQUITY AND ACCESS)

□ 정책 성명

○ 생활체육회는 행정, 정책, 프로그램 및 활동의 형평성을 장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정책의 적용

○ 평등&접근 정책은 생활체육회가 사람들에게 참여하고 이끌 수 있는 모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장함

□ 절차

○ 생활체육회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체육회 리더십과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수준을 높일 것임

○ 생활체육회는 캐나다의 두 개의 공용 언어 사용에 대한 공식 언어 정책을 가지고 있음

○ 생활체육회는 장애인, 원주민 및 기타 소수민족의 참여를 환영하는 프로그램과 활동을 보장함

○ 생활체육회는 이사회와 모든 위원회에서 균형 잡힌 성별 표현을 장려할 것임

○ 생활체육회는 성별, 공식 언어 및 소수 집단이 홍보 자료와 공식 출판물에 공평하게 묘사되고, 성별 중립 언어가 모든 커뮤니케이션에 사용되도록 보장함

7) 공용어(OFFICIAL LANGUAGES)

□ 정책 성명

○ 생활체육회는 사용자들과 일반 대중들에게 그들이 선호하는 공식 언어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헌신함

□ 정책의 적용

○ 생활체육회의 활동에서 두 공식 언어를 모두 사용하도록 지도함

○ 본 규정은 생활체육회와 그 활동에 적용되며 국가 스포츠 기구, 멀티 스포츠 서비스 기구, 스폰서, 공급자, 면허인, 모든 국가 스포츠 기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생활 스포츠 협회와 “사업”을 할 때 파트너에게 적용됨

8) 개인 정보 및 중요한 정보(PRIVACY AND SENSITIVE INFORMATION)

□ 정책 성명

○ 생활체육회는 귀하의 개인 정보 보호와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의 보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법률에서 요구하거나 사용자가 이러한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한 고객 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 임대, 임대 또는 공개하지 않음

○ 생활체육회는 안전하고 환영하며 포괄적인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체 공개 질문을 할 때 이 정보를 익명 보고서 형식으로 사용하며 이러한 공개가 초래할 수 있는 편견으로부터 개인으로부터 보호할 것임

○ 개인 정보의 개인 정보 보호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전자문서법 “PIPEDA”의 적용을 받음

□ 원칙

○ 생활체육회의 개인 정보 보호 및 중요한 정보 정책은 캐나다에서 적용되는 개인 정보 보호 법률을 준수하도록 설계되었음

○ 목적 식별의 원칙(Identifying Purposes)은 생활체육회는 개인 정보가 수집되기 전이나 수집 시점에 수집되는 목적을 명확히 식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생활체육회가 개방성과 개인의 접근 원칙을 준수하도록 도움

9) 평등 및 접근(EQUITY AND ACCESS)

□ 정책 성명

○ 생활체육회를 위한 스포츠의 위험 관리 관행을 안내함

□ 정책의 적용

○ 본 정책은 생활체육회 사업 및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생활체육 대표자에게 적용됨

○ 생활체육회는 모든 생활체육 대표의 웰빙과 안전성을 높이 평가하며, 모든 생활체육 대표는 사고와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책임감 있고 예방적인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믿고 있음

□ 절차

○ 생활체육회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체육회 리더십과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수준을 높일 것임

○ 생활체육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생활체육회가 수행하는 모든 활동과 이벤트는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분석됨
- 생활체육회를 위한 스포츠가 직면한 위험을 식별, 평가, 관리 및 전달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명시적인 단계를 수행해야 함
- 위험 통제 전략은 합리적이며 (관리 표준이 서면/게시판 표준, 업계 관행, 확립된 판례법 판례 및 상식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어떤 상황에서든 주어진 관리 표준을 반영함
- 생활체육회는 위험 관리가 광범위한 활동이며 공동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생활체육회 대표는 위험 식별, 평가, 관리 및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권한 및 책임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지속적인 책임이 있음

스포츠분야 해외선진제도 실태조사

| 인쇄일 | 2020년 12월 16일
| 발행일 | 2020년 12월 16일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http://www.humanrights.go.kr
| 문의전화 | 특별조사팀 02)2125-9865
| F A X | 02)2125-0934
| E-mail | research@humanrights.go.kr
| 제작 | 피오디컴퍼니 02)715-0213

ISBN : 978-89-6114-813-9 93690 비매품

ISBN : 978-89-6114-813-9 93690